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박사학위논문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被爆者) 되기

- 피폭자 범주의 경계 설정과 통제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 -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오 은 정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被爆者) 되기

- 피폭자 범주의 경계 설정과 통제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 -

지도교수 황 익 주

이 논문을 인류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오 은 정

오은정의 인류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원장	오명석	
부위원장	권승인	
위원	정근식	
위원	백예경	
위원	황익주	

[국문초록]

오 은 정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한 전체 피폭인구의 약 10%에 달한다고 보고되는 조선인 원폭피해자들은, GHQ(연합군사령부)의 전후 제일조선인 귀환 정책에 따라 원폭의 급성기 장해에 대한 치료도 끝나지 않은 1945년 늦가을과 초겨울에 집중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 현 한국원폭협회의 전신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가 결성됐다. 그러나 '핵의 피해자로서 '내 몸을 변상하라'는 이들의 호소는 '유일피폭국' 일본에서도, '원폭으로 해방을 맞은' 자국에서도,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전쟁을 끝냄으로써 더 큰 희생을 막았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미국에서도 외면되어 왔다. 하지만 오랜 사회적 망각과 정치적 배제 속에서도 자신들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투쟁의 한 결과로서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의 국내법인 원폭원호법에 근거해,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은 '히바쿠샤(被爆者)'라면 누구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피폭자건강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관계 및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경험하고 한국으로 귀환한 이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상징하는 히바쿠샤의 범주로 편입되는 과정을 역사인류학적 시각에 바탕 해 재구성한 민족지적 사례연구다. 또한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현지조사, 한국의 각지에 거주하는 원폭생존자들과의 생애사 인터뷰, 그리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보관중인 호적과 문서기록 조사에 기초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통시적으로는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어떻게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상징하는 히바쿠샤의 범주 속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지를 검토했다. 나아가, 공시적으로는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소위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아 히바쿠샤가 되면서 겪게 되는 경험과 그 의미를 관료제적 경계 통제라는 측면에서 고찰했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가 상호 작동하는 방식과 그 실행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일본 원폭피해자구호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히바쿠샤' 범주의 경계가 구성되어온 과정은 피폭의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연구들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고, 일본의 국내외적 정치의 장에서는 과거의 '제국 일본'이 수행한 전쟁과 식민 지배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전후(戰後) 과거 피식민자들의 원폭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해서 히바쿠샤의 자격은 일본국의 영토적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시정권(施政權)의 논리를 들어 배제시키고, 자국 원폭피해자들의 원호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원자폭

탄의 피해가 전쟁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와 구분되는 '특수한 피해'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수인론(受忍論)과 균형론(均衡論)을 내세웠다. 이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구호정책이 과거 일본국이 수행한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도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오직 원자폭탄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한정되는, 일종의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으로서 틀 지워짐을 의미했다.

그런데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히바쿠샤 구호의 문제가 각종 생의학적 지식들로 구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하는 히바쿠샤 인증의 관료제적 통제 과정에서는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기록과 기억 등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은 자"라고 정의된 '히바쿠샤'의 법적 규정은 '히바쿠샤'라는 용어가 단순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를 지칭하는 한 차별화된 이름이나 생물학적 상태에 대한 규정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공식적 자격'을 부여하는 관료제적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샤의 범주가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징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기반을 갖는 경계로서 구축되었음을 나타낸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와 이들이 일본 원폭피해자원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관료제적 통제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보상 요구가 한일회담 과정에서 배제된 이후 '한국원폭피해자'로 결집하게 되는 정치사회적 배경과 과정을 검토했다. 나아가, 이들이 자신들의 구호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게 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국가 간 보상의 형태가 아닌 일본 국내법인 원폭원호법의 초국경적 적용을 운동의 목표로 상정해 나가게 된 과정을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 연구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간과해왔던 몇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였다. 우선, 소송의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연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과 담론의 차원에서 이들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간과해온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역사적 경험을 피폭의 시점이나 피해자화(victimization)하는 관점에 고정시키지 않고, 이들의 경험이 탈식민 이후 미소냉전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미군정기와 한국전쟁, 군사정권, 탈냉전 등 한국의 격동적인 근현대사 흐름 속에서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연결되는 과정 또한 외교적·정치적·법적 차원의 보상 책임과 요구에 대한 응대로만 해석하지 않고, 이들이 해방 이전부터 축적해온 사회문화적 요소들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 과정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역사적 경험이 관료제적 통제 과정 속에서 심사되는 과정이기도 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국원폭피해자들과의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얻은 구술자료를 통해 과거 식민자와의 재회라는 맥락에서 드러내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는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샤'의 경계가 설정되고 통제되는

과정에 있어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문서를 매개로한 관료제적 실행과 그 효과에 주목했으며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는 과정에 이르는 사회문화적 맥락들도 조명했다. 한국원폭피해자의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과정은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원폭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한다는 목표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료제적 실행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원폭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을 이들에게 가장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 구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러한 관료제적 실행의 문턱 효과는 자국 정부가 구호의 주체로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원폭피해자들의 자조(自助)적 구호 및 투쟁단체로 활동해온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회원 통제 방식과 맞물리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시공간에 대한 감각이나 원폭피해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 그리고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연줄망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이들로, 강제 동원된 징용·징병자, 여성 원폭피해자들에게 가장 높게 경험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역사를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과의 연결 속에서 분석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특정한 범주의 외연으로서 '경계'라는 개념을 채택하면서, 한편으로는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적 상호 작용 속에서 '경계'가 구성되는 역사적인 차원을 조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계가 특정한 형태로 본질화되고 자연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자로서 문서와 기록, 그리고 기억의 진술을 통해 피폭의 여부를 판단해 히바쿠샤의 자격을 인증하는 유일한 독점적 권위를 가진 심사자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히바쿠샤의 범주적 경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지위를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했다. 일본의 원폭3법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자라고 규정된 히바쿠샤의 경계가 피폭에 대한 과학 연구의 미완결성과 행정관료제적 통제 과정에서의 기록과 기억의 상호구속과 간섭, 그리고 과거의 피식민자이자 국경밖의 재외국민피폭자들이었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물리적이자 상징적인 월경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침식되고 변형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침식과 변형은 부분적이고 한정적이다.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형태의 범주는, 그 범주를 규정하는 경계가 갖는 구성적이고 투수(透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법적·행정적 실행과 관료제적 실천 속에서 굴절되고 변형되어 고체화된 형태로 구조화되어 간다.

주요어: 한국원폭피해자, 사회적 고통, 일본 원폭피해자 구호정책, 히바쿠샤(被爆者) 범주의 경계, 과학, 정치, 관료제

학번: 2004-20181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5
3. 연구 질문	19
4. 연구의 방법	20
5. 논문의 구성	35
II.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제도화 과정	38
1. 전재민에서 히바쿠샤로의 전환	38
1) 원폭피해자, 원폭생존자, 원폭피폭자	38
2) 이름 짓기의 정치	42
2. GHQ 점령하의 원폭생존자에 대한 초기 조사와 구호의 경과	47
1) 전후(戰後) 원폭생존자 조사의 경과와 그 성격	47
2) 전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재민 구호의 경과	52
3) 원폭피해자구호의 전환점으로서 비키니 피재	54
3.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원폭 3법의 성립과 의미	59
1) 원폭의료법과 원자폭탄피폭자의 법적 정의의 탄생	59
2) 사회보장과 국가보상 논쟁 속에서 성립된 원폭특별조치법	61
3) 손진두 소송의 의의와 원폭원호법의 국가 보상적 성격의 한계	65
4. 소결: 일본에서 ‘히바쿠샤’의 정치사회적 의미 구성	69
III. 히바쿠샤 범주의 경계 구성과 통제	73
1. 히바쿠샤 범주의 법적 경계 구성	73
1) 히바쿠샤의 법적 정의	73
2) 히바쿠샤 범주의 시공간적 경계 구성	76
3) 히바쿠샤 범주에 관한 초기 논쟁	80
2. 히바쿠샤 범주의 경계 통제	83
1) 히바쿠샤 인증에 있어 과학적 방법의 한계와 제약	83

2) 히바쿠샤 인증의 행정관료제적 변형	87
3. 히바쿠샤 범주의 중첩된 경계	90
1) 히바쿠샤의 범주에서 배제된 “원폭체험자”	91
2) 특별 히바쿠샤와 원폭증 논쟁의 의미	97
4. 소결: 정책의 장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과 굴절	108
IV.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와 일본 히바쿠샤 원호의 초국경화	111
1. GHQ/미군정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귀환 동포들	111
1) 해방 후 GHQ와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귀환 정책	111
2) 고국으로의 귀환	114
3) 고국에서의 삶	119
2. 한국원폭피해자로의 사회적 결집	126
1) 한국에서 원폭피해자의 정치사회적 등장	126
2)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결성과 초기 활동의 방향	130
3) 구호와 교류의 정치색	136
3. 한국 원폭피해자와 일본 시민사회의 연결	140
1) 일본에서 ‘자이칸히바쿠샤’에 대한 지원의 사회문화적 배경	141
2) 히로시마 한인사회와 모국피폭동포의 연결	145
4.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의 속지주의적 시행의 논리와 의미	148
1) 치료와 운동의 방편으로서 수첩의 교부	148
2) 국경을 넘으면 휴지가 되는 피폭자 수첩	153
5. 한국원폭피해자 소송과 히바쿠샤 원호의 초국경화	161
1) 보상청구운동의 좌절과 수첩 재판으로의 전환	161
2)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수첩 재판 일람과 박귀훈 소송의 의의	166
6. 소결: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초국경적 적용의 의의와 한계	170
V. 한국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범주로의 편입 과정	174
1. 회원에서 히바쿠샤로의 지위 변화	174
1) 회원과 히바쿠샤의 간극	174
2) 디딤돌과 문턱으로서의 협회	177
3) 경계 진입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비용	186
4) 협회 회원 구성의 재해석	191

2.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서의 관료제적 형식과 내용	200
1) 특정한 시공간적 좌표 상에 문자화되어야 할 기억	200
2) 기억과 기록의 상호구속과 교정, 그리고 학습	210
3) 심사될 기억의 정형화	216
3. 문서의 매개와 위계	219
1) 이재증명서, 명부(名簿): 식민모국과 전후(戰後) 일본에서 생산된 문서	219
2) 호적: 식민지 조선과 해방 후 한국에서 생산된 문서	231
4. 수첩 교부 심사의 경험	241
1) 과거 식민자와의 관료제적 재회	241
2) 히바쿠샤 범주로의 편입 지점	245
3) 경계 진입 과정에서의 인술자와 조력자	249
5. 소결: 관료제적 경계 통제에서 포섭과 배제의 논리	253
VI. 결론	257
참고문헌	268
부록	285
Abstract	288
日文抄録	290

〈표 차례〉

<표 1> 23억불 보상 청구 요망서와 보상액 산출 내역서	163
<표 2>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록에 남아 있는 <시민회> 기부액	164
<표 3> 재한피폭자도일치료히로시마위원회를 통한 도일치료자수	165
<표 4>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원폭피해자 소송	166
<표 5> 지부별 누적 회원과 남아 있는 호적수	193
<표 6>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들의 출신지역별 인원	194
<표 7> 합천군 생활권 권역으로 본 1974/2008년 원폭피해자수 비교	195
<표 8> 중복된 호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출신 지역 분포	197
<표 9> 나가사키재일조선인 피폭자 및 사망자 추정 조사들	198
<표 10>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의 재일 당시 평균 가구원수	198
<표 11>故장영준 씨가 생전에 원폭협회에 보낸 편지에 첨부된 병원 진단서와 신문기사	201

<표 12> 피폭자건강수첩교부신청서 중 ‘피폭 당시의 상황’에 써야할 내용들	203
<표 13> 피폭자건강수첩교부신청서중 ‘피폭의 상황’에 써야할 내용들	204
<표 14> 1920년, 1930년 히로시마 현 주재 조선인의 직업별 인구	229
<표 15> 1940년 히로시마 현 주재 조선인의 직업별 인구 (유업자)	230
<표 16> 1940년 히로시마 현 주재 조선인의 직업별 인구 (무업자)	230

<그림 차례>

<그림 1>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위치	112
<그림 2> 히로시마 시와 나가사키 시의 피폭자건강수첩교부 현황	175
<그림 3>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가입현황	181
<그림 4>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지부별 누적 회원 수	193
<그림 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들의 재일 당시 출신 지역	194
<그림 6> 중복된 호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출신 지역 분포	196
<그림 7> 한 원폭피해자가 재일 당시 자택과 피폭 지점 등을 설명하면서 그린 지도	206
<그림 8> 히로시마 원폭재해지도	207
<그림 9> 나가사키 원폭재해지도	208
<그림 10> 한 원폭피해자가 도일치료 당시 한글로 적어놓은 간단한 일본말	210
<그림 11> 8시 15분을 형상화한 조형물	213
<그림 12> 8시 15분을 지나 멈춰 있는 시계	213
<그림 13> 아이오이교(相生橋)에서 바라본 원폭 돔	215
<그림 14> 옛 히로시마저금국이 소개된 소학교 책자	223
<그림 15> 재일당시 직장에서 찾은 직원 명부	223
<그림 16> 징용 당시 같은 숙소를 썼던 친구들과 찍은 사진	225
<그림 17> 운전면허증	226
<그림 18> 성적증명서	226
<그림 19> 졸업사진	227
<그림 20> 히로시마 산요중학교 희생자 명부	228
<그림 21> 히로시마평화기념관에 보관된 희생자 기록	229
<그림 22> 호적 변경 당시 보증인 서류 1	236
<그림 23> 호적 변경 당시 보증인 서류 2	237
<그림 24> 피폭자건강수첩의 안쪽 면	248
<그림 25> 건강관리수당증서	248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2006년도 단기해외연수 지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6년도 대학원생 해외연구·조사지원, 일본 스미토모재단(住友財団) 2011년도 일본연구관련조성 기금, 주히로시마한국총영사관 2012년도 히로시마대학평화과학심포지움 후원 및 초청,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3년도 박사논문작성지원금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매년 8월 6일 서울의 마장동 대한적십자사회관 강당과 경남 합천군의 한 복지회관 뒤뜰에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백여 명 남짓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한 위령제가 열린다.¹⁾ 그리고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평화의 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1945년의 그 날 그 시각에 이 도시에 떨어진 폭탄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자리에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본의 총리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시민, 그리고 UN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파견된 외교사절을 포함해 수 만 명의 내외국인이 운집한다.

일본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피해는 아시아-태평양 전쟁²⁾에서의 일반적인 폭탄이나 공습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원자폭탄과 방사능이라는 인류초유의 핵위협으로 연결된다.³⁾ 전쟁 당시 연합군에 의한 일본 본토 공습의 피해는 약 120여개 도시에 걸쳐 전체 등록된 총호수의 20%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지만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의 피해는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일본의 피해이면서 동시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인류 역사의 비극’으로 그리고 ‘평화의 초석’으로 이야기 된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전은 그 같은 언설들이 오가는 일본의 대표적인 국가 수준의 의례다.⁵⁾

2011년에 이뤄진 평화기념식전에서 히로시마 시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선언을 낭독했다. 세계최초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파괴된 도시와 시민들의 희생이 미래의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리고 그 결의의 바탕은 ‘히바쿠샤(被爆者)⁶⁾의 삶과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차세

1) 적십자사회관에서 열리는 위령제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주관하며,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위령제는 동협회 합천지부와 복지회관에서 주관한다.

2) 아시아-태평양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용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과 그에 대립하는 ‘파시즘’ 국가의 대립으로 이야기되고 시공간적으로도 유럽을 중심으로 하며, ‘태평양 전쟁’(Pacific War)이 ‘일본을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이라는 단 일한 서사 속에서 구성되는 반면,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명명된 것으로서 이 시기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아시아 주변 지역에 대한 전쟁 침략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시기의 전쟁에 대한 명칭이 갖는 의미와 논점들에 대해서는 김효진(2010:228-231)을 참조할 수 있다.

3) 피해의 정도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기록은 부록을 참조

4) 일본 건설성은 제1회 공습(1942년)부터 종전까지 약 120여 도시에 걸쳐 전국에 등록된 총호수의 2할에 이른다고 보았다 (建設省編, 1991[1959], 『戰災復興誌』 第1卷:1; 根本, 2006. p.12 재인용),

5) 이 식전이 국가 수준에서 이뤄지기는 하지만, 행사 주체는 히로시마시정부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가의례’보다는 ‘국가 수준의 의례’로 명기했다.

6) 본 논문에서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한 원자폭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있어, 연구자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원폭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이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 기관, 조직, 국가 등에서 특수한 의미를 띠고 사용될 때에는 그곳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를 인용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중앙 정부

대에 그리고 전 세계에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⁷⁾

그런데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된 현장에는 일본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왔거나 혹은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로 강제 연행되었던 피식민국의 시민과 징용자들도 있었다. 전화(戰禍)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 자료가 소실되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인의 수는 전체 피해 인구의 10%에 이르는 7만에 가까운 정도로 많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廣島市·長崎市 原爆災害誌編輯委員會, 200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9).⁸⁾

하지만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한국과 일본의 대조적이고 아이러니한 풍경이 보여주듯이, 이들 수만 명의 조선인 원폭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는 물론 '세계 유일의 피폭국' 일본에서도, 그리고 '원폭으로 해방을 맞은' 자국의 역사적 공간에서도 지워지고 망각된 존재들이었다 (Yoneyama, 1999; Naono, 2003; 이치바 준코, 2003; 진주, 2004; 정근식, 2005; 권혁태, 2009).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에 대한 오랜 정치적·윤리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일찍 전쟁을 끝냄으로써 더 큰 희생을 막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미국에 원폭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이들의 호소는 가닿을 자리가 없었다. 한국에서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거의 유일한 사회과학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2004)와 정근식(2005)의 한국원폭피해자 증언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냉전시기 일본을 거점으로 동아시아 지역체제를 만들어낸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분단 한국에도 원폭의 피해자 그리고 핵의 피해자를 구호하라는 호소는 힘을 얻지 못했다. 원폭의 희생을 초래한 전쟁 수행의 주체였으면서도 유일피폭국이라는 피해자 깃발 아래에서 전쟁의 책임을 회피한 일본 정부 또한 1980년대까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상 문제에 대해 한일회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식민지기 일본인으로 봉사하다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식민지적 지위와 차별을 받아 온 재일 한인의 존재가 전후 일본 사회가 강요하거나 부추겨 온 역사에 대한 망각의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권숙인, 2002:25)로서 일본의 국경 안에 존재했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은 그 바깥에 있는 이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적 망각과 정치적 배제 속에서도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자

나 지방 정부는 '히바쿠샤'라는 용어를, 미국의 과학 연구 프로그램들은 대개 '원폭생존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내포한 정치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변형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루고 있다.

- 7) 평화선언 원문은 2013년 3월 현재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cf.city.hiroshima.jp/declaration/Japanese/2011/index.html>)
- 8) 현재 원자폭탄에 의한 조선인의 피해상황은 한국인원폭피해자단체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추정에 의하면 피폭자 총수가 히로시마에서 약 5만 명, 나가사키에서 약 2만 명, 피폭사한 사람은 히로시마에서 약 3만 명, 나가사키에서 약 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인 희생자 수는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거주자의 약 1할에 해당한다. 이후 생존자들은 히로시마에서 2만 명 중 12,000여명이 조선으로 귀국하고, 나가사키에서는 8천여 명이 귀국한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9).
- 9)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미국 내의 논쟁, 재현과 담론에 대해서는 Gusterson(2004)을 참조.

신들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투쟁의 한 결과로서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의 국내법인 원폭원호법에 근거해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은 히바쿠사라면 누구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피폭자건강수당과 의료비 등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관계 및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¹⁰⁾

한편 히로시마에서 평화의 종이 울리고 한 달 보름이 되어가던 2012년 9월 19일, 일본 나가사키지방법관소 앞에서 작은 집회가 열렸다. 한 남성의 영정을 앞에 두고 목념을 한 뒤 시작된 이 집회는 전날 한국인 남성 장영준 씨가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피폭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각하한 나가사키 시에 대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골수이형성증후군과 빈혈,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고혈압 등 혈액 계통의 질병에 시달리며 재판에 나섰던 장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때이기도 했다. 생전에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아 히바쿠사로서 치료를 받겠다는 뜻을 간절하게 호소했던 이 한국인원폭피해자는 사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長崎新聞』 2012/9/19). 하지만 나가사키 시는 보름 뒤인 10월 3일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할 수 없다는 후생노동성의 지도 방침에 따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영준 씨는 끝내 히바쿠사가 될 수 없었다. 나가사키지방법관소에는 장씨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남녀 3명(중 1인 사망)의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長崎新聞』 2012/10/4).

일본과 한국의 공식 역사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이들 한국원폭피해자들 중 일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히바쿠사’로서 자격을 얻어 의료지원을 받고, 또 다른 일부는 그와 같은 자격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투쟁하고 있는 사실을 사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그 이전에 이들이 왜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은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 중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경험한 원폭의 경험이 신체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에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과학 및 의학 연구들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과학 연구기관인 방사선영향연구소(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 이하 RERF로 약칭)¹¹⁾가 히로시마

10)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독특한 지위와 관계는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지방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원전이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다시 한 번 또 다른 형태로도 나타났다. 당시 이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우려를 담아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약 1,5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7,800여만 원의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일본 후생노동성대신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일체의 피해자’로만 묶기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일본과 일본정부에 대한 심경 또한 독특하고 복잡하다.

11) 원폭상해조사위원회(Atomic Bomb Casualty Council, 이하 ABCC로 약칭)를 전신으로 하는 RERF는 1948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생존자를 조사 대상으로 과학 연구를 시작한 일미공동연구기관이다. 피난 지시 여부 등 일본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사고 대응 기준과 관련된 피폭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방사선방호 관련 연구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다. 히로시마 시내 동남쪽의 나지막한 산인 히지야마(比治山)에 ABCC/RERF가 자리 잡고 있다.

와 나가사키의 히바쿠샤에게 방사선의 영향이 가장 크게 발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때— 조사대상집단에 속한 '히바쿠샤가 가장 많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2020년이다 (RERF LSS Report No.13, 2000).

그러나 연구자가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오늘날 일본과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생존자 혹은 원폭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생물학적 사태가 단순히 그들 한 개인의 신체 그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원폭의 경험은 오늘날 '히바쿠샤'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과학적·의학적 차원의 연구와 제도적·정책적·정치적 차원의 지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체험했지만 국가로부터 히바쿠샤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들은 자신들을 '원폭체험자(原爆体験者)라고 부른다— 중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피폭자인정소송이 진행 중이다.¹²⁾ 원폭투하 당시 내렸던 '검은 비'의 건강 영향을 주장하며 '피폭 지역'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廣島黒い雨連絡協議會, 2012). 국가로부터 히바쿠샤로 인정받거나 받지 못한 이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 원폭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재판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¹³⁾ 2008년 전국에서 진행된 원폭증인정소송에서 차례대로 패한 일본 정부는 원폭피해자구호정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 받고 이듬해인 2009년 8월 6일 히로시마평화기념식전을 기해 그 제도 개선을 약속 하면서 <원폭증인정제도 검토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¹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히바쿠샤' 및 '원폭증' 인정 소송 등은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회원'으로 통용되는 원폭피해자와 일본정부로부터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아 '히바쿠샤'가 되는 것 사이의 간극은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이들이 같은 시기에 겪었던 경험이 과학적, 의학적,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으로 재구성됨을 의미한다. 오늘날 일본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상정하고 있는 히바쿠샤라는 범주의 경계 안팎에 서있는 이들의 존재는 그 둘 사이의 간극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본 연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경험하고 한국으로 귀환한 이들의 역사를 민족지적 사례 연구를 통해 재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목적은 기존의 소송 중심의 연구와 기억의 정치라는 차원의 연

12) 『나가사키신문』(長崎新聞) 2012/6/23

13) 『피폭자는 왜 원폭증 인정을 요구하는 것인가』(伊藤直子·田部知江子·中川重徳, 2006, 岩波ブックレット)

14) 2009년 8월 6일 아소다로 당시 내각총리대신은 일본피단협과 「원폭증 인정 집단소송의 종결에 관한 기본방침과 관계되는 확인서」(확인서)를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원폭증 인정 집단소송의 원고와 관계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금에 대한 보조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기금법', 2012년 12월)이 성립됐다. 당시 이 법은 말미에 「검토」항목으로서 「인정등과 관계되는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정했는데, 이를 계기로 「원폭증 인정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회」(약칭, '원폭증 인정 제도 검토회')가 발족됐다.

구들에서 간과해온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 정책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달성될 수 있다.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그 정치사회적·인류학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앞서 그 정책은 어떠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을 '원폭의 경험'으로, 그리고 이것을 다시 '피폭의 경험'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히바쿠샤의 경험'으로 입증하는 제도화 과정을 전후 일본과 미국의 원폭생존자에 대한 과학 연구, 그리고 전후 보상의 정치, 무엇보다 이 제도의 관료제적 실행들의 상호 작동 속에서 검토하고자 했다. 이는 현대 한국에서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현대 국가에서 정책이라는 하나의 권력 실행 수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삶의 범주와 방식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선행 연구

한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투쟁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연구라고 하기보다는 주로 원폭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실태 조사나 현지 보고에 가까웠다. 드라마 작가 박수복(1975, 1986)의 르포르타주, 한국원폭피해자 조직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1985)와 그 회원이던 김재근(1968)이 조사한 현황 보고서 그리고 그 시기 이들과 연대해 투쟁을 벌인 유일한 한국의 시민단체였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75, 1984, 1989)의 한국원폭피해자 실태 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한국보다는 일본의 시민사회였다. 1969년 <나가사키증언회>(長崎の證言の會)에서 창간한 『證言』은 일본정부는 물론 일본피폭자들 또한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했던 재외피폭자,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 강제동원의 역사 등에 관심을 가지며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했다. 또한 1970년대는 한국원폭피해자 손진두가 일본에 밀입국 한 뒤 일본 시민단체들의 지원 속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른바 '수첩 재판'을 진행하던 때로, 손진두 사건은 당시까지 일본사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이칸히바쿠샤(在韓被爆者)'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손진두 소송이 한창이던 1970년대 중반 일본 아사히신문사에서 발간한 『被爆韓國』

人』(1975)은 일본에서 발간된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단행본 증언집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그 외에 <히로시마·나가사키증언회>(廣島·長崎の證言の會)와 <재한피폭자의료조사단>(在韓被爆者医療調査団)이 공동으로 발간한 『イルボンサラムへ: 40年目の韓國被爆者』(1986), 일본의 <재한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시민회>로 약칭)나 <재한피폭자도일치료 히로시마위원회>(이하 <도일치료위원회>로 약칭)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도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실태와 증언 등이 실려 왔다.

1978년 손진두 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에 도일해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아 히바쿠사가 되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근간이 되는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이 일본의 영역에 거주 관계를 가질 때만 유효하다는 후생성 행정 규칙인 '402호 통달'을 내놓아 사실상 도일하지 않는 이상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판결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따라 약간 명의 원폭피해자를 일본으로 초청해 치료해주는, 이른바 '도일치료' 제도로 무마해나갔다.

그러나 1980년 10월 말 시범 케이스 10명으로 시작해 7년간 모두 396명에 대해 이루어진 도일치료 제도는 도항에 필요한 여비 부담 문제로 삐걱대다가 1986년 전격 중단된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는 했지만 마땅히 이뤄져야 할 한국원폭피해자 원호에의 '하나의 가교'(一本のかけ橋)(中島龍美, 1988:5)가 끊겨버림으로써 한국원폭피해자 구호 문제는 다시 표류하게 된다. 그런데 도일치료 중단은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에서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일본변호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속에서 '23억불 보상 청구운동'을 기획하고, 민주화 이후의 대선정국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노태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대정부 압력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당시 그와 같은 운동의 결과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요구와는 크게 엇나간 일본 정부의 '한국원폭피해자 의료지원기금 40억 엔' 지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 지원이 실시된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원폭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때를 같이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김정경(1993), 백옥숙(2004), 손종민(2006)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23억불 보상청구운동이 비록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이는 냉전이 해체된 국제 질서와 맞물려 민주화 이후의 한국에서 일본의 전후 미처리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1990년대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전후 보상 요구에 직면해야 했다 (다카기 겐이치, 1995; 우츠미 아이코, 2010). 민주화 이후 사할린 교포, 중군위안부, 전시노무자 그리고 일본군의 군인 및 군속 등으로 강제연행된 사람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쟁 피해 배상 요구 재판을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원폭피해자들도 소송에 나섰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전쟁피해 보상 소송 재판의 진행과 현황

등을 보고하고 그 법적 의미를 묻는 형태를 띠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백충현(1987), 이상화(1995), 최이수(2003), 안자코유카(2001)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2001년 6월 1심과 2002년 12월 2심에서 한국원폭피해자 곽귀훈씨가 일본에서 제소한 이른바 '제2의 수첩재판'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이후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의 영역과 거주관계를 갖지 않고도 일본 원폭원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을 제기했던 곽귀훈씨가 명함에 항상 새기고 다녔다는 "히바쿠샤는 어디에 있어도 히바쿠샤"라는 표제처럼,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히바쿠샤'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곽귀훈 재판 승소 이후 한국원폭피해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일본에서 피폭자건강수첩, 소위 '수첩'만 있으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약간의 건강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2년 8월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2600여명의 회원 중 수첩을 교부 받지 못한 200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으로부터 건강 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곽귀훈 소송으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가 한·일 간에 다시 큰 이슈가 되었을 때 일본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온 <시민회> 회장인 이치바 준코의 『한국의 히로시마』(2003)가 번역되어 나왔고, <시민회>의 지원을 받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을 채록한 뒤 이들 증언의 사회적 맥락을 분석한 연구인 진주(2004), 그리고 그 증언의 전문과 그 사회적 의의가 설명된 『고통의 역사』(정근식 편·진주 채록, 2005)도 출간됐다. 이중 『한국의 히로시마』는 7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직접 건너와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들을 지원해온 저자의 개인적 이력에서도 드러나지만, 한국원폭피해자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연구로는 가장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다. 그러나 이 작업이 '일본인'으로서 국가가 방기한 전쟁책임에 대해 '숙죄'하는 심정으로 행해온 만큼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해온 저자 자신을 포함한 일본 시민단체들의 역할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오늘날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히바쿠샤로서 원폭피폭자원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있어 이들의 존재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운동의 역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포함한 일본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역할은 분명히 조명될 필요가 있다. 진주(2004)의 한국원폭피해자의 증언 연구는 당시까지 한국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중요한 해석 지점들을 보여준다. 다만 채록된 증언이 대체로 일제시기와 피폭 당시의 피해나 고통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해석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경험적 사실보다는 담론 분석을 위한 텍스트로만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식민시기 이주와 해방, 고국으로의 귀환, 미군정기, 한국 전쟁 등과 같은 역사적 차원이거나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과 구호의 방식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뒷받침 되지 않는 증언 연구는 자칫 이들의 피해를 물화된 채로 이해하

는데 기여하거나 피해자 담론 분석에 또 다른 하나의 사례를 추가하는 데 그칠 위험이 있다.

한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른 승소 판결을 받은 200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는 2005년 1월과 8월 한일회담문서공개와 총리실 산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일제피해자'로서 원폭피해자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원폭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부작위(不作爲)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한 번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원폭피해자와 관련된 한일양국의 외교 교섭, 과거사 청산으로서 한국원폭피해자 소송의 의의 등에 관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지영(2012), 김승은(2012a, 2012b)의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분야는 현재 거의 유일하게 원폭피해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2002년 참여정부에 들어 각종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가운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강제 동원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도 이뤄졌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2009, 2011)와 허광무(2004, 2011)의 연구가 그 결과물이다. 이들 연구들은 앞의 증언 연구와 달리 문서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지위나 이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험을 물화된 피해 그 자체로만 다루는 점에서 앞의 증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적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원폭피해자만을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기억의 정치'(Yoneyama, 1999)라는 차원에서 일본의 유일피폭국 언설과 평화 담론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에 대한 시공간적 재현 그리고 그 속에서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위치를 조명한 연구들도 있다 (Naono, 2003, 2005, 2010; 권혁태, 2009; 박경섭, 2009). 이들 연구들에서 한국원폭피해자는 유일피폭국과 평화 담론 속에 가려졌지만, 그것의 모순을 드러내는 역사적 존재로서 부각된다. 일본의 주류적 평화 담론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다음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모순'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오늘날 일본과 맺고 있는 독특한 관계 및 지위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흐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간 한국 학계에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는 크게 조명되지는 않았으나 이들에 대한 구호가 가시화된 1990년대 이후에는 조금씩 연구가 증가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좀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전체적으로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복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가 '과거사 청산'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사 청산과 전후 보상이라는 이슈는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이 같은 쟁점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일본 사회, 특히 일

본 정부 입장에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피폭에 초점이 맞춰진 히바쿠샤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한일 간에 한국원폭피해자 문제가 위치 지워지는 맥락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간극은 본 절의 처음에 묘사한 원폭희생자 의례에 대한 두 사회 혹은 국가가 보여주는 풍경만큼이나 대조적이고 아이러니해 보인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극은 그 자체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하나의 사회과학적 분석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동시에 이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한국의 연구들이 결여하고 있는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하나의 예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냈던 소송의 결과는 한국원폭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이민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일본 바깥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의 원폭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사실로서 이들 소송의 대부분이 법리상에서는 일본의 영역 밖에 있는 이들에게 히바쿠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혜택을 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온 행정 조치의 위법성을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나가사키에서 오랫동안 한국원폭피해자 소송을 담당해온 다츠다 고이치로(龍田紘一郎) 변호사는, “한국 히바쿠샤에 대해 일본 히바쿠샤랑 동일한 법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론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다. [법 적용에 있어] 내외(内外)차별은 안 된다는 논리도 먹히고, 법해석상 행정 측[후생노동성]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만들어낸 통달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 동원과 같이 전쟁 책임을 묻는다거나 혹은 지금 히바쿠샤가 아닌 사람들을 히바쿠샤로 인정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이것들이 법적으로는 더 어려운 문제다”¹⁵⁾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일본에서 후생성이나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인원폭피해자 소송이—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정치적으로 식민지 배와 전쟁 책임을 묻는 것의 의미를 가질지라도, 일본의 법과 행정상의 논리에서는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내외차별 시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일본에서 히바쿠샤 문제가 갖는 특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체로 그간의 법/외교 차원의 연구에서 이 부분은 일본의 원폭3법의 존재 자체만 언급하는 데에서 그칠 뿐 그 법이 일본의 전후(戰後) 보상 문제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위치는 크게 조명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주로 피식민자 혹은 일제의 피해자라는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일본 정부의 유일피폭국 언설과 평화 담론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러한 담론 차원의 연구들은 위의 법/외교 차원의 과거사 청산과는 달리 일본 사회에서 이 유일피폭이나 히바쿠샤라는 언설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연구들은 여전히 식민과 피식민의 구도를 통해 그 언설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이 언설들이 일본에서 한국원폭피해자

15) 2012년 11월 15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인원폭피해자 소송자료 기증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 및 연구자와의 인터뷰

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정부가 표방하는 유일피폭국이나 혹은 평화의 초석으로서의 히바쿠사라는 언설이 갖는 효과에 대한 이런 지적들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들 연구들은 그와 같은 표상이 일본의 중앙 정부보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市)·현(縣) 등과 같은 지방정부나 일본피폭자 운동 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채택되는 경향이 있고, 중앙 정부가 그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도 지방 정부나 피폭자운동단체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¹⁶⁾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가령 일본 중앙정부가 채택하는 유일피폭국의 표상이 전후 국가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매우 까다롭고 미묘한 상황에서 채택된 국내 정치용이라는 점은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잘 드러난다. 1978년 손진두 소송으로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이 ‘국가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받은 일본의 중앙 정부는 그때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온 ‘민간인의 전쟁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당혹감 속에서 그 논리를 찾기 위한 정당화 논리로서 유일피폭국과 원폭의 특수한 피해라는 측면을 강조해 나간다. 그러나 일본 중앙 정부는 이렇게 유일피폭국이라는 표어를 채택하면서도 그 언설에 부합되는 법적 조치들은 언제나 ‘다른 일반 전쟁의 피해자들과의 균형’을 고려하는 속에서 최소한에 머물렀다. 즉 유일피폭국의 언설은 일본의 중앙 정부보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반핵 단체들 사이에서 더 열렬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측면이 강하다.¹⁷⁾

또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그간 일본의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이뤄내는데 있어 ‘유일피폭국’의 언설의 효과는 단순히 배제와 망각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의 다른 ‘일제 피해자’들과 달리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과 특수하게 엮이게 된 것은 ‘유일피폭국’의 언설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한국원폭피해자들에

16) 이에 대해서는 根本(2006)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17) 일본 정부가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구호를 하는 데 있어 국내 정치적으로 이를 정당화할 명목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본의 다른 시민들의 입장에서조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자가 현지조사에서 겪은 일이 하나 있다. 2007년 겨울 연구자는 조사를 위해 나가사키의 한 숙소에서 머물렀었는데, 당시 그곳 주인이었던 친절한 한 중년의 남성은 “왜 ‘히바쿠샤’들만 특별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전쟁 때는 모두들 고생을 했고 ‘히바쿠샤’들보다 더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도 아무런 정부 지원 없이 살아 가고 있다”라며 연구자가 ‘특별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했었다. 일본이 벌인 전쟁은 ‘동양 문화를 지켜내려는 성전(聖戰)’이었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지닌 그에게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피해는 미국과 연합국에 의한 다른 공습 피해와 특별히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물론 그의 이런 불만은 연구자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원자폭탄의 도시로만 기억하는 것도 불만이었다. 물론 외국인들만이 아니라 그의 국가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특별 취급했다. 그의 국가에서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보다 전쟁을 일으킨 침략 주체였던 국가가 피해자로 재설정되는데 가장 극적인 상징으로도 기능했다. 어쨌든 그의 국가는 표면적으로라도 오랫동안 이 두 개의 폭탄은 특별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잠시나마 피해국이 된 안도감을 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비핵’(非核)원칙에 대한 입장은 언제나 애매하게 유지됐다.

게 갖는 정치사회적인 의미는 매우 양가적이고 복잡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과거사 청산이라는 입장에서만 다루다 보면 이 원폭의 피해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래서 한국원폭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원폭피해자들에게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는 물론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차이이므로 앞선 연구들 자체의 한계는 아니지만,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과거로서만이 아니라 현재로서도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 앞 절에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 문제는 '이미 지나간, 너무 오래된' 것이라 이야기되지만,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경험한 뒤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온 원폭피해자들의 존재가 의미하는 역사적/정치적/사회문화적 의미는 일본의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 그리고 원폭원호법(이하 원폭3법으로 약칭)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관료제적 실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바탕해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場, field)으로 편입되는 역사적 과정, 그리고 오늘날 그러한 조건 속에서 개별 원폭피해자들이 그 구호의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실질적인 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통시적으로는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과학적 맥락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한국원폭피해자가 어떻게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상정하는 히바쿠샤의 범주 속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고,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논의들로부터 몇 개의 연구 질문을 도출하고자 한다.

① 정책과 관료제

정책 혹은 정책을 통해 보는 정부 혹은 국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책학이나 행정학, 혹은 넓게는 정치학에서 주로 이뤄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서 정책(policy)은 흔히 공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정방침으로 정의된다(정정길, 1997:51). 물론 개념적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정의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정책이 공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나 가치라는 당위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 혹은 행동의 결합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⁸⁾ 여기서 합리적인 수단이나 행동에는 그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행정 계획의 수립, 실행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인류학에서 이 정책의 의미는 좀 더 확장된다. Shore & Wright(1997)는 정책이 단순히 국가 혹은 정부의 통치 수단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혹은 사회가 “그러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규범, 이데올로기, 행동과 사유의 습관과 방식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거대한 지식의 체계 및 행동의 규정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근대 국가에서 정책은 시민들에게 취해질 행동의 과정을 틀 지우는 동시에, 그 과정을 좀 더 광범위하고 많은 수준의 목표와 원칙들의 틀 안에서 제공하며, 동시에 이렇게 취해진 결정에 권위를 부여하도록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책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국가의 통치의 수단으로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며, 왜 때때로 이러한 것들이 의도한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는지, 정책의 정치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동원되는 메타포와 언어적 기제들은 무엇인지,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주체성과 정체성이 창출되는지, 담론상의 주요한 변화들이 어떻게 권위를 얻게 되는지,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고 어떠한 문제는 침묵되는지, 문제와 그 해결방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끌어내는 규범적 주장들이 어떻게 차용되는지와 같은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책의 문제를 인류학의 영역으로 들여다 놓았다.

정책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국가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는 정치인류학적 전통의 한 흐름에서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류학에서 국가는 정치경제학에서 상정되는 선형적인 개념이나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Sharma & Gupta(2006)는 정치인류학의 고전적인 작업에서부터 국가는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를 자본주의적 계급이해를 실현하는 기구로서 사회로부터 구분되는 명확한 경계를 갖는 자율적인 행위자로 묘사해 온 것과는 구분된다고 말한다. 인류학자들은 주어진 어떤 고정되고 단일한 것으로서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적, 물질적 측면을 탐구하며 이러한 국가가 다른 제도적 형태와 어떻게 분화되거나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이 같은 국가가 사회 전반의 권력의 작동과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하나의 단일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회 제도로서의 국가라는 외형은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기 보다는 일상의 사회적 실천들을 통해 구성되어 체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시민사회로부터 국가를 구분하는 경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권력과 사회 통제 속에서 하나의 실천이 되는 것이다 (Sharma and Gupta, 2006:9).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가 개념을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Ferguson & Gupta(2002)는 어떻게 국가가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제도들을 관리하는 최고의 권력 혹은 권위로서 수직적으로 스스로를 위계화 하는지, 그리고 다른 제도들에 의한 사회적 혹은 개별적 행위들을 통치하는 상위의 조정자로 기능하는지(Hansen and

18) Harold D. Lasswell & Abraham Kaplan, 1970, *Power and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p.70.
 Aron Wildavsky and Jeffrey L. Pressman, 1979, *Implem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xx-xxi.
 정정길, 1997,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p.51-52 재인용

Stepputat, 2005)를 보여주는 것이 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여권의 발급 이라거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보조금 혹은 보조품 지급, 세금 징수 등과 같이 국가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통해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이나 국가 규율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규율이나 규칙, 절차 등에 대한 일상적인 트랙은 생각지 못했던 차원에서 권력의 작동 등을 보여줄 수 있다(Sharma and Gupta, 2006:9).

이는 정책을 통해 국가를 연구하는 인류학적 연구가 지나치게 지식과 담론 수준에 머무르던 초기 연구들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다. 국가를 하나의 공공적 텍스트로 보고, 특정한 국가의 제도들 혹은 정책들의 일상적 실천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 이러한 입장은 최근 정치인류학에서 왜 관료제/관료주의(bureaucracy) 연구가 주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Hull, 2008, 2012a, 2012b; Feldman, 2008; Lavie, 2012; Heyman, 2012; Deeb & Marcus, 2011; Gupta, 2012; 제임스 스콧, 2012[1998]; Das, 2006).

근대국가의 지배 혹은 통치 체제의 하나로서 관료제는 베버의 이념형적 설명에서는 “어떠한 카리스마나 전통 및 세습적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다만 합목적적이고 **비인격적인 이해관계**의 계산에 의해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리적 근거’에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타당성의 근거를 갖는다”고 묘사된다(Weber, 1991[1956]). 그러나 베버는 현실에서 관료제의 일상화된 작동은 사회경제적 질서와 사회적 위계 그리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 등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베버의 ‘관료제화’에 대한 통찰은 국가라는 것의 경계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Sharma and Gupta, 2006:46). 또한 베버는 ‘관료제화’(bureaucratization) 혹은 ‘관료제적 합리화’(bureaucratic rationalization)가 일종의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구현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이것은 단지 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포진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관료제적 조직과 절차가 확장되는 것은 시민들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사회적 변화를 막는 지배와 규칙을 정당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근대적인 방식이 된다고도 보았다.

관료제의 실행 방식에 대한 최근의 민족지적 연구들(Hull, 2008, 2012a; Gordillo, 2006; Göpfert, 2013; Lavie, 2012; McKay, 2012; Kravel-Tovi, 2012; Gupta, 2012; Riles, 2009[2008]) 이 문서(documents)¹⁹⁾에 주목하는 것 또한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통찰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근대의 공적 업무는 인격 대 인격이 아니라 필기된 문서에 기반을 둔다. 베버는 이러한 문서의 필기를 담당하는 사무직 집단이 문서 작성이라는 물질적인 실행과 그 서류들을 담당하는 기구를 통해 공적인 사무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관료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Weber, 1978:957; Hull, 2012 p.11 재인용). 이것은 18세기 이전부터 문서 작성이라는 것이 공적 기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bureaucracy”라는 용어가 자체가 “writing desk에 의한

19) ‘documents’는 상황에 따라 문서, 서류, 기록 등으로 모두 번역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documents’는 ‘문서’로, ‘files’는 서류로, ‘record’는 기록으로 번역하고, 사용했다.

통치”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예견되는 것이기도 하다(Hull, 2012:11).²⁰⁾ 하지만 여기에서 이들 관료제와 문서적 매개, 혹은 실천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말하는 국가의 관료제적 행정은 단순히 공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주어진 대상이 아니라 그 또한 한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적 차원의 구성적 실체이면서 물질적 기반을 갖는 기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Heyman, 2012:1270).

근대 국가의 권력 실행 작용을 문서 작성 혹은 기록하기를 통한 관료제적 통치의 핵심으로 보는 이러한 최근의 인류학적 작업들은, 이제 문서에 담겨 있는 정보를 통해서 사회와 국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그 자체가 어떻게 생산되고 사람들의 실천을 만들어내는지를 들여다본다. 어떠한 절차나 기술, 미학적 관점, 이데올로기, 협력, 협상, 경쟁(경합) 등을 통해 관료제적 텍스트들이 생산되고 사용되며 또 경험되는지, 그리고 역으로 그러한 문서와 기록들이 어떻게 사람과 장소, 그리고 사물들이 관료제적 실체를 만들어내는데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Hull, 2012:5).²¹⁾ Hull(2012)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도시계획이 단순히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중앙계획이 아니라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의 문서적 실천을 통해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그는 이 연구에서 국가기관 혹은 관료주의 내에서 이 문서들이 어떻게 기입되고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사회적 행위자나 컨텍스트들이 국가의 관료제적 행정에 침투하는지를 해독하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 흐름에서 보듯이 정책과 관료제적 실천에 대한 이러한 인류학적 작업은 인류학이 전통적으로 주목해왔던 ‘국가 없는 사회’ 또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를 다시 인류학의 한 중심 주제로 끌어들이어 활발한 작업을 벌이는 연구 경향(박지환, 2007)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특정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어 제도화되고 관료제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해, 이것을 정책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국가 권력이 "인류학적으로 진단될 수 있는 다양한 지점과 텍스트"(Trouillot, 2003)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② 범주와 경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가 권력의 작동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한 영역으로서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연구는 히바쿠샤라는 특정한 범주의 탄생과 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뒤르켐과 모스, 베버 이래 분류체계와 범주, 경계, 중심과

20)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www.etymonline.com/>)

21) 국가의 권력 실행의 구성적 관점, 그리고 관료제에서 문서의 생산과 실천 방식에 대한 통찰은 현대 과학의 성격을 물질/자연을 재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서의 ‘번역’ 혹은 ‘기록’이라는 실천으로 보는 관점의 연구들과도 연결된다.

주변 등의 개념은 사회문화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틀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문화적 상징체계의 핵심을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의례에 관한 논의들은 사람들이 특정한 지위나 연령, 혹은 장소나 상태 등과 같은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경계를 넘어설 때의 행위나 상징들에 대해 해석해 왔고(대표적으로 Van Gennep, 1960), 오늘날 자아(the self)와 정체성(identity)에 대한 많은 인류학적 연구들은 계급과 인종, 종족, 공동체, 하위공동체, 성과 젠더, 국적, 연령, 세대 등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계가 옷이나 음식, 언어, 장소, 취향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실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류학에서 경계에 대해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포괄적이고 명시적인 분석을 한 것으로는 메리 더글러스의 작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matter out of place)(1966:53), 즉 오염물(dirt)이 곧 위험한 것이 된다는 그녀의 유명한 논의에서 경계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 가족, 자연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의 신체의 땀구멍과 세포에까지 적용된다. 또한 그녀는 신성과 속됨과 같은 종교적인 관념이나 더러움 등과 같이 위생학적으로 설명되곤 하던 순수와 오염에 대한 판단을 "외부로는 침입자, 그리고 내부로는 위계와 범주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사회 구조 및 체제를 안정시킬 필요"와 연관시켜 설명함으로써, 이 같은 현상이 원시 사회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과학이나 국가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Douglas, 1966;1982;1992). 물론 메리 더글러스의 경계에 대한 개념이 그 구조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지나치게 경계를 본질적이고 고유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녀가 오염과 신체적 통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범주(혹은 위계)가 엄격한 사회에서 더욱 강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나 '애매함'(ambiguity)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작업에 권력(power)이 결합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은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경계를 고정불변의 고유한 어떤 속성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음을 시사한다. 즉 그녀가 말한 경계의 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 통제에 (국가, 지식, 과학, 종교 등을 포함해) 권력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연구자는 메리 더글러스의 이러한 상징적/구조주의적 차원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권력과 사회적 안정 논의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경계에 대한 사회과학 일반의 논의들이 경계 지워진 것들 사이의 구별과 차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경계 그 자체의 구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Lamont and Molnár(2002)의 경계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의 흐름에서 보여주듯이, 오늘날 경계에 대한 논의는 이것을 하나의 범주의 외연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그 경계의 속성 자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다. 경계는 이중적이거나 잡종적일 수 있고, 외부와 내부 간의 침투성 혹은 투과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으며, 그것의 가시성과 비가시성 또한 여러 조건과 맥락들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계 만들기 혹은 경계 짓기(boundary-work)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는 과학사회학자인 Gieryn이 1983년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애초에 그는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 구

성에 대한 수사적 차원의 논쟁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쓰였다 (Gieryn, 1983).²²⁾ 인류학에서도 이 개념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의미하게 실천하는 분류 체계내의 각 범주들의 관계를 조명하거나(대표적으로 Nippert-Eng, 1996a, 1996b) 혹은 다른 이들과의 구별 짓기를 통해 특정한 종류의 권리를 갖는 범주나 가치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분석하는 데(가장 최근의 작업으로는 Ganti, 2012)에까지 다양하게 변용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경계의 개념을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가 현해탄이라는 물리적인 영토적 경계를 두고 히바쿠사라는 법적·행정관료제적 정의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히바쿠사라는 것의 사회문화적 상징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인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경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국가 혹은 정치체의 영토적 한계로서 국경/접경에 대한 연구는 앞선 연구들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연구 영역을 구축해왔다(대표적으로 Alvarez, 1995; Torpey, 2000). 특히 국경지대 혹은 접경지대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국경을 하나의 주어진 사회적 변화의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관계 속에 구성 요소로서 편입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해왔다. 이에 대해 Fassin(2011)은 이것이 고전인류학에서 국경이나 접경이 특정하게 분절된 실체를 영토적 국경과 사회적 경계에 따라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그 경계 자체를 물화하거나 강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비판적 흐름이 이후의 국경/접경 연구들에서 국경과 경계를 고유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집단들 사이에서 협상되고 구성되는 것으로 다루는 흐름과 연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Fassin(2011)은 이렇게 국경/접경을 구성적이고 특수성이 강한 것으로만 다루는 것은 오늘날 특정 국경/접경의 출입국 통제와 감독이 왜 특정 소수 민족에게 혹은 인종, 젠더, 계급에게 좀 더 차별적으로 작동되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논의에서 국경 혹은 접경 연구는 기존의 경계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를 결합함으로써 국경의 인종화 혹은 젠더화, 종족화, 계급화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그의 논의에 동의하면서, 이 논의는 기존의 사람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 물질이나 비-물질로서 정보나 금융, 상품 등도 모두 포함되었을 때 그 논의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때는 ‘세계화’와 ‘다문화주의’ 등의 수사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고—정보, 금융, 자본, 상품과 물질을 포함한—무엇에게나’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던 국경과 경계는 사실 누구에게도 그리고 무엇에게도 동일한 제약과 통제로 경험되지 않는다.

요컨대 인류학에서 경계와 국경에 대한 논의들은 이를 고전적인 형태의 본질주의 혹은

22) 그는 이 ‘경계 만들기’를 통해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 ‘과학’으로 표방되는 특정한 의견이나 수사가 ‘비-과학’과의 대립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이나 전문성, 특권, 혹은 정책에서의 영향력을 ‘독점’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도작성법(cartography)이라는 은유를 도입하고, 그 속에서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경계(boundary), 그리고 동질적이고 일반화된 것들로 채워진 어떤 공간을 울타리 치는 접경 혹은 국경(border)이라는 수사를 채택한 것이다.

고유한 속성의 차이에 따른 표지는 아니지만 또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과학적 배경과 조건, 권력 작용 속에서 독특하게 구성되어 구조화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히바쿠사라는 범주의 경계가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져왔으며, 어떻게 이러한 구성적 성격의 경계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본질화되는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사라는 범주를 규정짓는 과학적, 법적, 행정관료제적 정의(definition)와 그 속성의 역사적 특수성의 기원을 검토하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와 제약으로 경험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이 히바쿠사의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상징적 경계뿐만 아니라 이 개념이 본래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했다. 즉 본 연구에서 경계는 물리적 장벽, 영토적 경계 또한 의미하고 있다. 상징적 경계와 물질적 경계 혹은 국경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엮이고 또 서로를 제약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③ 정책의 ‘장’(場)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정한 형태의 정책적 범주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 각각의 요소들이 여러 사회적 제도와 조직, 문화, 국가 등이 여전히 발휘하는 특수한 내적 제약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부르디외의 대표적 개념 중의 하나인 ‘장’(場, field, champ[불어])(부르디외, 2002)에 대한 생각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용하고자 한다.²³⁾

부르디외는 『과학의 사회적 사용』(2002)에서 ‘장’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과학이나 예술 등 그 어떤 인간 행위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며 또 전파하는 행위자와 제도가 전제되는데, 이 세계는 다른 사회적 세계처럼 하나의 사회적 세계로 어느 정도 특수하고 고유한 나름의 규범들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공간”으로서의 소세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부르디외, 2002:23). 또한 부르디외는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장’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정확하게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연결망 이론에 대한 비판임을 전제하면서도, 자신이 ‘장’의 개념을 내세우는 것은 과학과 사회의 물질성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학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권력적 구조

23) 부르디외의 장의 개념은 아비투스 등과 함께 그의 대표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지만, 여기서는 『과학의 사회적 사용』(2002, 조홍섭 역, 창작과비평사)이라는 책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염두에 두고 과학과 사회, 과학과 정치에 대한 생각을 그 자신의 장 이론을 적용시켜 이야기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한편 ‘장’(champ)의 영어 표현 역시 ‘field’지만 일단 여기서는 ‘장’이라고 번역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장' 안에서의 행위자들의 권력 불평등성을 낳는 체계적인 내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구조는 고정된 것은 아니며, 사회문화적 생산물로서의 특정 장은 행위자의 실천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되어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장'의 개념은 행위자연결망 분석들이 분명 이전의 사회과학 분석에서 간과되어온 과학/지식과 사회의 이중적 구축(상호형성)이 갖는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논의들에서 '물질' 혹은 '비인간행위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서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과도하게 의존적인 형태로 파악하거나 혹은 큰 제약 없이 상호 개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물질'이나 '비인간행위자'의 '행위성'은 존재론적인 차원의 행위가 아닌 수사적/은유적 차원의 행위성이며, 라투르의 이론에서 인간-비인간 행위자가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부르디외, 2002:26-30), 이들 비인간 행위자 혹은 안정화된 것으로서 과학적 지식의 행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인간-비인간행위자에 가해지는 각각의 제도 혹은 조직, 사회, 문화, 국가의 내적 제약과 특수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가져올 위험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르디외는 그와 같은 행위자연결망식 설명과 달리 특정 장의 내적 제약을 설명하면서, 이들 각각의 장이 그 자체 내의 고유한 규범을 가지면서도 외부의 개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모든 장이 세력의 장이며 이 세력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의 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상정했다. 과학의 공간, 예술의 공간, 혹은 정치의 공간을 세력관계와 지배관계를 포함하는 물리적인 세계로 묘사했을 때, 행위자들은 각자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며 그 공간은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의해 존재한다. 이때 어떤 행위자는 그 행위에 따라 이 공간을 크게 변형시킬 수도 있고, 그 장에서 유지되던 규칙이나 규범 자체를 재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행위자들은 단순히 동등한 지위를 갖는 이들이 아니며, 장의 객관적 관계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들의 입장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방향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구조화되고 위치 지워진 행위자다. 따라서 행위자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의 구조를 만들어낸 객관적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해해야만 한다 (부르디외, 2002:26-27). 그러면서 부르디외는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장의 한 특성으로 외부적 제약이나 요구를 다른 특별한 형태로 재해석하는 '굴절' 능력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장이 자율적일수록 굴절능력은 강하다. 외부적 제약은 대부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변형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장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는 장의 굴절 및 재해석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 2002:24-25).

실험실 혹은 학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과학적 지식들이 정책이라든가 어떤 조직, 기구, 혹은 지역의 개발 프로그램을 형성하거나 혹은 그 안으로 편입될 때 이러한 지식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천 속에서 다양하게 변형되고 굴절된다. 즉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 사실들이 만들어지고 혹은 여행하는 현지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과학과 사회, 과학과 정치의 결합 혹은 이들의 상호구축에 있어 상호형성이라는 대전제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지만, 상호형성을 제약하거나 혹은 그 상호형성에 다채로운 무늬를 만드는 각각의 논리와 아울러 이해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과학과 사회, 그리고 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 정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출발선에서 본 연구는 과학과 사회 혹은 과학과 정치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한 국가의 정책적 대상으로 제도화된,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는 범주의 탄생 혹은 그 범주의 경계 구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근대 국가 권력의 한 실행 형태로서 특정한 범주를 구성해내는 것은 이 범주의 경계를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는 과학 지식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책의 장에서 과학과 정치, 과학과 사회의 상호 작용은 이들이 어떠한 역사적·사회문화적·정치적 맥락과 요인들에 의해 제약되거나 혹은 강화되는지, 혹은 각각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논리들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때로 어긋나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았을 때 좀 더 정교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질문

앞 절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검토와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제도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피폭자 즉 히바쿠샤라는 범주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핀다.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히바쿠샤 구호의 문제가 각종 생의학적 지식들로 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하는 히바쿠샤 인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기록과 기억 등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이것이 오늘날 일본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아 히바쿠샤가 되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제약을 갖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히바쿠샤로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가는 역사적 과정을 살핀다. 이를 위해 먼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경험한 뒤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원폭피해자'로 결집하게 되는 정치사회적 배경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자신들의 구호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히바쿠샤라는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 과정을 조명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국원

폭피해자들과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어떤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의해 촉진되고 또 제약됐는지를 검토하고, 이것이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흐름 속에서는 어떻게 위치 지워져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조명하고, 이러한 참여와 연대가 가능하게 된 인류학적/정치사회적 요인과 맥락을 밝히고 이해하고자 한다.

셋째, 오늘날 개별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 히바쿠샤로서 편입되는 과정이 어떻게 실천되고 경험되는지를 살펴본다. 한국원폭피해자에게 일본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받는 일은 한 때 운동과 상징, 혹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오늘날 이것은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수첩을 교부 받는 관료제적 절차를 통과하는 것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 같은 수첩 교부 과정은 단순한 행정관료제적 절차가 아니라 이들이 히바쿠샤로서 자신들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기억을 심사될 문서로서 재구성하는 과정이면서, 또한 과거 식민지들과의 재회이기도 하다. 한국의 개별 원폭피해자들이 히바쿠샤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실행되거나 혹은 좌절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실패와 좌절, 혹은 성공이 피폭자에 대한 국가적 통치라는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 연구를 통해 인류학적 연구에서 '구성되는 것이면서도 구조화되는 것'으로서의 '경계'(boundary)가 분석적으로 유효한 개념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근대 국가가 특정한 사회문화적 삶의 범주와 경계를 만들어내는데 있어 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주목한다. 오늘날 정책은 한 국가의 영토적 범위를 넘어선 제 세력 간의 담론적 투쟁의 장이면서도 문서라는 물질적 매개를 통해 기반을 구축되는 근대 국가의 중요한 권력 행사 기제로서, 그 형성과 실행에는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나간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 정책의 형성과 실행 과정에서 만들어져가는 피폭자 범주의 경계의 역사적 형성의 궤적을 밝아 나감으로써, 이 경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간 한국 사회과학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서 별 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문서를 매개로 한 관료제적 실천과 통치의 물질성이 어떻게 이 경계 형성과 실행 과정에 관여하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현지조사와 생애사에 바탕한 구술 채록 그리고 문서 및 문헌 조사를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담론 분석의 텍스트로서만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로서 인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교차 검토

(cross-checking)가 필수적이었으므로 구술 자료와 문서 자료 간에 간극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원폭피해자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기도 했다.

한편, 다른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 또한 연구자의 지위와 성별, 핵 문제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관심사가 조사의 과정과 연구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국적과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조사가 이뤄진 시기에 따라 연구자가 엮어낼 수 있는 혹은 연구자에게 엮이는 조사 결과와 연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의 연구 방법을 서술하는데 있어 본 연구자가 현지조사와 인터뷰, 문헌 및 문서조사를 해나간 계기와 배경, 입장 등을 함께 기록하고자 한다.

1) 현지조사

인류학자의 현지조사는 전통적으로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거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여러 주제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에게 현지는 하나의 구체적인 지역이나 조직에만 한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원폭피해자와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을 다루려는 본 연구자의 현지조사 또한 조사를 수행한 거점은 있었으나 이 거점들은 시공간적으로 경계 지워진 어떤 곳이라는 의미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기관,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의 상호 작용 및 관계들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한국원폭피해자 관련 일들이 일본 정부 및 일본 시민단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연구자의 현지조사는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혹은 전자메일이나 인터넷 웹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는 무엇보다 연구자가 국경과 세대를 넘어선 서로 다른 지역과 조직, 생활세계를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주제에 공통적으로 엮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이 현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엮어져 나가게 되었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핵문제와 방사능 위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기 이전에는 적어도 온건한 반핵·반원전 주의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연구자가 원자폭탄이나 핵무기 등에 대한 반대와 같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원자폭탄피해자, 정확히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05년 가을이었다. 연구자는 당시 한국원자력발전 정책의 장에서 환경과 신체에 대한 과학 연구가 정책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피폭'이라는 것은 그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적절한 소재라 여기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연구자는 한국에서 피폭과 방사능 위험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지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각종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우연히 당시 원폭피해자 2세로서 운동을 벌이던 김형률 씨와 한국원폭피해자 2세들에 대한 건강조사보고서 등을 접하게 되었다. 보고서에는 이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유병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사망률 또한 현저하게 높아서 이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다. 인권위원회에서 발간되었던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자는 처음으로 한국에 현재에도 2000 명이 넘는 원폭피해자가 있으며 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게 되면서 무척 놀라고 흥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후에 연구자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만난 일본시민단체의 한 회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자, 자기로서는 어떻게 한국 사람들, 그것도 핵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한국의 사회적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많은 한국인들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가 식민통치의 종결과 해방과 연결되는 상징이었던 것처럼, 연구자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어쩌든 연구자는 원자폭탄 개발이나 원전 반대운동을 기치로 내세운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일인지 원자폭탄피해자라고 하는 존재는 멀게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대개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의 죽음, 돌연변이 혹은 백혈병과 관련된 단어들과 연결되는 존재이거나 반핵운동 단체에서 전시한 사진 속에 비치는 고통스럽고 비참하기까지 한 피해가 신체에 그대로 드러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적어도 연구자에게 원폭피해자는 그런 사진들 속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2007년 1월과 8월 약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원폭피해자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는 두 번의 예비조사가 될 일본 방문을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원폭피해자 관련 단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기념평화자료관, 방사성영향연구소 등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담당자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방문을 타진해 답신을 주고받아 가며 이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피폭체험을 영상으로 담는 작업을 하고 있던 시민운동단체인 한국청년연합(KEYS) 대구 지부 소속 간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지부 간부,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모임의 대표자 등의 소개받았다.

2007년 초 일본을 방문해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이들이 벌이는 법적 투쟁에 관여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당시 원폭피해자들과의 첫 대면은 연구자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것이었다. 연구자는 당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을 도와주는 일본 시민단체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처음에 연구자를 환대하며 안내해준 상당히 건강해 보이는 노년의 신사가 자신도 '히바쿠샤'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에 만난 다른 피폭자들의 상당수 또한 연구자가 보기에는 그 연배의 다른 이들과는 크게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였다. 더욱이 원폭피해자 2세들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인권위의 해석과 발표는 사실

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심하게 비난하며 열변을 토하던 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모습은 무척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일본에서 시작된 첫 번째 현지조사는 이런 당혹스러움 속에서 진행됐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시작된 현지조사의 진행과정은 연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 조직들과 연계되면서 점점 더 그러한 감정들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심경과 상관없이 현지조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 처음 연구자가 일본의 여러 단체나 조직, 기관들에 메일을 보냈을 때 대부분은 연구자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답신을 해왔으며, 실제로 이들을 만났을 때에도 한국에서 원폭피해에 대한 연구를 하러 온 젊은 연구자가 있다는 것이 반가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많이 피력했고, 현지 생활이나 일정을 잡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었다. 또 한국인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모임과 연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의 소송이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외에 오사카와 후쿠오카가 방문 장소로 추가되었다. 재판이 없는 날이 더 많았으므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방사성영향연구소, 평화기념자료관 등에서 문헌 조사를 주로 하고, 때때로 히로시마 시민회 회원들의 소개로 동산회 같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하는 일도 있었다. 첫 번째 일본에서의 현지 조사 기간 동안 연구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던 갖가지 정보들 속에 노출됐고, 방사능 위험과 관련된 과학연구 및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 원폭피해자 현황을 전반적으로 개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일본 방문기간의 예비조사를 마치고 돌아와 두 번째 방문을 시작하기까지는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 한국에서 열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에 관한 토론회’, ‘반전반핵동아시아국제대회’,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재판보고회와 한일청구권협정 파기선언 대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공식적인 대회에서 들을 수 있는 발언 이외에 서울 시내를 안내하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연구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쟁점들을 접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이 행사들에서는 한국의 피폭자단체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초대하여 원폭체험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거나, 일본에서 온 피폭자들과의 교류회 등을 만들어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는 이런 자리에서 원폭피해자 및 일제시대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인변호사, 한국원폭피해자 단체 전 현직 임원, 히로시마 거주 조선인원폭피해자연락회 대표,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변호사단과 시민단체 임원, 히로시마 피폭자단체협회 임원 및 일본의 반핵반전평화운동단체 관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모임에서 특별히 인터뷰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며 일정에 따른 교류회 및 발표대회 등에 참석하고, 행사가 끝나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소개하는 자리에서 통성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행사의 분위기나 발언을 기록하는 정도의 활동을 했다.

한편 한국에서 열린 행사에서 만난 이들은 대부분 피폭자 유관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현지의 시민회 등의 임원들과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두 번째 히로시마 방문에서는 이때의 인연으로 몇몇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이로써 두 번째 히로시마 방문에서는 첫 번째 방문 당시 만났던 사람들과 한국에서 열린 행사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을 다시 만나거나, 그들의 소개로 다른 원폭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두 번째 히로시마 방문에서는 히로시마 지부의 회원들의 도움으로 여러 일본인 또는 재일한국인이나 재일조선인 원폭피해자들을 만나 피폭체험에 대한 증언을 들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이때에는 히로시마 원폭투하희생자추도기념일인 8월 6일, 그리고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에 걸쳐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폭수폭금지대회, 원폭사물자 추도회 등에 참석할 수 있었고 TV를 통해 방영되는 각종 다큐멘터리와 정규 및 특별 방송 등도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 피폭자들의 증언을 듣는 일은 중요한 경험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젊은 연구자 혹은 일반인들이 원폭피해자들의 체험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 것 때문에 느꼈던 어떤 책임감과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연구자는 한국에서의 현지조사를 계획한 뒤 2007년 후반부터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우선은 한국에서 원폭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주 가끔 특정 행사에서 이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했으나, 그 수가 적고—당시 2500여명 정도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었다—지역적으로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당연한 문제였다. 따라서 연구자가 한국에서 이들에 대한 자료를 얻거나 인터뷰라도 하기 위해서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모임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접촉해야만 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단체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처음부터 확신이 없었다. 이는 두 번의 예비조사 기간 동안 협회 내에서 회원 간의 갈등이 심하여 연구자가 특정 조직의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그간 일본 정부 및 시민단체, 의사회 등과 교류의 한국측 상대자로 일해온 만큼 이곳을 통하지 않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배제하고 연구를 진행했을 때 입을 손실이 클 것이라는 것도 자명했다. 결국 연구자는 이 단체에 직접 연락을 취해 현지조사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거점으로 하는 두 차례의 본조사가 행해졌다. 1차 현지조사는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조사를 진행한 것은 2008년 4월 1일부터였다. 연구자가 정기적으로 협회를 방문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사무실에서 의료비 정산 서류 정리나 회원가입 등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록 연구자의 일본어 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일본과의 교류가 간간

히 이루어지는 협회 내에 협회 주요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공식이 되지 오래여서 일본어로 온 메일 등을 번역하거나 간단하게 답신해줄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연구자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씩 협회를 방문해 협회에서 필요한 간단한 일본어 번역 작업 등을 하거나 협회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협회 회원들의 회원카드를 정리하는 일이 나중에는 주요 업무가 되었다.²⁴⁾ 연구자는 협회의 회원카드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협회에 오고 가는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때로는 연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일부 회원들과 정형화되지 않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는 일본의 사법당국이 그간의 재외피폭자들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행정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로서 일본의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 소송 움직임이 시작되던 때이기도 했다. 이에 이들이 소송을 위해 한국에 건너와 한국피폭자들과 만나고 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논의하는 설명회도 여러 번 개최되었다.

2차 현지조사는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수행했으며,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작업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벌여온 역사를 정리하고 자료를 발굴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원폭피해자들과의 인터뷰는 주로 생애사를 채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1차 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공식적인 상황에서 심층적인 인터뷰들을 진행했다. 인터뷰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피폭자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대구와 창원, 합천, 진주, 부산에서도 상당수의 회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²⁵⁾

한국에서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는 협회 활동에의 참여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일본 추과의 관계 및 협회 내부의 사정, 협회 임원들과 지역지부 피폭자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정책의 구성과 집행에 관여하거나 혹은 상호작용하는 조직적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전국에 퍼져 있는 원폭피해자들의 주요한 의사소통창구이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의 행정적 실무가 집중되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회원들 간의 연줄을 이용해 인터뷰 참여자를 소개 받기도 했다. 물론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이나 인터뷰가 있었음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협회에서의 현지조사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 ‘히바쿠샤’로서 편입된 흔적들을 문서로서 기능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있어 히바쿠샤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을 맞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서류를 작성하고, 일본어로 번역하고, 기다리고, 심사를 받아 합격해야 하는 관료제적 절차들로 경험된다는 점은 연구자가 현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다. 또한 연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비교

24) 이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호적과 문서조사’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25) 이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생애사 인터뷰’에서 상세히 기록했다.

적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된 이 현지 조사 기간 동안 연구자가 처음에 피폭이나 원폭피해자의 존재에 대해 느꼈던 놀라움이나 당혹스러움도 조금씩 변화해갔다. 연구자는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 발현되는 양상이 단일하지 않으며, 그 정도도 개인의 신체와 생활력, 가족사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피폭과 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히바쿠샤란 누구인가’, ‘원폭피해자 혹은 피폭자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이 단순히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단순한 정의만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문제임을 느낄 수 있었다. 즉 히바쿠샤라는 개념이 일본의 원폭피해지구호정책의 맥락에서 매우 정교하게 구성된 것이며, 여기에는 일본의 사법체계와 행정체계, 그리고 피폭의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연구의 결합 속에서 생겨난 일정한 조건과 기준으로 구성된 어떤 범주의 구성과 그 경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과거 식민지 시절의 피식민국 이민자들이었던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국경이라는 것으로 실제 나뉘어진 경계이기도 하다는 점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지난 2012년 8월 5일부터 5일 간 일본 스미토모(住友)재단의 2011년도 <아시아 제국에 있어서 일본 관련 연구조성> 기금의 후원과 주히로시마총영사관의 초청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한 적이 있다. 히로시마대학 주최의 제37회 평화과학심포지움(주제: 원폭의 남아 있는 문제들)에서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는데, 당시 한국원폭피해자와 관련된 논의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선량방사선과 내부피폭의 문제가 일본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은 비의 피해에 대한 인정 논란이 연결되고 있는 분위기를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이외에 한국에서도 한국원폭피해자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으려는 이들을 돕기 위해 이전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다.

2) 생애사 인터뷰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는 현지조사 기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수의 구술 증언 채록과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연구자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구술사가 ‘말해지지 않았던’ 혹은 ‘말할 수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원폭피해자들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는 특히 일본 사회의 원폭피해자 증언 활동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일본에서 원폭피해자들의 피폭체험의 증언은 매우 공식적인 역사 말하기 중의 하나다.

연구자가 일본에서 참석한 주요 평화대회나 집회, 피폭자 교류회 등의 모임에서는 피폭자의 증언이 그 행사의 시작이나 끝을 알리는 의례와도 같았으며, 연구자가 방문한 원폭기념자료관, 평화박물관에는 다 읽을 수조차 없는 증언집과 수기들이 가득했다. 수필과 일기, 인터뷰, 그림, 사진, 다큐멘터리, 영화, 만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히바쿠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극도로 정형화된 형식과 기준에 맞추어 자신들의 피폭경험을 되도록 상세하게 기술하고 말해야 하는 이른바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즉 원폭피폭자로 등록된 이들에게 증언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이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도 비슷한 사정으로,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일본어판 증언집도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서론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이 실린 증언집이 다수 존재하고, 각종 과거사 관련 포럼이나 학술대회에서 원폭피해자들의 체험과 증언을 발표하는 자리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렇게 원폭피해자 증언 연구를 하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결코 모자란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다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구술 증언과 구술생애사 작업을 하게 된 것은 구술사 연구자와 구술자 간의 공동 작업에서 비롯되는 정치성과 주관성, 권력작용의 문제를 예비조사 기간 동안에 진행했던 인터뷰 과정에서 깊이 느꼈기 때문이다.

구술사의 중요성과 구전(oral tradition) 및 구술증언(oral testimony) 자료의 기록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미국 학계에서 구술사는 대체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술된 기억과 개인적 논평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윌택림·함한희, 2006: 47). 그러나 유럽의 학계에서는 구술사에 내재한 권력작용과 정치성이 보다 강조되어 왔으며, 오히려 그 점이 구술사 연구의 매력과 장점이 되기도 한다. 영국의 대중기억연구회(Popular Memory Group)가 정의한 “과거에 대한 개인적 기억들의 환기와 기록”(1982: 216), 이탈리아 구술사가 포르텔리가 말한 “구술자가 [과거에 대해] 말한 것뿐만 아니라 구술사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화적인 담론(dialogical discourse)”(Portelli, 1997: 3)이라는 정의는 모두 구술사가 단순히 구술 자료를 채록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구술자와 구술사가의 공동 생산물로서 갖는 정치성과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자 또한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식에 크게 공감하는 일이 많았다.

연구자는 현지조사 초기에 구술채록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들을 다수 진행했다. 이 중 우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후쿠오카와 오사카 등지에서 이루어진 일본에서의 예비조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경우도 몇 차례 있었는데, 첫 번째 방문 기간에는 일상적인 회화 정도에서 일본어가 가능하고 듣기에 비해 말하기 수준이 매우 낮았으므로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 모임의 관계자 중 한국어를 하는 분들, 나가사키에서는 평화자료관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도

움을 받았다. 보통은 한국어로 연구자가 묻고 싶어 하는 질문 등을 미리 통역을 해줄 이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중심으로 견학이나 면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단지 통역만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인 경우에 연구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질문을 하거나 혹은 미처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또 면담이 끝나면 대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곁들여 그 면담의 의의를 설명해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재일교포나 한국인 통역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해석의 지점들의 차이가 느껴졌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히로시마에서 '전쟁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있던 일본인 대학원생과 만나게 되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 시기에는 첫 번째 방문 때 보다는 많은 내용을 듣고 말할 수 있었지만, 역시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끌어가는 것, 특히 심한 히로시마 사투리를 쓰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간 질문 이외에 세세한 맥락을 파악하여 질문하기는 무리가 있었으므로 이 일본인 연구생과 미리 메일로 이야기를 하여 질문거리를 정하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연구자가 보충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한편으로는 소개를 시켜준 일본 원폭피해자나 시민단체 임원, 재일교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함께 들을 기회도 있었다. 이런 경우 연구자는 증언을 해주는 원폭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끌고 가는 방식, 질문하는 방식 등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답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보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중점적으로 물으려고 하는가가 보이면서, 본 연구자의 입장 또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편 두 번째 방문에서 주로 만난 이들 중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연구자 이외에도 공식적인 자리-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열리는 피폭자 증언기회,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나 평화 공원 내에 자리한 여러 기념비들을 돌며 설명해주는 것 등-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피폭자 증언이라는 형태로 이야기해본 적이 있는 이들이었다. 그래서인지 이들과 이루어진 대부분의 인터뷰는 일정한 스토리라인과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거나 연구자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그 인터뷰를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식적인 증언 활동을 많이 하는 이들일수록 표준어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연구자가 알아듣기가 훨씬 쉬웠다. 그에 비해 그렇지 않은 이들은 히로시마 사투리가 심했고, 같이 갔던 일본인 연구생조차 알아듣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증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꾼적인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것보다 체험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는 이야기꾼으로서의 피폭증언자들의 삶이 어떠한 사회적인 조건이나 구조, 과정 속에서 구성되어 왔는지를 해석해내는 '구조적 읽기(structural

reading)와 ‘문화적 읽기’(cultural reading)(Popular Memory Group, 1982: 227)의 필요성을 연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공식적인 면담 자리나 대회에서 들었던 증언과 달리 우연히 만나 피폭경험을 들을 기회를 가졌던 경우나 연구자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피폭경험을 이야기하셨다는 할아버지의 경우는 연구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연구자에게 원폭 당시의 상황을 묻기도 했다. 또 한 번은 한국인원폭피해자 할아버지 두 분이 원폭증 인정 신청이라고 하는 제도적 절차를 위해 이루어지는 인터뷰에 동행하여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 이루어진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연구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가령 이 때에는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항목에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발언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질문은 집요하고 심문과 같아지고, 애매한 기억은 정확한 거리와 날짜, 시간, 장소, 사물, 숫자 등으로 말해져야 한다고 강조되곤 했다. 이처럼 구술생애사 작업에서 대부분을 이루는 인터뷰 과정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연구자의 태도나 사전지식, 면담의 의도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했다.

일본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증언이 이루어지는 대회장에 참석하여 이야기를 들은 많은 경우 원폭투하 당시 폭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0.5km, 1km, 2km, 3km, 4km의 동심원이 그려진 1945년 당시의 히로시마의 지도가 등장하는데, 증언을 하거나 혹은 인터뷰 요청을 받은 피폭자는 이 지도 상에서 피폭을 당한 지점을 지목하며, 그 지점이 ‘폭심지로부터 몇 키로’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이 인터뷰를 했던 일본인 연구생은 지도를 하나 복사하여 면담 때마다 들고 다니며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곤 하였다.

연구자는 예비조사 기간 동안 때로는 통역자와 함께, 때로는 다른 연구자와 함께, 때로는 연구자 혼자,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터뷰 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술생애사 인터뷰 작업이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구술자와 연구자(인터뷰어)가 만들어가는 공동의 작업이며,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술사 자료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의 사적 경험이라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역사, 사회적 배경 그리고 연구자의 역사, 사회적 배경이 서로 대면하는 장에서 만들어지는 기억과 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한편 구술생애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현재의 사건들에 영향을 받으며, 그로 인해 이 작업에 참여하는 구술자뿐만 아니라 구술생애사 연구자의 생각과 질문도 변화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구술자의 이야기의 범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구술 작업들에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많았다. 우선은 일본에서 발간된 구술사 작업에서 많

이 다루어지지 않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도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했다. 이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살게 된 이유나 경로, 시기 그리고 해방 이후 귀환의 시기와 방법 등과 관련된다. 기존에 일본에서 나온 원폭체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체로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집중된 그야말로 '피폭체험'에 대한 이야기들로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이야기들에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물론 일본에서도 일부 시민단체나 학자들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제시기에 겪어야 했던 피식민지 국민의 설움이나 차별 등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질문을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서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시민단체나 일본인을 상대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일본에 가게 된 과정을 말할 때 전략적으로 일본 정부의 강제성을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2003년 이전까지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화두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그에 비해 이들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로 도일하게 된 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 관계, 그리고 이후 일본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내용은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에 연구자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증점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했다.

두 번째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피폭자원호정책에 접근 하는 과정 혹은 자신들의 권리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한 주목이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신체나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방사능에 의한 피해라는 인식이 낮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의 원호정책이 전면적으로 재외피폭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았다. 그로 인해 이들이 원폭협회에 가입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으며, 극단적으로는 극히 최근에서야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존재나 피폭자 원호정책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인터뷰 과정에서는 이들이 한국 원폭협회에 가입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세 번째로 일찍부터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인 경우 이들이 협회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당시의 협회 사정이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극히 미비한 시점에서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는 협회 활동의 열은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

인터뷰는 2011년 4월부터 11월에 걸쳐 서울과 합천, 진주, 창원, 대구, 부산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자는 연구자가 협회 측에 의뢰하기도 하고, 협회에서 오랫동안 회원들을 만나온 임원이 추천을 해주기도 했으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을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뷰에 응해준 분들 중 가장 나이가 적은 분은 1946년생(태아피폭에 해당하는 분)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은 1918년생이었으나 대부분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출생한 분들이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는 협회에 보관되어 있는 회원들의 신상 카드에 붙어 있는 호적 자료가 많이 참고가 되었는데 특히 회원들의 가족관계나 출생 및 사망 기록 등은 회원들이 갖고 있었던 기억들을 꺼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러한 정보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름이나 숫자, 날짜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해 주었으며, 특히 자녀들의 출생 시기나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등의 기준들은 자신의 거주공간의 변화를 협회 가입이나 도일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연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한편 호적이거나 제적등본의 경우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날짜가 실제와 같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으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장소는 회원들이 사는 자택이나 근무지 근처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협회 사무실이나 각 지부 사무실, 합천 복지관 등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회원들은 자택보다는 협회나 지부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편을 선호했다. 이는 인터뷰를 위해 협회나 지부 사무실에 나오으로써 그간 듣지 못했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협회나 지부는 ‘원폭피해자’임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 즉 ‘같은 회원들이 모이는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자료나 각종 문서, 편지 등을 보여준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쓴 일기나 메모장을 가져와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면 대체로 일주일 이내에 녹음된 파일을 활자화했으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것은 전화로 다시 묻거나 구술자가 다시 협회를 방문하는 기회에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인터뷰는 대체로 일대일 방식이었으나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협회 가입 이후 친하게 지내게 된 사람들이 혼자 오기 심심하다며 같이 오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인터뷰를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렇다고 다른 이들이 인터뷰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구술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참, 잘하네”와 같이 평가를 하기도 했으며, 먼저 한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못한 경우 다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일도 생기곤 했다. 이는 구술자들이 이미 인터뷰에 앞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의 사람이 모였을 때에는 공식적인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연구자가 미처 묻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오가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뷰에서 미리 질문지를 어느 정도 준비해 두었으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지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았으며 이야기의 순서도 대체로는 구술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게 했다. 또한 원폭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만으로 인터뷰 내용을 한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생애에 초점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실제로 연구자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보다는 구술자가 잘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생겼다.

이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구술자들의 생애의 시기와의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어린 시절은 연구자가 주로 관심 있어 하는 일본에 살던 시절이라던가 원폭피폭의 경험, 그리고 귀국 이후의 삶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세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미국 구술사가 리치가 지적하듯이 구술자들은 대개 어린 시절에 겪은 일들이 매우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하고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비록 하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시절 자체가 신선(Richie, 1995: 11)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일본이라는 타지에서 거주했던 경험 그리고 원폭피폭이라는 경험이 갖는 심대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 농촌의 노인들이 어린 시절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로 기억하고 있다(윤택림·함한희, 2006)고 한 지적은 내가 만난 원폭피해자들의 그것과는 매우 달랐다. 특히 강제동원이 아닌 형태로 일본에서 거주했거나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은 일본에서 살던 시절은 원폭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살만하고 때로는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의 고생담은 대개 귀국을 하고 전쟁을 겪고 결혼을 하는 시기에 집중됐다. 이는 이들이 일본에서 살던 시절이 실제로 한국에서 살던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었을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그 시절에 대체로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 아래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점, 그리고 일종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도 겹쳐진 것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인터뷰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년기에 이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다. 증언집 작업은 연구자 개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협회의 증언집 편집에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녹음장치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작업이 필수였는데,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자신들의 사진이 찍혀 책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뭐 어쩌냐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 또한 '이제야 하는 이야기지만'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인터뷰는 때때로 노년을 보내는 이들이 인생의 회한을 털어놓는 것처럼 되어서, 원폭과 관련 없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 관해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공식적으로 구술생애사 작업을 시작한 2011년 4월은 몇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달이었다. 우선은 2008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냈던 위자료 청구소송이 화해성립 과정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이에 따라 이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지급됐거나 지급되고 있던 때였다. 이는 2003년 12월부터 일본후생성으로부터 매달 3만 엔 정도의 원폭의료수당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극단적인 반감을 표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1년과 2002년에 호남지부의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진주, 2004; 정근식 편·진주채록, 2005)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이 달은 한 달

전에 일본 동북부 해안을 덮친 쓰나미와 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연일 한국에서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던 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연구자가 질문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방사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며, 때로는 연구자에게 방사능과 관련된 피해에 관해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했다. 이 두 사건은 연구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질문지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들이 추가됐으며, 구술자들을 만나 이들을 대하는 감정에 있어서도 그 이전의 연구자들보다는 다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 기록한 개별 면담 자료는 약 70여 개 정도다. 그 중 2차 현지조사 과정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면담에서 얻은 자료는 약 50여 개며, 이 중 출판을 허락받아 편집된 형태의 면담기록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2011년 출간한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 제2부에 실려 있다. 편집과정에서는 증언 출판을 전제로 증언을 했으나 나중에 철회한 경우, 증언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신지 못한 경우가 각각 한 사례씩 있었고, 증언을 그대로 채록한 것이 ‘증언부연한 듯이 보인다’며 면담자들이 구술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예 새롭게 작성해 넣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개별 증언자들의 가정사가 지나치게 드러나는 부분은 삭제됐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을 인용할 때, 손진두나 광귀훈 씨 등과 같이 소송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실명을 명기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했다. 증언 당시 진술서로 건네 받은 것들은 위 책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사용을 허가 받아 본 연구에서 인용했다.

3) 호적과 문서 조사

연구자는 앞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 카드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했다. 이 자료는 본문에서 한국원폭피해자 회원 구성과 회원 가입 추이와 관련된 자료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료의 성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1980년 일본정부가 재한원폭피해자에 대한 도일치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 체계적인 회원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원폭협회에서 관리하던 회원정보의 수집이 이를 계기로 처음 생겨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회원카드 서류상에 ‘재등록/신규 등록’이라는 목록이 있고, 일부 회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옛 회원등록증을 보증서로 첨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회원등록과 관련된 서류가 있었던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2011년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카드는 약 3900여 장이다. 그러나 최근에 가입한 사람의 회원등록번호가 4600번 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원 카드의 상당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2008년 협회에서 회원카드를 정리하

기 전까지는 사망으로 인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카드를 폐기했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해 회원카드를 작성한 사람들 중 약 700여명의 자료가 빠져 있으며 이는 대체로 2007년 이전의 일이고, 회원들 가운데 비교적 초기에 가입했다가 사망한 세대의 것을 다수 포함한다. 연구자는 이 가운데 2008년 8월 현재까지 3700여 장에 이르는 회원카드를 정리했으며, 이후에 가입한 200여명의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자가 호적조사를 그때까지 진행한 것 때문이기는 하나, 실제로 2차 현지조사에서까지 진행을 했더라도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의미는 없었다. 이는 협회 회원 등록 절차가 단순해지면서 기존의 회원카드에 담겨있던 거의 모든 정보가 일본에서 취득한 피폭자건강수첩 복사 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즉 연구자가 활용하게 될 자료의 대부분은 2007년 이전에 작성된 회원카드들에 한정된다. 또한 호적자료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2007년 개정된 호적법의 시행에 따라 더 이상 회원들이 자신들의 가족관계가 전부 나오는 호적을 첨부하지 않은 것과는 관련된다.

한편 회원카드에는 신청일과 가입성격(신규/재등록 여부) 그리고 회원번호,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름, 일본이름, 성별, 생년월일, 현주소지, 출생지, 원적지, 호주명, 호주와의 관계 분관)과 가족사항(호주명, 현재가족현황, 가족사망시기), 도일과 관련된 사항(도일시기, 도일사유, 귀국시기, 재일당시 거주지 주소 및 상황, 재일시가족현황), 피폭관련사항(피폭당시상황, 피폭당시 같이 있던 사람, 피폭 직후 상황, 피폭 후 상황), 피폭 후 후유증(재일 당시 후유증, 귀국 후 병력, 피폭 후 출산력, 현재건강상태 및 요망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회원 등록 시에 필요한 보증인 서명과 필요시 보증서(호적, 주민등록 등본, 일본에서 발행한 피폭자건강수첩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회원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글을 모르거나 혹은 신체적인 이유로 글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대신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었고, 가족들이 경우에는 피폭시 상황이나 이후 관련 사항을 거의 동일하게 작성해놓은 경우가 많았다. 징용자들의 경우에는 호적자료를 통해 히로시마에 거주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호적자료보다는 같이 징용됐던 사람들과의 연대체 결성을 통해 상호 보증을 하거나 징용당시의 소속 군대 혹은 공장으로부터 징용 사실을 확인받은 편지, 귀국 당시 받은 이재증명서, 각종 책, 편지 등을 통해 증거물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자는 이렇게 회원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2008년 첫 번째 협회의 현지조사 기간 동안 전산프로그램인 엑셀에 입력했다. 협회에서도 회원 관리를 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연구자도 그 내용으로부터 무언가 중요한 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입력한 문서의 내용들은 연구자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유용하지는 않았다. 특히 협회에서는 이 자료들은 대개 보관용으로 의미가 있었을 뿐이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기록이 짧아서 상세한 내막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호적 등에도 오류가 심심찮게 있었다. 특히 자주 나타난 오류는 가족들의 생년월일과 사망

일시로서 실제의 그것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름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많았다. 오류는 아니지만 호적자료로만은 가족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다. 가령 입양이나 재혼의 경우 호적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의 가족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경우, 역으로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이후 등록을 제 때에 하지 않아 한참동안 가족구성원으로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문서 속의 내용들이 분석에서 크게 유의미하거나 정확한 자료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낀 것은 첫 번째 6개월 동안의 현지조사 기간이 아니라 3년이 지나 생애사 인터뷰를 주로 하던 2011년의 현지조사 기간이었다.

물론 이 문서 작업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자는 두 번째 현지조사에서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이 문서의 내용들이 증언자들의 구술이나 기억을 상기시키고 교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특히 호적의 기록에는 가족의 출생과 사망, 즉 장례나 제사, 결혼 등의 가족의례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생애사 인터뷰에서 그 기록이 갖는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컸다. 또한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그 기록들이 다양한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 오류조차 이들의 가정과 개인사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기록과 기억의 상호구속과 교정과정은 생애사 인터뷰와 기록 혹은 문서 연구가 가진 장단점과 그 의미를 시간을 두고 경험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작업이 유용하게 쓰인 곳은 연구자가 공식적인 현지조사를 끝낸 이후, 이 전산에 입력된 자료들이 그제야 수첩을 받으려는 이들이나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을 주게 된 경우였다. 이 문서들은 오류를 포함하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수첩을 받는데 거쳐야 할 행정관료제적 절차의 여러 단계들에서 중요하게 쓰였다. 히바쿠샤의 관료제적 통제에 있어 기억과 기록, 문서의 매개를 다루고 있는 5장은 현지조사 기간 동안 연구자가 가장 지루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했던 6개월 동안의 문서 작업의 흔적들이다.

5.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일본의 원폭피해자 구호(救護)에 관한 법률 제정의 역사를 통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살펴본다. 패전 후 GHQ(General Head Quarters, 연합군총사령부) 점령 하에서 일본의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초기 구호와 이들에 대한 과학연구의 흐름, 그리고 '원폭전재민'의 구호 문제가 히바쿠샤의 원호(援護)로 제도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3장에서는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법과 행정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실행되어 나가는 과정을 히바쿠샤의 경계 구성과 통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히바쿠샤의 경계를 구

성과 통제라는 측면에서 나누어보면 전자가 원폭피해의 실재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과정이라면, 통제는 그 법적 규정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고 판별하는 행정적 절차를 수반한다. 히바쿠사라는 자격의 범주의 탄생 또한 경계의 구성이라는 측면과 '이 경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은 모두 원폭의 피해 혹은 피폭의 피해라는 것이 관료제적 체제 속에서 재구성되고 정의되며, 실천됨을 의미한다.

4장에서는 일본정부가 히바쿠사의 시민권적 경계를 설정해 놓았던 것이 균열되는 과정을 다룬다. 일본정부가 원폭피해자 원호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재외국민 원폭피해자는 히바쿠사의 경계 안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즈음해 사회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한일 양국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본 장에서는 이들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되어 히바쿠사의 또 다른 경계인 시정권(施政權)²⁶⁾을 넘어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후 냉전체제하 동아시아국제질서라는 제약 속에서 스스로의 권리 투쟁과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는 정치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히바쿠사의 경계를 넘는 개별 한국원폭피해자의 경험과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5장에서는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히바쿠사가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일본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사의 경계에 관한 행정관료제적 통제 과정,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중심으로 특수하게 형성되어온 한국원폭피해자 구호의 과정과 맞물려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사회적 고통에 대한 연구로서, 본 논문을 구성하고 사례를 인용·분석하는데 있어 서술 원칙은 이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Kleinman·Das·Lock(1996)은 사회적 고통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자가 이를 재현하는 방식은 관찰자나 독자뿐만 아니라 고통의 당사자,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도 경험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자는 연구자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미리 구성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자는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을 접하면서 위의 지적에 크게 공감하는 바이며, 본 논문에서 사례를 인용하고 분석하는데 다음의 세 가지 정도의 서술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원폭피해자의 고통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미디어적 재현이나 서사 방

26)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그 범위를 한정지은 후생성의 '402호 통달'은 한국원폭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일본 국적의 일본 '히바쿠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본에 살면서 피폭자건강수첩을 취득했다가 장기 출장 등과 같은 공백이나 퇴직 후 이민한 경우 '거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원폭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히바쿠사'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

식과 거리를 두고자 했다. 사회적 고통이 카메라에 비친 피사체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 영상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큰 호소력을 지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일상적이고 비가시적이며, 현재적인 경험들을 구성해내는 역사적 층위와 한국의 정치사회적 장에서 큰 호소력이 없는 해석들을 주변화시키거나 침묵시키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험을 단지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고정시키지 않고, 이들의 부모 세대에서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한국의 근현대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 위치 짓고자 했다.

둘째 원폭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특정 절의 본문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다. 이는 연구자가 원폭 피해의 정도를 일본에서 생산된 전체적이고 표준적이며, 또한 물화된 형태로서의 공식기록이 아니라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구술을 통해 비일관되고 비조직적인 형태로 이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기억과 인식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기억과 경험을 간직해온 방식이며, 또한 그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은 피폭자에 대한 관료제적 통치 속에서 특정하게 변형되거나 환기되고, 때로 교정되는 것이기도 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 방식이 독자로 하여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의 규모를 상상하는데 어려움을 낳는다는 지적에 따라, 그와 관련된 내용을 부록4에 추가했다.

셋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녀두리나 한탄, 분노 등이 그대로 드러나는 긴 구술 내용을 그대로 직접 인용했다. 논문에서 분노(anger)를 비롯해 감정을 드러내는 언어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구자 또한 그와 같은 감정적 수사를 연구자의 분석 언어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는 연구자가 채록한 구술사 텍스트 상에서 나타나는 강한 분노나 아쉬움, 긴장, 한탄, 슬픔 등이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감정적 힘과 분석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²⁷⁾ 특히 이러한 감정들은 5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관료주의의 '비인격적 대면'과 '무심함'과도 대비된다.

27) 이스라엘의 싱글맘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관료제적 그물망(bureaucratic web)에 얽힌 사람들의 인종과 젠더 정치에 대한 Lavie(2012)의 연구는 민족지 서술에서 '분노'의 언어가 그 자체로 강력한 감정적 힘을 가지며, 이것이 일종의 해방적이고 강고한 선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제도화 과정

1. 전재민에서 히바쿠샤로의 전환

1) 원폭피해자, 원폭생존자, 원폭피폭자

한국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록되지 않은 단어지만, 일본사회에서 ‘히바쿠샤被爆者’, 곧 ‘피폭자’라는 말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원자폭탄 혹은 그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을 뜻하고, 실제로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폭격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지방을 덮친 쓰나미로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다시 히바쿠샤들이 이슈가 되었지만, 이들은 被爆者가 아니라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는 일컫는 被曝者나 被ばく者로 표기된다.²⁸⁾

일본에서 히바쿠샤被爆者の 존재는 표기법에 있어서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 히바쿠샤被爆者라는 용어는 전후 일본의 정치사회 진영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며 여러 실천과 활동의 표상으로 자리 잡아 왔다 (Yoneyama, 1999). 아주 드물게는 일본 정치 지형의 양 극단에서 핵무장론이나 반미투쟁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패전의 표식으로서 망각되어야 할 수치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根本雅也, 2006:1). 하지만 반전과 반핵이 중심이 된 일본의 평화운동에서 히바쿠샤는 무엇보다 전쟁의 비극적 상징으로서 전쟁과 핵무기의 피해자, 그리고 그 위험을 몸으로 증명하는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핵무기 폐절이라는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표상이자 실천의 주체가 되어왔다 (Yoneyama, 1999; 竹峰誠一郎, 2008).

일본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의 피해자들 곧 히바쿠샤는 자신들의 원폭 경

28) 일본에서 ‘피폭’은 세 가지로 표기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처럼 원자폭탄이나 혹은 그 방사선에 피폭된 경우에는 ‘被爆’을,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는 ‘被曝’을 사용한다. ‘被曝’은 ‘被ばく’로도 표기된다. 曝의 일본어 발음인 ‘바쿠’를 히라가나로 표기한 것으로 표기 면에서는 ‘爆’과 좀 더 쉽게 구분되지만, 발음이 같기 때문에 들어서는 차이를 알 수 없다. 일본에서 ‘被爆’은 대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에 의한 ‘피폭’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어인 경우에는 문맥상 이해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에 이 세 단어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가 있어 번역해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히로시마 현, 被曝者 의료 협력에 원전 사고, 의사 교육 및 조사 -히로시마 현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주변 주민과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건강관리 위해 被曝者 의료의 실적을 살린 협력에 나선다." 여기서 앞의 ‘被曝者’는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 주민을, 뒤의 ‘被爆者’는 히로시마의 원폭피해자를 가리킨다. (출처: 아사히신문, 2011년 5월 26일 12시 50분에 입력된 온라인 기사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526/OSK201105260026.html>)) ‘被ばく者’의 용례도 아사히신문에서 번역해 인용한다. "중국에 도착한 일본인 2명에서 기준 이상의 방사능을 감지-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과 이후의 폭발 등으로 손상된 후쿠시마 원전의 근로자를 제외하고 높은 방사능 수준의 被ばく者は 국내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아사히신문, 2011년 3월 25일에 입력된 온라인 기사 <http://www.asahi.com/international/reuters/RTR201103250105.html>)

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행사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내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시작과 끝은 대체로 이들의 체험을 듣는 것으로 채워진다. 히바쿠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마치 의례와도 같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피폭자들을 내세운 여러 사회운동을 ‘재난을 파는’(selling the disaster) 혹은 ‘원자폭탄을 깃발로 사용하는’(using the A-bomb as their flag)(Lindee, 1994:5) 행위로 비난하는 이들이 생긴 것도 주류적 히바쿠샤 담론에 대한 반발적 성격이 짙다. 그만큼 히바쿠샤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다.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시작된 1954년 이후부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참사에 대한 히바쿠샤들의 증언은 이 공적인 정치회합의 공식적인 설명으로 대중들에게 연설·전달됐다. 신형 대량살상 무기의 끔찍함과 공포를 알리는 것으로 그들의 체험은 반핵 운동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도구였다. 일본의 반전, 반핵 그리고 평화운동의 ‘진정성의 핵’(core of authenticity)(Lindee, 1994:5)과 같은 존재로서 히바쿠샤 그리고 그들의 원폭체험이 핵 혹은 방사능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그 사용빈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반핵운동이나 평화교육과 평화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다 (竹峰誠一郎, 2008).

그렇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被爆者 곧 히바쿠샤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 비교를 위해 이와 관련된 영어와 한국어 표현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우선 영어에서 이들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atomic bomb survivors in Hiroshima and Nagasaki’다. 그들은 처음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생존자’(survivors at Hiroshima and Nagasaki)였으나 곧 신형 폭탄의 정체가 밝혀졌고 바로 ‘원자폭탄생존자’(atomic-bomb survivors 혹은 a-bomb survivors)로 지칭됐다.²⁹⁾ 영어로도 ‘원자폭탄피해자’(Atomic-bomb victim)라는 용어가 있어 좀 더 피해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사회운동과 관련된 분야에서다. 연구자가 본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 관련 저작들 중 영어권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요 영문 서적의 저자들(대표적으로 Lindee, 1994; Yoneyama, 1999; Petryna, 2002; 모리카·브라운, 1988)이 모두 ‘atomic bomb survivors’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 군사적 이유로든 과학적 이유로든 그곳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 즉 ‘살아남은 자’(survivors)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 후 일본에 주둔한 연합군사령부(General Head Quarters, 이하 GHQ로 약칭)는 미

29)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난 뒤 그 실체를 명확하게 선언한 것은 폭탄 투하 후 며칠 뒤에 이루어진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였다. 그 이전에는 ‘신형무기’로 알려져 있었다. 일본의 군부도 폭탄 투하 후 이 ‘신형무기’가 원자폭탄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했고, 곧바로 방사능 측정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일반에 무기의 실체가 공개된 것은 위 연설을 통해서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리처드 로즈의 『원자폭탄 만들기: 원자 폭탄을 만든 과학자들의 열정과 고뇌 그리고 인류의 운명』(2003, 문신행역, 사이언스북스)을 참고할 수 있다.

국의 군부와 학계의 의견에 따라 원자폭탄에 의한 인체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1946년 원폭상해조사위원회(Atomic Bomb Casualty Commission, ABCC)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줄곧 원자폭탄을 맞았으나 '살아 있는 사람들'과 이들의 이후 상해 및 사망에 이르는 경로 등을 추적했다. 1954년부터 1957년까지 ABCC 위원장을 지냈던 Robert Homes는 그들을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Trumbull, 1957:133)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흔치않은 소수의 사람들'(Committee for Compilation 1981:500)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지적 자원(resource)'(Lindee, 1994:4)으로서 '원폭생존자들'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연구진에게 포괄적인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됐다. ABCC를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논문이나 보고서에서는 주로 이들이 방사선을 쬐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방사선 혹은 원폭에) 노출된 사람"(exposed one/exposure)으로 부르거나 노출된 방사능의 수준에 따라 분류해 지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erson who have received radiation dosages about 50 rads" 혹은 "person who have been exposed to level about 100" 등으로 풀어 쓰는 식이다.³⁰⁾

뒷 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겠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에는 군사적 이유와 과학적 이유로 노출된 방사선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다만 사후 계산에 따라 추정하게 된다.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에 피폭된 이들은 대체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의 지상지점인 폭심지로부터의 거리로 방사선 노출 정도를 분류해 지칭됐다. 요컨대 영어에서는 일본어 히바쿠샤와 대응되는 단일한 번역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 용어는 hibakusya 혹은 hibakusha로 음차하고 위와 같이 설명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원폭피해자라는 용어를 좀 더 널리 쓰지만, 피폭자라는 용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용어 모두 하나의 단어로 국립국어원 표준어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복합어이므로 각각의 의미를 갖는 형태소를 찾아볼 수는 있다. 여기서 피폭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被曝/被暴'으로서 이는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됨. 체외에 있는 방사선원에 의한 외부 피폭과 체내에 있거나 들어온 선원에 의한 내부 피폭이 있다"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被爆'은 첫 번째 의미로 "폭격을 받음", 두 번째 의미로 "원자탄이나 수소탄의 폭격을 받음. 또는 그 방사능으로 피해를 입음"이라고 되어 있다. 일본어의 한자식 표기의 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 '피폭'이나 '피폭자', '원폭피해자' 등과 같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들 단어는 1945년 이후에 등장한다. 그러

30)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 노출된 방사선량에 따라 분류 지칭됐다. 참고로 체르노빌의 경우는 사고 당시 최고 피폭량인 500rads를 비롯해 '상당한 정도로 피폭된significantly exposed' 600,000 여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분류됐다. 방사선에 의한 병증은 100 rads (1 Gray)에서 시작되어 체르노빌의 경우 500 rads에 피폭된 것이 최고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edvedev 1990:136).

나 이 용어가 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언론매체에서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네이버 디지털아카이브 검색을 실행했다. 이 아카이브는 1945년 12월 복간한 동아일보를 주로 하고, 1946년 10월 1일에 창간한 경향신문과 이후 매일경제 세 신문을 중심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데, 검색결과를 보면 '원자탄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전쟁 이전 시기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미국과 소련이 원자탄과 수소폭탄의 개발과 관련 핵실험을 통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뛰어든 상황,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원자탄 사용 논쟁 등에 대한 기사가 자주 다뤄진 것에 비하면 확실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검색 결과에서도 '원자탄의 효능'으로서 대량인명살상과 파괴력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 자체를 다룬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영어의 'survivors'에 해당되는 표현을 풀어쓴 것으로 보이는 "원자탄 폭발 당시의 피해를 면한 잔존자"(1947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라는 표현이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데, 그 수가 광도³¹⁾에서만 몇 만에 이른다는 내용에서 다뤄지고 있다. GHQ의 일본 점령기간 동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외부 보도가 통제된 시기가 이 즈음이었다는 것도 무관치 않다.³²⁾

1950년대 이후에는 '생존자'(1952년 7월 27일자, 경향신문) 혹은 '광도의 주민'(1952년 4월 25일자, 경향신문) 등과 같은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1954년 미국의 태평양 비키니 섬에서의 수폭 실험 이후 '원폭환자', '원자폭탄의 피해자', '원폭피해자'라는 표현(1954년 9월 20일 동아일보)이 본격적으로 상용되기 시작한다. 이는 '원자폭탄피해자'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같다. 그리고 이후 1960년대 한일회담을 즈음하여 被爆者(1963년 8월 6일자, 동아일보)라는 한자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해, 이후 원자폭탄 피해와 관련된 일본 정부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을 소개하는 등의 기사에서 간간히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자용어 그대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被爆者라는 한자용어가 신문지상에서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더 일반적으로 쓰였을 뿐 원자폭탄의 피해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68년 설립된 한국의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인 한국 원폭피해자협회(구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는 여전히 '원폭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한국에서 '피폭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

31) 히로시마(広島)의 한자식 표현을 한글로 표기한 것

32) 종전 후 원폭피해와 관련된 연합군총사령부의 보도통제(press code) 정책은 일본의 신문이나 라디오의 보도뿐 아니라 모든 출판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되었는데, 특히 미국의 최고기밀에 속하는 원자폭탄의 정보에 관해서는 극히 경계가 심해서 원폭으로 인한 피해의 상황이나 그 후의 피폭자들의 증상 등의 보도, 의학상의 학술적 발표 등에 제한이 가해졌다. 이에 관해서는 모니카 브라운(モニカ・ブラウン)의 『檢閲 1945-1949: 禁止された原爆報道』(1988, 立花誠逸 驛, 時事通信社)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폭피해자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 것은 연구자가 이 연구를 시작한 2006년 무렵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연구자는 한국에서 원폭피해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다가, 예비 조사를 위해 일본에 가서는 피폭자 즉 히바쿠샤라는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그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됐다. 원폭피해자의 일본어 표현인 '겐바쿠히가이샤'라는 것은 '가해'와 '피해'라는 구도를 사용해야 하는 특수한 맥락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모두 완전히 일치되는 기준과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인 연구자가 당연하게 원폭피해자(atomic bomb victim)라고 불려오던 그들을 영어로는 원폭생존자(atomic bomb survivors), 그리고 일본에서는 히바쿠샤(被爆者)로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는 것은 원폭투하와 관련된 정치적 책임과 비난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는 이 용어들의 '이름 짓기의 정치'(politics of naming)를 짐작하게 한다.

2) 이름 짓기의 정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을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인가의 문제는 원폭투하를 둘러싼 국가 간 책임 소재 공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는 현지조사 초기에 만난 일본인 시민활동가 이치바 준코(市場淳子)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 질문하는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원폭피해자라고 할 때는 직접적으로 피폭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2세, 3세까지 간접적으로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어서 유족보상이나 2세, 3세 원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원폭피해자'라는 말을 쓰고, 유족이나 2세, 3세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정부는 '원자폭탄피폭자'라는 말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바쿠샤'라는 말에는 유족이나 2세, 3세가 포함되지 않은 말입니다”(한국어 메일 전문 중 어색한 일본어 표현만 연구자가 수정)라고 보내왔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일본에서도 히바쿠샤와 원폭피해자라는 용어 구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히바쿠샤라는 표현이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이름짓기의 정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예견케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원폭피해자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전후 보상과 정책 문제가 얽혀있음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히바쿠샤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이 용어는 그들의 존재가 생겨난 직후 곧바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적어도 전후 10여 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竹峰誠一郎(2008)는 히바쿠샤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 그 어사(語史)를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히바쿠샤라는 단어는 분명히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그 단어가 생겨났거나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인 『大言海』(1956년 개정판)와 『廣辭苑』(1955년 초판)에도 被爆이나 被爆者라는 단어는 게재되지 않았다. 두 사전 모두 원폭투하 후 10년이 지나 개정되거나 초판으로 나온 사전들이었다. 그는 언론 매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952년 8월 6일을 맞아 잡지 『アサヒグラフ』(아사히그래프)가 ‘원폭피해의 최초공개’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특별호는 원폭 당시의 사진을 게재한 첫 출판물이라 할 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被爆者라는 단어는 실리지 않았다. 다만 이곳에는 被爆이라는 단어는 군데군데 쓰였다. 대신 당시 원자폭탄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켜 原爆犠牲者, 負傷者, 重傷者, 火傷者, 爆死者, 原爆生存者, 原爆の子(원폭의 아이), 原爆處女(원폭처녀)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朝日新聞』(아사히신문) 표제에서도 마찬가지로 1945년부터 5년간 原爆被災者, 原爆犠牲者, 原爆被害者, 原爆孤兒, 原爆乙女³³⁾, 原爆障害者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被爆者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단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원폭투하로부터 10년이 지난 1955년 8월이었다. 즉 일본의 국어사전이나 매체들에서도 被爆者라는 단어는 원폭투하이후 약 10여 년간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竹峰誠一郎, 2008).

이 같은 양상은 피폭자가 중심이 된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955년 열린 최초의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서도, 그리고 그 후 결성된 원폭생존자들의 단체인 히로시마현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히로시마피단협, 1956년 5월 결성)와 나가사키원폭피해자협의회(나가사키피재협, 1956년 6월 결성), 그 위의 전국조직인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일본피단협, 1956년 8월 결성)의 발족에도 被爆者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현재는 모두 원폭피해자, 원폭피재자라는 용어를 원폭피폭자라는 용어로 대체했다(廣島縣原爆被爆者団体協議會, 2001).

한편 GHQ의 점령이 해제되고 전후처리 문제가 일본 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올랐던 1951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즈음, 히로시마 시는 원폭으로 인해 희생된 시민들에 대한 국가 보상 대책을 대비해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

33) 원폭투하당시 폭심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 폭발 당시의 화염과 2차적 화재 등으로 인한 열상(熱傷)의 정도가 심해 피부의 심층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복합적인 열상은 방사능증의 영향, 불완전한 초기치료, 영양불량 등의 악조건이 겹쳐져 치유가 쉽지 않고, 후에 고도의 비후성반흔(肥厚性癬痕)을 남긴다. 이 반흔조직은 구축성(拘縮性)이 되어 각종 변형이나 기능장해를 초래하는데, 이를 ‘켈로이드’라고 부른다. 보기가 흉측하다고 해서 ‘악마의 상흔’으로도 불린다. ‘원폭을녀’라는 표현은 이 켈로이드를 신체에 입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廣島市・長崎市 原爆災害誌編輯委員會, 2005). ‘원폭처녀’라는 말도 있는데, 당시 혼기가 다 된 젊은 여성들이 그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원폭을녀’가 세간에 알려지고 널리 퍼진 것은 1952년이었다. 1951년 히로시마의 ‘원폭상해자갱생회’에 가입한 여성들에 대해 입원치료를 지원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 움직임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根本, 2006:31).

다. 당시 그 공식 명칭은 '히로시마시원폭장해자조사'였다 (廣島縣, 1986:37). 또한 일본 내 피폭자 원호법 제정 운동이 고양되던 1956년 무렵에 히로시마 현과 히로시마 시, 나가사키 현과 나가사키 시당국이 지역민들의 희망을 담아 원호법안을 작성하고 관련된 진정서를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제출했을 때에도 그 명칭은 여전히 『原爆障害者援護法案要綱』 (원폭장해자원호법안요강(시안))이었다 (廣島縣, 1986:40).

이처럼 원폭 전후 십여 년간 히바쿠사被爆者라는 용어는 사회운동 진영이나 피해자 단체 심지어 지방행정당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는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전재민', '피재자', '부상자' 등과 같이 전후 일본의 여러 전쟁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칭되다가 이후 점차 그 피해의 근원이 원폭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원폭생존자'나 '원폭피해자', '원폭희생자', '원폭장해자' '원폭을녀', '원폭처녀', '원폭고아'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히바쿠사라는 단어는 그 즈음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즉 일본 사회에서 히바쿠사被爆者라는 용어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생존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다른 용어들에 비해 매우 강력한 정치사회적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은 그 대상의 존재와 동시에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히바쿠사라는 용어가 원자폭탄의 방사선이라는 특수한 측면과 결합해 만들어지고, 그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전후보상과 정부 예산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한 竹峰誠一郎(2008)은, 히바쿠사라는 용어의 부상(浮上)의 배경을 일본의 원폭의료법(원자폭탄피폭자의의료등에관한법률, 1957년 제정, 이하 '원폭의료법'으로 약칭)의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는 일본의 법률상 히바쿠사라는 것은 일본정부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 가운데 원호대상으로 인정한 사람을 총칭하는 단어로서, 이는 특히 원자폭탄의 '방사선'과 '건강면'의 영향에 한정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행정적 통달 조치를 통해 국내적으로 원호 대상을 한정하기 위해 조작되어온 측면을 가지는 극히 정치적인 단어라고 비판한다.

Yoneyama(1999:92-96) 또한 일본사회에서 원폭생존자(atomic bomb survivors)를 히바쿠사라는 일면적 측면을 부각해서 지칭해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 담론적 질서를 설명하면서, 이 용어의 법제도적 기원을 설명한 적이 있다. Yoneyama는 일본정부가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원폭생존자들에게 의료적 혜택을 주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식적인 히바쿠사 인증 절차가 전후(戰後)의 반핵담론과 결합해 일본 사회의 주류적인 히바쿠사 담론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한다. 히바쿠사 인증이라는 제도적 절차와 관련된 의학적 법적 담론들이 그들의 설명에 진실성이라는 권위를 부여했고, 반핵운동은 원폭생존자들을 히바쿠사라는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의제로 결합한 강력한 의지와 열망을 가진 정치 주체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어서 Yoneyama는 이 같은 제도적 차원과 사회 운동적 차원의 담론 결합은 히바쿠사라는 단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표상이 된 만큼이나 그것이 의료화 되고 제도화된 국가 담론 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된 측면을 만들어냈다고 보았다.

Yoneyama는 이것이 히바쿠사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주체는 다층적이고 모순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이라는 일면적인 차원에 한정되어 원폭생존자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폭탄의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 경로의 한 과정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매체나 주류 담론에서 히바쿠사라는 단어로 그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에게 단일한 형태로 맞추어진 경험을 특정한 방식의 서사 스타일에 따라서 이야기하게 하고, 그들이 살아온 중첩된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 다층적인 요소들에 대한 언급을 자제시키는 것이 그 효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경험하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름 짓는데 있어 히바쿠사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축소를 비난하는 것은 일본의 운동 진영에서는 그리 낮은 것도 아니었다. 히로시마에서 원폭을 경험하고 신문기자로써 원폭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來栖武士郎도 이에 대해 유사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는 '단순히 히바쿠사라는 정의로서 작게 축소해버리면 원폭 전체가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며, 히바쿠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히로시마의 <원폭피해자상담원 모임>의 학습회를 꾸리고 있었는데, 이 단체는 여느 단체들과 달리 '히바쿠사'가 아닌 '원폭피해자'라는 용어를 모임의 명칭으로 내걸었다. 단체명을 '히바쿠사'라 하지 않고 "원폭피해자"라고 한 것은 피폭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이른바 공인의 히바쿠사뿐만이 아니라 히바쿠사지만 아직 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가족을 원폭으로 잃은 피폭당하지 않은 유족이나 고아 등의 관계자들도 포함해 원폭에 의한 피해자 전체를 모임 활동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원폭2법³⁴)으로 규정된 히바쿠사뿐만 아니라 원폭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모두를 상담·원조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폭2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개정을 시야에 두고 활동을 추진하려고 하는 결의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竹峰誠一, 2008).

여기서 연구자는 이들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선, 왜 하필 '방사능만의 피해'였을까? 앞서 인용한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히바쿠사라는 용어는 분명히 지나치게 일면적인 차원으로 규정된 용어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원자폭탄은 개인의 신체나 심리, 그리고 그 개인의 사회적 관계 및 공동체 수준 등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의 피해를 초래하고 또 한편으로는 원자폭탄 자체가 방사능뿐만 아니라 폭발과 열기, 바람, 화재 등 그 피해를 초래하는 원인도 다양하며, 피폭을 직접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확대된 가족들의 삶에도 복잡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표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방사능만의 피해만은 인정했을까? 그리고 왜 그 매우 일면적인

34) 1957년에 제정된 『원자폭탄피폭자의의료등에관한법률』(원폭의료법), 이어서 1968년 『원자폭탄피폭자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법률』(특별조치법)을 합해 '원폭2법'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개의 법률은 1994년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원폭원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본의 원폭피해자 의료급부 지원의 법적 근거였다. 이 세 법을 원폭3법이라고도 표기한다.

것에만 집중하게 됐을까? 이는 역으로 다른 피해들은 왜 구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고 명명하는 것이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것 이상으로 그 용어가 특정한 책임과 비난의 소재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것은 일본의 전후 전정보상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만약 방사능의 피해라는 것이 히바쿠사를 규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자격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확정적이고 경계가 뚜렷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은 일본 사회에서 히바쿠사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특수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표상이라는 점을 지적했지만, 그런 만큼 히바쿠사라는 개념 자체를 어떤 명확하고 경계가 확실한 것처럼 다뤘다. 즉 히바쿠사라는 용어가 '방사선에 노출된'이라는 생의학적으로 일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 범주를 매우 축소된 형태로 한정시켜 버리는 개념이라는 비판했는데, 정말 이 히바쿠사라는 용어는 그렇게 생의학적으로 확정적이고 고정적일 수 있는 것일까. 즉 히바쿠사를 규정하는 방사능의 피해라는 것은 확정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일까가 문제가 된다. 연구자는 여기서 이 일면적인 방사능의 피해라는 것으로 규정된 히바쿠사라는 용어가 오히려 일본의 피폭자보호정책 상의 법과 행정적 측면에서 완전하게 완결된 적이 없는 개념, 즉 제도적 측면에서 끊임없이 경계를 새로이 짓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방사능의 피해에 대한 과학연구와 정치, 행정 등이 상호작용해온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생존자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과학 연구들은 방사능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주제에 있어 고정되기 보다는 불안정적이어서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념 짓는'(Lynch, 2004: 162) 과정 속에 있었다. 또한 이렇게 완결되지 않은 과학연구에 기반을 두어 제도화된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행정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원폭피해자 자신들의 신체와 기억, 그리고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연구자의 다음 질문을 푸는 데에도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히바쿠사' 그리고 '유일피폭국'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정치적 효과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히바쿠사라는 용어는 다른 여하한 성격의 용어를 배제시키고 국가가 선택한 하나의 배타적 법적 용어이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의 정치 및 정책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순응하는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히바쿠사 그리고 이후에 '유일피폭국'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본 정부가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들의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수단을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모순을 어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지기도 했다. 물론 그것의 한계 역시 뚜렷하기는 하지만, 연구자는 이것이 일본 정부가 '히바쿠사'나 '유일피폭국'이라는 용어에서 '방사능에 노출된'이라는 일면적 차원만을 일관되게 강조하

면서 '피폭'과 '피폭자'라는 것이 일종의 '경계물'(boundary object)(Star and Griesemer, 1989:393;2000)로 다뤄질 수 있는 장을 제공한 결과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2. GHQ 점령하의 원폭생존자에 대한 초기 조사와 구호의 경과

1) 전후(戰後) 원폭생존자 조사의 경과와 그 성격

패전 후 GHQ의 점령 하에서 일본의 원폭피해자들은 다른 전쟁피해자들인 소위 전재자(戰災者)와 차별화되지 않았다. 전시구호와 전재부흥의 관점에서는 이때까지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주민들은 다른 모든 전쟁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연합군 공습의 피해자 범주에 뭉뚱그려져 있었다. 전주민들의 구호를 예로 들어보자면, 종전 직후 연합군의 공습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은 전시재해보호법에 따라 구급구호를 받았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공습의 피해를 입은 부상자들도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임시구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다(廣島縣原爆被爆者団体協議會, 2001:361).

피해 규모가 심대하고 특별했지만 동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 후 60일인 1945년 10월 5일과 9일을 기해 구호소가 폐쇄되면서 이후의 구호는 개인들의 몫이 됐다. 같은 해 12월에 히로시마의 전재자들이 모여 <히로시마전재자동맹대회>를 개최해 구호를 호소했으며, 곧이어 이듬해 1월에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수용을 위한 <히로시마전재고아육성소>가 개소되기도 했으나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구호 활동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았다. 공습 1년을 맞은 1946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는 소박한 행사가 열렸는데, 그것은 히로시마 시와 <히로시마시전재사물자공양회>가 공동주최한 <전재사물자1주년추도법회>였다(廣島縣原爆被爆者団体協議會, 2001:361).

전주민 중에서도 특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시민들이 문제가 된 것은 의료적, 정책적 측면에서이기보다는 군사 및 과학적 관점에서였다. 연합군의 공습 직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신형무기가 종래의 무기와는 차원이 다르며, 원자폭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처음으로 조사를 벌인 곳은 일본 군부였다(笹本征男, 1995; 17-8).³⁵⁾ 전황(戰況)이 문제였다. 공습 후 이틀째 되던 날인 8일에 소련군이 일본 본토에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미군 또한 이미 오키나와에 상륙해 있었다. 일본군부와 정부당국은 신형무기의 공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쟁을 지속할 것인가의 여부를 두고 대책을

35) 笹本征男(1995)의 같은 책에 따르면 트루먼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투하 후 16시간 만에 내놓은 성명에서 이것이 TNT폭약의 2만 배에 해당하는 신형무기라고 언급했을 때 일본 군부는 <敵性情報>(외국방송을 듣고 기록한 것)를 통해 이 내용을 군부에 회람했다. 일본군과 일본정부는 미국과 영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는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세울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과학적 조사를 동반해야 할 이 군사적 관심은 공습 직후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졌다.

대본영은 8월 8일, 히로시마 시에 대본영조사단을 파견했다.³⁶⁾ 대본영조사단은 8월 10일 조사를 정리하면서 이것이 ‘원자폭탄’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에는 폭탄의 영향이 극히 심대하며 특히 방사선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되는 피해 즉 백혈구가 감소한 자, 외상은 없었으나 폭격 후 1~2일 내 갑자기 사망하는 자 등이 상당하고 원폭 투하 이후에도 중심부근의 토사에서 계속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다는 기록이 담겼다 (笹本征男, 1995: 18). 대본영조사단의 초동수사와 함께 육군성 의무국 소속 히로시마재해조사반의 조사활동도 이뤄졌다. 이 조사반은 군의들로 구성된 것으로 군사전략적 판단을 위한 대본영조사단의 것보다는 일반 시민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일차적 목적이었다. 이들은 원자폭탄의 인체에 대한 효과와 피해의 조사, 신병기의 전상(戰傷)의 연구와 치료방침을 수립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했다 (笹本征男, 1995: 19).

군부의 즉각적인 조치는 학계와도 연결됐다. 전시 중 레이더 기술이나 항공 기술 개발을 비롯해 원자폭탄제조 계획의 실행에까지 군사과학연구개발에 있어 군부와 학계의 긴밀한 연계를 고려할 때(나카야마·요시오카, 2000:21-34), 이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일본 군부는 자체 초동수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학계에 즉각 도움을 요청했다. 육군인 도쿄사단사령부가 8월 6일 도쿄제국대학에 히로시마 조사를 요청하고 해군에서는 8월 7일 히로시마 시에 해군성이 해군히로시마조사단을 파견함과 동시에 오사카제국대학에도 히로시마 조사를 요청, 오사카제국대학조사단이 8월 9일 히로시마 시에 파견됐다. 구레(吳)진수부도 원폭공격 직후부터 히로시마 시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나가사키에서는 8월 10일에 나가사키지구헌병대, 8월 14일에 쿠레진수부조사단이 조사에 들어갔다. 8월 13일, 서부군에서 요청된 규슈제국대학도 조사에 참가했다 (笹本征男, 1995: 19).

일본정부의 조사에서는 원폭투하 직후에 내각을 기반으로 설치된 임시원폭대책위원회가 히로시마 시에 기술원조사단을 파견했다. 기술원은 제2차근위내각의 각의결정 ‘과학기술신체제확립요강’에 근거해 1942년에 발족한 곳이다. 조사단의 결과는 신병기에의 방어대책으로서 신문에 발표됐다. 기술원조사단장으로 히로시마에 파견된 기술원참지관은 8월 8일 히로시마에 들어가 조사하고 8월 10일에 조사결과를 도쿄에 타전했다고 말했다. 기술원조사단장은 “피해상황과 원폭 방사선에 의한 희생, 잔류방사능 등의 조사결과를 보고, 원폭의 방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현 상태로는 조속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정을 밝혔다”고 자신의 보고 내용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 개의 폭탄에 의한 심히

36) 단장은 군의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참모본부의 제2부장이, 단원은 참모본부에서 세 명, 육군성에서 세 명, 육군항공본부의 기술부 한 명, 이화학연구소 한 명 등 총 서른 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의 주체는 육군 기술장교들이었다. 일본 육군은 전쟁 중 ‘2호작전’이라는 원폭개발계획을 개시하고 있었다. 육군 항공본부는 이화학연구소에 원폭개발계획을 위촉했다. 대본영조사단은 이 ‘2호작전’에 종사한 기술장교와 물리학자들로부터 구성되었던 것이다.

거대한 에너지의 발생은 원자의 과열을 이용했다는 것 이외에 현재의 과학상식에 있어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적고 있다 (笹本征男, 1995: 20).

이처럼 초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제민에 대한 구호에 있어 일본 정부의 관심은 다른 도시들의 전제민들에 대한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신형무기로서의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도시와 시민들에 대한 군부와 학계의 관심은 지대했다. 물론 GHQ 점령 직후 군사과학연구개발을 엄격히 금하는 정책에 따라 그 관심이 공식적인 활동으로 전개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제약이 가해졌고,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작업이었으므로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GHQ 역시 점령 직후 일본의 독자적인 원폭개발 관련 연구를 금지시키기는 했지만 원폭의 실제 효과에 대한 연구, 특히 인체 피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일본 측의 전면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실험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의 원자폭탄의 위력과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원폭 투하 결정의 한 원인이었다고 지적될 만큼³⁷⁾ 미국의 군부와 과학그룹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해 기울인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공동조사에 협력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점령 기간 동안의 통치 체제에서 자국의 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좀 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笹本征男, 1995; 나카야마·요시오카, 2000).³⁸⁾

원폭의 인체 효과(영향)에 대한 이 두 국가의 공통된 관심사는 패전을 공식화하고 한 달이 지난 1945년 9월 14일 일본학술회의(JSC, The Science Research Council of Japan)가 처음으로 다수의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원폭투하 후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것에 반영됐다.³⁹⁾ 이 위원회는 의학적 효과뿐만 아니라 건물 손상, 열 손상, 대기효과, 식물 및 야생동물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이 가운데 의학 분야는 츠즈키 마사오(都築正男)⁴⁰⁾ 도쿄대 교수가 담당자가 되었고, 그는 이후 일본과 미국 두 나라의 방사선 인

37) 트루먼 대통령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원자폭탄의 투하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미국과 아시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0-70년대 이후 그에 대한 수정주의적 설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이미 그해 5월에 항복 선언을 하고, 일본에 대한 본토공격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당시 공산주의 진영인 구소련연방이 2차 세계대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중국 및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경고였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의 국내정치적 입장에서는 일본의 민간인 피해에 대해 무심한 관료주의적 결정의 하나로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원자폭탄을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하고, 과학 및 군사적 목적의 실험을 행하고자 했다는 주장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Gusterson(2004:65)을 참조할 수 있다.

38) GHQ 점령기간 동안 일본 정부와 군부가 이 연구에 협력한 것에 대해서는 笹本征男(1995)를 참고할 수 있다.

39) 몇몇의 조사결과를 게재한 <Collection of the Reports on the Investigation of the Atomic Bomb Casualties>가 일본학술회의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1945년 보고 중에는 유행에 포함된 중성자우도 ³²P 방사능의 측정, 원자폭탄의 폭심지 측정, 기상학 데이터, 지붕기와의 열방사에 의해 탄 범위의 측정, 방사성강하물의 측정의 이번 선량재평가활동에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広島市, 2011:155).

40) 都築正男(츠즈키마사오, 1983-1961)은 태평양전쟁 당시 동경제국대학의학부교수면서 해군군의중장의

체 영향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 계획 하에 150명의 연구자들과 천여 명의 보조 인력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파견된다 (Lindee, 1994: 23). 그리고 9월 하순에는 미국의 육군과 해군 그리고 원자폭탄을 개발한 과학그룹인 <맨해튼프로젝트 팀>⁴¹⁾이 일본 연구진과 별도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현지를 방문해 원자폭탄의 영향에 대해 조사해나가기 시작했다. GHQ의 점령기간 동안 이루어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조사의 성격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 있는 Lindee(1994)의 작업에는 당시 이 같은 미국 정부와 군부, 일본 정부와 군부의 관심들이 잘 드러나 있다.

1945년 10월 12일에 원자방사선에의 피폭에 동반하는 생물학상의 급성영향을 연구하는 미일합동조사단(US-Japan Joint Commission)이 조직됐다. 특히 당시의 미국 측의 연구들은 시민방어계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의도로 기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사망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 미국 조사자들은 "치사에 이르는 방사선량을 흡수한 사람을 분별해서 생존가능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사능 피해자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싶어 했으며, 심각한 급성방사선피폭증(acute radiation sickness)이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Oughterson and Warren, 1956:166-73, Lindee, 1994:27 재인용).⁴²⁾ 따라서 조사단의 관심을 실제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폭격 직후 수일에서 수주일 내에 가장 심각하게 부상당한 생존자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러나 폭발로 인한 도시 기능 마비, 모든 의료 체계의 붕괴는 그 같은 정보를 얻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의미했다. 또한 미국 측 조사자들은 '원폭생존자' 인터뷰에서 일본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나이를 세는 법(이 당시 일본에서는 오늘날 한국과 같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 됨)이나 일본식 이름의 알파벳 표기에서 한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등이 연구에 큰 문제를 안겼다. 특히 나이 문제는 유아들에 대한 방사선 영향 연구에서의 정확성을 떨어뜨렸고, 이름 문제는 종단 연구의 시계열 분석을 무의미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Lindee, 1994:29-30).

직책을 맡고 있었다. 전전(戰前) 미국 유학 당시 미국렌트겐학회에서 X선의 토끼에 대한 전신조사실험의 결과를 발표해 미국에서도 주목받았다. 1945년 원폭투하 직후의 미국과 일본 측의 원폭의 인체영향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이후에도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연구에서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41) 이후의 미국의 군부와 과학 그룹의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에서의 원폭조사에 관한 내용은 리처드 로즈의 『원자폭탄 만들기』(2003, 문신행역, 사이언스북스)와 위의 책 모리카·브라운(1988), 笹本征男의 『米軍占領下の原爆調査：原爆被害国になった日本』(1995, 新幹社), Susan Lindee(1994)를 참고할 수 있다.

42) 그들은 피폭증을 겪는 이들이 대부분 심각한 구토와 현기증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증상은 탈모나 출혈반 등과 같은 피폭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나타났다. 놀랍게도 화상과 피폭 사이에는 어떠한 뚜렷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탈모와 출혈반은 확실히 폭심지에서 의 거리와 상관성이 있어 보였다. 조사자들은 때문에 탈모와 출혈반을 고선량 피폭의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그해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 작업을 지속했고, 12월까지 히로시마에서 6,993명, 나가사키에서 6,898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폭격으로 인한 열과 폭풍, 파편 등으로 인해 폭심지에서 1km 이내의 사람 중 87%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내놓았다. 그리고 방사능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당한 이들도 이 그룹에 속한 이들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보고를 마치고 모두 1945년 말 미국으로 철수했고, 이들이 다시 일본에 돌아온 1946년 11월까지 그 공백 기간 동안 일본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미 연구하고 있던 이곳에서 여전히 연구를 지속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와 샘플들은 나중에 미국의 연구자들에게 제공됐다 (Lindee, 1994:32)

한편 미국 조사단은 조사를 마치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알리는 보고와 편지를 보냈다. 1946년 11월, 트루먼 대통령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생존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를 시작하도록 미국과학아카데미에 지시했다. 그리고 1947년 3월 미국과학아카데미는 <미국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에 기금을 얻어 <원폭상해조사위원회>(Atomic Bomb Casualty Commission, 현<방사선영향연구소>(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의 전신, 이하 ABCC 그리고 RERF로 약칭)를 히로시마에 설립하고 곧바로 원폭에 의한 방사선의 인체 영향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RERF, 1999:2). 그와 동시에 미국 측은 일본 측에 공동 조사를 제의해 1948년 3월 일본 후생성국립예방위생연구소(예연)는 히로시마 ABCC에 지소를 두고 미국 측의 연구에 협력하게 된다. 같은 해 8월에는 나가사키에도 ABCC가 설치됐다 (廣島市, 2011:155).

한편 ABCC가 설치될 당시 방사선의 인체영향 및 유전에 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고, 기초적인 지식 등도 어느 정도 수집된 상태였다. 백혈병이나 방사선 기인의 종양이 이미 방사선의 중요 인체 영향이라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수준이 높지 않았고 질병의 정확한 수치나 기전 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는 부족했으며 특히 ‘실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향 연구는 매우 낮은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Lindee, 1994:57). 때문에 당시 ABCC의 연구는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들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실질적인 목표 등을 비롯해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초창기 ABCC 연구와 예산 배분 등의 대부분은 당시 대중적 관심을 사로잡았던 방사선의 유전적 영향에 치우쳤다 (Lindee, 1994:60).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 연구가 갖는 어려움과 신뢰성 확보 등이 문제가 되어 ABCC의 초창기 유전 연구는 결국 폐기된다.⁴³⁾ 대신 1950년 일본의 국세조사를 바탕으로 1955년에 개시한 <수명조사집단연구>(Life-Span Studies, LSS)가 이후 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수명조사집단은 태내피폭자집단, 피폭자2세 집

43) 1955년 열린 프란시스위원회에서 초기 유전연구를 비롯한 연구소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연구계획이 대폭 수정되었고, 이때 초기유전연구가 폐기된다. 이 위원회의 결론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집단조사의 기초가 됐다.

단을 대상으로 인체의 방사선 피폭에 의한 리스크를 추적 조사할 목적으로 '추출된' 이들로 구성되어, 이들에 대한 역학(epidemiology), 통계, 임상, 유전학, 방사선 생물학 연구 등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 집단연구와 더불어 히로시마 시와 현, 나가사키 시와 현의 피폭자 중앙·조직을 등록하도록 해 이곳에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 해석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연구 분야로 떠올랐다 (RERF, 1999:6).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은 ABCC의 활동이 원자폭탄 특히 방사선의 인체 영향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을 뿐 원폭으로 인한 부상자들의 치료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ABCC의 'No Treatment' 정책은 원폭의 실제 영향을 온전히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히바쿠샤를 실험용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는 대표적인 조치였다.

ABCC의 운영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원자폭탄의 생존자에 대한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금을 미국원자력위원회가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 연구의 기금은 일본 원자력협력예산에서 반영됐다. ABCC의 협력기관이 된 국립예방위생연구소가 동경대의 전염병연구소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원자력의 효과와 그 이용 방법은 장래 점점 진보하는 한편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는 단순히 일본 일개의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인류 일반의 복지 및 공중위생의 문제다"라고 했다는 말 (1947년 6월 예연 보고서: 中島龍美, 1988)은 앞으로 이 원폭생존자 연구가 '원자력 시대'에 필요한 방사선의 인체 영향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나카야마·요시오카, 2000:35). 이는 당시 원폭생존자에 대한 미일공동연구의 기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선언과 함께 원자력 정책을 통해 핵의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이와 관련해 방사선 장애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연구를 조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일차적 목적 이었다고 한 지적과도 연결된다 (56년 2월 13일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회의록).

요컨대, 전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생존자에 대한 미일공동연구는 실험이 아닌 실제로서의 첫 생존자 연구로서, 폭격으로 마비된 의료 및 행정 체계와 문화적 차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시작됐지만 그것은 이들에 대한 구호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대신 이 연구들은 미소냉전체제 속에서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둔 미국의 '시민방어계획'이라는 군사적 관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원자력(산업) 시대'를 맞아 예방과 치료 수단 강구라는 차원에서 틀 지워져 나가게 된다.

2) 전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주민 구호의 경과

민간차원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의 특수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곳은 의료분야였다. 원자폭탄으로 인한 인체에의 영향은 일반 공습으로 인한 피해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었다. 일본의료단 히로시마 현 중앙병원은 1947년 4월 처음으로 '원폭증'의 진료를 시작했다. 1948년 4월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원폭이재민구원상담회>(原爆罹災民救援相談會)가 개최되어 히로시마현출신자들로부터 <하와이히로시마전재난민구원회>(ハワイ廣島戰災民救援會)가 결성되기도 했다 (廣島縣原爆被爆者団体協議會, 2001:362).

이 같은 민간 차원의 구호 움직임과 함께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듯 했다. 1949년 3월에는 처음으로 <히로시마원폭재해종합부흥대책협의회>가 동경에서 개최됐다. 당시 히로시마시장이었던 浜井信三은 평화기념공원과 평화기념관의 건립계획 등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특별원호를 요구했다 (廣島縣原爆被爆者団体協議會, 2001:362).

그러나 히로시마 시 행정당국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어디까지나 전재도시 부흥에 관한 것으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원호 등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전재도시 부흥의 문제는 건설성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전재부흥의 일환으로, 당국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기간 중 본토공습으로 인해 약 120개 도시가 피해를 입고, 피해를 입은 가구수도 전체의 20%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根本, 2006:12). 히로시마 시 행정당국의 원폭재해종합부흥대책이 다른 전재도시 부흥계획과 차별화되어 특별하게 취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히로시마 시 행정당국은 종전 직후의 浜井·渡辺 시정(市政) 하에서 원폭피해자를 위해 진정활동과 원대협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원폭피해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취하지는 않았다 (廣島縣原爆被爆者団体協議會, 2001:99).

이에 대해 浜井 전 히로시마 시장은 자신의 회상기(浜井, 1967a:261; 根本, 2009 재인용)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점령 행정 하의 시기에는 주둔군이 원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극히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그 의료나 원호에 대해서조차 저어 하며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방인 히로시마에서는 그러한 냉대 받는 피폭시민을 눈앞에서 보며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독자의 힘으로 처리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만으로도 문제가 너무 커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더욱이 피폭 직후에는 시민전체가 피폭자였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를 쓴다고 한다면 시로서는 이중의 고통이었다.”

浜井시장의 위 발언에서도 읽히는 것처럼, 전재민들에 대한 원호 문제에 일본 정부가 '나서지 않는' 혹은 '나설 수 없는' 상황은 당시 일본에 주둔해 있던 승전국 GHQ의 존재도 한 요인이었다. 특히 전쟁 당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승전국 지도부 소관의 일로 패전국인 일본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었다. 일본 당국은 당시 연합군사령부의 지시로 제국시절의 군사관련 법령을 모두 폐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의 군인연금, 상이군인에 대한 지원,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 하고 있던 모든 보상조치를 중지하고 있었다 (廣島縣, 1986:37).

이 같은 상황에서 전후 일본 사회에서 전쟁피해자와 관련된 원호와 보상 문제가 본격적

으로 제기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강화조약 체결(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951년 9월 8일 조인 후 1952년 4월 28일 발효)을 즈음해서다. 강화조약의 조인을 앞 둔 1951년을 즈음해 연합군의 점령으로 인해 잠복해있던 전후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정치상의 과제로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전쟁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조치는 가장 큰 문제였다 (廣島縣, 1986:37).

강화조약을 앞두고 앞선 조치 등으로 인해 군인연금 등이 폐지되어 생활기반을 잃게 된 유족들이 강력한 보상요구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 정부는 전몰자 등에 대해서 원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최이수, 2003; 안자코 유카, 2001). 1952년 4월 28일 강화조약이 발효되고 연합군이 철수한 뒤인 4월 30일, 일본정부는 즉각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戰傷病者戰沒者遺族等援護法)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무상 사망한 군인, 군속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위로금을, 동일하게 장애자에게는 장애연금, 동원학도, 정용공, 여자정신대, 국민의용대 등 준 군속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게 했다 (廣島縣, 1986:37).

그러나 이처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후 전후 전쟁피해자와 관련된 일본정부의 원호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지만, 이때에도 원자폭탄의 피해자들이 전쟁 피해와 관련된 원호조치를 받을 대상이라는 범주에 들지는 않았다. 당시 원폭으로 인해 다수의 전쟁희생자가 있었던 히로시마 시와 나가사키 시에서는 일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시행정당국 또한 일반의 '전몰상자'를 포함해 '원폭사상자' 조사를 행하고 그 실태를 밝히는 것을 비롯해 이들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원호를 기대하고 있었다 (廣島縣, 1986:37). 그러나 일본정부는 전후보상과 원호법은 군인과 군속, 준군속의 희생자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민간인은 제외되며, 일반 시민으로서의 '원폭장해자'는 다른 민간인 전쟁희생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보상과 원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가 전쟁피해와 관련한 개인 보상의 문제를 '과거에 국가에 의한 고용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그에 준한다고 간주되는 자'에 한정하여, 그 이외의 경우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赤澤史朗, 2006:66-67).

3) 원폭피해자구호의 전환점으로서 비키니 피재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갑자기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12년이 지나서야 일본 정부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일까? 이것의 직접적인 계기는 1954년 3월 1일 마셜군도 비키니환초에서 행해진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근처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던 제5후쿠 류마루(第五福龍丸)에 승선했던 23명의 어부들의 피폭, 일명 '비키니 피재'(ビキニ—被災)로 불리는 사건의 발생이라고 지목된다.

연합군의 점령이 해제된 이후 2년 만에 벌어진 이 사건은 피폭된 어부들의 급성방사능 증 발병과 악화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진 충격적인 사태의 전개, 그리고 또한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참치잡이 어선의 피폭이라는 점에서 곧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탁의 문제로 확장되면

서 <원수폭금지서명운동> 및 <원수폭금지세계대회> 개최 등으로 이어지고 이후 일본 사회의 풀뿌리 반핵 및 평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 같은 원수폭금지 여론의 고양과 더불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의 원호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높아졌다. 비키니 피재 후 결성된 <일본피폭자단체협의회>(이하 <일본피단협>으로 약칭)이 발족 직후 <원폭피해자원호법안요강>을 발표하는 등 원폭피해자의 국가보상을 국가에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그것이 원수폭금지운동의 고조와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등의 지방정부의 움직임과 결합해 원폭피해자 대책을 국가에 요구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竹峰誠一郎, 2008).

그러나 주의할 점은 여기서 계기라 하는 것이 단순히 비키니피재 사건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이 사건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소규모의 지식인과 행정 당국, 피해자 일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던 여러 실천과 표상들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의 중요한 한 결절을 이루면서 증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根本, 2006)가 더 적절해 보인다. 더불어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비키니 피재 사건을 통해 원폭피해자구호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한 방식의 굴절에 관한 것이다.

비키니 피재 사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 우선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구도에서 봤을 때에는 무엇보다 새로 개발한 수소폭탄의 위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민간인이었던 일본 어부들이 피폭을 당해 사망에 이른 것이 분명했다. 원폭 투하의 주체였던 미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피해를 입힌 전쟁의 종결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였다'고 정당화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문제에서는 피해를 당한 이들이 곧 전쟁을 개시한 국가의 국민이면서 패전국의 전제민일 뿐이었다. 때문에 미국은 앞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이 요구한 피해보상에 대해 패전국인 일본은 전쟁과 관련한 어떠한 손해나 보상, 배상도 미국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어 대응한 적이 없었다. 그런 미국 정부가 비키니 피재 사건 후 피폭당한 어부가 사망에 이르자 즉각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책을 마련한 것이다.

신체적 영향면의 피해에 대해서도 다르다는 의견 역시 개진됐다. 비키니 피재 사건이 이슈가 되고 처음 열린 중의원 후생위원회 회의에서는 비키니 피재 사건으로 피폭된 어부들의 상태 등과 관련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질의가 이어졌다 (1954년 3월 22일, 제19회 국회 중의원 후생위원회 회의록 제18호). 이 날 회의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어부들이 수소폭탄⁴⁴⁾의 폭발실험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어 어업활동이 금지된 구역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폭발이 있었던 당시에는 직접적인 외상이 없이 어업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피폭으로 인한 급성방사능증으로 여겨지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44) 같은 회의록에서 보면 당시에는 이 실험에서 사용된 폭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문에는 '원자력 실험'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는 점이였다. 이에 당시 원폭피해자들을 오랫동안 치료해오면서 원자폭탄증 관련 연구에 독보적인 권위를 가졌던 츠즈키 마사오(都築正男) 교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츠즈키 교수는 어부들이 폭탄의 직접 영향권에는 있지 않았으며 또한 실험이 있던 날인 3월 1일부터 13일이나 지난날에 시즈오카 현에 위치한 모항(母港)으로 정상적으로 귀환했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들이 보이고 있는 증세는 확실히 ‘피폭으로 인한 급성방사능증’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원자력 실험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재(灰)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특히 한 어부가 모항 귀환 후 가져온 갑판에 떨어졌던 재의 분석결과 방사성 물질이 다량 발견되었는데, 이 같은 방사성 재를 뒤집어 쓴 채 약 13일 동안 갑판 위에서 어업활동을 하느라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방사성 물질 제거의 일차적 조치도 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피폭 영향을 더욱 강화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그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은 지상 높은 곳에서 폭발해 폭발 순간에 발생한 열과 폭발, 방사능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며 재는 거의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아 그와 관련된 피해는 다행히 적었다고 할 수 있어 이것은 원자폭탄증이라고 할 수 있으나,⁴⁵⁾ 후쿠류마루호의 어부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자폭탄의 폭발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원자력 실험으로 인한 핵분열생성물의 낙진, 즉 방사성 재를 뒤집어쓰게 되어 나타나는 급성방사능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말로서 증언을 마쳤다.

츠즈키 교수의 국회 증언이 있는 후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포 그리고 원자병기의 금지에 대한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피키니 피재 사건 후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원수폭금지서명운동의 시초가 된 동경도 스기나미구(杉並區) 주부들의 움직임은 그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들은 비키니 피재는 원자병기에 의한 일본 국민의 피해이며 또한 그러한 점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은 ‘세 번째 피해’라고 규정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원수폭금지 운동은 일본이라는 국가 수준으로 강조되어 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자병기에 의한 피해자, 곧 원수폭피해자와 방사능에 의한 피해가 초점이 되어 갔다는 점이다. 이는 원수폭피해자 관련 단체의 결성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원폭생존자로서 원수폭피해자들이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원폭피해를 밝히는 것’, ‘원수폭금지’, ‘피해자구원’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그 간의 실천들이 생존자였던 원폭피해자들의 신체로 집약되기 시작한다 (根本, 2006:66-7). "어떤 대표도 아닌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는 실상이 의사나 학자로부터 듣는 것보다 훨씬 원폭의 무시무시함을 느낄 수 있고

45) 都築正男의 이날 회의에서의 발언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재’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비키니 피재 사건이 일어난 1954년 당시의 연구 수준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는 방사능 낙진보다는 원자폭탄 폭발로 인한 빛과 열, 폭발 등이 가장 중요한 피해 요인으로 여겨졌던 만큼 츠즈키 교수의 발언이 의도된 사실 왜곡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원자병기를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원폭피해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등의 발언이 힘을 얻었다 (竹峰誠一郎, 2008). 이처럼 비키니 피재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원폭피해자를 사회적 공론의 장에 끌어들이고, 무엇보다 이들의 신체를 '방사능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된다.

비키니 피재 사건은 또한 일본 국회에서 '히바쿠샤被爆者'라는 용어가 법제적으로 검토되고 상용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는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54년 3월 18일은 피폭된 어부들이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급성방사능증으로 인해 병세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시점이었는데, 이 날 참의원 후생위원회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 (1954년 3월 18일, 제19회 참의원 후생위원회 회의록 18호). 당시 후생위원회 회의의 주요 안건은 소위 전제로 인해 신체에 장해를 입은 '신체장해자'들에 대한 '갱생의료' 관련 법안의 시행과 관련 예산액의 부족 등에 관한 질의가 오가고 있던 중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담당자들에게 의원들은 긴급현안 질의로 비키니 수폭 실험으로 인해 어업환경이 괜찮은지, 방사능의 피폭으로 인한 어산물 피해가 어떻게 등에 대해 주로 물었는데, 이에 대해 草葉隆圓 당시 국무대신은 "방사능이 어장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지만, 일단 이 근처에서 잡은 생선을 시판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피폭당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수준의 주문이 이뤄졌다. 이 날은 일본의 양원 국회 회의록에서 '히바쿠샤'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날이며, 이후로는 이 용어가 급격하게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태의 전개를 굴절⁴⁶⁾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비키니 피재 이후 '폐전국'의 '전재민'이었던 일반의 '원폭상해자'들이 원자병기에 의해 피폭당한 자로서의 특수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집단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과정에서는 특정한 방향이 주목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은 배제시키고 어떤 것은 강조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 이는 특히 비키니 피재와 어떤 동일한 점이 강조되었는지, 또 어떤 것은 배제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비키니 피재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병기 그리고 그것의 피해자로서의 동일성, 특히 그 핵심인 방사능의 피해는 그 동일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비키니 피재를 계기로 부상한 방사능의 공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사회적 매질'의 변화였으며, 원폭피해자들의 운동 방향을 '굴절' 시키는 효과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6) 이 용어의 물리학적 의미는 특정한 에너지 과동이 매질의 밀도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빛이 매질이 변화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바뀌어 진행한다는 것이다.

비키니 피해는 기존의 원폭피해자운동과 방사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피폭과 핵병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명백하게 '반핵'이라는 입장을 취해나가기 시작한다. 또한 방사선의 위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냉전의 긴장 또한 높아지던 시기에 이러한 입장은 결국 핵공격이라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인' 그리고 '일본국'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 같은 '세 번째 피폭', '20세기의 비극', '세계 평화의 출발지', '유일피폭국'과 같은 언설들을 주로 채택한 곳은 일본의 중앙정부보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시즈오카라는 세 개의 현과 '피폭자' 운동 단체들이었다(根本, 2006). 이들은 '일본국' 그리고 '일본정부'가 이러한 언설들에 걸맞는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압박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후 피식민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식민지배와 전쟁 수행에 대한 어떠한 책임에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Todeschini(1999)가 정확히 표현한 바와 같이, "'유일피폭국'이라는 표어를 집어 들으로써" 제국주의 과거를 지우고 국가화된 피해자 담론 속에 안착했다. 전후 미소 냉전체제와 핵안보체제 하에 편입되어 전후 부흥을 도모한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비핵화한 나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강조하고 '평화'를 외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비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비키니 피해 후 원폭피해자들이 중심이 된 반핵 평화운동과 이러한 사회운동의 상징인 원폭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선언들은 일본 정부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가 그러한 선언들에 최소한의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일피폭국'이라는 '피해자적 지위'는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 되었다.

이처럼 비키니 피해는 일본 사회에서 '원수폭 피해' 그리고 그것의 핵심으로서 '방사능의 피해', '피폭된 신체'가 전면에서 등장하고, 일본 정부가 그와 관련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 더불어 원폭투하의 성격과 그 피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의 소재에 대한 논쟁을 공론화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회운동 즉 '원수폭 금지'와 '원폭피해자의 구원' 그리고 '원폭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고 알리는 것' 등이 결합해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원폭투하의 생존자로서 원폭피해자의 '피폭된 신체'와 그들의 '피폭된 삶'은 그 같이 환기된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된다. 또한 이는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과학과 의학적 측면에서는 연구 관심의 대상으로서, 실험적 객체로서의 의미를 가졌던 것 그리고 피해자 자신들에게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사적인 것으로서의 신체와 삶이 공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된 그들의 피폭된 신체와 피폭된 삶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현재 상태를 만들어낸 것으로 지목된 국가와 대면해야 했고, 그러한 대면이 만들어낸 공적이고 사회적인 논쟁의 격랑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발언해야 했다. 원폭의 피해 둘러싼 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너무나 복잡했으며, 무엇보다 원폭피해자들에 대

한 국가 차원의 원호 요구는 패전국인 일본이 스스로 나서서 치른 전쟁의 성격,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 일반의 희생과 피해의 성격, 원폭투하의 국제법 위반 여부 및 그것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둘러싼 논쟁들을 가로질렀다. 일본에서 원폭피해자 구호와 관련된 세 개의 법률 제정 과정은 이러한 논쟁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의 존재가 어떻게 표상되고 그 구도를 구성해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3.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원폭 3법의 성립과 의미

1) 원폭의료법과 원자폭탄피폭자의 법적 정의의 탄생

비키니 피재사건을 계기로 고양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의 원호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많은 수가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움직임을 서두르게 했다. 비키니피재 후 결성된 일본피단협은 발족 직후 ‘원폭피해자원호법안요강’을 발표하는 등 원폭피해자의 국가보상을 국가에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원수폭금지운동을 벌여나가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지방 정부와 함께 원폭피해자 대책을 국가에 요구해 나갔다. 1956년 11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시는 법 제정과 관련된 진정서를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제출하고 이어 『원폭장해자원호법안요강(시안)』(原爆障害者援護法案要綱)을 발표했다. 12월에는 자민당과 사회당의 공동제안에 의한 『원폭장해자의 치료에 관한 결의안』(原爆障害者の治療に関する決議案)이 중의원에서 가결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출한 최종안인 『원자폭탄피폭자의 의료등에 관한 법률』이 1957년 3월 31일 가결됐다. 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廣島縣, 1986:40).

이 법률은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자가 현재 처해 있는 건강상의 특별한 상태에 비추어보아 국가가 피폭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의료를 행함으로써 그 건강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폭탄피폭자의의료등에관한법률』 「총칙」(1957년 3월 31일 공포, 밑줄은 연구자 강조)

건조하게 기술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법률안 마련 담당 부서의 장인 후생대신은 법안 가결을 앞둔 2월 하순에 열린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소화20년(1945년) 8월, 전쟁말기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한 피폭자는 십여 년이 경과한 오늘날 다시 한 번 다수의 요의료자(要医療者)를 헤아리는 한편 일견 건강하다고 보이는 자에게 있어서도 돌연 발병해 사망하게 되는 등 이들 피폭자(被爆者)의 건강상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의사의 정밀한 관찰지도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예측도 하지 못했던 원자폭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국가로서 이들 피폭자에 대해 적절한 건강진단 및 지도를 행하고 또한 불행 발병된 자(不幸發病者)들에게 대해서는 국가로서 의료를 행해 그 건강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긴급필요사라고 생각됩니다.” (제26회 일본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회의록 제11호 中)⁴⁷⁾ (밑줄은 연구자 강조)

새로 제정된 원폭의료법과 그에 대한 후생대신의 해설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원폭피해자와 관련된 법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대두된 이 피폭자 즉 히바쿠사라는 존재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히바쿠사라는 용어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일본 사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단어가 아니었다. 원폭피해자 단체와 반핵운동단체, 평화운동을 추진하는 시민, 지방행정당국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마련되어 법의 기초가 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시의 법안에도 원폭장해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 히바쿠사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법안이 히바쿠사라는 용어를 통해 원자폭탄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법안 속에서 히바쿠사는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로서 그 피해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십여 년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한편 일견(一見) 건강하다고 보이는 자에게 있어서도 돌연 발병해 사망하게 되는 등” 그들이 여전히 “의사의 정밀한 관찰지도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피해의 지속성’ 그리고 그 피해가 의학적 관찰 및 지도의 필요성을 가질 만큼 특이하다는 이른바 ‘피해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의료급부를 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피해의 핵심은 이것이 당시 예측도 하지 못했던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기인한 피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방사능의 피해는 다른 전상(戰傷)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었다.

그러나 방사능의 피해가 모든 전쟁 피해 혹은 전상(戰傷)으로부터의 분리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이 법은 당초 원폭피해자 단체 및 지방행정 당국 등이 요구하고 있던 ‘원호법’이 아니라 ‘의료에 관한 법’으로 이를 제도화했다. 1957년 3월 25일 법률안이 통과된 중의원 회의록을 보면 의원입법을 통해 원폭장해자원호법이 상정되려던 때에 일본 정부가 정부안으로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의원입법이 중지되고 대신 정부가 제출한 ‘의료에 관한 법’으로 대체된다. 이는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원호’라는 단어가 전제하고 있는 국가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공중위생과 복지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원폭의료법은 원폭피해자들의 특수한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이를 복지와 공중 위생의 차원으로 최소화한 다음 그 궁극적인 원인을

47) 일본 국회 회의록 (<http://kokkai.ndl.go.jp/>)

초래한 것으로 지목된 전쟁의 수행자로서의 국가가 져야할 책임과 보상이라는 문제를 빚겨 나가고 있었다. 당연히 원폭의료법 속에는 애초에 원폭피해자들이 요구하던 '원폭장해자의 의료 및 생계의 곤란을 보조'하는 수당도 빠져 있었다. 더욱이 '히바쿠샤'로 인정을 받은 뒤에도 발병해 치료의 필요가 있는 이들, 즉 '요의료자(要医療者)'나 '불행 발병된 자(不幸發病者)'에 대해서만 '국가'가 그 치료를 지원하고, 그 이외의 히바쿠샤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건강진단 및 지도'를 행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의 규모도 대폭 축소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칸다(神田) 국무대신은 첫째는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둘째는 다른 전쟁피해자들과의 관계 즉 불균형이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요컨대 원폭의료법의 제정의 정치적 정당화 과정은 원폭피해자들의 피해가 다른 전쟁피해자들과 구분되는 지점에서만 유효할 수 있었다. 이 법이 이후의 수차례의 재개정 및 폐기, 그리고 새로운 법안으로의 전환 등에서 '원폭피해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다른 전쟁피해자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그 지원 정도를 저울질한 이유다.

2) 사회보장과 국가보상 논쟁 속에서 성립된 원폭특별조치법

원폭의료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등록된 피폭자 중 '요의료자'에 대한 약간의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이 조치는 즉각 반발을 일으켰다. 히로시마시나 시의회 그리고 일본피단협 등은 줄곧 피해자 구호는 '원호'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며, 그 실현 방식으로서 의료수당 지급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원폭의료법 시행 4개월 후에 열린 제3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일본대표단결의' 또한 '의료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충분'하며 '법의 적절한 운용에 의해 "의료법"의 치료 틀을 확대하고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실시할 것', "'의료법'을 발전시켜 치료중의 생활수호 및 치료를 위한 여비, 영양보급의 보장, 장해연금 등을 설치할 것', '원수폭사물자의 유족에 대해 조위금, 생활수단을 잃은 유족에게는 연금의 지급을 입법화할 것' 등을 국가에 대해 요구해 나갔다 (廣島市編, 1983:107). 지방정부들도 원폭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원폭의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1959년 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히로시마 현과 나가사키 현, 히로시마 시와 나가사키 시로 확대된다. 이들은 히로시마 시와 나가사키시가 중심이 되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8자협의회(八者協議會)'의 전신인 '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피폭자의료법개정대책위원회'(廣島·長崎原爆被爆者医療法改正對策委員會)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廣島市衛生局原爆被害對策部編, 1996:109). 일본피단협 또한 1960년 12월에 '의료의 무료화, 생활근공자를 위한 특별원호, 조위금, 사물자연금 등'의 제 요구를 가지고 국회청원을 행했다 (伊東, 1975:191).

사실 이 같은 반발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애초에 이 '의료법'이 원폭투하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것임을 주장하는데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비키니 파재 직후 원폭피해자들이 '쿠나(國), 즉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원폭피폭에 대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일명 ‘동경원폭재판’)은 이 같은 논쟁이 가로지르는 쟁점들을 잘 보여 준다.

당시 원고 측은 소송에서 (1) 원폭투하는 독가스 병기 등의 사용을 금하는 국제법, 헤이그조약에 위반된다, 2) 국제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1)에서 일본정부가 청구권을 모두 방기했으나 피폭자 개인의 권리를 방기한 것은 아니다, 3) 만약 개인의 권리를 방기한 것이라면 국가가 권리침해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일본정부는 원폭의 사용은 국제법위반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1) 원폭은 신병기로서 당시는 그 사용규제를 규정한 실정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국제적인 합의는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헤이그조약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2) 그러한 이유로 원고에게는 가해국이나 가해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3) 패전국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한 전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법률 이전의 추상적인 관념론에 지나지 않는다, 4) 다른 일반전쟁피해자와의 균형이나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⁸⁾ 등이었다 (廣島市衛生局原爆被害對策部編, 1996:125).

그리고 1963년 12월 이 재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동경지방법재판소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화조약으로 방기된 것으로서 기각되었으나 원폭의 투하는 국제법위반이라고 해석했다 (廣島市衛生局原爆被害對策部編, 1996:126). 그 이유로는 1) 기존의 국제법규 해석 및 유사적용에 의해 당연히 금지되지 않으면 안됐다는 것, 2) 국제법상 무방비도시에 무차별폭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공격은 무방비도시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점, 3)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에의 원폭투하는 전쟁에 있어 불필요한 고통을 주었다는 점, 4) 비인도적인 무기는 적을 해하는 수단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을 들었다. 또한 판결에서 국가(피고)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⁴⁹⁾

“...불행하게도 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국가도 되도록 피해를 적게 하고 그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전쟁재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과책임에 기반한 국가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 본건에 관한 것으로서는 ‘원자폭탄피폭

48) 이 일반전쟁자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부에 있어서 이 이후에도 계속 발견된다. 동경원폭재판의 판결후인 12월 11일 중의원본회의에서 판결의 결과를 받은 피폭자원호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한 당시 池田勇人 수상은 “...원자폭탄에 관한 동경지방법재판소의 재판관의 발표에 대해서는...원자폭탄에 대한 피폭자의 의료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설치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그리고 피폭자, 이른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중략)...직접피폭을 받은 사람, 모든 관계자에 대해 조치는 전쟁희생자전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제45회 특별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회의록 7호: 根本, 2006: 96 재인용)

49) 昭和三〇年(七) 第二九一四号, 昭和三二年(七) 第四一七七損害賠償請求併合訴訟事件 「判決」

자의 의료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 정도의 것으로는 아무래도 원폭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원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국가는 스스로의 권한과 스스로의 책임으로 개시한 전쟁에 의해 국민의 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상해를 입혀 불행한 생활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그 피해의 심대함은 도저히 일반전쟁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피고는 여기에 비취 충분한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 다언을 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및 행정부인 내각에서 결과를 내놓아야 할 일'이며,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 국가에 있어서 국가재정상 이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이 판결이 내려진 다음해인 1964년 3월 중의원본회의는 <원폭피폭자원호강화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廣島市衛生局原爆被害對策部編, 1996:126-7)

동경원폭재판의 판결과 국회에서 의결을 지켜본 히로시마 시와 나가사키 시 행정당국, 일본피단협 등은 원호법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과 진정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벌여나갔다. 히로시마 시는 1964년 4월 시의회를 중심으로 시의 임원들과 학자 등을 위원으로 한 히로시마시의회원폭피해자원호강화대책협의회(강대협)를 설치했고(廣島市衛生局原爆被害對策部編, 1996:129), 일본피단협도 재판판결이 나온 12월에 원호법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을 행했다 (中國新聞社編 1985:190-1).

민간단체인 일본피단협 뿐만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와 현 등 지방정부도 특별조치법안을 호소하며, 민관합동 체제가 완성되면서 중앙정부에 피폭자원호대책의 강화추진을 요구하는 <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피해자원호대책추진협의회>(약칭, <八者協>)가 발족했다 (廣島市衛生局原爆被害對策部編, 1996:133).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진정과 일본피단협 등의 원호법제정운동이 고양되는 것을 배경으로 정부에 의한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원폭특별조치법)안이 1968년 5월 국회에서 성립, 공포됐다.

이 법률은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의 영향을 받아 지금 특별한 상태에 있게 된 것에 대해 의료특별수당의 지급을 강구함으로써 그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폭탄피폭자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법률>(1968년 5월 20일 공포)

이 원폭특별조치법의 취지를 당시 후생대신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자폭탄의 피폭자에 대해서는'원자폭탄피폭자의의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의료의 급부, 건강진단 등을 행하여 그 건강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현재에 질병에 이환되는 등으로 인해 다른 일반국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지출을 하지 않

을 수 없는 사람 등, 특별한 상태에 놓인 피폭자에 대한 시책으로서 의료의 급부 등의 건강 면에 착목한 대책만으로는 충분치 않고.....그 특별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제58회 일본 통상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회의록 제19호)

이처럼 원폭특별조치법은 원폭의료법이 히바쿠사들 가운데 발병한 이들을 중심으로 의료를 행하는 것에 그쳤다면 그에 더해 여러 가지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두 법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동시에 존재한 것이 특징이다.⁵⁰⁾ 원폭특별조치법이 수당과 관련된 만큼 후생성의 원폭피폭자대책관계 예산은 1967년 28억 엔 남짓이던 것이 1968년도에는 43억 6천만 엔으로 1.8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원폭특별조치법은 당초 수당지급에 있어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⁵¹⁾을 두었다(廣島縣環境保健部原爆被爆者對策課編, 1986:249). 또한 원폭특별조치법 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소득제한이 엄격했기 때문에, 수첩을 받고서도 이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시행 초기에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피폭자단체나 히로시마 시는 특별조치법에 국가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특별조치법이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원호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강대협, 일본피단협, 일본원수협 등은 국가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피폭자원호법 제정 운동에 더욱 힘쓰기로 하였다. 1970년에 일본피단협은 ‘원폭피해자원호법안을 위한 요구골자’를 발표했다(伊東, 1975). 당시까지의 원폭피해자 운동에서 내세운 여러 요구의 총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골자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호쇼-”(三つのほしょう)⁵²⁾를 들었다. 이는 (1) 미국의 핵투하, 핵피해은폐, 핵피해이용, 핵군축전쟁개시의 책임을 규탄하고 일본정부의 전쟁책임, 전후책임을 추궁해 피폭자의 과거의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것 (과거의 보상), (2) 피폭자의 현재 당면한 건강, 생활, 정신적 고통에 대응하는 보장을 할 것 (현재의 보장), (3) 피폭자, 일본국민에 대해 “히로시마·나가사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ヒロシマ・ナガサキをくりかえさせぬ)는 노력의 보장을 하라는 것 (미래의 보증)이었다. 이 골자를 기본으로 1974년 3월 사회, 공명, 공산, 민사의

50) 특별조치법은 원폭의료법을 계승해 특별수당은 원폭의료법에서 정해진 인정피폭자가, 인정을 받은 질병이나 상해에 관해 현재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월액 1만 엔이 지급되는 것이었다(제2조). 건강관리수당은 특별피폭자 중 후생대신이 정한 조혈기능장애, 간장기능장애 등의 질병에 관련된 것으로 (1) 65세 이상인 자, (2) 후생대신이 정한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자, (3) 모자세대주 중 해당되는 자에게 월액 3000엔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제5조) 의료수당은 원폭의료법에서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이후에는 특별조치법에 기초해 지급되는 것으로 됐다. 개호수당은 인정피폭자 및 특별피폭자가 후생대신이 정한 특정한 질병과 관련해 의사가 개호의 필요를 인정하고 개호를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었다.

51) 연령제한은 1971년에는 60세로 낮아졌고, 1972년에는 55세로 완화되었다가 1975년에 완전히 철폐된다.

52) ‘3개의 호쇼-’는 한자로는 서로 다르지만 일본어에서 동일하게 ‘호쇼-’로 발음되는 보상(補償), 보장(保障), 보증(保證)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과거와 현재, 미래와 관련된 것으로 적용시켜 요구의 골자를 표현하고 있다.

야4당은 '원자폭탄피폭자원호법안'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됐다.

“우리나라의 전쟁희생자에 대한 원호는 군인, 공무원 이외에 군속, 준군속 등 국가와의 고용 관계 혹은 일부 특별권력관계에 있던 자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원폭이 투하된 소화 20년 8월, 이른바 본토결전의 단계에서 비전투원과 전투원을 구별해 처우하고 원폭에 의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피폭 후 29년간 살아온 이들 30여만 명의 피폭자와 사몰자의 유족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심정을 생각할 때 국가보상의 정신에 의한 피폭자원호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제72회 일본 통상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회의록 제14호)

그러나 이러한 국가보상의 요구에 대해 당시의 후생대신은 (1) 원폭피해자는 당시 국가와 어떠한 신분관계도 없다는 점(신분관계론), (2) 원폭피해자라고 해도 다른 일반전재자와의 균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균형론)이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온 주장을 이유로 원폭피폭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부정했다 (根本, 2006).

3) 손진두 소송의 의의와 원폭원호법의 국가보상적 성격의 한계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이른바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문제를 두고 불거진 '손진두 소송'에서 가장 극명하게 전개됐다. 1970년 12월 부산에 거주하던 손진두가 사가(佐賀) 현으로 밀입국해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다. 1971년 후쿠오카에서 출입국관리령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손진두 씨가 후쿠오카 현을 상대로 피폭자건강수첩을 신청한 것이 각하되자, 1972년 이들은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수첩재판이라고도 불리는 이 소송은 1972년 10월 2일 부산에 거주하던 손진두 씨가 원폭증의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밀입국한 뒤 체포되었다가, 일본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후쿠오카 현 지사를 상대로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신청했다가 각하된 것을 계기로,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후쿠오카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을 말한다. 수첩 교부 각하가 결정되었던 1972년 7월 14일 일본 후생성은 '원폭의료법의 취지는 법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지역 사회와의 결합관계(거주관계)가 있을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손진두의 일본국내 체류 사실은 동법이 예정하고 있는 거주 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당신에게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진두가 후쿠오카 현에 신청한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각하하면서 시작된 것이다.'⁵³⁾

53) 물론 이 수첩 신청이 각하될 것은 4장 2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미 한국원폭피해자의 수첩 교부 각하

재판에서 원고인 손진두 측의 변호인은 "원폭의료법은 1945년 8월 6일, 9일에 피폭자가 가지게 된 일본국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법의 취지가 그러한 이상 피폭된 모든 인간이 국적, 현재의 거주 장소 기타 일절 차별 없이 동법이 정하는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이 소송은 1978년 3월 30일 최고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 번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

판결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자폭탄의 피폭으로 인한 건강상의 장애는 전쟁이라는 국가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폭의료법은 "원폭과 같은 특수한 전쟁피해에 대해서는 전쟁수행의 주체였던 국가가 스스로의 책임에 의하여 그 구제를 피한다는 일면이 있고, 원폭의료법은 실질적인 국가 보상적 배려가 제도의 근저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원폭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인정하였다. 즉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이 소위 사회보장법으로서의 다른 공적 의료급부입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보상적 배려 또한 제도의 근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것이 "피폭자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우위법이 된 이유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자폭탄의 피해에 의한 건강상의 장애가 역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하고 심각한 것이라는 점과 함께, 관련된 장애가 전쟁이라는 국가의 행위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것이며, 더욱이 피폭자의 다수가 지금 현재까지도 생활상 일반의 전쟁피해자보다도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져있다고 하는 사실을 빠뜨릴 수 없다"라고도 기술하고 있다 (최고재판소 소화53년 3월 30일 제1소법정민집 제32권 2호 435쪽 참조)

손진두 소송에 있어 일본 사법부의 이 같은 법률 해석은 곧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종전까지 이 법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던 일본정부는 이제 이 법의 "특수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국가 보상적 배려'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국회는 즉각 원폭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법의 개정안이 "원자폭탄피폭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79년(소화54년) 1월 정부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심의회는 "금회의 개정안은 국회의 부대결의에 따라 제수당의 중액을 비롯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본심의회가 지적해 온 바에도 불구하고 피폭자에 대한 제도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 아직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 있어서는 원자폭탄피폭의 특수성에 관해 전문가에 의한 권위 있는 조사를 설치해, 1978년 3월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손진두소송)의 취지를 토대로 조속히 이 문제에 관한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현행2법의 재검토를 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답신한다.

이에 대해 후생대신은 1979년 6월 동경대학 명예 교수 2인, NHK 해설위원, 동북학원대

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예상된 바였다. 즉 이 수첩 신청 자체는 소송을 위해 준비된 것이기도 했다.

학교수, 전최고재판소판사, 전프랑스대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총7인)으로 구성된 「원폭 피폭자대책기본문제간담회」(原爆被爆者對策基本問題懇談會)를 발족시켰다. 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전쟁피해로서 원자폭탄피폭이 갖는 특수한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즉 원폭피폭자 대책의 '기본이념'이었다. 1980년 12월 11일 후생대신에게 제출된 의견서는 이와 같은 고민을 잘 담아내고 있다 (廣島縣, 2011:22-26).

대체로 전쟁이라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비상사태라는 것에 있어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등에서 그 전쟁에 따른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은 전국가적인 전쟁에 의한 "일반의 희생"으로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정치론적으로 국가의 전쟁 책임 등을 운운하는 것은 물론 법률론으로서도 개전, 강화 등과 같은, 소위 정치행위(통치행위)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및 법률상의 책임을 추급해 그 법률적 구제를 구하는 등은 개시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原爆被爆者對策基本問題懇談會가 1980年 12月 11日 후생대신에게 제출한 「懇談會 意見書」 중에서)

그런데 <간담회> 의견서에서 보이다시피, 일본 정부는 손진두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앞서 일본의 피폭자운동단체들이 원폭특별조치법의 국가 보상적 성격을 인정하라는 것을 부정한 것과 동일한 논리로 여전히 이 '국가보상'의 논리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손진두 소송에 있어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이 '국가 보상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는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 적용되었을까.

(전략) 그렇다면 원폭피폭자대책은 어떠한 기본이념에 근거해 행해져야 하는 것일까. 종래 정부는 현행 원폭2법에 의한 대책은 다른 일반전재자에 대한 대책과의 균형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인지 특별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견해를 취해 왔다...(중략)...최고재판소의 판결에도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종래 국가에 의해 취해져온 원폭피폭자대책은 원폭피해라고 하는 특수성이 강한 전쟁손해에 착목한 일종의 전쟁손해구제체제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를 단순히 사회보장체제로 생각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원폭피해자의 희생은 그 본질 및 정도에 있어서 다른 일반 전쟁 손해와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갖는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원폭피폭자에 대해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국가보상의 견지에서 피해의 실태에 대응하는 적절타당한 조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原爆被爆者對策基本問題懇談會가 제출한 「懇談會 意見書」 (1980年 12月 11日) 중에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간담회는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일본 국민의 희생은 매우 광범위했고, 모든 국민이 그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많은 적든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했으나 그 같은 희생 중에서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에 있어서의 원폭투하에 의한 피폭자의

희생이 "극히 특수성이 강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 법이 국가보상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이 국가보상의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쟁의 개시 및 수행에 관해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거나, 원폭피폭자가 위법한 원폭 투하를 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강화조약에 의한 방지에 대한 대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차 전쟁의 과정에 있어서 원폭피폭자가 받은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즉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그 원인행위의 위법성, 고의, 과실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결과책임으로서, 전쟁피해에 상응하는 "상당의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간담회의 여러 제안과 관련해 논란 속에서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다가, 고령화의 진행 등 피폭자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및 현행의 시책을 발전시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 강하게 요청되면서, 1994년 12월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피폭자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원폭의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법안에는 1980년에 간담회에서 제출했던 '국가 보상적 배려'에 관한 기본 이념들이 충실하게 기술됐다. 그러나 이미 간담회에서 예견되었다시피, 이 법에서 '국가 보상적 배려'는 여전히 "국가의 책임에 있어 원자폭탄 투하의 결과로서 생겨난 방사능에 기인하는 건강피해가 다른 전쟁피해와는 상이한 특수한 피해"라는 점에서 그것을 구제해야 한다는 요구에만 한정된다.

이처럼 전후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근간이 된 원폭의료법, 원폭특별조치법, 원폭원호법은 '국가 보상적 배려'에 근거해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 보상적 배려'는 전쟁 수행의 주체로서 전쟁의 불법 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생겨난 이른바 '전쟁손해', 그 중에서도 '방사능의 피해'라는 특수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 속에 세워졌다. 이는 전후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전쟁피해와 관련한 개인 보상의 문제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에 대한 논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전전의 국가가 치른 전쟁의 위법성을 논하지 않으며, 전쟁에 임하는 국민 일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따라서 전쟁의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한 것이다. 赤澤史朗(2006:66-67)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발상은 전시중의 일본국가와 전후 일본국가의 국가로서의 연속성만을 중시하여 국가보상의 대상을 전쟁 전 국가와의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에게 한정하는 것으로, 이는 전후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부정하고 '평화'를 내세웠지만, 보상이나 실질적인 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그러한 내용인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⁵⁴⁾ 일본의 원폭피해자

54) 赤澤史朗(2006)는 이러한 물질적 보상이 정신적 위사(慰謝)로서의 '위령' 추도와도 대응관계에 있다고 지적하는데, 일본정부의 이 같은 전후보상 방식으로 인해 국가에 의해 특별히 보상받은 군인, 군속의 유족으로부터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에 대한 국가보조요구나 야스쿠니신사 국가수호라는 특별한 정신적

구호정책의 역사는 이처럼 전후 일본의 헌법은 전쟁을 부정했지만 전후 개인보상정책은 그와 달리 전쟁을 벌인 전전(戰前) 국가를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순된 입장 속에 서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4. 소결: 일본에서 ‘히바쿠샤’의 정치사회적 의미 구성

본 장에서는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수립되기 이전의 ‘원폭생존자’ 조사와 구호 활동 속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피폭’과 ‘히바쿠샤’라는 용어가 비키니피해를 계기로 전면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원폭3법의 성립과정을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는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반핵평화운동단체나 원폭피해자단체들이 사용하던 ‘원자폭탄피해자’나 ‘원폭환자’, ‘원폭피재자’, ‘원폭장해자’ 등과 같은 용어가 아닌 ‘원자폭탄피폭자’, 즉 그 단어를 줄여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히바쿠샤’라는 단어를 특정했다. 원폭의료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히바쿠샤’라는 용어가 일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히바쿠샤’라는 용어는 적어도 이전까지의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구성원 범주(membership category) 혹은 새로운 자격의 범주(new categories of entitlement)가 탄생했음을 의미했다.

일본 원폭피해자구호 정책에 있어서 새로이 탄생한 이 ‘히바쿠샤’의 범주에 대해서 Petryna(2002, 2004)의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의 개념을 통해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피해도 아닌 ‘원자폭탄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 지원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권리와 지위를 한정해 특정한 법적,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의미하는 범주로서 ‘원자폭탄피폭자’는 신체적 상해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의학적, 과학적, 법적 기준에 근거한 사회 복지의 한 형태로 요구하는 것(그러나 제한적인 접근)이라고 정의한 Petryna의 ‘생물학적 시민권’ 개념으로 비유될 수 있다.⁵⁵⁾ 그런데

보상 요구가 제기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후보상 문제는 야스쿠니신사 문제와 대응연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후에 있어서 여러 전몰자 ‘위령’추도의 대항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결부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전후(戰後) 일본에서 ‘국가’가 나서서 수행한 전쟁의 성격에 대한 논란과 모순 속에서 그 전쟁에 목숨 바쳐 헌신한 ‘개인’(특공대)의 ‘위령’ 추도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애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영진(2012)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55) 소비에트체제의 붕괴 이후 독립국가가 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독립국의 시민이 된 이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맞게 되었다.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체제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소련체제의 체르노빌 관리 정책을 “인종학살법”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의회는 소련체제의 체르노빌 관리 정책을 폐기하고 이 재앙을 다루는 것을 그들의 국가와 국제적 정당성을 얻는 핵심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시민들의 ‘피폭된 신체’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국가’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다. 그러나 Petryna의 이러한 생물학적 시민권 개념은 Rose(2006)의 그것과는 다르다. 현대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자기-정체성self identity와 자기-레짐regime of the self의 변화에 주목한 Rose는 기존의 국민국가의 틀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시민

Petryna가 '시민권'을 기존의 국민국가와 시민 관계라는 한정된 용어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리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의무임과 동시에 배제 혹은 박탈을 부여하는 특정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자격의 범주', 그리고 '구성원 범주'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히바쿠샤' 범주의 경계 설정은 좀 더 설명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현재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은 확실히 아래로부터 수렴되어간 측면이 강하다. 원수 폭병기 반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 구호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원폭피해자 구호의 제도화는 힘을 얻었다. 특히 1950년대 초중반 한국전쟁을 즈음해서 전후 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핵무기 개발 경쟁에 따른 대기중 원수폭 실험에 대한 일본 사회의 경각심은, 패전 후 별다른 전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던 일본 정부가 유일피폭국이라는 도덕적 당위 속에 원폭피해자구호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폭피해자 구호와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비키니 피재를 계기로 고양된 반핵평화운동과 결합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신체'는 이 운동에서 중요한 사회적 실천의 매개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의 문제는 '위험에 처한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국가의 목적과 곧바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일본정부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의 문제는 식민지배와 전쟁 수행의 주체로서, 전전(戰前)의 국가 행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패전 후 그 같은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던 기존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즉 원자폭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주의 경계를 한정 짓는 행위는 전전의 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전제하는데 이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맥락 속에 놓여 있었다.

전후 일본 사회에서 전쟁피해자와 관련된 원호와 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1951년 9월 8일 조인 후 1952년 4월 28일 발효)을 즈음해서다. 강화조약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전몰자 등에 대해서 원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1952년 4월 28일 강화조약이 발효되고 연합군이 철수한 뒤인 4월 30일, 일본정부는 즉각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무상 사망한 군인, 군속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위로금을, 동일하게 장해자에게는 장해연금, 동원학도, 징용공, 여자정신대, 국민이용대 등 준 군속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게 했다. 또한 이 법에는 국적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전쟁의 손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반드시 과거 전쟁을 수행한 주체로서 국가와의 고용관계가 있는 이들에게만 한정된다는 신분관계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처럼 샌

권 차원의 논의이기 보다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장과는 점점 해리되어가는 세계 시장 속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종의 생물학적 소비주의(biological consumerism) 논의로 분류한 Cooter(2008)의 지적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본 연구 사례인 일본의 원폭피해법은 원폭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Petryna의 생물학적 시민권 논의와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 (Adriana Petryna, 2002, 2004; Cooter, 2008).

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후 전후 전쟁피해자와 관련된 일본정부의 원호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지만, 이때에도 원자폭탄의 피해자들이 전쟁 피해와 관련된 원호조치를 받을 대상이라는 범주에 들지는 않았다. 미국은 앞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이 요구한 피해보상에 대해 패전국인 일본은 전쟁과 관련한 어떠한 손해나 보상, 배상도 미국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어 대응한 적이 없었다. 비키니 피재 직후 원폭피해자들이 ‘쿠니(國), 즉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원폭피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일명 ‘동경원폭재판’)은 이 같은 논쟁이 가로지르는 쟁점들을 잘 보여준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화조약으로 방기된 것으로서 기각되었으나 원폭의 투하는 국제법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원폭피해자의 “피해의 심대함은 도저히 일반전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피고는 여기에 비취 충분한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 다언을 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국가가 행한 전쟁 수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전쟁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이른바 수인론(受忍論)을 내세우고, ‘원자폭탄의 피해’는 극히 ‘특수한 피해’라는 점을 강조해나갔다. 즉 이는 역으로 ‘특수한 피해’로서 원자폭탄의 피해는 언제나 ‘일반의 피해’와의 균형 속에서만 보상되고 지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히바쿠샤 특수주의’의 저울질 과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이 과정은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해 새로 제정된 원폭원호법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혹은 그 후에 신체에 원자폭탄의 ‘방사능 영향을 받을 만한 사정 하에 있었던 자”, 즉 ‘히바쿠샤’의 ‘신체적 상해’가 그 피해를 지원하는 것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실제 원폭피해자 구호정책에서는 ‘원자폭탄의 특수한 피해로서의 신체적 상해’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설정해야 함을 의미했다.

한편 원폭피해자구호의 정치적 민감함은 일본의 국내적 차원이 아니라 한 때 ‘대일본제국’에 속해 있었으나 현재에는 국적도 다르고 거주하는 영토도 다른 ‘옛 신민들’과의 탈식민지적 관계 속에서 더욱 강화된다. 1970년대에 진행된 손진두 소송과 현해탄을 넘어 일본으로 밀항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는 전후의 일본 정부가 전전의 대일본제국이라는 국가를 맞닥뜨리게 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일본 정부는 그간 회피해왔던 ‘옛 피식민국의 신민’의 존재, 즉 한국과 대만, 중국, 북한 등지로 귀환한 원폭피해자들, 그리고 전후(戰後) 생계를 위해 브라질이나 미국 등지로 이민 간 일본 국적의 원폭피해자들, 그리고 전쟁 당시 유학이나 포로 등으로 끌려와있다가 자국으로 송환된 미국이나 영국 등지의 원폭피해자들을 직시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히바쿠샤’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일본의 영토적 경계 안에 거주하거나 일정기간 거주할 것을 명시하는 행정관료제적 규칙을 만들어내, 일본의 영토 바깥에 거주하는 과거 피식민국의

‘신민’과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을 배제해 나갔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자는 3장에서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히바쿠샤’의 범주가 구성되어가는 과정의 과학과 관료제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영토적 경계,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토적 경계가 만들어낸 정치적 배제와 포섭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히바쿠샤 범주의 경계 구성

1. 히바쿠샤 범주의 법적 경계 구성

1) 히바쿠샤의 법적 정의

2007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랫동안 일본정부가 위법한 행정적 조치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일제시기 미쓰비시 히로시마조선소 등에 징용됐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평택지부 회원 46명이었다. 일본에서 이들의 소송을 도왔던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원고들에게 이 결과를 설명하고 위자료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소송에 참여했거나 재판을 도왔던 여러 명의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자리에 모였고, 거기에 처음 온 듯한 노인 한 분이 자리를 잡았다. 갖가지 서류를 담은 노란 봉투를 소중하게 들고 다니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를 가리키며 한 회원이 연구자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저 사람도 히바쿠샤(被爆者)야?"

연구자는 그 노인이 그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들었어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은 그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인지는 몰라도 일본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히바쿠샤는 아닐 것이라는 어조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연구자는 그렇게 질문을 했던 이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인 즉 본인이 소송관계로 일본에 자주 오가면서 병원에도 자주 입원을 했는데, 한번은 척수를 뽑아 '무슨'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서 본인은 방사능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처럼 직접 폭탄 투하되는 것을 보고, 등 전체에 화상을 당한 '히바쿠샤'가 방사능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영향을 받은 것이냐며, 그 검사라는 것도 그렇고 과학이라는 것도 모두 엉터리라고 열변을 토했다.

아마도 여기서 그가 말한 '무슨' 검사라는 것은 피해증명서나 증인, 증언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로 피폭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달리 척수 세포의 DNA 변형 정도를 보아 피폭 당시 어느 정도의 방사능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행정적 심사 및 의학적 진단을 거쳐 피폭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생물학적 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피폭 당시의 증인이나 상황 진술, 각종 증명서 등에 대한 행정 심사가 피폭자 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절차다. 어쨌든 원자폭탄을 맞은 것이 확실한 그로서는 자신에게 방사능의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는 그 연구결과는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연구자의 머릿속에서 그 황당함은 곧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연결됐다. 일본 정부

로부터 인정을 받은 '진짜 히바쿠샤'인 그에게 정말 방사능의 영향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의 말처럼 방사능의 영향을 측정한다고 하는 그 검사가 엉터리였던 것일까? 만약 방사능의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방사능 영향을 받을 만한 사정에 있었던 이들로 규정된 원폭원호법의 지원 대상으로서 '히바쿠샤'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 또 그 검사가 '엉터리'가 아니고 그렇게 정확한 검사라면 왜 그것을 전면적으로 피폭자 지위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수단으로서 채택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히바쿠샤란 누구며, 누가 어떤 기준에서 그들이 히바쿠샤임을 결정하는가?

1957년에 제정된 원폭의료법은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원폭피해자원호법의 뿌리로서 "히바쿠샤"(被爆者)에 대해 "연 2회의 건강진단에 의한 건강관리, 건강진단에 의해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밀조사의 실시, 원폭의 방사능에 기인하는 장애를 가져 후생대신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는 의료의 급부가 행해질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⁵⁶⁾ 그리고 이 "의료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히바쿠샤'는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은 자다"(제2조)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히바쿠샤'라는 개념에 법적이고 표준적인 정의를 선언한 원폭의료법의 제정은 이것이 단순히 특정한 형태의 어떤 인구집단에 대한 수사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의 경계 짓기(boundary-work)(Gieryn, 1983:792)가 아니라, 국가가 이들에게 공인된 법적 자격을 부여하고 한계를 지움으로써 관련된 여러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을 구체화하고 정당화하는 경계 짓기를 의미했다 (Lynch, 2004:165).

또한 이 법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이라는 것은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수첩'(手帳, 테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히바쿠샤가 방사능의 영향 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자라고 규정된 것은 '테초 혹은 수첩이 있어야 히바쿠샤'라고 하는 의식과도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만나는 일본 시민운동가들은 이들에게 '히바쿠샤인가 아닌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질문들은 대개 "원폭피해자라 하더라도 테초(수첩)가 없으면 아직 히바쿠샤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첩을 받아야 한다"라거나 혹은 "수첩을 받아서 히바쿠샤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연결된다. 또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시 외곽에서 원폭투하 당시 떨어진 낙진을 맞아 방사선의 영향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히바쿠샤가 아니라 '겐바쿠타이겐샤原爆体験者' 즉 '원폭체험자'라고 칭한다.⁵⁷⁾ 그들은 아직 수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원폭체험자'들은 정부에 자신들에게도 히바쿠샤 자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수첩을 받지 않은 사람 혹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히바쿠샤가 아니라는 이런 인식들은 히바쿠샤는 단순히 원폭피해자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공식적 자격을 취득

56) 의료급부의 내용은 시행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히로시마시현, 나가사키시현 등에서 매년 발간하는 원폭피폭대책사업요람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2011년도 히로시마시의 요람은 다음과 같다. 広島市社会局原爆被害対策部, 2011, 『原爆被爆者対策事業概要』, 広島市.

57) 広島黒い雨連絡協議会, 2012, 『黒い雨』

한 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첩은 “그 사람이 원자폭탄 피폭의 생존자인지를 판명하는 증명서의 일종”으로 “법적으로 그 개인의 원자폭탄 피폭의 경험을 인증”(Yoneyama, 1999:93)하는 것이다.

히바쿠샤의 자격을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은 자로 제도화시킨 이 지점은 그 이전까지 국가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해왔던 원폭피해자들이 이제 지원의 대상이 되고, 국가는 국가가 제공할 자원들을 수급할 자격의 범주를 구성하고 통제하는 좀 더 강력한 주체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피폭된 신체라는 상태가 아니라 수첩이라는 관료제적 증명서가 히바쿠샤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국가는 이 수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즉 히바쿠샤의 경계를 만들고 통제하는 행정관료적 주체로 등장한다. 이제 이 행정관료적 주체로서 국가는 법적 정의와 행정적 실행 규칙, 관료제적 심사 절차 등을 통해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자로서 히바쿠샤를 인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첩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원폭의료법은 이어서 그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격의 범주도 제시하고 있다. 이 범주는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폐기 그리고 새로운 원폭피해자원호법 제정 과정에도 그 기본 정의는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는데, 여기에서 그 대상은 크게 네 종류로 분류됐다⁵⁸⁾ (被爆者援護法令研究會編, 2003:160).

- 1호. 원폭투하 당시에 히로시마 시 혹은 나가사키 시의 구역 내 혹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 이 두 도시의 인접 구역 내에 있었던 자 (이들을 직접피폭자라 부른다)
- 2호.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계산하여 정부 시행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앞에서 규정된 구역 내에 있는 정부 시행령에 정해진 구역에 있었던 자 (입시피폭자)
- 3호. 앞에서 규정된 사람 이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혹은 그 후에 신체에 원자폭탄의 방사능 영향을 받을만한 사정 하에 있었던 자 (구호피폭자)
- 4호. 피폭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사람의 당시 태아 (태내피폭자)

이 법안에서 직접피폭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서 원폭이 작열하는 순간 그 영향을 직접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입시피폭자와 구호피폭자라 함은 원폭 투하 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그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원폭투하로 인한 잔류방사선에 영향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방사선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당시 태아, 즉 방사선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역과 시기 안에 수태되어 있던 태아가 태내 피폭자로 인정된다. 그런데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법적 규정에서 피폭자는 방사능 영향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의 기준은 ‘구역 내’ 혹은 ‘기한 내’라고 되어 있다. 이는

58) <원자폭탄피폭자의의료등에관한법률 제2조> (1957년 3월 31일 공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히바쿠샤가 방사선량이나 피폭량 등과 같은 수치가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통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장소와 시간이 방사선 영향의 지표가 됨을 의미한다.

가령 히로시마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이 법안 시행 당시에는 피폭 당시 폭심지(爆心地)에서 5km 이내 혹은 후생대신이 지정한 구역 내에 있었던 사람(직접피폭)과 원폭 투하 후 2주 이내에 폭심지 2km 내의 지역에 들어갔던 사람(입시피폭), 그리고 사체처리 및 구호 등에 종사한 사람(구호피폭) 및 그들의 태아(태아피폭)에게 히바쿠샤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기한 내'라 함은 두 도시 모두에서 원폭 투하 후 2주 이내로 결정됐다. 또한 이 중 2호에 해당하는 입시피폭자는 원폭 투하 당시에는 없었지만 구호나 사체처리, 혹은 가족친지 등을 찾기 위해 원폭투하 후 2주 이내에 폭심지를 중심으로 2km 반경 이내의 구역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廣島縣, 2011:30).

2) 히바쿠샤 범주의 시공간적 경계 구성

히바쿠샤를 규정하는 법적 규정은 행정적 실행 과정 속에서 피폭 당시의 지점이라는 시공간적/물리적 경계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 가운데 피폭의 시공간적 범위에서 원폭투하 당시 폭심지로부터의 거리, 즉 피폭지(被爆地)와 폭심지간의 거리라는 조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부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변수로서, 이는 지금도 피폭자들의 원폭증 인정 여부 등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 그런데 피폭 당시의 폭심지와 피폭지 사이의 거리라는 이 시공간적 경계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들의 피폭선량 추계(推計)라는 과학 연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과학 연구가 히바쿠샤 경계의 구성에 있어 어떤 식으로 결합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많은 경우 과학은 정책적 의제를 정당화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이야기된다. 이는 히바쿠샤의 경계 구성에 있어 과학 연구가 미친 영향을 묘사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히 적절하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피폭의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 연구는 전쟁 직후부터 이루어져왔다. 물론 이것이 원폭피해자들의 구호 및 의료 지원과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가 이후 히바쿠샤의 신체적 상해를 다른 전쟁피해자들의 그것과 구분하는 주요한 정당화 근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일반의 전쟁피해' 혹은 '전상(戰傷) 과는 현저하게 다른 '특수한 피해'에 대한 과학 연구의 진행은 '피폭' 즉 '방사선의 신체 영향과 관련된 특정한 개념이나 분류체계들을 탄생시키고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과학 연구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제약이 있고 그러한 제약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연구 관심이 경도되기도 하고, 그러한 관심에 따라 상황에 맞는 연구 결과들을 생산해낸다. 이는 전후 일본에서의 원폭의 인체 영향 연구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폭의료법이 제정되던 시기의 방사능의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연구는 상당 부분 ABCC로 대표되는 사실상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미일공동연구에 기반하고 있었다. 일본의 개별 연구자들이나 의사들의 임상 진단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아니지만, GHQ 점령기의 원폭 관련 연구에 대한 통제로 인해 일본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및 발표, 회람 등이 규제됐고, 연구나 자료의 많은 부분이 미국 측으로 넘겨졌다(笹本征男, 1995; Lindee, 1994; 모니카·브라운, 1988). 일본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방사선 영향 연구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진척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폭의료법 제정 초기에 ABCC에서 이루어진 과학 연구의 결과들과 몇몇의 개별적 연구들이 거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⁵⁹⁾

중요한 것은 당시 이러한 연구들이 개별 피폭자의 신체에 대한 생물학적 진단 방식을 통해 선량을 평가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방사선의 만성적 영향 연구나 치료 등에 있어서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방사선 치료 관련 권위자였던 츠즈키 마사오(都築正男) 동경대 교수가 1956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의 일본의 방사선 관련 의학 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뭘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의 어떤 나라도 방사선에 의한 만성적 영향 및 그것의 치료 방면에 있어서 발전이라는 것은 '제로'입니다. 일본도 '제로'고 미국도 '제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결론은 '제로'입니다. 만약 지금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장해자들에 대해 연구가 되어 0.0001이라도 플러스가 되면, 그것이 세계 제일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본에서 이 방사선의 치료와 관련된 방면에서 플타임으로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만해도 일개 개업의로써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도쿄대 교수라고는 해도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직입니다. 제가 아무리 방사선 치료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걸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일본은 이 방면에 반드시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만들어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해나가게 해야 합니다 (1956년 11월 26일 일본 국회 참의원 본회의 회의록).

이처럼 원폭의료법이 제정되던 시기의 과학 연구가 '피폭'의 인체적 영향을 밝히는 데 있어서 '방사선량'의 생물학적 진단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당시 연구가 가진 한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에 노출되며, 그것이 인체에 어떠한 정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별하는 것이 이들 과학연구의 핵심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러한 한계를 보완해야 했다.

결국 당시 연구 수준에서 개별피폭자들이 쏘인 방사선량은 미국이 이미 진행한 핵실험에서 얻은 물리적인 방사선량 데이터에 준거하게 된다. 폭심지에서의 거리에 따른 선량 추

59) 이와 관련된 연구 프로그램들을 아래의 표에 정리했다.

정이 당시의 연구수준에서는 동원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인체에 대한 피해 연구로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생존자들이 처음이었으므로, 그들이 가정한 선량과 그에 피폭된 생존자들의 증상을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즉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생존자들의 증상이 선량에 따라 미리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피폭된 신체적 상태나 증상을 통해 방사선량의 영향 정도 혹은 그 관계가 탐구됨을 의미했다.

연구자들은 피폭자의 생존율, 증상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존자

시설	원폭상해조사위원회(ABCC 1947년) (재)방사선영향연구소(방영연, RERF, 1975년)로 개편 히로시마적십자·원폭병원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방의연·치바 1957년) 히로시마대학의학부및원폭방사능의학연구소(히로시마대원의연 1961년) 히로시마원폭상해대책협의회건강관리센터(히로시마원대협 1953년)
조직	원자폭탄후장해연구회(1959년) 일본방사선영향학회(1959년) 원폭상해증조사연구반(1980년)

표 1 원폭 후장해연구에 직접 관계하는 주요시설 및 조직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함)
(출처: 広島県福祉保健部保健医療局, 2007:20)

시설명	프로그램	대상자수	조사 개시
방영연(ABCC)	피폭자		
	수명조사	110,000	1950
	병리학적조사	70,000	1961
	성인건강조사	20,000	1958
	태내피폭자조사	2,800	1956
	피폭자의 자녀		
	사망률조사	77,000	1960
	유전생화학적 조사 세포유전학적조사	45,000 33,000	1975 1967
히로시마대 원의연	피폭자사망조사	269,000	1968
	피폭자가족조사	87,000가족	1976
	근거리피폭자조사	600	1973
	피폭자쌍둥이조사	460조	1980
	피폭자2세조사	12,000	1986
	혈청코호트조사	9,700	1990
히로시마 원대협 건강관리센터	원폭피폭자건강진단의 실태조사	150,000	1968
	피폭자건강진단미진단자조사	14,000	1971
	피폭자건강진단내용의 검토	2,000	1973
	당뇨병역학조사	110,000	1963
	위암발병률조사	110,000	1964
	폐암발병률조사	110,000	1976

표 2 주요 원폭후장해연구 프로그램
(출처: 広島県福祉保健部保健医療局, 2007:20)

들이 피폭 당했을 당시 폭심지와 거리, 자세, 차폐물, 피폭 직후의 증상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이것을 폭심지(ground zero)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7개의 동심원이 그려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지도에 그려 넣어 생존자들의 피폭지점을 도면화했다 (Lindee, 1994:27). 기존 핵실험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도 폭심지로부터의 거리가 2Km가 넘으면 피폭선량은 모두 수 센티 그레이, 그리고 2.5Km 이상 멀어지면 원폭방사선은 제로라고 설정됐다.⁶⁰⁾ 8개의 방사선도 지도에 추가됐다. 이로서 어떤 지점이든지 폭심지로부터의 거리(동심원)와 방향(방사선)에 따라 특정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도면은 생존자들의 패턴을 묘사하고 생존자들의 피폭량 정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됐다 (Oughterson and Warren 1956, 462-64).⁶¹⁾

1950년 시행된 국제조사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피폭자에 대한 대규모 집단 조사에 들어간 ABCC의 수명조사집단 연구는 히바쿠샤의 과학적 경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특히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됐다. ABCC의 주요연구집단인 수명조사집단(LSS)은 원폭 투하 당시 호적의 소재지(본적)가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 시였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1) 폭심지로부터 2km 이내에서 피폭당한 기본군 피폭자 전원으로 구성된 중심그룹(근거리피폭자), 2) 폭심지로부터 2km~2.5km에서 피폭당한 기본군 전원, 3) 앞의 중심그룹(근거리피폭자)과 연령과 성별이 일치하도록 '추출된' 1950년대 전반에 히로시마 혹은 나가사키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원폭당시에는 시내에 있지 않았던 사람, 4) 원폭 당시 시내에는 없었으나 원폭 후 60일 이내의 입시자와 그 이후의 입시자를 포함시켰다. 이 수명조사집단 연구에 따르면 폭심지에서 2km에서 피폭된 경우 이 집단의 50%가 급성방사선증에 의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1950년대 후반 당시까지의 연구결과였다. 폭심지로부터 2km 이내라는 기준은 급성방사선증 그리고 심각한 피폭의 영향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⁶²⁾ 원폭 투하 이후에 이곳에 진입한 미국 측 연구자들은 원자폭탄의 대인살상력 효과의 판정이라는 군사적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만큼, 폭탄의 초기 폭발력과 치사(致死)에 이르는 선량을 규명하는 것(Lindee, 1994:25-26)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와 같이 원폭의료법 시행에서 히바쿠샤의 범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 피폭 당시 폭심지

60) RERF의 기본 선량 추계에 따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모두 폭심지에서 1km에서 4500밀리 시버트, 2km에서 100밀리 시버트로, 원자력위원회는 100밀리 시버트를 인체영향의 안전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RERF의 1999년 요람에는 잔류방사선에 대해 꽤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물론 잔류방사선은 폭탄 폭발 후 1일째 전체 잔류방사선의 80%, 2-5일째에 약 10%, 그리고 6일째 이후에 남은 10%가 방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61) 이 면접조사에 기초해 방사선에 의한 급성사망(피폭 후 약 2개월 이내 사망)자가 집단의 50%에 해당하는 선량을 LD50(50%치사선량)이라 명명했다. 히로시마에서는 1~1.2km, 나가사키에서는 1~1.3km 정도에서 피폭당한 사람의 약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했으며, 그들의 골수 선량이 2.7~3.1Gray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62) 이 거리 변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부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 변수로서, 이는 피폭자에 관한 과학연구 뿐만 아니라 원폭의료법 제정 초기의 '특별피폭자'제도 그리고 지금은 '원폭증' 인정 여부 등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被爆者援護法令研究会編, 앞의 책. p.170

로부터의 거리라는 시공간적 경계가 원폭피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일차적 요소로 고려는데 있어 과학연구는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ABCC/RERF의 과학 연구들은 히바쿠사의 법적, 행정적 경계를 만드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상호구성적 요소(Jasanoff, 2004:3)로서 그 자체가 '히바쿠사 원호 복합체'(Hibakusha health-care complex)(Todechini, 1999)의 한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된다.

3) 히바쿠사 범주에 관한 초기 논쟁

그렇다면 히바쿠사의 범주를 결정하는 이 같은 시공간적 경계가 히바쿠사를 판별하는데 있어 이후 안정적인 지표로서 정착하게 되었을까. 전술한바와 같이 정책의 장에서 법률적 용어를 통한 표준적인 정의의 선언이 관련된 여러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정책적 대상의 범주와 그 자격에 대한 명문화된 경계 짓기는 사실 언제나 격렬한 논쟁에 맞닥뜨리게 된다.⁶³⁾ 하물며 히바쿠사의 경계와 같이 그 범주의 설정, 즉 경계 짓기가 완전하지 않거나 혹은 안정되지 않은 과학적 주장들에 근거하고 있을 때, 사회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학적 주장에 기반한 강한 도덕적, 정치적 요구와 주장들은 그 경계를 허물거나 재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한다. 즉 이 명문화된 경계 속에서 만들어진 자격의 범주와 관련된 여러 주장들은 끊임없이 협상되며,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계의 성격에 대해 공적 논쟁의 장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공적인 논쟁의 장 속에서 각각의 주장들은 도덕과 윤리, 정의뿐만 아니라 과학과 지식으로부터 정당화 근거를 찾는다.⁶⁴⁾

여기서 법률 제정 초창기의 논란 하나를 검토하는 것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볼 수 있다. 1957년 3월 25일, 법안 가결을 앞둔 중의원 회의에서 히바쿠사의 네 종류와 관련해 흥미로운 질의응답이 오갔다. 당시 이 법안의 심사를 담당했던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瀧井義高 위원이 3호에 해당하는 피폭자의 범주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2호의 '기한내'라는 의미가 2주라는 답을 들은 뒤 3호에서 규정된 "앞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또는 그 후에 신체에 원자 폭탄의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정 하에 있었던 사람"의 문구에서 '그 후에 신체에 원자 폭탄의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정 하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었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폭의료법 제정의 계기가 된 비키니 피재 사건은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한 핵무기 개발경쟁 속에서 일어났고, 연이어 영국이 원수폭실험 대열에 뛰어들어 그로 인한 방사능 낙진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

63) Michael Lynch, 2004, "Circumscribing expertise: Membership categories in courtroom testimony" in Sheila Jasanoff ed.,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social order*; Routledge.

64) Lynch, 앞의 논문. p.163; Jasanoff, S., 2004, "The idiom of co-production" in S. Jasanoff ed.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social order*; Routledge.

에 민감해 있던 때였다. 瀧井義高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그 후에’라는 범위를 물은 것이다.

이에 당시 山口 후생대신은 이 법률의 목적(제1조)에 분명히 “히로시마시 및 나가사키시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피폭자라고 운운하고 있으므로” 8월 6일 및 9일의 원자 폭탄의 투하, “그 사건 이외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는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을 “무한대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하와 직접 관련해서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후생대신의 이 말은 일단은 범조문 내에서는 논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瀧井義高 위원은 ‘방사능의 영향을 받을 만한 사정 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면 마땅히 그 이후의 히바쿠샤들에 대해서도 법률은 그 구호를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는 다음 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모든 원수폭의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만이 아니라, 피폭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만 한정시킬 경우 그 증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와 연관되는 문제였다.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태내피폭자도 문제가 됐다. 원폭의료법은 제정 당시부터 직접피폭자, 입시피폭자, 구호피폭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당시 수태자에 한해 그 자격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이후에 피폭된 이들에 대한 인정 요구였다. 질의에 나선 카즈오 의원은 “(피폭) 후에 수태된 태아가 백혈병이 걸려 상당히 앓다가 사망한 실례”를 들며, 이들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후생대신은 이것이 “유전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방사능의 유전적 영향에 대해서는 당시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후 학계 특히 유전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답한다. 카즈오 의원은 다시 이에 대해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설이라는 것은 진짜 정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만 병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학설이 정말 완전한 정설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자꾸자꾸 사망해가는 피폭 후에 수태된 태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학설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정치를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성(省)에서 그러한 태도로 그것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는 정말 현실의 예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분에게 조사를 받도록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법안은 지금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에 즉시 그러한 것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1957년 3월 25일, 일본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회의록)

그러나 카즈오 위원이나 瀧井義高 위원의 주장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 법안 의결 당시의 이러한 초기 논란은 실질적으로 히바쿠샤를 규정하는 어떠한 법적/물리적 경계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은 그저 하나의 소란과 같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태내피폭자 문

제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외의 히바쿠샤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원호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폭의료법에서 규정된 히바쿠샤의 경계는 매우 견고한 형태를 띠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초기 논란은 이 히바쿠샤의 경계가 과학 혹은 학설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나 쉽게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침식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상태로 남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마리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카즈오 의원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법률적 규정이 근거로 하는 학설, 즉 과학적 판단의 속성은 정치적 혹은 정책적 판단의 논리와 윤리를 규정하는 속성과는 다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 의견이 정책적 판단을 단순히 정당화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 두 영역이 균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한다.⁶⁵⁾ 학설로 대표되는 과학의 논리와 정치의 윤리는 언제나 상호 보완적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히바쿠샤들에 대한 과학연구는 신체에 대한 보통의 연구들이 갖는 일반적 한계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 연구가 갖는 특수한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ABCC의 초창기 연구를 과학사라는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Lindee(1994)는 이 무명의 생존자에 대한 과학 연구에 초점을 두어 그 특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이들은 과학자들이나 의학 분야의 연구에서 코드 번호나 사례, 개체, 피폭된 정도로 분류된 기준 등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과학 연구에서 하나의 무명의 자료일 뿐이다. 그녀는 ABCC과 같은 과학연구들이 생존자들의 고통을 하나의 과학적 사실로 만들어 내는 것을 라투르의 '번역'으로 해석한다.

이제 이렇게 '번역'된 과학 연구의 결과들은 정책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통용되는 사용 가능한 공공지식을 만들어낸다. 생존자들에게 그들의 몸에 몇 십년간에 걸쳐 천천히 보이지 않는 내적(역학적) 변화를 '일으킨 혹은 일으킬 그 무엇'은 과학 연구에 의해서만 가시적이고 실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생존자의 고통이 과학적 사실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새로운 강력한 언어는 과학 연구에 한정된 곳이 아닌 다른 먼 곳의 작업자들의 손으로 넘어 간다. 그리고 그 언어는 특히나 히바쿠샤의 경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해석되고 사용된다.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 상황에서 이 히바쿠샤의 경계를 만드는 과학의 언어들은 특정한 권위와 신뢰성을 내포하거나 주장하는데 사용된다. 히바쿠샤라는 경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그리고 그 히바쿠샤 내에서도 '특별'한 어떤 이들을 구분해내어 그 경계를 정당화하거나 부정할 때 특히 이 과학의 언어가 핵심적으로 등장한다. 경계를 부정하거나 논박하거나 혹은 자신들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는 입장에 서있는 다른 사람, 그리고 그것과 완전한 대척점에 위치한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에 필요한 과학을 소환한다 (Lindee, 1994:256).

65) 과학적 의견과 정책적 판단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다음 절에서 '특별피폭자'와 '원폭중' 그리고 '원폭 체험자' 범주를 통해 그 경계의 구성과 침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와 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라투르가 과학자의 작업을 '번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이 '번역된 텍스트'가 항상 실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생존 자들에 대한 과학 연구가 이들의 피폭의 경험을 완전하거나 완결된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번역 작업과 제한적이고 마찬가지로 왜곡될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 '히바쿠샤의 범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과학연구 혹은 그것의 결과로서 생물학·물리학·의학적 지식 또한 정책의 장으로 편입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제약들이 내재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에 대한 연구들 중 피폭의 규모, 그것의 체내 영향 정도의 측정과 관련된 각종 과학 연구들이 갖는 한계 내지 불충분함과 관련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폭된 신체 그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일본 자체 내의 연구들이 원폭투하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후에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같은 연구들이 특정한 조건과 전제를 기반으로 한 방사선량 추계에 기초해야 했다는 점은, 히바쿠샤의 법적/물리적 경계들이 논쟁될 때 과학 연구들이 끊임없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소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과학의 언어들이 히바쿠샤의 경계 통제, 즉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은 자'를 가리는 관료 제적 통제 과정에서는 거의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과학의 언어가 정책의 영역, 혹은 행정관료제적 실행 과정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의 제약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피폭된 신체에 대한 과학 연구가 가진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이 히바쿠샤의 경계를 통제하는 것이 과학과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히바쿠샤의 기억과 기록들에 의존하게 된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과 기억이 과학 연구와 끊임없이 대조되거나 결합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히바쿠샤 범주의 경계 통제

1) 히바쿠샤 인증에 있어 과학적 방법의 한계와 제약

특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구성원에게 특정한 호칭 혹은 타이틀을 부여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확실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인 한편 엄격한 자격증명과 행정적 심사 등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한 자격의 통제 또한 동시에 수반한다. 히바쿠샤의 경계를 구성과 통제라는 측면에서 나누어보면 전자가 원폭피해의 '실재'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과정이라면, 통제는 그 법적 규정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고 판별하는 행정적 절차를 수반한다. 히바쿠샤라는 자격의 범주의 탄생 또한 경계의 구성이라는 측면과 '이 경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은 모두 원폭의 피해 혹은 피폭의 피해라는 것이 관료제적 체제 속에서 재구성되고 정의되며, 실천됨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인용한 瀧井義高 위원과 카즈오 위원, 그리고 山口 후생대신의 질의응답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피폭의 시공간적 범위를 한정하는데서 오는 논란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증명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히바쿠샤라는 새로운 법률적 범주의 탄생 또한 누가 피폭의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피폭의 범위에 따른 자격의 문제와 그 같은 범위 안의 히바쿠샤를 어떻게 식별해낼 것인가라는 증명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도대체 어떻게 누군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정해진 구역내' 그리고 '정해진 기한내', 그리고 태내피폭의 경우는 '그 당시에 수태된 것'을 증명할 것인가? 새로운 자격의 범주로서 제도화된 히바쿠샤의 경계 짓기에서 피폭된 신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된 신체'를 증명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앞 장에서 잠시 언급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독립된 우크라이나에서 시민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은 피폭량의 형태로 계량화됐다. 의회는 소비에트체제 하에서 마련된 기존의 방사능 위험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폐기하고 더 낮췄다. 새로운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피폭방사능량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실험실 앞에 줄을 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법률에서 규정된 피폭량을 알고 싶어 했으며,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사회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궁핍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를 부추겼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독립 과정에서 체르노빌의 사고지역을 미국과 유럽의 여러 모니터링 체계, 실험 대상으로 개방하면서 물자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받아 들였고, 인구 중 상당수가 그에 의존했다. 가난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상은 아주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었으며, 피폭량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 (Petryna, 2004:260).

하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의 경우는 피폭량이 히바쿠샤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원폭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일본 정부가 히바쿠샤의 자격을 부여한 방법은 당시 이들이 공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행정 기록(이재증명서)이나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의 증명, 본인의 구술 등이었다.⁶⁶⁾ 왜 방사선의 피폭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된 히바쿠샤의 자격 증명이 생물학적 진단이 아닌 행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을까?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엇보다 원폭의료법 제정 당시의 과학적 연구의 부족 혹은 이 법이 생물학적 진단이 정확하게 들어맞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에 발의됐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⁶⁷⁾ 그러나 '피폭자'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생물학적 진단이 될 수 없었던

66) 被爆者援護法令研究会編, 앞의 책, p.200

67)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을 진단하는 중요한 방법은 염색체 이상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문제는 염

것은 이러한 과학적 진단 수준의 미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방사선 영향의 신체 영향 자체에 내재한 불확실성에도 기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츠즈키 교수가 만성원자폭탄증이라 부르며 방사선의 신체 영향에 대해 언급한 바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묘사가 나온다.

(방사선 영향의) 후기에 있어서는 각종 장애가 생겨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에 특수한 양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리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원자폭탄의 상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특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폭탄을 맞은 사람이 그 후 몇 년을 지난 후에 호소하는 특징이 전혀 없는 여러 증상을 일괄해서 ‘만성원자폭탄증’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는 주로 제1차 방사선의 피해에 의해 신체의 여러 장기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 중도 이하의 방사선병을 겪었으나 다행히 회복했거나 혹은 방사선병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위 잠재성방사선병자였던 사람, 현재에는 대체로 건강해 일정 업무를 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평시에 쉽게 피로해진다고 호소하는 등 업무에 대한 흥미 내지 의욕이 적고, 위장장애 특히 설사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며, 건강한 이와 병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도 특별한 이상소견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호소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만성원자폭탄증(약칭, 만성원폭증)을 겪는 이들 중에는 제1차 방사선 이외에 유도방사선 특히 체외유도방사선의 영향과 원자핵분열과편의 작용의 복합적 영향 하에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들 방사선의 작용은 극히 미세하지만 그 미치는 영향의 기간이 극히 길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생물학적 작용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都築正男, 1954).

학술적으로 만성원자폭탄증이라고 불린 이 증세에 대해 일반의 원폭피해자들도 비슷하게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일명 ‘부라부라병(비실비실병)이 그것이다. “어쩐 일인지 몸이 나른해지면서 어찌할 수가 없다. 힘을 내자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몸을 움직이려하면 움직여지지 않는다. 권태감이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몸둘 바를 모르고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상이 주기적으로 신체와 마음을 엄습해 1~2주간 지속된다”(郷地秀夫, 2007:48)와 같은 표현들이 이 ‘부라부라병’을 묘사한다.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부라부라병’이라는 말로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 증세를 묘사하곤 한다. “항상 몸에 힘이 없고, 누울 자리만 찾는다고 할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다. 그때는 그게 왜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다”라거나, “그 당시에는 집안 식구들이 나한테 ‘가을병’ 한다고 했다. 지금은 그게 ‘원폭증’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가을

색체 이상 검출 방식들의 문제점은 피폭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피폭자에 대한 생물학적 진단 등이 체르노빌 등 비교적 최근 사고에 대한 조사에 활용되는 이유다. (RERF, 앞의 책, p.25)

만 되면 밥도 못 먹고 기운도 없고, 위장이 나빠 조금만 먹으면 체하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오래 갔다”라는 식의 설명들이다.

이렇게 일찍부터 원자폭탄으로 인한 상해가 급성의 방사선증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만발성 병증들을 일으킨다는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원자폭탄의 후장해 연구는 일본 학계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중요한 점은 방사선의 인체영향과 후장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도 “방사선으로 인한 특이한 증상이 있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질병과 완전히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 방사선에 기인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원폭으로 인한 병증이라는 것은 병증 그 자체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피폭집단을 상정해 고려해 본다면 “집단 중에 발생하는 질병의 빈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그러한 질병은 방사선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 후장해는 “고도의 통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그 존재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 되어 버렸다 (重松逸造外, 2007:10).

문제는 ‘특징이 없다는 것이 그 특징’이며, ‘건강한 이와 병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 이 ‘만성원자폭탄증’이나 ‘부라부라병’이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에 이르러서다. ‘피폭된 신체’ 그 중에서도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일반적인 병증’과 구분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일반적인 병’으로 진단되기에 ‘애매하고 잠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에서 누군가 ‘진짜 히바쿠샤인가 아닌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의 ‘신체’나 그 신체에 대한 ‘과학적 진단’ 혹은 ‘의학적 진단’ 자체는 크게 유효한 수단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원폭의료법 제정 당시에 이들의 피해가 일반의 전상(戰傷)과 분리되는 지점에서만 유효했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고 보니 당연히 실제 범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과학적 혹은 의학적 진단을 통해 히바쿠샤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큰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히바쿠샤의 증명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안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던 비키니 피재 사건을 전후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편만해진 국제사회와 일본 내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관료제적으로 수렴됐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원폭의료법이 제정되던 시기는 비키니 피재 이후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한 경쟁적인 대기 중 원폭/수폭 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이 전 세계로 퍼져 방사능에 대한 공포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있던 상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폭의료법이 의회에서 심의되던 1957년에는 영국이 크리스마스 섬에서의 핵실험을 막 마친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폭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졌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들뿐만 아니라 방사능 낙진에 의한 피폭이 일본 사회에서 주목받던 때였다. 앞 절에서 ‘피폭’의 시간적 범위의 한정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던 瀧井義高 위원은 그것이 ‘히바쿠샤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제와 연관된다고 보았다.

瀧井義高 위원: 제가 최근에 도카이무라 문제라든가 교토의 후시미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출했습니다. 후시라도 (피폭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어떤 사람이 도카이무라에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혹은 나가사키에서 받은 것인지, 히로시마에서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중략)...하물며 지금과 같이 쌀이라든가 차라든가 음료수, 야채 등과 같은 것에 소련이나 미국 혹은 영국의 크리스마스 섬에서 있었던 실험 등이 일본이라는 이 나라의 산야에 방사능 비를 내리게 하고 있는 실태에 이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들의 육체에 미치는 방사능의 영향이라는 것이 나가사키에서 받은 것인가 히로시마에서 받은 것인가라는 것은 완전히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예요. 그 인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곤란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나간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걸. 불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 법률은 모든 것(피폭자)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山口 후생대신: 瀧井 선생의 생각하시는 바는 단순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한 영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방사능의 영향을 전부 이 법률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신데, 저회로서는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아니며...(중략)...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식이 되어버리면 이것이야말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957년 3월 25일, 일본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회의록)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瀧井義高 위원은 이 법이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을 다른 피폭자와 구분해내는 것, 즉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신체에 원자폭탄의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정 하'라는 것을 확대해 모든 '피폭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물론 이 같은 의견은 예산상의 문제 등을 포함해 고려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되었지만, 山口 후생대신 또한 이 '피폭자'의 인정 여부를 "과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면 현재 그 후의 실험에 의해 방사능물질이 세계에 널리 퍼져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고, 구별할 필요도 없지 않나", 즉 "과학적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구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과학적 인정과는) '다른 증명법'을 취해 그것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2) 기억과 기록: 히바쿠사 인증의 행정관료제적 변형

후생성은 이 히바쿠사 증명문제를 과학적 진단이나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행정 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증명서 위주의 진단 방식으로 제도화시킨다. 후생성이 처음 제안한 이 '다른 증명법'은 당시에 피폭자였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 제안했다. 범시행과 관련된 통지에서 이 문서로는 1) 당시의 이재증명서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앞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경우 당시의 서간,

사진 등의 기록서류, 3) 그것이 없는 경우 시정촌장 등의 증명서 등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됐다 (被爆者援護法令研究會, 2003:200).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원폭으로 서류가 소실되었거나 분실됐기 때문에 그 서류를 모두 준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한 “엄중하게 말하면 아무래도 확실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누가 그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두 명에게 증명받는 식으로 해서 도도부현 지사에게 인정을 받는 방법”(山口 후생대신)을 채택하기로 한다. 후생성은 앞에 열거한 사항과 더불어 그 어떤 종류의 서류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제3자(3촌 이내의 친척 제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被爆者援護法令研究會, 2003:200).

하지만 이 기록이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증인 또한 원폭생존자의 피폭자 여부를 가리는데 한계가 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히바쿠샤'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증명 방식은 당연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행정 절차에서 증명과 심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빈틈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는 공습으로 인한 관련 자료의 소실 또한 컸던 것이 이 같은 빈틈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서류나 증인에 바탕한 이러한 히바쿠샤의 자격 증명 방식은 증인이나 증명 서류가 없는 '진짜' 히바쿠샤들의 경계 넘기를 제약하는 요소가 되었는데, 瀧井義高 위원이 지적한 '진짜 피폭자'를 선별하지 못할 수 있는 결함을 더욱 늘리는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 瀧井義高 위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실은 제가 지금 한 가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가사키의 한 조선(造船)회사의 직공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건물의 수리를 위해 그 조선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갔다. 그런데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리를 하러간 사람이 모두 죽어버렸다...(중략)...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또 우연히 한 사람은 살았다 할 때는 증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거기에 과학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서 증명을 하는, 백혈구의 수라든가 뭐라도 증명을 할 방법을 의학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건강수첩을 받을 방법이 없는, 신청을 하려거나 혹은 증인을 두 명 붙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그 신빙성이라는 것이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누구라도 두 명만 데리고 오면 된다면 이것은 생활자금도 빌리고 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아무래도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 사정(査定)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극히 엄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피폭자'(本當の被爆者)가(심사에서)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가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瀧井義高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서류도 혹은 증명해줄 2인의 제3자도 없는 경우는 흔하게 있었다. 이에 대해 행정 통지에서는 본인 이외의 자가 가진 증명서나 본

인의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 및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했다. 이제 기록과 증인이라는 증명 방법은 '진술서' 즉 기억의 발화된 상태로서 활자화된 문서 기록이라는 '또 다른 증명법'과 결합했다.

실제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증명서뿐만 아니라 1945년 8월 6일과 9일, 혹은 그 이후 2주 이내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특정한 지역 내 특정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의 증명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 이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폭격 당시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다른 사람의 설명이나 증언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증명법들은 '진짜 히바쿠샤'라는 진실성을 구축하는 요소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기억과 기록 그리고 신체가 서로 얽히면서 각각 서로를 구축해내고 판별하는 요소들이 되어 간 것이다.

이제 히바쿠샤의 증명, 즉 히바쿠샤라는 경계를 통제함에 있어 문서형태의 기록과 기억은 피폭된 자 즉 이들의 신체를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형태로 서로 강하게 결합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있었다는 기억을 묘사하는 진술서는 그것을 평가할 만한 기록에 준거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피폭의 지점이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만약 이들의 기억이나 기록이 이미 신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의심할 여지없는 진실한 것이 된다. 켈로이드와 같은 화상 흔적이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 '그 이는 진짜라고 하는 말로 묘사되는 것은 역으로 기록이나 기억에 비해 신체가 가진 확실성을 보여준다.

신체화된 기록이 아니더라도 기억은 그것이 공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일 때 그 진실성이 더욱 강화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연구자가 만난 이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히바쿠샤'이건 아니건 이 공간을 폭심지와외의 거리로 환원해서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고, 도시 곳곳에 위치한 기념물에도 거리라는 하나의 단일한 표준적 측정치로 표지되는 것들이 이를 반영한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라는 두 도시의 공간은 이제 폭심지를 중심으로 그려진 동심원 위에서 펼쳐진다.

마찬가지로 이 기록과 기억은 과학 연구와도 다시 얽힌다. 피폭된 신체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그들의 히바쿠샤 됨을 증명해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기록과 기억이 과학적 지식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한 순간과 그 지점에 시공간적으로 근접한 정도를 가지고 개인의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과학 연구의 방식은 그 자체로 히바쿠샤들의 기록과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역으로 이를 통해 형성된 과학 지식들은 개별 피해자들의 자기 인식이나 설명 방식과 다시 결합한다.

원폭피폭자대책 요람, 원폭평화기념박물관의 전시들, 매년 방영되는 특집 방송들에서 원폭의 순간과 '히바쿠샤'는 정확한 수치와 과학적 용어로 가득 채워져 있다. 사망자 수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데이터, 열선의 온도, 폭발의 강도, 폭탄 폭발의 고도 등에 대한 언급은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신체와 기억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록은 그러한 수치들과의 연

관 속에서 더 설득력을 얻는다. 이제 이 제도적 절차에서 비롯된 서사적 스타일들은 과학의 언어들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히바쿠샤의 경계 구성과 통제에 있어 그들의 신체와 기억 그리고 기록은 서로 얽혀있었지만, 그 영향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억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어떤 경우에는 공간화 될 수 있거나 혹은 신체화 되는 것 혹은 물질화된 기록으로 증명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원폭의료법의 행정적 실행과정에서는 공문서나 서류로 대변되는 공적 기록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단근거로 작용한다. 즉 피폭자 원호정책의 장에서 히바쿠샤라는 경계가 구성되고 통제됨에 있어 신체와 기억 그리고 기록들이 상호간섭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으나 그 간섭의 정도에 있어서는 기록 즉 문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것이다.

요컨대 히바쿠샤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증명해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과정은 히바쿠샤의 범주를 경계 짓는 과정에 있어 그 경계를 과학 연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하는 것 못지않게 행정관료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은 이 경계의 구성과 통제가 하나의 짝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히바쿠샤의 경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원폭 투하 직후부터 이루어진 원폭의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실제 인체영향을 생물학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이 법 제정 당시로서는 불가능 혹은 무의미하다고 여겨진 상황에서 또 다른 방식의 식별 제도를 도입할 필요를 낳았다. 이것이 현재까지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 원호정책에서 증명서로 상징되는 기록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증인, 그리고 기록으로 진실을 판명할 수 있는 진술서 형태의 기억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 히바쿠샤 경계의 통제가 갖는 “관료제적 문서주의”(bureaucratic red tape)⁶⁸(Totechini, 1999)의 핵심을 이룬다.

3. 히바쿠샤 범주의 중첩된 경계

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폭의료법 제정 당시 히바쿠샤의 경계를 통제하는 데 있어

68) “관료제적 형식주의”로도 번역되는 이 “레드 테이프(red tape)”는 17세기 영국에서 생겨난 말로, 당초 관청에서 공문서를 매는 데 쓰는 붉은 끈에서 유래된 용어다. 관료제에 있어서 모든 사무의 처리는 일정한 양식(樣式)과 절차에 따라 서면(書面) 혹은 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오늘날 “레드 테이프”는 관청식의 번거로운 형식주의 혹은 문서주의를 비판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된다. 이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Ralph C. Chandler & Jack C. Plano, 1982, *The Public Administration Dictionary*, 1982, New York: Wiley, pp.216-217. 하동석,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red tape’을 검색해 재인용)

과학 지식이 갖는 결함과 한계는 뚜렷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히바쿠샤 경계의 통제에서 과학 지식의 무용성을 선언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결함이 내재된 과학 지식들이 히바쿠샤의 관료제적 통제와 결합하면서 보여준 경직성은 히바쿠샤 경계 통제의 전체적 과정에 있어 과학적 판단만이 최종 심급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게 한다. 또한 히바쿠샤를 판별하는데 있어 기억과 기록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과거의 실재를 발언했다기보다는 관료제적 행정 속에 편입된 과학 연구의 고체화된 각종 기준들과 끊임없이 비교 계량되어야 했다.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해 ‘원폭체험자’라는 이름으로 히바쿠샤의 경계 밖에 머무르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피폭자’ 제도와 그것의 변주된 형태인 ‘원폭증’ 인정 심사방침 문제를 통해 과학적 지식들이 관료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편입되어 제도화되면서 나타나는 경직성 혹은 고체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히바쿠샤의 범주에서 배제된 “원폭체험자”

2012년 8월 6일 원폭기념일을 맞아 NHK는 NHK스페셜 <살아남지 못한 원폭조사—검은 비>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ABCC가 활동 초기인 1950년대 ‘검은 비’(黒い雨)⁶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이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은 조금 길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초 당시 미국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임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ABCC는 1953년 9만 3천명의 피폭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는 원자력위원회의 피폭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로 활용될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선언을 앞두고 급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인 1953년 초 ABCC의 생물통계학 부장이었던 우드베리(L. Woodbury) 박사의 검은 비 및 잔류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된다. 잔류방사선과 내부피폭 가능성을 타진한 이 조사는 폭심지에서 4.93km지점에 떨어진 곳, 즉 당시 ABCC 선량추계에 따르면 초기 방사선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에 검은 비가 내렸는데, 그곳에 있

69) 히로시마 시와 나가사키시가 공동으로 편집한 원폭재해지에는 원자폭탄의 피해 중의 하나로 ‘잔류방사능’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이 원폭재해지에 공식적으로 기술된 것에 의하면, 원자폭탄의 폭발 후 잔류방사선의 원인으로 고려되는 것들은 핵분열생성물,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이 미분열 상태로 날아다니는 것 그리고 원폭기재(器材)나 공중 혹은 지상의 물질에서 중성자선에 의해 방사능을 띠게 된 것 등이 있다. ‘방사성낙진’은 바로 이러한 잔류방사선을 방사하는 미립자들이 공중이나 대기 중으로 퍼졌다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칭한다. 검은 비나 방사성 낙진 등으로 인한 피폭은 잔류방사선에 의한 피폭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체 외부에서 주로 감마선을 쏘이게 되는 외부피폭과 방사성물질이 체내에 들어가 그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쏘이게 되는 내부피폭이 고려된다 (廣島市·長崎市 原爆災害誌編輯委員會, 1989(1979)).

던 사람이 원폭관련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좀 더 심도 깊고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조사는 당시 ABCC의 직원이었던 구리하라 메히코의 직접 체험이 바탕이 됐다. 그녀는 히로시마 시외에 살고 있었지만 원폭 당시 검은 비를 맞았으며 그 후 원폭피해자들과 똑같이 설사와 구토, 탈모 등의 증상을 경험했다. 조사가 진행 중이던 1953년 12월 아이젠하워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 For Peace) 선언을 내놓았다.

한편 ABCC에서 우드버리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기 직전인 1954년 3월 1일 비키니 피재 사건이 터진다. 2장 2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일본 사회 내에서 방사선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다. 우드버리 박사는 이러한 시기가 잔류방사선 연구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ABCC의 상부와 미국의 관계자들은 그의 의견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라고 치부된 그의 조사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비키니피재를 계기로 일본의 반핵열기가 강해지고,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등 일본 사회 내의 공산당 및 사회당의 활동이 반미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본 미국과 일본 정부당국이 방사선의 피해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공산주의와 반미감정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핵의 위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선언과 그 실행 수단으로 내걸어진 원자력 정책이 비판받게 될 것임은 자명했다. 1958년 우드버리 박사는 원자력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돌연 ABCC를 사직했다. 그는 사직 후 검은 비와 잔류방사선에 대해서는 ABCC의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며, 인정도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묻혀가고 있다고 회고했다.

NHK스페셜의 이날 프로그램은 일본에서 8월 6일과 9일 사이에 원폭피해자에 관한 특집 방송이 연례적으로 방영된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계절적 성격을 띠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날 이 프로그램이 특별했던 것은 초점이 맞추어진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내부피폭 문제가 오랫동안 원폭피해자들과 ABCC/RERF, 그리고 일련의 방사선인체영향과 관련된 연구자들과 후생성 사이에서 그 영향의 정도를 놓고 이견이 있어온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내부피폭의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역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이런 관심 속에서 ABCC/RERF와 후생성은 내부피폭이나 잔류방사선, 혹은 저선량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이날의 방송은 왜 ABCC/RERF가 저선량 방사선 피폭 혹은 잔류방사선에 의한 내부피폭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가에 대해 1950년대 초기에 있었던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조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ABCC의 초창기 시절 우드버리박사의 연구가 당시의 냉전체제라는 배경 하에서 막 출범한 원자력산업의 이해에 따라 이후 심도 깊게 확장 되지 못한 것은 오늘날 소위 '원폭체험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검은 비'에 대한 경험이 정치적 배경 속에서 과학의 언어로 번역될 기회를 잃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⁷⁰⁾

히로시마 오테마치(大手町)에 살았어요. 폭심지에서 가까운 데예요. 그거(원폭) 맞기는 고이에서 맞았어요. 그때 고이 기차역에서 시외로 나가는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으로 먼저 몇 사람이 타고 가고 한두 명인가 앞에 있고 우리를 남겨두고 전차가 가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깐 ‘퍽’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사진 찍을 때 ‘퍽’ 하는 것처럼, 번갯불처럼 천상 그기라. 그 벼락 떨어지고 나니까 깜깜해져요....(중략).... 일어나서 보니 지갑도 날아가 버리고, 나와 보니까 몇 백 년 된 수양버들 나무가 뿌리 채 자빠져가 있대.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 비가 오대. 비가 새까매. 고르당(コールテン, 코르텐71) 물처럼. 먼지가 올라가서 만들어진 비라. 검은 비라. 데인 사람이 그 비를 맞으니 그 살이. 휴.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들 보면 비를 맞으면 껌테기가 싸악 벗겨져. 감자 껌질 벗겨지듯이. 그래 막 아프다고 하고. 또 그래가 모자를 쓴 아이들 보면 모자 아래에는 머리가 있는데, 밖에는 머리가 다 타버리고 없어요. 말도 못해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지. (김수영, 여, 1928년생, 히로시마 고이 역에서 피폭)

고르당 물 같은 이 새까만 비는 히로시마의 경우 당시 폭심지 서북방향으로 구름이 생겨나 내렸고, 나가사키의 경우에는 니시아마(西山)지구 쪽에 집중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廣島市·長崎市原爆災害誌編輯委員會, 2005). 그런데 플루토늄으로 구성되어 반감기가 길었던 나가사키 원폭의 경우 그 증거가 용이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로 만들어진 원자폭탄이 사용된 히로시마는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ABCC는 원폭투하 뒤 몇 주 뒤에 있었던 태풍과 대홍수로 히로시마에 잔류방사능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고 한 뒤였다 (廣島縣「黒い雨」原爆被害者の會連絡協議會、2012).

일본인 연구자들이 폭심지 부근에서의 잔류방사선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72) 잔류방사선 피폭도 포함되지 않았다. 구호작업을 위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입시한 이들에게서 피폭증과 일치하는 증상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미국의 군부는 잔류방사선의 수준은 극히 낮으며 그러한 피폭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즉 이들은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의 혼란상 등으로 인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초기 방사

70)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지금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저선량 방사선 피폭의 문제가 과학적 실재로서 번역되거나 혹은 인정받은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71) 한국에서는 흔히 ‘골텐’(corded velveteen)이라고 불리는 옷감의 일본식 표현이다. 원폭 투하 당시 내렸던 검은 비는 검은 색의 끈적끈적하고 매끈한 형태를 띠었는데, 연구자가 인터뷰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 비를 ‘석유같이 끈적끈적했다’거나 ‘고르당 물’ 같았다고 많이 묘사했다.

72) 잔류방사선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은 Shohna Naomi and Sakuma Kiyoshi, "The Fundamental Examination of the Amount of Radiation Received and Its Correlation to Acute Symptoms"(1958). Grant Taylor to Carl A. Harris, 7 Aug 1951, 6/S, JVN: “우리는 잔류방사선의 효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몇몇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Dr. Davison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히로시마에서 폭격 직후 사체 처리 작업 등에 동원된 미국 병사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내용이고,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몇 달전에 우리는 원폭투하 직후 히로시마 시에 들어갔던 사람이 탈모 증상이 있었다는 ‘루머’를 추적하고 시도로서 하나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잔류방사선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보고는 ‘히바쿠샤’의 범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조건 중 ‘구호피폭자’와 ‘입시피폭자’를 인정하는 ‘잔류방사선 인정 기준으로는 채택됐다.

능에 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폭발 후 1분 이내에 방출되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초기방사선량만을 가정해 피폭자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당연히 방사선을 외부에서 쪼인 경우를 우선했고, 잔류방사선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내부피폭 또한 없었다고 가정된 것이다.

내부피폭과 저선량 피폭, 잔류방사선에 의한 피폭 등을 고려하지 않은 초기방사선만을 고려한다는 대전제는 ABCC의 피폭자 연구에 있어서도 기본 전제였고, 당시 피폭자에 대한 다른 특정한 연구기관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곳의 연구들은 피폭자원호정책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하지만 검은 비에 대한 원폭피해자들의 증언과 이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과학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소위 '원폭체험자'들은 기존에 지정되었던 검은 비 강우 지역이 자신들의 건강 악화라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원폭증 인정과 검은 비 강우 지역 확대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검은 비 문제는 1974년 6월 원폭특별조치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나가사키의 경우 건강진단특별지역을 지정하고, 히로시마의 경우에도 검은 비가 내렸던 구역으로 건강진단특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서 제도화 됐다.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1994년 12월 제정)의 실시 이후에는 건강진단특별구역도 확대됐다. 그러나 건강진단특별구역이 확대된 것은 히바쿠샤로서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과는 무관한 조치로서, 다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자들에 대한 배려적 조치였다 (廣島縣, 2011: 32).

히로시마 '원폭체험자들의 '검은 비'에 대한 여러 주장들은 이후에도 거듭됐고 지방 정부에 대해 행동을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1988년 8월 지방정부인 히로시마 현과 히로시마시는 검은 비의 실태와 그 비에 포함되어 있던 방사능 물질에 의한 인체에의 영향에 대해 물리·기상·의학의 관점에서 "과학적·합리적으로 해명할 대책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검은 비에 관한 전문가회의」(이하 검은비전문가회의)를 설치하게 된다. 과학기술청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생리연구부 물리제3연구실장, 히로시마대학 원폭방사능의학연구소 교수 2인, 기상청 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부 제3연구실장, 방사선영향협회 이사장, 방사선영향연구소의 이사장, 유전학부장, 방사선생물학부장, 그리고 히로시마 현 환경보건부장과 히로시마시위생국장 등 총 9인이 이 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석했다 (廣島市, 2011:177-178).

1991년 5월 13일 검은비전문가회의는 설치 이후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회의의 결과를 보고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그간 이루어진 각종 과학 연구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우선 원폭에 의한 잔류방사능에 대해서는 1976년과 1978년에 이루어진 토양조사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토양채취방법과 측정방법 등의 기술적인 측면과 통계적 해석 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토양조사결과와 우다(宇田)·마츠다(増田)의 두 강우지역과의 상관 유무를 검토한 결과에서는 이것이 두 강우지역과의 상관관계는 없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⁷³⁾ 가옥 기와에 포함된 세슘137의 함유량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시료에 의한 흡수성에 큰 차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감나무의 나이테에 흡수된 스트론튬90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측정으로 얻은 결과로는 검은 비와의 관련을 확정할 수 없었고, 토양중의 우라늄비율(235U/238U) 측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으나 이론적으로는 유용하다고 여겨져 측정기술의 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廣島市, 2011:177-178).

기상시물레이션계산법에 의한 방사성강하물의 추정에 있어서는 원자폭탄 투하 당시의 기상조건·원자폭탄의 폭발형상·화재상황 등에 대해서 여러 조건을 설정한 확산계산모델을 사용한 시물레이션 계산법 및 네바다핵실험치를 이용해, 원폭의 방사성강하물의 강하량과 강하범위에 대해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종래의 강우지역(소위 宇田雨域)의 범위와 거의 같은 정도(大雨地域)였는데, 화재로 인한 구름의 일부가 동쪽으로 흩어져 낙하한 것이라는 계산 결과였다. 원폭으로 인한 구름의 건조낙하는 북서쪽 방향으로 종래의 강우지역을 넘어섰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후의 강우 등에서는 잔류방사선량이 급속히 떨어졌다고 보고됐다. 체세포돌연변이 및 염색체 이상에 의한 방사선피폭의 인체영향에 대해서는 검은 비에 포함된 방사선의 인체에의 영향을 체세포 돌연변이 및 염색체 이상빈도를 지표로서 조사한 결과 강우지역과 대조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인체에의 영향을 명확히 시사 한다는 소견을 얻지는 못했다고 보고됐다. 결국 이 전문가위원회는 검은 비에 관한 검토 결과 강우지역이나 잔류방사능, 인체영향 등 여러 면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소견을 얻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추후 새로운 피폭선량추정방법의 고안이나 측정기관의 향상 등에 의해 검은 비의 실태를 해명하기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廣島市, 2011:177-178).

전문가회의의 검토 내용이 발표되고서도 ‘원폭체험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또 다른 과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2002년 히로시마 시는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앙케이트조사를 바탕으로 2004년 후생성에 건강진단특별지역 확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후생성은 사후적인 앙케이트 조사는 ‘과학적 조사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히로시마시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현 <히로시마검은비연락협의회>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히로시마시와 현에 새로운 방법에 의해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8년 히로시마 시는 새로운 실태조사를 행하고, 히로시마 현 또한 히로시마지역 이외의 아키토타마치(安芸太田町)와 기타히로시마마치(北廣島町)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중 히로시마시현이 행한 실태 조사는 ‘원폭이나 검은 비 체험의 유무와 체험내용’, ‘심리적 건강상태’, ‘현재치료중인 병’

73)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검은 비가 내린 ‘강우지역’에 대한 조사 중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1945년 8월의 1개월 뒤인 9월부터 12월에 걸쳐 宇田 박사와 히로시마관구기상대 직원이 조사해 작성한 강우도인 이른바 「宇田雨域」이다. ‘우다우역’(宇田雨域)이라고 불리는 이 조사는 강수량의 크기에 따라 소우(小雨), 중우(中雨), 대우(大雨)지역으로 분류되며, 이중 ‘대우’지역이 건강진단특별구역으로 지정됐다. ‘마즈다(増田)우역’은 우다우역의 조사를 바탕으로 ‘마즈다’ 씨가 1987년 앙케이트 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그린 강우 지역을 말하며, 기존의 우다우역에 비해 훨씬 넓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후생성은 마즈다우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등을 묻는 양케이트를 약3만6천명에게 보내 약 2만 7천명으로부터 답을 받았다. 그 중 71~80세의 회답자 869명과는 면담을 했다. 2010년 5월 보고서에서는 주민의 증언을 대략 반영한 검은 비 강우지도가 발표되어 정부가 피폭지로 지정하고 있는 지역의 약6배 넓이가 되었다. 더욱이 보고서에서는 '미지정지역의 검은 비 체험자는 심신건강면이 피폭자에 필적하는 정도로 불량하다'라며 건강피해를 인정, '건강진단의 실시 등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실태조사와 맞물려 총래 12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 원폭운의 높이가 16킬로미터에 이른다는 보고도 이어져, '검은 비' 미지정지역의 집의 마루 밑 토양에 포함된 잔류방사능의 조사도 행해졌다. 이 실태를 바탕으로 히로시마검은비연락협의회는 2010년 7월 히로시마와 새로운 강우지역을 포함한 3개 시 5개 마을의 수장이 '신강우도의 전 우역(雨域)을 제1종 건강진단수진자증교부지역에 지정하도록 요구한다'는 요망서를 연명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廣島縣「黒い雨」原爆被害者の會連絡協議會、2012).

후생노동성은 다시 히로시마 원폭의 방사성강하물을 포함한 '검은 비'의 영향 그리고 지정 지역을 검토하는 전문가회합을 열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는 실제로 광범위하게 비가 내렸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다는 것이 그 이유로 내세워졌다. 또한 검은 비를 맞은 사람들의 건강영향은 실질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방사선(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불안'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원폭체험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병들에 대해서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전문가검토회의는 검은 비를 맞은 사람들이 '방사선의 영향을 너무 걱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廣島縣「黒い雨」原爆被害者の會連絡協議會、2012).

이러한 정부의 반응에 대해 히로시마 지역에서는 "새까만 비를 전신에 맞고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한 실제로 최근 현재의 경계(선긋기)는 모순이라는 연구결과"(中國新聞, 2012년 5월 30일 사설)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히로시마대학 등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검은 비에서 유래했다고 보이는 세슘이 지정 지역 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폭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히로시마 현의 아키오타마치(安芸太田町)의 민가 마루 밑에서 나왔다. 2011년에는 방사선영향연구소가 1950년대에 수집한 1만 3천명의 데이터의 존재도 밝혀졌다. 지정지역 외에서 '비를 맞았다'고 하는 증언도 많았다. 구제에 장애가 되는 것은 피폭지역의 지정에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후생성의 방침이다. 80년의 원폭피폭자대책기본문제간담회의 보고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엄밀한 과학적인 근거를 행정의 구제조건으로 한다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 원폭피해, 특히 저선량피폭이나 간접피폭의 영향은 미해명인 점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해가 '없다'라는 식의 대응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가 패소를 거듭하고 있는 원폭증인정집단소송에서는 더욱이 그 점을 통렬하게 비판당하고 있지 않은가. 검은 비를 둘러싼 원호책은 반성을 기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은 비의 피해는 '피폭'의

불안을 갖고 있는 후쿠시마사람들의 장래와도 겹친다. 검은 비 피해는 결코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히로시마시의 의식조사의 검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가는 원폭피해의 실태 파악에 적극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과학논쟁이 구제 선긋기 연기의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 (中國新聞 2012년 5월 30일 사설)

2012년 8월 5일 히로시마대학 평화센터가 주최한 제37회 히로시마대학 평화과학심포지움 <원폭의 남아 있는 문제들>에서 히로시마대학 원폭방사선의과학연구소의 오오타키 메구(大龍慈) 교수는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발표했다. 그가 속한 연구진이 ABCC/RERF의 기존 연구 자료들을 재해석해 히로시마 원폭피해자의 암위험도가 거리라는 변수보다는 흡수선량 변수가 좀 더 적합하고 설명력이 있으며, 이 선량이라는 것은 직접방사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⁷⁴⁾ 폭심지에서 먼 곳이라도 선량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오오타키 교수 연구팀은 이것이 저선량방사선 및 내부피폭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검은 비'가 그 주요한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오타키 교수 연구팀은 ABCC/RERF 초창기에 주목받지 못한 '검은 비'와 잔류방사선에 대한 새로운 '번역'본을 내놓은 셈이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 이외에도 이전부터 '잔류방사선'과 '내부 피폭'에 대해서는 ABCC의 번역본과는 전혀 다른 버전의 '번역'들이 나왔고, 이들 연구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저선량 피폭과 내부 피폭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번역본들이 '원폭체험자'들이 '히바쿠샤'의 경계를 허무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이 과학적 지식들이 관료제적 틀 속에서 어떤 '여행'을 하게 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것과 행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논리와 실행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절에서 보게 될 원폭증 인정과 관련된 심사방침의 개선 이슈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이후에 정책과 과학이라는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특별 히바쿠샤와 원폭증 논쟁의 의미

앞 절에서는 저선량피폭에 대한 과학 논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적으로는 그 '실재'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히바쿠샤라는 경계 밖에 머무르는 원폭체험자들에 대해 서술했다. 그런데 원폭체험자들로부터 히바쿠샤를 선 그은 잔류방사선 문제는 히바쿠샤들 사이의 선 긋기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했다. 히바쿠샤라는 이름으로 테를 두르고 있는 범주였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생물학적 상태를 일컫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원폭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후생대신은 이 법이 히바쿠샤의 건강상태가 의사의 정밀한 관찰지도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불행발병자

74) 2012년 8월 5일 히로시마대학 평화센터 주최 <원폭의 남아 있는 문제들>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不幸發病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료를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다 (제26회 일본 통상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그의 이 발언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강한 자와 병자의 중간' 정도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인 히바쿠사들 중에서도 돌연 발병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당시에는 히바쿠사가 되더라도 모두 의료적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요 의료상태에 놓여야만 의료적 지원을 받게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당시 이들 '불행발병자'에 대해서만 의료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고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 취지는 법 시행 3년 후 히바쿠사 가운데서도 의료와 생활면의 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특별피폭자제도"의 창설로 이어졌다. 특별피폭자 제도는 피폭자들이 다량의 방사능을 쬐인 결과로 얻게 된 '이른바 원폭증'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됐다 (被爆者援護法令研究會, 2003:202) 따라서 이 제도는 앞서 '요의료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건강 진단 이외에 특별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하고 '이른바 원폭증' 이외의 일반질병도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또한 원폭의료법에 의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 피폭자는 치료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의료수당도 지급받게 되었다 (廣島市衛生局原爆被害對策部編, 1996:109).

하지만 이 특별피폭자 제도는 그 인정 기준과 지원 규모 등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 속에 놓이게 된다. 이 '특별' 히바쿠사와 '일반' 히바쿠사라는 구분은 히바쿠사의 경계가 논란이 된 것 이상으로 끊임없이 그 경계를 두고 논란을 일으키며, 그 경계를 침식당했다. 국내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그 경계 또한 꾸준히 확대되어 갔다.

예를 들어 특별피폭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던 폭심지 2km기준은 2년 후인 1962년에 3km로 확대된다. 입시자로서 특별피폭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에 "직접피폭자이면서 2주 이내에 폭심지 2km 이내의 지점에 들어갔던 자"에서 "직접피폭자 혹은 입시자(2주 이내에 2km 이내의 지점에 들어간 자)"로 되었다. 특별피폭자 인정 범위는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됐다 (被爆者援護法令研究會, 2003).

마을 단위의 인정 범위도 확대되어, 1965년에는 피폭 후 3일 이내에 폭심지에서 2km 이내에 입시했던 경우 및 그 태아로 조건이 확대되었고, 특히 기존의 동심원 위주로 특별피폭 범위를 지정했던 것에서 행정단위로 피폭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히로시마시의 경우에는 애초 인정 범위에서 외곽에 위치한 마을들이 추가됐고,⁷⁵⁾ 1972년에는 히로시마 시 외의 행정단위들이 속속 추가됐다 (廣島縣, 2011).⁷⁶⁾ 나가사키시 또한 1971년, 73년 폭심지역 자체가 확대됐다.

75) 新庄町、三滝町、山手町、己斐町、古田町、庚午町、三篠本町4丁目、安佐郡 祇園町 중 長東、西原、西山本 (廣島縣, 2011)

76) 草津東町、草津浜町、草津本町、安佐郡 祇園町 중 東山本、北下安、南下安、東原이 추가된 지역들이다 (廣島縣, 2011).

그러나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67년 제정) 이후에도 특별피폭자와 일반피폭자 구분에 대한 피폭자들의 불만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폐지 운동도 거세졌다. 결국 1974년 6월 특별조치법 일부가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는 기존에 일반피폭자로부터 특별피폭자를 구분했던 것을 폐지하고,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하는 것으로 피폭자 관련 자격을 일원화했다 (廣島縣, 2011:31).

특별피폭자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그 취지는 계속 남았다. 1994년 12월 기존의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이 두 법이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이하 피폭자원호법으로 약칭)로 통합되었을 때, 특별피폭자제도는 ‘원폭증 인정 제도’로서 그 맥을 이었다.

후생노동대신은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에 기인하여 부상 혹은 병이 걸려, 현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피폭자에 대해 필요한 의료의 충부를 행한다. 단, 해당 부상 혹은 병이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기인한 것이 아닐 경우는 그 자(者)의 치료능력이 원자폭탄의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현재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일본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대한 법률> 제10조)

위 원폭원호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원폭증 인정 제도’는 피폭자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이들 중 원자폭탄으로 인한 부상이나 병에 걸린 경우 혹은 그에 기인하지 않은 병에 걸렸더라도 그것을 치료하는 능력에 있어 방사능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의료의 충부(인정을 받은 병에 대해 무료로 치료를 받는 것)나 의료특별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⁷⁷⁾ 이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첫째, 히바쿠사가 원폭의 방사선에 의해 병이나 상처가 났다는 것, 혹은 치료능력이 원폭방사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는 점⁷⁸⁾(이를 ‘방사선기인성’의 요건이라 부른다), 둘째, 원폭방사선에 의해 그 병이나 상처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를 ‘요치료성’의 요건이라 부른다)이어야 한다 (伊藤直子·田部知江子·中川重徳, 2006).

이처럼 원폭의료법이 도입되던 초기에 비해 원폭증 인정 제도는 좀 더 정교해졌지만, 위에서 정의된 것처럼 원폭증 인정문제는 결국 원자폭탄의 상해 작용이 히바쿠사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어떠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자폭탄의 영향인

77) 2012년 현재 원폭증인정을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의료특별수당은 약 13만 엔으로 일반 건강관리수당 3만 엔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78) 원폭의 방사선에 의해 생겨난 병이나 상처는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에 영향을 미쳐 피폭자가 가진 병이나 상처를 치료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따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원폭으로 인해 다리를 잃은 사람이 후에 암 등에 걸렸다고 했을 때, 암은 암대로 원폭증인가의 여부를 판별 받아야 하고, 치료할 능력은 원폭으로 인한 다리의 장애로 생계가 어렵든지 해서 암(방사선에 의한 영향인가와 상관없이)의 치료가 어려워졌다고 같이 각각 따로 판별된다.

가를 다시 판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전제에 서 있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히바쿠샤가 겪는 병이나 부상, 치료능력이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에 기인한 것인가를 판별해, 그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즉 이 후생대신이 인정하는 '원폭증을 앓는 히바쿠샤는 앞서 특별피폭자 제도에서 방사능의 반발성 영향으로 인해 '불행발병한 자'로서 현재에 '요의료' 상태에 놓인 히바쿠샤의 또 다른 해석의 버전이다. 이처럼 특별피폭자 제도나 원폭증 인정 제도는 하나의 범주로 엮인 히바쿠샤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원폭의 신체 영향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것이다. 이 특별피폭자제도나 원폭증 인정제도는 '히바쿠샤'여도 다 같은 '히바쿠샤'는 아니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증시켜 놓은 것이다.

그런데 히바쿠샤에 대한 제도적 차등지원을 원칙으로하는 특별피폭자제도나 원폭증 인정 제도 모두에서 그 경계를 두르는 작업은 다시 피폭자 범주의 경계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특정한 구역, 즉 폭심지로부터의 거리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됐다 (廣島縣, 2011:30). 예를 들어 특별피폭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를 1) 폭심지에서 2km 이내에 있었던 자와 그 태아, 2) 원폭의료법 제8조 1항에 의해 치료인정을 받은 자, 3) 원폭투하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양 시 및 그 인접 지역 내에서 직접피폭당한 자 중 투하 후 2주 이내에 폭심지에서 2km 이내의 지역에 들어간 이들로 규정했다. 물론 이 특별피폭자제도에서는 이러한 기준과 함께 거기에 "의사의 진단의 결과 조혈기능장애, 간장기능장애, 악성신생물, 내분비계의 장애, 중추신경의 결합손상, 순환기계의 장애, 신장기능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우선 대상"이라는 규정이 덧붙여지긴 했으나 실제로는 피폭지가 어디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했다.

원폭증 인정 제도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대체로 유지됐다. 다만 원폭증 인정 제도는 특별 피폭자제도에 비해 피폭지로부터의 거리와 피폭당시의 연령에 따라 그 병에 걸릴 확률이 피폭선량에 따라 훨씬 정교하게 세분화된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폭심지로부터의 거리와 연령에 따른 '원인확률'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계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인 '이른바 원폭증'의 확률을 일련의 수치로서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표준화된 척도로서 기능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이른바 원폭증'을 판단하는 정책적 기준이 되었던 '심사 방침'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1년 후생노동성은 질병·장해인정심사회운영규정(2001년 2월 2일 질병·장해인정심사회 결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해 원폭증 인정에 관한 심사의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자문위원회를 꾸려 그 판단의 근거로서 '원폭증 인정에 대한 심사의 방침'(이하 심사방침)을 세운다.⁷⁹⁾ 심사 방침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항은 '방사선 기인성'과 '요의료성'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그 가운데서도 방사선 기인성의 판별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 심

79) <http://www.mhlw.go.jp/shingi/0111/s1119-2.html>

사 방침의 핵심을 이룬다 (被爆者援護法令研究會, 2003).

심사 방침에 따르면, 피폭자 가운데 원폭증과 관련된 신청을 한 경우, 신청에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 방사선에 기인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원인확률' 및 '역치'를 기준으로 그 적합성을 판별한다는 것이 대원칙으로 내세워졌다. 여기서 '원인확률'은 "질병 등의 발생이 원폭방사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확률을 말함"이라고 정의되었고, 역치는 "일정의 피폭선량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으면 질병 등이 발생하지 않는 수치를 이룸"이라고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 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질병이 '원폭증'인지 여부, 즉 질병의 원폭방사선 기인성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의 유무를 판별한다고 되었다. '고도의 개연성'이라 함은 예를 들어 한 신청자의 질병의 원인확률이 심사 방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략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질병의 발생에 관해 원폭방사선에 의한 일정한 건강영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대략 1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한다고 되었다. 여기에는 또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기왕력(既往歴)⁸⁰⁾, 환경인자, 생활력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을 행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원인확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백혈병과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간장암, 피부암, 방광암, 요로계통암, 난소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이 포함되었다. 대체로 악성종양, 즉 암이 발생한 경우에 원폭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암이나 병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기인성이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과학적 지견'의 입증이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유의하지만, 방사선피폭선량과의 원인확률이 가장 낮은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별표 2-1>(남성 위암 원인확률 기준표)을 준용하기로 했다.⁸¹⁾ 이에 더해 해당신청자에 관계된 피폭선량, 기왕력, 환경요인, 생활이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적으로 그 기인성을 판단한다는 것으로 되었다. 역치와 관련해서는 방사선 백내장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당시의 역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95 퍼센트 신뢰구간에서 1.31~2.21 시베르트인 것을 감안해 1.75 시베르트로 결정됐다.⁸²⁾

원인확률과 역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폭선량은 기본적으로 피폭 당시 피폭자가 피폭된 장소로부터 구해졌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원폭증 인정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피폭당시 혹은 그 이후 일정시기 동안 쫓겨났을 것이라 여겨지는 방사선량을 우선

80) 이전에 겪었던 질병 등의 병력

81) 부록1 참조.

82) 역치라는 것은 어떤 병이나 질병의 발병여부의 경계가 되는 수치를 말한다. 방사선방호학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병이나 장애 중에서는 어떤 일정이상의 선량에 피폭되지 않으면 발병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가정'에 따라 '안전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심사의 방침'도 그러한 예를 따르는 것이다. 방사선 백내장의 역치를 1.75Sv로 정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예인데, 이는 백내장에 대해서는 피폭자가 1.75Sv 이상 피폭되지 않으면 원폭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추정한다. 여기에는 모두 세 종류의 방사선량이 고려됐는데, 첫째는 피폭 당시의 초기방사선의 피폭선량 수치, 둘째 피폭 직후 잔류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사성강하물에 의한 피폭선량 수치를 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피폭선량 또한 거리 등에 따라 일정한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가령 초기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은 신청자의 피폭지 및 폭심지로부터의 거리의 구분에 따라 정하고 그 수치는 후생성에서 제시한 <별표9>에서 정한 대로 계산된다.⁸³⁾ 잔류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은 신청자의 피폭지, 폭심지로부터의 거리 및 폭발후의 경과시간의 구분에 따라 정하며 그 수치는 앞서와 같이 <별표10>⁸⁴⁾에서 정한 대로 계산된다. 방사성강하물에 의한 피폭선량은 원폭투하의 직후 특정 지역에 체재했거나 혹은 그 후 장기간에 걸쳐 해당지정 지역에 거주한 경우로서 그 수치는 히로시마의 경우 고이와 다카쓰만이 해당되어 0.6~2 센티 그레이, 나가사키의 경우에는 니시야마 3,4 정목 혹은 키바(나가사키)-12~14 센티 그레이로 결정됐다. 여러 부분에 걸쳐 복합적인 선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폭심지와 거리가 일차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대체로 잔류방사선과 방사성강하물에 의한 피폭선량은 초기선량에 비해 매우 미량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 방침에서 정해진 일률적인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히바쿠샤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나, 실제 심사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거의 대부분 일차적인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한 백내장 등의 일정한 병에 대해서는 '역치'가 정해져 있어, 피폭선량이 이 역치를 상회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원인확률과 역치, 피폭선량 등으로 나타나는 심사 방침의 기준표를 과학과 정책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히바쿠샤'들의 신체가 드러내는 여러 증상들, 즉 피폭된 신체가 드러내는 읽기 어려운 여러 상형문자들을 해독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들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2장 2절과 3장 앞 절들에서 보여주었듯이 ABCC/RERF는 그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 히로시마대학 등 일본 독자의 피폭 연구기관들에서 생산된 지식들은 원폭피해자구호정책 전반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들을 제공해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사 방침의 기준표는 원폭증 인정 제도에 대한 과학적 판단 그 자체를 대변하는 것일까? 피폭의 신체 영향에 대한 과학연구들이 이 표준화된 격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일관된 목소리들을 내놓고 그것을 정당화한 기제로만 작용했을까?

연구자는 본 절에서 이 질문들이 '심사의 방침'과 관련된 선량 추정과 역치 설정이 과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정으로 인해 만들어진 심사기준의 표준화되고 보편화된 격자가 피폭자들이 겪게되는 특수한 신체적 경험 사이에 내재하는 긴장을 과학 연구들과 정책에서 받아들이는 방식과

83) 부록2 참조

84) 부록3 참조

논리,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점이다. 그 한 예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방사선량의 역치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에 대한 과학 연구 초기부터 유전학과 방사선생물학 분야에서의 논의 속에서 드러난다.

Lindee (1994:59)의 연구에서는 초기 피폭의 인체 영향에 대한 중요한 과학계 논쟁 중의 하나인 역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나온다. 약술하면 방사선생물학자들은 방사선의 신체적 영향이 나타남에 있어서 어떠한 생물학적 영향도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선량, 즉 역치가 되는 선량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유전학자들은 역치선량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지 않는다. 유전학자들은 유전적 효과에 대해 선형모델을 가정한다. 즉 100rad의 선량이 주어진 인구 집단에서 600 정도의 변이를 일으킨다면, 1rad의 선량은 6정도의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한 생물학자가 1952년에 설명한 것처럼, 유전적 변이는 "비역치형 반응의 고전적 형태"다. 일정한 수준의 방사선량에 피폭된 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영향과 달리 유전적 효과(변이)는 설사 그 피폭수준이 낮더라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Lindee, 1994:59). 하지만 유전적 변이가 눈에 드러나는 것이기보다는 관찰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것일 수는 있다. 유전적 변이는 있더라도 신체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유전에 관한 연구는 세포수준, 조직수준, 그리고 인구집단 수준에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정확성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Lindee, 1994:74). 그러나 아주 적은 방사선으로도 세포 레벨은 돌연변이 등의 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져, 피폭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도 점차 뒷받침되고 있다. '모든 병에 역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특히 오래 전의 일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이론들 가운데서도 유전학적 견해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집단 레벨에서의 유전 연구가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피폭의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한 유전학적 연구결과보다는 방사선생물학자들의 견해는 좀 더 현실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러한 역치와 원인 확률의 개념을 지지하는 방사선생물학의 입장이 방사선 방호학이나 정책적 입장에서는 훨씬 다루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덜 위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서 원폭증 인정 제도에서 제시되고 있는 원인확률과 역치로 대표되는 심사 방침의 기준표는 원폭증 인정 제도를 관료제적 차원에서 좀 더 편리한 체제가 되도록 합리화하고 표준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 이 원인확률과 역치라는 기준을 통해 마련된 '심사의 방침'은 일종의 '히바쿠샤들의 신체에 대해 '가독성'을 높이는 하나의 표준화된 격자 그 자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⁸⁵⁾

85) 제임스 스콧은 그의 책 『국가처럼 보기 *Seeing Like the State*』 (2012[1998])에서 근대 국가의 권력의 한 실행 형태로서 관료주의적 계획, 즉 과학 지식과 법 생산/실행의 한 결합 양태를 보여주면서 사회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는 표준화된 격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 핵심중의 하나로 제시했다. 즉 통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되도록 상세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지도화 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요소지만, 문제는 이러한 표준화된 격자의 창조가 갖는 보편적 기준들이 실제의 사회 혹은 사람들이 갖는 특수성 혹은 지역적 관행들을 무시

즉 후생노동성의 '심사의 방침'은 방사선에 의한 인체영향에 대한 여러 과학 연구에서 생산된 다양한 지식들 중 '정책적으로 다루기 쉬운' 특정한 분야의 지식을 채택해 이를 '역치'와 '원인확률'이라는 변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모든 히바쿠샤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폭심지로부터의 거리'라는 하나의 공통 기준을 통해 관료제적으로 '번역' 가능한 척도로 만들어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후생성은 '심사의 방침'을 도입함으로써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인' 히바쿠샤들의 원폭증에 대한 '가독성'을 높여 심사의 효율과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 방침'은 당연히 개별 '히바쿠샤'들의 신체가 겪은 특수한 경험이나 그들의 신체로 드러나는 여러 특수한 증상들과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심사 방침에 따른 판단은 히바쿠샤들의 개별적 원폭증 경험과 차이가 컸고 논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전국에서 제기되었던 원폭증인정집단소송이 그 대표적인 예다.

원폭증인정집단소송은 기본적으로 후생성의 이 심사방침이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결정적으로 신청자들 대부분의 인정 요구를 각하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심사 방침에 따라 소위 '원폭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폭자 가운데서도 얼마 되지 않는다. 2006년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그해 3월말 현재 '피폭자건강수첩'을 가지고 있는 25만 9천 556명 중 원폭증 인정을 받은 이는 2280명으로, 수첩소지자에 대한 비율은 0.87% 정도다. 즉 많은 히바쿠샤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증상을 '원폭증'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100명 중 1명 정도가 '이른바 원폭증'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에 원폭증 인정을 요구해온 '일반' 히바쿠샤들은 정부가 피폭자원호법 등에서 규정한 원폭증 인정과 관련해서 방사선장해에 의한 부분만을 개별적으로 취해 그 역치와 원인확률을 내세우는 것 자체부터 반대했다. 방사선피폭자의료국제협력추진협의회(1992)는 원자폭탄의 폭발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 구성비를 보더라도 그 같은 방사선 기인만을 판단 요건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대체로 원자폭탄이 폭발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폭풍과 고열로 전환되며, 나머지 15~17%가 방사선 에너지에 해당하는데 그나마도 그 대부분은 잔류방사선(전체 에너지의 10%정도)이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에서 원폭증 인정 심사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폭발 당시의 위치 즉 폭심지로부터의 거리에서 구해지는 초기방사선량(전체 에너지의 5~7%) 뿐이라는 것이다 (放射線被爆者醫療國際協力推進協議會, 1999).

또한 이들 원폭증 인정을 요구하는 피폭자들은 암 등의 '악성신생물'이라 불리는 질병에는 역치가 없고, 아무리 낮은 방사선량이라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병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결과들을 그들의 요구의 근거로 내세

했을 때 필연적으로 긴장을 낳게 된다는 대목이다. 비록 그 자신은 '신체'가 아니라 '지역'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 국가의 통치술의 핵심을 중앙집권화 된 기록과 감시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화된 격자를 창조해 인간과 지역, 사회 등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한 제임스 스콧의 통찰은 원폭증을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과학과 관료제의 결합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그가 말한 '긴장'은 심사방침의 기준표와 '히바쿠샤'들의 '실제' 신체 사이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왔다. 이들은 최신의 과학 연구의 결과들이 정부의 심사 방침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웠다. 따라서 이들은 과학 연구의 결과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심사 방침이 그 과학 연구의 결과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피폭자가 암 등의 병에 걸려도 '원폭증'이라 인정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왜 고령의 피폭자가 재판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은 원폭증인정 심사가 원폭피해의 실태나 과학의 진보를 무시한 극단에 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폭자는 왜 원폭증 인정을 요구하는가』 중, 伊藤直子·田部知江子·中川重徳, 2006:26; 밑줄은 연구자 강조)

이들은 '심사의 방침' 권말에 정연하게 펼쳐져 있는 '원인확률'의 숫자가 "일견 과학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변호단이나 생리학, 방사선방호학, 역학, 통계학 전문가, 의사, 지원자 등이 '원인확률반'이라는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하여 '원인확률'의 사고방식의 논거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검토한 결과, '원인확률'의 사고방식은 "뜻밖에 단순한 것"으로 오히려 "피폭자를 밀어내기 위한 속임수가 두껍게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이 표준화된 통계일람표는 "원폭의 피해를 거둬거둬 작게 보이게 하고 과학의 이름 아래 히바쿠샤를 내치려는 계략"이라고 비난된다. 원폭증 인정 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원폭피해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과학 연구나 혹은 과학 지식들은 그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힘을 신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많은 경우 서로 논쟁중인 이슈에 있어서 과학 연구는 다양한 주장들 각각을 지지할 수 있는 모순되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준다.

앞 절의 '검은 비' 문제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었듯이,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기반이 되는 과학 지식들을 제공해 온 ABCC/RERF는 오랫동안 보수적인 차원의 과학적 지식 생산자로 자리매김해왔다. 그에 반해 가령 히로시마대학의 여러 연구소들은 원폭피해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연구결과들을 생산해왔다. 특히 오오타키 교수의 연구팀이 발표하고 있듯이 잔류방사선이나 내부 피폭에 관해서는 ABCC/RERF가 주장해온 것과는 반대되는 연구결과들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즉 이들 피폭에 관한 과학 연구들은 방사능의 인체 영향에 대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의견들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심사방침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정책의 영역에서 '히바쿠샤'에 대한 방사선의 피폭영향은 피폭자들의 신체가 아니라 ABCC와 같은 과학 연구들을 통해서만 실재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Lindee, 1994)는 좀 더 복잡한 맥락 속에서 평가될 수 있다. 즉 그녀가 말한 것처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생존자'들의 '피폭된 신체'와 '경험'은 데이터, 논문, 보고서의 수치들로 '번역'되어 '발언'된다. 생존자들에 대한 방사선의 인체영향을 연구

한 물리학자나 생물학자에게 ‘피폭된 신체’는 핵분열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선이라는 특정한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혈액이나 심장, 간 등과 같은 (신체) 장기 혹은 조직들의 합이라고 말한다. 각각의 조직에서의 각각의 반응(상호작용)이 통계 그래프의 각 지점에 표시되고, 거기에서 각각의 인간에게 발생한 개별적인 사건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오직 그 합만이 그 자료의 생물학적 (그리고 정치적) 진실을 드러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방사선의 영향을 수학적으로 드러내고자 노력한다. 원폭의 생물학적 영향은 어떠한 구체적인 표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병, 그들이 겪는 질환의 과학적/정책적 실재는 그래서 통계적일 뿐이다. 만약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버린다 (Lindee, 1994:256).

그러나 원폭증 인정 심사방침에 대한 반발과 원폭증 인정 소송 사례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피폭된 신체’의 번역은 하나의 목소리로만 대변되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번역’이 히바쿠샤들의 ‘실제’ 경험과 일치 하지 않을 때, 그 번역은 언제나 의심된다. 과학 연구가 ‘피폭된 신체’의 실재를 ‘번역’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러한 의심과 실패, 복잡성,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학지식들은 관료제적 틀 안에서 어떠한 기준들을 만드는데 편입되어야 하고, 그러한 편입에 있어 과학지식에 얼마나 중점을 둘 것인가는 또 다른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폭증 인정에 있어 방사선 영향만을 고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들의 주장이나 사법적 판단이 행정적 차원에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들의 주장과 판단은 원폭피해자구호정책 자체가 일반 공습 피해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원자폭탄 피해의 ‘특수성’ 즉 ‘방사선의 인체 영향’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폭증’ 인정과 관련해 많은 과학적 지식들, 그리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한 개인의 특수한 신체에 대한 의견으로서 지지되는 것과 보편화된 기준 마련이라는 제도적 틀 내로 편입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소송에서 개별 신체의 특수성이 감안되는 경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지식들의 경우 훨씬 보수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만큼 논란이 많은 쟁점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수준의 의견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8년 전국에서 진행된 원폭증 인정 소송에서 연이어 패한 일본 정부가 ‘심사 방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고, 이듬해인 2009년 8월 6일 히로시마평화기념식전을 기해 그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발족한 ‘원폭증 인정 제도 검토회’⁸⁶⁾가 2012년 3월 28일에 발표한

86) 이 검토회는 2009년 8월 6일 아소다로 당시 내각총리대신은 일본피단협과 「원폭증 인정 집단소송의 종결에 관한 기본방침과 관계되는 확인서」(확인서)를 체결하고, 이에 기반해 「원폭증 인정 집단소송의 원고와 관계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금에 대한 보조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기금법’, 2012년 12월)이 모든 당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당시 이 법은 말미에 「검토」 항목으로서 「인정등과 관계되는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고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는 것으로 한

보고서 중 <과학론과 정책적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견(知見)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직 과학적으로 미해명인 점도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과학만으로 인정 범위를 구획하는 것, 즉 과학적으로 미해명인 질병이나 피폭선량의 신청자를 내치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중략)...따라서 원폭증인 정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에 일본국이 유일의 원폭국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세우고 그 간격을 과학 이외의 사회, 경제, 윤리, 애정, 배려 등 폭넓은 견지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2012년 3월 28일 원폭증인정제도검토회 보고서 중 ‘과학론과 정책적 판단’ 요약 부분)

만약 과학적으로 불명이거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사법이라면 사법, 행정이라면 행정, 그 이외의 정치적인 것에서도 입장을 확실하게 해서 논점을 세워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의사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거나 불명인 것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식의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원폭증) 인정에 대해서 사법의 판단, 행정의 판단에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도 같다. (2012년 3월 28일 원폭증인정제도검토회 보고서 중 제1회 검토회 당시 長瀧委員 발언 요약 부분)

과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따라서 과학계에서 불확실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행정이나 사법, 보상 등에서 어떻게 취해져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2012년 3월 28일 원폭증인정제도검토회 보고서 중 제7회 검토회 당시 長瀧委員 발언 요약 부분)

병의 종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넓게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심사방침)을 만든다고 했을 때의 척도, 기준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 지견을 제일 우선에 둔다든가 아니면 사법적 판단으로 결정한다면 그것대로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 판단을 가미하는 방법은 어떤가, 혹은 복지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넣는 것은 어떤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28일 원폭증인정제도검토회 보고서 중 제7회 당시 石委員 발언 요약 부분)

심사 방침의 개선에 관한 <원폭증 인정 제도 검토회>의 활동을 요약하고 있는 위 발언들에서도 읽히지만, 새로운 심사 방침을 마련하는 것 또한 여러 과학적 의견 사이의 불일치 혹은 ‘미해명’이나 ‘불명’이라는 기반 위에서 있다. 이는 본 장의 첫 절에서 살펴봐왔던 원

다」라고 정했는데, 이를 계기로 「원폭증 인정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회」(약칭, ‘원폭증 인정 제도 검토회’)를 발족 시켰다.

폭의료법 제정 초기에 원폭의 유전 영향에 대한 학설과 실제의 차이를 두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모습과도 유사하다. 즉 정책적 측면에서 특정한 격자를 창조해내는 데 있어 과학 지식들은 완결된 형태의 기준들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정책의 '장' 속에서 '굴절'될 운명에 놓이는 것이다.

4. 소결: 정책의 장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과 굴절

일본의 원폭의료법 제정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여느 전쟁피해자들과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여론에 밀려 있었던 원폭피해자들에 대해 방사능의 피해, 즉 피폭으로 인한 피해의 특수성을 들어 정당화된 것으로서 일본 원폭피해자원호의 제도화, 즉 일본원폭피해자원호 정책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이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등장한 '히바쿠샤'라는 용어는 향후 이 정책의 진행 방향을 잘 보여준다.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은 자"라고 정의된 '히바쿠샤'의 법적 규정은 '히바쿠샤'라는 용어가 단순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를 지칭하는 한 차별화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관료제적 심사 절차로 그 자격을 판별하는 이른바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공식적 자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틀 지워져 나가기 시작한다. 또한 '피폭자건강수첩' 즉 이른바 '테쇼' 혹은 '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곧 '히바쿠샤'라는 것은 이전까지 국가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해왔던 원폭피해자들이 이 제도화된 피해자지원의 형태에 따라 자신들의 수급 자격을 스스로 국가에 증명하도록 요구 받는 것이기도 했다.

원폭의료법 제정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 히바쿠샤라는 자격 범주의 정치적 의미는, 그것이 원폭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직면한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의 딜레마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Todechini(1999)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그녀는 일본 정부가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히바쿠샤의 존재에 대응함으로써,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는 식민지배의 문제를 포함해서) 전쟁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도덕적 성찰은 지속적으로 배제해 나갔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원폭의료법의 행정관료제적 실행 속에서 히바쿠샤의 고통은 또 하나의 생물학적 상태로 전환되고, "원폭의 피해"는 그것을 초래한 행위자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리며, 히바쿠샤의 자격심사 과정은 원자폭탄의 경험의 역사적, 정치적 이해에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들을 억압한다.

본 장에서 얻은 또 다른 결론과 연구 과제는 이 히바쿠샤의 경계 구성과 통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과학 연구의 역할과 성격이다.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는 방사능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 된 만큼 피폭의 경계를 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전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에 관한 과학연구들이 피폭의 범위를 규정한 방식과 그 결과로서 폭심지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지도는 피폭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여러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런 점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독립된 우크라이나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특정한 “위험에 처한” 인구집단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과정을 새로운 시민권의 등장과 시장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페트리나의 연구는 본 장의 결과와 비교할 만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체르노빌 이후의 일련의 흐름은 방사능 피폭의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 삶의 가능성이 붕괴하는 가운데서 피폭자라는 새로운 자격의 범주가 법적, 제도적으로 출현한 과정이다. 그러나 Petryna도 지적하고 있듯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또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와 마찬가지로 여러 요인들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재난의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결과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사고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Petryna, 2004:2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권리들은 그 근거로서 피폭의 인체영향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과학연구들—그 중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체영향 연구를 기반으로 조성된 연구가 많이 있다—이 인용되고 과학자문기구들의 정당화 작업이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의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결함들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페트리나는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계량화하려는 과학지식들, 전문가들, 국제 기구 등과 같은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독립국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레짐의 본질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의 경우 인체 피폭량 측정의 가장 기본적 요소로 채택된 것은 염색체 변이 증가에 기반한 피폭량(dose burden) 측정 방법이었다는 점이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이곳의 주민들에게 혈액 내 염색체 변이 정도나 방사선 활성화도(radiation activity), 방사선 피폭량 등과 같은 용어가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연유다. 이들의 삶에서 생명과학이나 의학적 개입은 변호사와 사고 피해자들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선 질병의 맥락에서 적절한 복지 기금을 받아내고 의료 처치를 협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인체 피폭량을 측정하는 것과 인체의 피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피폭자 지위 인정과 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되기 때문이다 (Petryna, 2004:251).

피폭의 인체영향을 생물학적으로 식별하는 일이 갖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에게서 더욱 심각했다. 원폭 투하 직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이루어진 여러 과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실제 인체영향을 생물학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콜로이드와 같이 외상을 통해 진단이 가능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 혹은 무의미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 정책의 장에서 히바쿠사라는 범주로 포함되는 자격의 통제, 즉 히바쿠사를 판별해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하는 절차에서 기억 그리고 그것의 발화된 형태로서의 문서화된 진술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하지만 히바쿠사의 통제 과정에서 기록과 문서, 기억이 중요한 매개가 된 점이 피폭자 범주의

경계를 구성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과학 연구의 무용(無用)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후 일본에서 원폭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연구, 그리고 일본의 독자적인 연구에서 원폭피해자들의 기억과 기록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과거의 실재를 발언했기 보다는 상호 간섭적이었다. 또한 피폭자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관료제적 통치 속에 편입된 과학 연구의 결과들은 관료제가 요구하는 각종 기준들로 재설정되어 고체화되고 표준화되었으며, 원폭피해자들의 기억과 기록들도 이러한 고체화된 지표들과 끊임없이 비교 계량되어야 했다. 물론 이러한 과학 지식은 단순히 국가 혹은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 운동은 논쟁적인 과학 연구들 속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나가고 있다. '원폭체험자'와 '원폭증' 인정 소송에 관한 여러 주장들은 '피폭'과 관련된 정부의 여러 기준들을 '과학의 진보를 무시한 극단으로 비판하면서 새로운 과학 연구의 지식들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받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바쿠샤의 경계 구성과 통제에 있어 과학과 정치의 상호 간섭의 형태는 단순히 과학이 정치에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정치가 과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변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과학과 정치의 '경계 없음'이 아니라 각각의 장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구성된 경계'와 그 안에서 정당성을 갖는 특수한 논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후 원폭피해자에 대한 과학 연구가 피폭된 신체의 실재를 과학적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번역은 항상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항시적인 과학 연구의 한계는 연구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도전 의식을 불어 넣고, 의미 있는 논쟁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한 논쟁적인 과학지식 가운데서도 특정한 결과들이 관료제적 틀로 포함되고 기준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과학 연구의 진행 논리 및 속도와는 또 다른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본 장의 3절의 예에서 보았듯이 원폭증 인정에 있어 역치와 기준 확률의 문제는 항시적으로 불확실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 과학 지식들이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행정관료제적 통제 기준으로 결합하는데서 보이게 되는 경직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정책의 '장'에서 과학과 정치의 논리가 행정관료제적 절차에 맞추어 굴절되며, 특히 경직화되고 고체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등장은 피폭자 범주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시정권적 경계를 드러낸다. 4장에서는 해방 후 한국으로 귀환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사회적 결집 과정과 피해 구제 운동의 방향을 살펴보고, 이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상정하는 '히바쿠샤'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와 일본 히바쿠샤 원호의 초국경화

현해탄아, 현해탄아
우리 영주가 세 번째로 현해탄을 건너는 구나
이번엔 다정히 대하지 않을 테나
현해탄아, 현해탄아
너를 건널 때마다 비극이 우릴 기다렸다
세 번째엔 우리 영주를 즐겁게 맞아 다오
현해탄아, 넌 우리에게 빛이 있다
현해탄아, 현해탄아
부당한 현해탄아
넌 우리에게 빛이 있다
넌 우리에게 빛이 있다

-희곡 <I am a Hibakusha>⁸⁷⁾ 중에서-

1. GHQ/미군정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귀환 동포들

1) 해방 후 GHQ와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귀환 정책

많은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패전은 곧 해방을 의미했고 ‘고국’은 고향 산천과 동포가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해방이 곧 고국으로의 귀환이라는 것은 이 시기 등식(等式)이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어 가족 중에 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좀 더 복잡했다. 1988년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재한피

87) 이 작품은 1984년 당시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교수(예술철학박사)였던 한국인 홍가이(영문 이름 Kai Hong)씨가 영어로 쓴 희곡작품이다.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있다가 귀국한 한국 여성인 영주의 비극적 삶을 통해 전쟁의 책임과 반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허구이지만 영주의 일본으로의 밀항과 이것이 한일양국에서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거나 한일의 좌익계열 운동단체들에게 반정부 시위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수습되는 과정은 1968년 한국인원폭피해자 손귀달의 일본 밀입국 사건과 거의 흡사하다 (손귀달 밀항사건에 관한 외교 문서 분석은 김승은(2012a)을 참조할 수 있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대본은 (주) 예음에서 제작된 것으로, 1988년 8월 25일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제 222호로 검열된 인장이 남아 있다. 1985년 국립극장은 연출가 김석만 씨에게 이 작품을 의뢰, 번역을 끝내고 가을 정기공연을 추진했지만 국립극단이 공연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돌연 공연이 취소됐다. 1986년 작품에 흥미를 갖고 있던 무세중(서울예대) 씨가 작가와 교섭, 김연경 씨 번역으로 테아트 로 프에 의해서 '히바쿠샤 | 원폭피해자'라는 제목으로 공연된다 (경향신문 1986/7/8).

폭자문제위원회>는 '재한피폭자들의 고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시나 마사에(椎名麻紗枝) 변호사는 '재한'(在韓) 피폭자가 생긴 1차 원인이 왜 이들이 그렇게 일찍-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이 시기는 원폭으로 인한 급성기 장애가 다 끝나지도 않았을 무렵이다-'귀국 했는가' 혹은 '귀국해야만 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았다 (椎名麻紗枝, 1988:76). 그가 보기에 조선이 해방됐으므로 조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기대가 강했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원폭증을 앓고 있었을 히바쿠사들이 부상당한 몸으로 어떻게 귀환할 수 있었으며, 일본정부는 그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문제였다. 시정부의 임시구호소가 폐쇄된 10월 말경부터는 개인들이 부상자를 돌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귀국에 필요한 선박의 알선이나 수속, 가산의 정리 등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조사는 일본정부가 그들의 귀국수속에 대해서 보살피주었다는 예는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리고 1945년 말까지 130만 명, 1948년까지 추가로 50만 명의 조선인의 상당수가 자비로 귀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히바쿠사들도 마찬가지로의 경로를 밟았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림 1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위치
(출처: 구글맵(maps.google.com)에서 연구자가 표기)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인의 본국 귀환이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급박하게 이뤄진 것은 GHQ가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일본인 이동은 가능한 한 일본으로부터의 조선인 송환과 조화시켜야 한다"(미 국무성 비밀외교문서, 1984:91 이현주, 2005:253-254 재인용)는 입장을 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GHQ의 재일조선인 그리고 재조일본인의 귀환 정책은 양국의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우려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총 200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있었던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의 모국 귀환은 재조일본인의 히키아게(引き揚げ, 인양 혹은 송환)를 원활히 하는 것이기도 했다. 조용욱(2005)의 「일본 내 한인의 '귀환'과 한국 내 일본인의 '송환'에 관한 해방 직전 미국 측 자료⁸⁸⁾」 해제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귀환 문제는 1943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열강들 사이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었다.⁸⁹⁾ 소위원회는 전후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상황에 따라 이 귀환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조선 내 일본인의 잔류는 최소화해야 하고, 이것은 일본에서의 조선으로의 조선인 귀환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나 마사에 변호사의 보고서 결론에도 인용되고 있는 일본의 패전 직후 GHQ의 점령정책의 일단을 보여주는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 소수민족, 1904-1950』(日本における朝鮮少數民族, 1904-1950)(Wagner, 1975)에서도 GHQ와 일본정부의 조선인 귀환 조치가 서둘러진 이유에 대한 배경이 설명되고 있다. 이 시기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합법화된 조선인들의 (좌익 계열의) 민주화 운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진 것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점령군의 우려가 커지면서 조선인의 고국귀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조치하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본에서는 GHQ, 한국에서는 미군정 기였던 1945년 8월부터 1948년까지 점령군의 월경에 관한 정책을 검토한 고바야시 소메이(小林聰明, 2012:68)는 당시 GHQ가 일본정부에 조선인이나 중국인 중 복원군인이나 강제연행자를 우선하고, 늦어도 11월 14일부터 하루 1000명 정도씩을 센자키(仙崎)나 하카다(博多), 쿠레(呉)로부터 귀환하도록 지시했다는 정부 문서를 통해 이러한 조치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1945년 11월 이후 GHQ에 의한 귀환대책이 본격화되어 귀환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됐고, 이후로도 일본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귀국을 추진하는 등의 일이 계속 진행됐다.⁹⁰⁾ 1945년 말 센자키나 시모노세키(下關)

88) 미국국립문서보관소 <RG59, Records Relating to Miscellaneous Policy Committees 1940-45, Box No. 108> 내에 보관 중인 미국 행정부 내 삼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on committee) 산하 극동지역분과조정위원회(The 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on the Far East)가 작성한 일본 내 한인의 '귀환'과 한국내 일본인의 '송환'에 관한 문건 (K-7 Preliminary, 'Korea: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1945.4.25; K-9 Preliminary a, 'Korean: Repatria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1945.6.1)의 자료 해제.

89) 1944년 삼부조정위원회와 전후계획위원회(Post-War Programs Committee)를 중심으로 미국의 한국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정치적 처리방안이 논의됐고, 1945년 3월에 종전 이후 조선인과 일본인 귀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1945년 극동지역분과조정위원회 한국 소위원회에서는 재일 한인의 귀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당시 이 소위원회는 종전 후 많은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할 것을 예상하기는 했으나, 일본의 경제 상황과 조선인의 동화 정도가 약해 일본인들이 적대시할 소수 중족집단이 될 것을 우려해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을 제외한 모든 한인을 송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조용욱, 2005:249).

90) 실제로 1946년 1월 12일의 GHQ는 GHQ의 계획 따라 귀환 명단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소지할 수 없게 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시나 마사에(椎名麻紗枝) 변호사는 이것이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귀국시키고자 하는 방침이라고 평가했다 (椎名麻紗枝, 1988).

등에 2만 명, 하카다(博多)에는 1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귀환을 기다리며 체류해 위생상태도 극도로 악화되었다.⁹¹⁾ 그 중에서도 “시모노세키는 생지옥”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보고된다 (小林聰明, 2012:67).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귀환 과정에 대한 구술에서 이 시기가 “초가지붕에 서리를 맞아서 앞은 다 마른 하얀 박이 남아있었다”(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김치우 증언편)거나 “들어가서 곧 김장 김치를 담그고, 동지팔죽을 끓였다”(최순례 증언편)고 기억되는 그해 늦가을과 초겨울이었다는 점⁹²⁾은 이들의 이주가 GHQ의 일본 점령 기간 동안의 조선인의 월경에 관한 정책 차원의 대책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 또한 이것은 패전 직후 일본의 원폭피해자들이 다른 일반의 전재민과 동일한 범주로 엮였던 사정을 비추어보아도 충분히 짐작가능한 일이지는 하지만, 고국으로 귀환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귀환 동포들 또한 원폭피해자로서 특별한 대책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고국으로의 귀환

일본 정부와 GHQ의 조선인 귀환 그리고 월경에 대한 정책은 고국으로 귀환하는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사정과는 어떻게 결합하고 있었을까? 제도적 차원의 제약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서로 다른 사연들로 변화한다. 박정자 씨의 부친(1910년생)은 충북 영동이 고향이었다. 열일곱 살이던 1926년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히로시마에 건너가 사카모토(坂本) 주물공장에 취직했다. 스물두 살 되던 해에 고향의 처자와 혼인식을 치르고 히로시마로 데려와 자녀들 일곱이 모두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다. 원폭 당일 박정자씨의 부친은 공장에 출근했다가 폭풍에 무너진 목재기둥에 다리를 크게 다쳤다. 폭심지에서 3km 정도 떨어진 후나이리(舟入川口町)에 자리하고 있던 자택도 폭풍에 무너져 돌쟁이 동생이 정수리가 크게 다치고, 박정자 씨의 바로 아래 여동생은 등에 큰 화상을 입었다. 어딘가에서 치료를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모친이 두 동생을 데리고 구호소를 찾아 나섰지만, 길에는 이미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끔찍한 광경을 뒤로 하고 모친은 다시 무너진 자택으로 돌아와 밭에서 천막생활을 하며 시에서 임시로 나누어주는 주먹밥을 먹으며 연명했다. 제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게 그 해 가을이다.

우리가 나온 건 그해 가을에 나왔어요. 우리 아홉 식구가 죽은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91) 귀환자들은 귀향지가 경상남북도나 충청북도인 경우 센자키, 하카다, 시모노세키 등에서 부산항으로, 귀향지가 전라도와 충청남도인 경우는 사세보 항에서 군산항이나 목포항으로, 귀향지가 경기도나 강원도인 사람은 사세보 항에서 인천항으로 수송하기로 합의했다 (최영호, 1995:117-118).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역 전재동포들 상당수는 가까운 부산으로 귀환했다 (이현주, 2005:254).

92) 연구자와 면담한 거의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그해 늦가을과 초겨울에 한국으로 귀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내용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2011)가 발간한 자료집 2부 증언편을 참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일본사람들도 거기 많이 많잖아, (왼쪽을 맞아) 식구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밭 가운데서 화장을 해. 집이 부서졌으니까 그런 걸로 화장을 해. 근데 사람들이 자기 식구 화장 다하고 치다꺼리 다하고 멀쩡한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⁹³)...(중략)...왼쪽 당하고 나가지도 보면 이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너털너털 한테 (먹을 게 없으니 밭에서) 고구마 캐서 먹고, 그리고 그냥 걸어 다니다가 죽는 사람도 허다분 하고. 밭에 사람들 화장하느라고 밤새도록 환해. 집에 불을 안 켜도 환해. 전기가 안와도 집안도 밝고 그래.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하고...(중략)...그렇게 생활을 몇 달을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이북에서 온지 알고 가지 말라고, 이북에 가면 소련 놈들 때문에 못산다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봐 소문이 있었나봐. 그래서 왔어. 부산으로 들어와서 대구로 갔어. 대구에 우리 외삼촌 찾아 갔다가 일본 사람들 살다 나간 집을 구한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 살림살이 그대로 있고, 아 이 사람들이 쫓겨갔구나 할 정도로 그 느낌이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거기에서 거처하고 있었어요. (박정자, 여, 1934년생)

박정자 씨의 증언에서도 비치지만, 해방 직후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전해지는 소식과 소문들은 재일조선인들 사이에 고국으로의 귀환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복잡하고 이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조선에서 쫓겨 나온 일본인들이 내지의 조선인들을 몰아낼 것이라거나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 병사들이 아녀자들을 겁탈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북에 소련 놈이 들어 온다', '반도가 좌우로 갈라져,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고국'의 경제적 궁핍과 해방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좌우익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에 대한 소식은 이들에게 고국이 완전무결한 안전한 정착지는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문도 소문이었지만 이들의 귀환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무엇보다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포기해야 할 재산 문제였다. 당시 일본에서 조선으로 귀환하는 이들이 지닐 수 있는 지참금은 현금으로 천 엔이었다.⁹⁴) 그런데 같은 시기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연락선의 정규 운임이 15 엔에서 30 엔 정도였고, 공장에서 단순 노무자로 일하던 성인 여성의 임금이 하루 1 엔 10 전, 한 달 약 30 엔(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하서운 증언 편), 성인

93) 박정자 씨가 말한 '갑자가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죽는' 상황은 원폭투하 직후 초기/급성기 사망자들이 속출했던 때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준다. 원자폭탄의 인체에 대한 영향에 대한 기록은 부록을 참조.

94) GHQ와 SCAP이 해방 직후 작성한 문서를 통해 재일조선인 귀환 등을 연구한 김태기(1998:251)에 따르면 재일조선인의 본국 귀환 시 지참금 제한은 GHQ의 경제과학국(Economic and Scientific Section, 약칭 ESS)이 점령 직후인 1945년 9월 22일 '금, 은, 증권 및 금융상의 증서의 수출입통제'를 일본정부에 지시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재일조선인이나 중국인의 본국 귀환 시 지참금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대장성이 일본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2000엔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러나 GHQ 측은 일본의 자산 유출에 따른 경제 악화, 자산 유입된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했고, 지참금의 한도는 1000엔으로 결정된다.

남성의 경우 하루 2~4 엔, 한 달 약 60~120 엔 정도(정근식 편·진주 채록(2005)의 박도섭, 김인태, 박홍규 증언 편; 한국원폭피해자협회(2011)의 정일봉 증언 편 등 참조)였다는 증언들과 비교했을 때, 가구당 천 엔은 이들의 임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1~3년 정도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었지만 생활 기반을 잡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라는 것이 분명했다.⁹⁵⁾

(원폭 후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카바 같은 거 막을 쳐가지고 일본에서 죽 지내면서 일본정부에서 주는 배급 같은 거 먹고 살았지. 그리고 시내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촌 같은데 가서 과일 같은 거 주워서 팔고 했지. 말하자면 불법이지. 그렇게 돈을 모아서 12월 23일엔가 여러 명이 합해 배를 구해서 오는데 27일 걸립디다. 그때 부산으로 들어왔어. 당시 일본돈 만 엔인가 천 엔인가를 교환을 해줬어. 딴 사람들은 돈을 짐 속에 넣어놔서 꺼내지 못했는데, 나는 바지 허리춤 허리띠에 넣어서 와서. 천 엔인가 보다. 7천원 주더라고. 동생하고 (귀국해서) 합천에서 살았어. 내나 거창이 합천 옆이고 오촌 친척들이 있어서. 내가 일본에서 안 오는건데, 그때 아버지 유골이 (히로시마) 절에 있었거든. 그때 해방되고 사람들 독립되어서 좋다고 한국 간다 하는데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유골이라도 아버지가 얼마나 가고 싶겠나 싶어서 온 거야.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기름종이에 엄마 속옷을 꺼내서 놓고 거기에 유골을 넣어서 싸서 거창에 큰아버지한테 보냈었거든. 그게 생각나서 엄마 아버지 합장을 해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합장을 했어요. (김수영, 여, 1928년생)

그해 음력으로 9월 초인가 나왔어요. 양력으로 10월 중순경이지. 그렇게 나오는데 야미배(밀선) 타고 24일이나 걸려서 왔어. 대마도에 가는데 23일이 걸렸어. 배가 아주 육지 근처로 섬들을 다 거쳐서 갔어요. 그리고 오다가 배가 파산될 정도까지 되고 그랬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다가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버지가 못나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폭격 날은 많이 안 다녔는데, 나를 찾으러 다닌다고 시내를 많이 다니다가 그랬는지 독가스를 많이 마셨어. 어머니랑 한참 그러고 다녔대.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찾아놓고 하혈이랑 토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쌀미음도 먹이고 산에서 무슨 약초라고 캐 와서 찌서 먹고 그러셨어. 그리고 그런 말이 있었거든. 그때 한국에 일본 사람들을 다 내쫓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집으로 가자" 하게 됐지. 근데 아버지가 치료가 제대로 안 되니까 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 무슨 치료까지 했냐면 우리 동생 네 살짜리 똥을 싸서 구워서 바르고 하는 것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남동생 둘을 남겨두고 우리는 어머니랑

95) 박도섭, 김인태, 박홍규 씨의 경우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징용된 경우였고, 정일봉씨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동원된 경우였다. 하지만 징용자들의 경우에는 임금에서 숙식비, 보험료 등을 모두 내야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박홍규 씨는 본인이 '반장'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4엔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연구자가 면담한 이들 중에도 징용자들이 있었는데(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문두성, 김한수, 유장석 증언편), 이들도 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당시 받은 임금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쓰기도 모자라 고향에서 부쳐주어야 할 정도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엄마, 나, 동생 둘만 나온 거야. 돈도 우리가 가져오고 짐도 다 가져오고. 근데 나와서 보니까 부산항에 나올 때 아주 봉대를 하고 아주 꼴이 말이 아니게 나왔거든. 근데 일본 돈으로 천 엔만 바꿔주더라고. 근데 식구대로 냇이 왔으니 냇이 바꾸면 되는데, 아버지가 나갈 때 돈을 바꾸지 말고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나만 바꾸고 나머지는 집에 놔뒀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해 3월에 나오니까 그 돈이 휴지조각이 됐지. (한일순, 여, 1930년생)

한일순씨는 1930년생으로, 그녀의 가족은 합천군 쌍책면에서 농사를 짓다가 1930년대 후반 더 이상 생계유지가 어려워 어머니 친척들이 많이 있던 히로시마 고이로 갔다. 아버지는 토목 공사장에서 일용 노동일을 했고, 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두고 간즈메(통조림) 공장에 일을 나갔다. 한일순씨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다가 열다섯 살 되던 해부터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인쇄공장에 취직을 했다가 피폭직전에 요시지마에 있는 정미소로 자리를 옮겼다. 하루 1엔 10전이 조금 넘는 돈을 받았다. 그녀가 직전까지 일하던 인쇄 공장과 그녀가 매일 참여했던 조회행렬의 행선지가 폭심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었는데, 만약 그녀가 직장을 옮기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폭격 날 그녀는 출근 중에 무너진 회사 건물에 깔려 큰 부상을 입고 구호소로 옮겨졌는데 일주일 정도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있다가 '고이' 사람을 찾는 이를 겨우 만나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삼촌과 그 가족, 그리고 삼촌이 데리고 일을 하던 공사장의 인부 40여명이 모두 사망하고 시체도 찾지 못했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본인을 찾아 나섰다가 더 큰 병을 얻은 아버지를 히로시마에 남겨 놓은 채 고향으로 돌아온 게 그해 가을이다. 인터뷰에서 한일순씨는 당시 부산항에서 식구대로 돈을 다 바꾸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은 가구당 천 엔 한정이었으므로 식구들이 잘못 알아 그리 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 이 '천 엔'에 대한 감각은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생활기반을 잡는 데 겪은 어려움들과 뒤섞여 한뼉히 기억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지는 귀환의 과정이 쉽지 않았음은 당연했다. 미리 한국으로 부친 집을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직접 가지고 오더라도 배가 난파하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은 예사였고,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해서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가 그때 번 돈을 모아둔 곳이 있었는데 땅속에, 거기를 파서 돈을 가져오시고. 그때 우리 삼촌이 가이타(海田)엔가 사셨는데 한국에 가자 해서 오게 된 거야. 시월쯤 됐나봐. 야미배 하나를 여러 집이 어울러서 탄 거야. 배가 울렁울렁하니 똥물까지 올라오는데, 기관고장이 나서 대마도에서 3일이나 있으니 먹을 것도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 보름 만에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1932년생, 여, 전순임)

친척들이 다 같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바다 멀리 오면 혼이 못 따라 온다고 섬으

로, 섬으로 왔어요. (섬에서 다른 섬으로 갈 때 무당이 굿을 하면) 우리 큰오빠는 아버지 유골함을 들고 '아버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갑니다. 오이소' 하면서 그렇게 온 거예요. (굿을 하느라) 돈을 무척 많이 썼다고 했어요. (1937년생, 여, 오정인)

오정인 씨의 아버지는 도일하기 전 대전의 한 토목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는 곧 시코쿠 등지를 돌며 건축 공사를 하다가 해방 직전에서는 히로시마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현장에서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일에 필요한 인부를 모집하기 위해 합천과 그 주변 지역에 자주 출장을 갔으며, 고향의 친척들과 지인들 또한 많이 불러들였다. 때로는 동향인들이 징용을 피하기 위해 부탁을 해서 온 경우도 있었다. 오정인 씨의 아버지가 히로시마에서 해방 직전 아버지가 맡아서 했다는 공사는 일본 군부가 본토결전을 앞두고 1945년 단행했던 히로시마 제2총군 배치 및 방공호 구축사업과 관련되어 있었다. 히로시마 역 뒤의 함바가 이 공사장 인부들의 숙소였는데, 당시 이 공사장에는 합천에서 모집된 젊은 노무자들이 다수 있었고, 원폭협회 다른 회원들의 기록에도 가족을 동반하고 이 공사장에 함바의 일을 같이 거들면서 살았다는 증언들은 다수 있었다. 그런데 오정인 씨의 아버지는 해방 직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에게 잡혀가 횡액을 당했다. 건축 공사를 총괄하며 모든 돈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렇게 부친을 잃고 조선으로 돌아갈 때에는 미리 온갖 중요한 물건과 귀중품을 미리 알선한 배에 실어 한국으로 부쳤지만, 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겨우 아버지의 유골만을 가지고 귀국했다.

이처럼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귀환동포(歸還同胞)⁹⁶⁾들은 1945년 늦가을과 초겨울에 집중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다. 징용자들의 귀환도 아무런 대책 없이 개인들에게 맡겨진 것은 마찬가지였다 (椎名麻紗枝, 1988:76-77).

(1945년 9월 10일) 료장(寮長, 숙소의 장)의 말이다. “너희가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해도 아무 배나 타고 떠나면 가지도 못하고 죽는다. 일본해를 건널 수 있는 배는 50톤 이상이어야 무사히 건널 수 있고, 그 이하 작은 배는 중도에 침몰하게 된다. 조용히 기다리면 대책이 세워질 것이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1945년 10월 15일) 조선에 갈 사람을 모집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재도를 찾았다. “재도야,

96) 1945년 해방 당시 해외 동포 수는 약 500만 명이었다. 포츠담선언 제9항에 따라 이들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해방된 고국으로 귀환되어야 했지만,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 문제는 당사국의 이해에 따라 크게 왜곡되었다. 중국에서는 국공내전 등 내부의 정치 갈등과 분열로 조선인에 대한 재산몰수 등이 이뤄졌고, 소련군 점령지였던 사할린에서는 한인 귀환이 원천 봉쇄됐다. 남양 군도 등에 배치되었던 한인들은 연합국 점령군의 포로나 전범 취급을 받았다. 이현주(2005:245)는 당시 해외 귀환 동포는 주로 '전재민' 또는 '전재동포'라 하고, 북한에서 월남한 이들은 '월남인' 혹은 '이재민'이라 했지만, 자료상에서 '전재동포'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구호활동에서 '동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전재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연구자가 인터뷰한 원폭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귀환 동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귀환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너 돈 얼마나 있니?” 했더니 “돈은 왜? 한 50전 되려나?” 한다. 재도에게 “조선에 가는 배가 19일 밤 7시에 있다는 데 배 샅이 겨우 되니 어쩌면 좋겠니?” 했더니 재도가 말한다. “설령 배샅이 되어도 미야모토 혼자 두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셋이서 이려고 있을 수도 없지 않니, 우선 너만이라도 먼저 가서 우리가 살아 있다고 전하고 연말에 가게 될 거라고 안심시켜라” 한다. 재도 말도 일리는 있다. “재도야, 그러면 내가 먼저 떠난다” 말했다.

(1945년 10월 19일) 6시 재도는 내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나왔다. 미야모토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하라 했다. 해변에 도착하니 작은 목선이다. 재도가 이 배로 간다고 “가네야마, 도로 가자. 안심이 안 된다” 한다. 내가 “야, 저 사람들도 생각이 있어 댄겠지. 돈은 이미 냈으니” 배에는 30여명이 보인다. 재도는 가방을 건네주며 “네 생각대로 해라” 한다. 배가 멀리 보일 때까지 재도는 바위에 앉아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한없이 울었다. 그냥 같이 있을 걸 후회도 했으나 배는 가고 있다. 새벽이 밝아 갑판위에 올라와 보니 멀리 산이 보였다. 선원에게 물었다. “저기가 부산이나?” 했더니 아직 대마도라 했다. 또 다시 후회가 된다. 선원에게 물었다.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45일 걸린다고 했다. 도중에 기관고장으로 한 시간 넘게 표류했다. (김한수 일기, 남, 1918년생)⁹⁷⁾

김한수씨는 1944년 9월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의 연백전매지국에서 일하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에 징용됐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 동(東)공장 구마모토구미(能本組)에 배치되어 철관을 두드려 구부리는 일을 하다가 발을 다쳐, 이후 같은 공장 아연도금작업장으로 옮기게 된다. 해방 후 회사로부터 어떠한 귀환 조치도 마련되지 않자, 자비를 들여 밀선을 타고 귀환을 했다. 1945년 10월 19일, 김한수씨는 작은 목선에 몸을 실은 지 열흘째 되던 날 부산항에 도착해, 걸어서 집이 있는 연백(지금의 개성)까지 갔다.

1945년 8월 중순부터 동년말까지 약 13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귀환했는데,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는 이 중 히로시마에서 약 1만 2천명이, 나가사키에서 8천명이 귀환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212). ‘고국’으로 돌아온 ‘귀환 동포’들의 ‘한국’에서의 삶이 시작됐다.

3) 고국에서의 삶

‘야미배’를 타고 겨우 귀환한 대부분의 이들에게 고국에서의 삶은 여러 면에서 쉽지 않았다. 고국의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130만 명이라는 귀환 동포들을 받아들일 사회적 조건이 전혀 형성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귀환자 중 받은 실업상태에 있었고, 이들에 대한 거

97) 이 일기는 김한수(1918년생)씨가 2011년 5월 12일 면담과정에서 연구자에게 건네준 것이다. A4 용지에 컴퓨터로 타이핑 작업을 해 작성된 이 일기는 그가 징용 당시에 썼던 일기를 옮긴 것이라고 했다. 원본은 피폭당시 그의 작업장에 있던 아연 가마에 불태워졌고, 두 번째 쓴 것은 1·4후퇴 때 고향 연백에 두고 왔다고 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바를 쓴 것이지만 지금 쓰라고 해도 그대로 똑같이 써낼 수 있다고 할 만큼 그의 머릿속에 일기 전체의 내용이 각인된 것들이었다.

주나 식량, 취직 알선 등이 일부 구호단체에 의해 지원되기는 했지만 남한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조차 혹독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귀환자들이 즉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경상남도 미군지방군정부는 귀환자의 상태에 대해 "경제상황이 일층 심각해지는 속에서 귀환자가 지참한 천 엔만으로는 수일도 생활할 수 없으며, 생계를 꾸릴 방도도 갖지 못했다"(小林聰明, 2012:68)고 기록했다. 일본에서 돈을 벌어 고향에 눈과 발을 미리 많이 사두고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 고국에서의 생활이었다. 일본에서 돈을 벌어 송금해 모아 놓은 우편저금이 해방 직후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고향 친지에게 맡겨 사둔 땅을 토지개혁으로 잃어 평생 한이 되었다는 사연들이 집중되는 것이 이 해방 직후의 혼란 상 속에서 귀환 동포들이 맞은 고국의 현실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에서 번 돈을 한국에 보내서 논을 조금씩 사놓으신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 온 거예요. 근데 농지개혁법이 나왔잖아요. 그런 법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농사를 안 지으면 그게 소작원한테 가게 되니까,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그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해서 고향으로 들어 간 거예요. 또 아버지 어머니 묘도 거기 있었고요. 저는 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 바로 부산으로 나왔어요. 일본에서 하던 일이 선박 내연기 기술계통 일 이니까 그런 기술을 살릴 직업을 찾은 거지요. 부산에 올라오니 그 당시 형편없다 아닙니까. 직장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해방 직후니까 질서가 제대로 안 잡혀 있던 시대잖아요. 처음엔 철공소 같은데 들어갔어요. 여기 부산 범일동 근처일 거예요. 근데 철공소라고 해도 농기계 그런 거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일본에서 하던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서 일을 한 거지요. 사실 그때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말이 안 통하고 하니까 직업 구하기가 힘들었던 때예요. (정일봉, 남, 1924년생)

해방되고 나와 가지고 시골 가서 농사짓는다고 했는데, 생전 농사를 지어봤나. 나와서 부산서 3년 살다가 우리 아버지 7촌 아재가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재산을 맡겨놓고 있었는데 그게 자꾸 팔고 이리저리 하니까 그거 찾으러 가야한다고 시골로 들어 간 거야. 대동아전쟁 한참 때는 한국하고 왕래가 끊겼잖아. 그 사이에 논 댕 마지기 팔아먹고, 우리 고향에 사농은 네 칸 뒷집 사서 거기 아버지 올 때마다 가져왔던 옷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없더라고. 그니까 그 논 찾는다고 시골로 간 거야. 그러니까 처음 와서 부산사범학교 넣어줘서 다니다가 다시 시골로 갔잖아. 졸업도 못하고 시골로 갔어. 할아버지가 무슨 학교냐고 (못 가게 해서). 그래도 거기서 한국말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열세 살에 처음 나온 거니까.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거야. 생전 시골을 봤어? 우째 나락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농사지으려니 돼? (이재선, 여, 1933년생)

와서는 당장 고향에 할아버지를 찾아갔대요. 근데 고향이 바닷가 쪽이었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으셨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뱃일을 해본 것도 아니니 배꾼도 못하고 농사일도 해본 적이 없

고, 자본도 없고 하니 일본 쪽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까 해서 일본에도 한번 다녀오시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되고 그러저럭 사는데 전쟁이 나고 그래서 생활자체가 대체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오면 그걸 떼다가 안동이라든가 그런 데에 도매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많은 노력을 하시고요. 어머니가 땀감을 하시면 머리에 이실 줄을 모르니까 떼고 다녔는데 그걸 사람들이 홍보고 했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즈음에 학교를 가는데 말은 한국말을 하는데 그래도 잘하지는 못하고, 또 집에서는 어머니를 '오카짱'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홍보듯이 해서 중학교 가니 어머니가 '엄마'라 해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고생을 했어요. '엄마'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한정호, 남, 1941년생)

또한 위의 여러 증언에서도 잠깐 언급되지만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교육을 받고 자란 조선인 1.5세, 2세들이 겪는 사회문화적 어려움도 있었다. 일본의 패전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분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왜놈 다 됐었던" 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으로의 귀환은 생전 처음 듣고 보는 것들로 가득한 낯선 땅에서의 새출발이었다. 그것은 진학과 취업의 희망을 접거나 맘속에 담아두던 이와이 이별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이제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했다.

처음에 거기(고향, 경북 영일) 가서 집이 있습니까, 일터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이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인터뷰 중 한 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심) 내가 그래서 차라리 일본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할걸. 나는 아주 일본에서 커놔서 일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살 때)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내가 조선 사람이다 이야기 안하면 모를 정도로 내가 아주 일본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럴 정도로 살았는데, 아이고, 한국 와서 산 생각하면. 근데, 이리 역에 가니까 귀환동포라고 해서 밥도 주고 채워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다들 장사로 우리들을 대해서, 우리도 국밥장사나 하면서 살까 하기도 했는데, 이리에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큰 가마솥에다가 쌀밥을 해가지고 퍼서 주는데 참. 그 때 만주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최성자, 여, 1924년)

나도 사실 그때 해방소식을 들었는데, 일본이 졌다고 하니 얼마나 아쉽던지 눈물도 나고 그랬어. 중고등학교 진학하고 희망이 컸는데 (박성일, 남, 1932년생)

완전 왜년이지, 왜년으로 살았제.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들어올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TV에서 가야금 연주 장면이 나올 때 같이 있던 제일교포가 '저게 뭐냐고 묻자, 가야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한국사람 다 됐다. (이태순, 여, 1932년생)

시골 큰댁으로 갔지요. 가니까 마당으로 올라서는 축담이 높아요. 거기를 넘어서 방에 가니

문은 또 낮아요. 우리는 애들이니까 들어가는데 키 큰 사람은 숙여서 가야 되는 그런 데예요. 들어가니 골대로 엮은 자리로 흙바닥을 덮어 놨는데, 그걸 밟으니 먼지가 푹푹 올라와요. 메주 냄새도 나고, 곰팡이 냄새 비슷하게 나는데, 평생 처음 맡아본 냄새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그런데 그때 삼년 흉년 졌다고 그랬었어요. 큰덕이 농사도 좀 있고 했었는데, 주는 게 보리 죽이에요. 평생 하얀 쌀밥만 먹다가 그런 거 주니까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김치우, 남, 1935년생)

고국으로 돌아온 만큼 '한국사람', '조선 사람'이 되어야 했지만, '조선말',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쪽발이'라고 놀림 받기 일쑤였다. 합천에서는 일본에서 귀환한 젊은 처자들 가운데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워낙 많아, 시집가서 어른들로부터 "혀 짧은 소리(일본식 한국말) 안 하고 푹푹타"는 얘기 듣는 것이 칭찬일 정도였다. 이처럼 해방 직후 귀환동포들을 맞은 고국의 정치경제적 혼란상과 일본으로부터의 귀환한 이들의 사회문화적 차이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로 이어지기도 했다.⁹⁸⁾

또한 해방 직후 반도에는 좌우익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상황도 생각보다 심각했다. 1945년 12월말 모스크바 3자 정상회담에서 조선의 신탁통치 안이 결정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인들의 귀환에,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재일조선인들의 일본으로의 재입국 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으로의 귀환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⁹⁹⁾ 이미 귀환한 이들 중의 일부가 다시 일본으로의 '밀항'(密航)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고국으로 돌아온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친척들 중 일부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혹은 밀항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는 흔했다. 양점이

98)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해방 직후 '원폭' 환자로서 차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자는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다', '속도 없이 애를 많이 낳았다', '양반 집안인 것만 보고 그냥 시집을 보내던 때다', '(원폭을) 많이 맞은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당한 것은 아니니까 상관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았는데, 이는 대개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원폭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던 시절인 1950년 초반 이전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자가 정리한 호적상에서 일본에서 결혼한 이후 귀환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귀국 후에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폭의 후장해에 대해 민감해 있던 일본에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이들의 출산을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면, 한국에서는 적어도 해방 직후 몇 년간 '원폭'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는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체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전쟁을 겪으며 많은 '전재민'이 생겨난 상황에서 '원폭'의 장해가 특별히 취급되는 것은 언론에서 '원폭'과 '기형아' 등으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실상 외상이 없는 '원폭피해자'의 경우 눈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외상이 있더라도 '화상' 환자, '폭격'의 피해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은 '원폭'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기 보다는 사회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차별되고 배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폭'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회적 차별이 생겨난 시기와 방식/개별적 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99) 최영호(1995b)에 따르면 해방직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빈곤 실정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귀환희망자의 귀환 포기도 속출해, 센자키와 하카다에서 귀환을 계획한 수의 10분의 1도 채 이뤄지지 않았으며, 1946년 4월부터 12월까지 귀환자가 총 8만여 명으로, 귀환희망자 등록자 중 16.1%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1928년생) 씨의 큰오빠는 귀환 후 곧바로 일본으로 들어갔다. 고향에서는 '먹고 살 거리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고야에서 자리를 잡은 외삼촌댁의 사업을 돕기로 했다. 김지운(1933년생) 씨의 큰오빠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이내 일본으로 밀선 타고 다시 들어갔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곧 다른 형제들도 불러들였다. 권영실(1931년생) 씨의 오빠는 폭격으로 얼굴에 화상이 심했다. 화상은 켈로이드로 변해 보기가 흉했다. 소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영어와 일본어가 능통했던 그 오빠는 밀양에서 당시 미군 주둔군의 통역 일을 했다. 배속되어 있던 미군이 오키나와로 가면서 따라 들어갔다. 오정인 씨(1937년생)의 큰 오빠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다. 친척 중 한명이 월북을 했는데, 그것을 도와주었다는 '빨갱이' 혐의를 받았다. 어머니는 오빠를 산 속에 숨겨두고 삼천포 배가에서 거지 행색을 해가며 밀선을 구해 오빠를 '일본'으로 보냈다. 이태진(1936년생) 씨의 형은 사천에서 우익단체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좌익 두목을 죽이고 일본으로 밀항했다. 김선이(1929년생) 씨 부부는 귀국 후 다시 일본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친정식구들도 모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귀국했는데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발각되어 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송환됐다. 일본에 정착한 친정아버지가 돈을 부쳐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일본으로 들어 갈 수 없게 됐다. 전순임 씨의 큰오빠는 두 번의 밀항 실패 끝에 결국 세 번째의 시도에 일본으로 입국해 들어갔다.

그런데 조선으로 귀환했던 이들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들의 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小林聰明(2012)의 미 군정청 문서자료 공개에 따르면, 미 군정청은 1946년 2월 19일 사실상의 출국제한조치인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입국 혹은 출국자 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조선을 출국하려는 자에게 군정청 외무부에서의 여행증명서의 취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 있어서 필요서류의 취득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고 사실상 출국의 길을 막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일본 측에서도 입국이 제한됐다. 3월 16일부 GHQ 기본지령은 상업교통이 이용 가능해질 때까지 비일본인(Non-Japanese)이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허가 없이 일본에 돌아오는 것을 금지했다. 정규의 수속을 거치지 않은 일본 입국은 불법이 되어 그것을 시도하는 자는 불법입국자가 되었다.

그러나 1946년 봄부터 여름(6월~8월)에 걸쳐 남한에서 대유행한 콜레라는 정치경제적인 혼란 상황에 박차를 가해 일본에 밀항을 시도하는 조선인이 급증했다. GHQ는 콜레라가 조선인 밀항자에 의해 남조선으로부터 일본에 퍼질 것을 우려해 그들의 단속을 더욱 엄격히 했다. 하지만 콜레라 발생을 이유로 강화된 일본 입국 제한은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도 해제되지 않았다. GHQ는 조선인들의 불법입국을 '점령목적에의 유해한 행위'로 규정했다.¹⁰⁰ 불법입국 즉 밀항은 단지 대중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점령체제를 흔드는, 단속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로 취급한 것이다. 단속이 심해지면서 일본에서 다시 기회를 찾기 위

해 밀항하려는 조선인들의 시도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장인겸(1932년생) 씨의 아버지는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해방 후 진주로 와서 정착한 다음 일본을 오가며 밀매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 했고, 일본 쪽 사정을 잘 알았던 아버지는 오오무라(大村)의 조그만 항구 쪽을 통해 히로시마까지 가서 물건을 산 뒤 배에 실어 와서 마산으로 와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었다. 주로 화장품 이었고, 건축할 때 쓰는 줄톱도 취급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이 되는 일이었다. 1950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는 불법입국자 및 강제 퇴거된 재일조선인과 재일중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오오무라 수용소를 설치한다. 감시가 심해지고 오오무라 수용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면서 장인겸씨의 아버지는 그간의 일들을 정리했다.

그러므로 해서 (일본에서의 치료는) 그러저럭인데 그게 1년이 다 되었어. 우리 집은 나 때문에 그 이듬해 3월에 한국 나왔어. 그때 나올 때는 우리 가족 중에 형수하고 조카 둘이 폭격에 타 죽어버려서 못 왔지. 그리고 한국 와서는 부산에서 대구 오는데 고삐를 타는데 3일이 걸려. 그렇게 왔는데, 돌아온 그 해(1946)에 호열자(콜레라)가 돌았잖아. 어머니가 그거 걸려서 그 해 6월 초에 돌아가서 버렸어.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 그때까지도 내가 아직 다 낫지도 않고 화상 입은 데서 물이 질질 나오고 그랬거든. 그래도 외가에서 양식 조금 주는 거 죽 끓여 먹고 살기는 했는데, 그것도 계속 받아먹고는 살 수 없잖아. 그리고 형님도 곧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어머니, 형님, 형수 다 죽고 결국 동생하고 나하고 밖에 안 남았어. 그러다가 육이오 사변이 났지. 육이오 사변이 나니까 그때 방위대 해가지고 사람 잡으러 다녔거든. 그래 내가 잡혀 가니까 내 몸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 하더라고. 그때 아직 상처가 많고 하니까 가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다섯 번을 잡혀갔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젊은 애들이면 잡아 간 거지.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냥 차에 실어서 데리고 가버리더라고. 강원도 속초까지 데리고 갔어. 그리고 대구 사람 스물, 충청도 사람하고 헌풍 광씨들 많이 사는데 거기 사람들하고 몇이 보국대를 시키더라고. 보국대를 시키니까 그래도 그걸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근데 그때는 휴전이 됐을 때라. 거기서 21사단, 25사단, 27사단 창설할 때 여러 가지 잡일 시키는 것을 하고 훈련장소 닦는 일을 하다가 휴전된 이듬해 내려왔어. 와서 공장에 다녔지. (최용효, 남, 1928년생)

일제시기 대구에 가지고 있던 땅 삼천 평을 일본인들이 경마장을 짓는다고 헐값에 사가는 바람에 생계가 어려워져 히로시마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최용효 씨는 좀 더 일찍 도일해 자리를 잡았던 시집간 누나의 한국 물품 가게에서 배달 일을 했다. 왼쪽을 맞을 당시에는

100) GHQ의 재일조선인 귀환 문제는 일본 사회의 질서 및 치안유지(1946년 5월 ~ 1948년 7월) 그리고 반공정책(1948년 8월~1952년 4월)이라는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일조선인이나 귀환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밀입국에 대한 관리도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태기(1998:268)는 이것이 조선인에 대한 적극적인 적대감에서 비롯되었기 보다는 당시 본국에서도 흑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이 팽배했던 미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본의 새로운 '통치자'로 들어온 GHQ의 종족 문제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군 감리공장에 소집되어 군사훈련을 받던 미사사혼마치(三篠本町) 소학교 훈련장에 있었다. 야외에서 그대로 등과 양팔 등 온몸에 화상과 증상을 입어 치료를 하는데 5개월이 넘게 걸렸고, 제대로 치료도 다 끝내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해방 이듬해 3월이었다. 그러나 곧 어머니가 '호열자'에 걸려 돌아가시고, '육이오 사변'이 나던 때에는 본인과 동생 둘만이 남아 있었다. 온 몸에 화상 자국이 남아 있어 방위대 소집에서 계속 귀가 조치됐지만, 휴전 무렵 끌려간 보국대 소집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1년을 군에 있다가 나와서는 곧 결혼을 했다. '육이오 사변'으로 '사지 멀쩡한 젊은 남자가 드문 때라 부모가 없어도 '처자가 나셨다.' 그리고는 식구들을 벌어 먹이느라 '이일 제일 안 하는 것 없이' 바쁜 세월을 보냈다.

어머니가 폭탄 맞은 공포증도 있고 한국 와서 애를 또 많이 낳으셨어요. 일본에서 네 명 낳고 한국에서도 네 명 더 낳았어요. 지금 말하자면 어머니가 막내 낳고 정신을 잃어서 지금으로 치면 치매 같이 맨날 "폭탄이다", "갑연이 집에서 못나왔다" 그런 말만 하고 그러다가 마흔세 살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막내 네 살 때 돌아가셨어. 그때 몸이 허해져서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어쨌다 해서 굶도 하고 나중에는 안 돼서 교회도 가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재가를 안 하셔서 내가 동생을 키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 들어오셔서도 학교 같은 거 뭐 그런 거 짓는데 일하러 다니시고 했어요. 그리고 친척들 농사 짓는 거 도와주니까 거기서 쌀도 얻고. 또 우리 어머니가 그 와중에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담배나 설탕 같은 거 파는 일도 조금씩 했어요.. (중략)... (어머니가) 항상 "구슈계호(공습경보) 온다, 구슈계호 온다", 그리고 내가 살아 있는데도 내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울고. 그리고 나도 그때 그 일로 불이 싫어요. 어렸을 때 불 때라고 하면 그게 너무 싫어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왜 나보고 불을 안 때려고 하냐고 혼내지. 그래도 나는 불을 안 때고, 지금도 불 키는 게 싫어서 가스레인지 불 켜는 것을 안 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라고 전기로 하는 거 그거 써요. 가스 켤 때 불이 확 올라오는 게 싫어요. 또 형광등도 머리 위에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내 옆으로 형광등을 빼던가 등을 따로 써요. 또 심장수술 하고 나니까 가스 냄새 올라오는 게 너무 싫어요. (진영자, 여, 1939년생)

진영자 씨의 부친은 1909년생으로 총각 시절에 형제들과 함께 히로시마로 일을 찾아 갔다. 1930년 즈음이었다. 당시의 다른 많은 합천 사람들처럼 부친 또한 동향사람의 모집을 통해 토목공사 일에 참여하게 됐고,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한 뒤 가족을 이루고 한국에 있던 친척들을 불러들였다. 진영자 씨의 조부는 합천군 대양면 출신이었지만 대병면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그쪽 친척들과 가깝게 관계를 유지한 탓으로, 진영자 씨의 부친도 진외가택 아저씨들과 이모네를 히로시마로 초청했으며 히로시마에서는 교외 지역인 요코가와역 근처의 함석집에서 모여 살았다. 폭격 당일 지붕을 고치던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 오던 찰나 폭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화염에 휩싸였다. 집안에 있던 진영자 씨가 크게 다치고 화상을 입은 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옆집에 살고 있던 외가댁 친척이 꺼내던

사이 동생과 어머니도 크게 다쳤다. 감자로 화상을 치료하다가 "추울 때" 배를 타고 한 달이 걸려 고향인 함천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나오기 전 "한복 천이며 돈 같은 것을 한복 솜 넣는 곳 치마 말기에 깔고 먼저 짐을 보냈다"는데, 그걸 중간에 도둑질을 당한데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벌어서 보낸 돈으로 "우리 눈을 만들라 했는데, 자기들 눈으로 해 놓아서" 재산도 하나 없이 일본에서 아버지 신세를 졌다는 친척들이 조금씩 도와 겨우 살아냈다. 폭격 당일 딸이 집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귀국 후에도 계속 그 일로 후유증을 앓았다. 이렇게 원폭과 해방 직후 고국으로의 귀환, 그리고 한국전쟁을 경험하게 된 약 8년 여의 시기는 연구자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들(1920-30년대 생)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한 맺힌 시기로 회고된다.¹⁰¹⁾

2. 한국원폭피해자로의 사회적 결집

1) 한국에서 원폭피해자의 정치사회적 등장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 '피폭자'라는 용어가 신문지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비키니피재 사건이 나던 195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였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에서 원폭피해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사는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간간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원자탄 오백 개면 전 세계 인류 사멸, 미원자과학자 견해> 만하탄 원자력공장에서 연구에 종사한 스테포드 워만 박사는 원자력회의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쟁 중 광도(廣島,

101) 아마도 연구자가 인터뷰를 했던 이 세대가 부모세대들을 대신해 가정에서 완전한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활에 대한 고생담은 대체로 귀국 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전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절'처럼 여겨지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본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 편입된 이상 이들이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들이 '진짜' 히바쿠샤임을 내세우는 표식이 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인터뷰과정에서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일찍부터 일본에서 소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태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애뜻한 것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에는 물론 귀국이라는 것으로 인해 단절된 학창 시절에 대한 향수가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교육 받은 시기와도 깊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도노무라 마사루(2010:116)는 전전기 제일조선인의 인구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조선인 2세가 형성되는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연차라는 의미에서의 '세대'라는 입장에서 이 시기 출생자들이 '쇼와 한 자릿수'(쇼와 1~9년, 서기 1926~1934년), '전중파(戰中波)'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교육에서 강렬한 황민화 이데올로기에 노출되어 있었고, 전전기 제일조선인의 경우 그것이 특히 심해지는 조건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어쨌든 '귀환 동포'로서 이 세대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정서나 감각, 혹은 정체성은 분명히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내셔널리즘의 카테고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이 또한 향후 좀 더 검토되어야 할 주제일 것이다.

히로시마)에 투하한 폭탄과 같은 원자탄 오백 개만 있으면 전 세계의 인류 및 동물을 사멸시킬 수 있다. 그들이 설혹 폭발 당초의 발동을 면한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방사능 여파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폭발 당시의 피해를 면한 잔존자들로부터 인구는 일부 유지된다 하더라도 삼대사대후손의 대부분은 기형이나 불구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락) (1947년 5월 31일 동아일보, 밑줄은 연구자 강조)

인용된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피폭자 혹은 원폭피해자라고 특정된 용어는 없지만 1947년에 이미 “원자탄의 폭발과 그것에서 기인한 치명적인 방사능 여파의 가공할 만한 위력”은 “전 세계 인류의 사멸”을 운운하며 다뤄지고 있었다. “폭발 당시의 피해를 면한 잔존자들의 삼대사대후손의 대부분이 기형이나 불구자가 된다”는 이 같은 기사 유형은 같은 표제어 기사 검색에서 약간의 변주만 있을 뿐 그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원자폭탄이나 원자폭탄의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전형적인 미디어적 재현은 어떤 의미에서 현재 까지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자탄 폭발 당시의 피해를 면한 잔존자들이 한국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계기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을까? 앞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키니피해 사건이 터졌던 1954년 이후 히바쿠샤의 존재가 중요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 일본 사회에 비해,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그 역사적 존재가 잊혀진 것이나 다름없는 한국 사회에서 이 물음은 매우 복잡한 역사적, 지성사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스스로도 자신들이 원자탄 폭발 당시의 피해를 면한 잔존자라는 자각을 한 것이 언제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극히 최근에도 “원폭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거나 “원폭피해자라면 꿈꿨고 병신된 사람, 그런 사람인줄 알았지 우리같이 걸보기 괜찮은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현실에서, 대중적인 신문에 이미 원자폭탄의 피해와 관련된 정보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바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인식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온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물음은 한국 사회 내에서 원폭피해자라는 존재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 즉 구체적으로는 개별 원폭피해자들이 스스로 원폭피해자라는 자각을 하게 된 시기나 방식을 사회적 차원의 조직이나 연대체 결성을 중심으로 에둘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원폭피해자들로 구성된 유일한 결사체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전신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가 설립된 1967년이 그 기점으로 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자료에서는 1950년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한일회담들을 계기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호소하던 개인들이 있었다는 점도 나타난다. 이는 1949년 이후 시작되어 여러 차례 토론과 중단을 거듭했던 한일회담이 전후 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1957년 제4차 한일회담 예비회담과 이듬해 제4차 한일회담 등이 진

행될 당시에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재산청구권, 거류자 상호석방, 문화재 반환 등이 주요한 주제가 된 만큼 원폭피해자 문제에 자각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1958년 8월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를 다룬 기사와 한일회담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뤄줄 것을 한국정부 외무부에 호소하는 광귀훈의 글이 게재됐다.¹⁰²⁾ 1963년 봄에는 이종욱과 오남련이라는 부부가 개인 자격으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 대사관과 일본대표부, 그리고 신문사 등에 원폭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호소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등을 보내 보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103).

합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원폭피해자 조직이 일찍부터 결성되었다는 증언도 있다.¹⁰³⁾ 1959년 즈음의 일로 히로시마에서 귀환한 합천 출신들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었다는 것이다. 한일회담 등에서 다루어질 피해자 보상 문제를 논의하거나 선전 활동을 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모임에 대한 문서상의 기록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나 다른 책 혹은 개인적인 수기 등 다른 곳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임의 명칭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도 확인할 수는 없다.

한편 합천 모임이 결성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우연찮게도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들의 실태를 호소하는 편지가 1960년경부터 자주 민단에 도착”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1997)의 『민단50년사』 히로시마지부 편에 따르면 실제로 민단은 이를 계기로 1963년 3월 1일에 히로시마지부가 중심이 되어 <모국피폭동포구원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1965년 한일회담 타결을 앞두고는 한일 양국 정부가 회담에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다루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민단의 히로시마 현 본부는 1965년 일본에 있는 단체/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재한

102)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49년 1월, 일본에 주일대한민국외교대표부를 설치한 한국정부는 그해 초부터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준비하며 대일배상조사심의회를 설립한다. 하지만 한국 전쟁의 발발 등으로 회담의 진척이 늦어져, 1952년 10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53년 제2차 한일회담, 55년 제3차 한일회담, 57년 제4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58년 제4차 한일회담 등이 진행된다. 이 회담들에서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재산청구권, 거류자 상호석방, 문화재 반환 등이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또한 난항을 겪다가 1960년 4월 15일 제5차 한일회담이 중단되고, 한국 사회는 다시 4·19혁명과 5·16 쿠데타를 겪으며 격랑 속에 빠져들게 된다.

103) “보내주신 기록에 59년에 합천 피해자 모임 이야기를 써 놓으셨는데, 시기가 확실한가요?”(연구자) “맞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그랬는데, 한 달에 몇 십 원씩 내고 모였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피해가 있을까 걱정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권유해서 제일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한 셈이지요. 59년은 확실한 연도인데, 제가 그때 57년에 경찰서 통신 관련 일을 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가입했거든요. 사람도 몇 명 없어서 처음엔 몇 십 명 정도였고 나중에 백여 명 됐나. 주로 선전활동을 했어요.” (1941년생, 김종철, 경남 창원) 경남지부에서 협회 지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철씨의 위 이야기는 합천에 살고 있는 다른 회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천모임이 협회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던데요.”(연구자) “그게, 육이오 후고 내가 스무 살 넘어서 서른 정도 되었을 때니까, 맞아요. 협회 있기 전에. 그거는 협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홍규라는 사람이 집에서 일을 보면서 한 거지. 노홍규, 최성춘, 정기장 그런 사람들이예요. 정기장씨는 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글을 잘 했어요. 근데 그건 사무실도 없고, 최성춘씨가 식당을 조그맣게 했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고 그랬지. 노홍규씨가 초대 지부장을 했어요. 합천에는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1933년생, 남, 이재석, 경남 합천)

피폭자실태조사단>을 파견하게 된다. 1965년 5월 22일 약 1개월간의 예정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조사를 벌인 민단피폭자조사단은 방한 기간 동안 합천과 서울을 비롯해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만나고 그 이외에 한국정부 보건사회부, 원자력원, 대한적십자사 등을 방문, 재한피폭자의 실태조사와 의료구제를 호소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적십자사를 통해 이 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피해자 등록을 실시하게 되고, 이 조사를 통해 600여 명의 원폭피해자 등록을 접수받게 된다.

물론 민단 히로시마 현 본부의 방문이 한국 사회에서 당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호소나 합천의 모임 등도 전국적인 단위로 조직화되지는 못했다. 이는 상당수의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스스로조차 “원폭피해자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고 하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60년대 초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언제나 매우 낮은 상태였고, 전국 조직적 차원의 움직임이나 결사체 형성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원폭피해자에 대한 이 같은 낮은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앞의 광귀훈의 언론사 기고나 이종욱·오남련 부부의 호소, 합천 모임 등에서 보상 문제 등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의 호소는 한일 양국 정부의 회담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2005년 공개된 1965년 한일협정 체결문서는 회담 과정에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¹⁰⁴⁾ 수차례의 회담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배와 전시 동원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에 직면해 있던 한일 양국 정부는 1965년 한일회담 과정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경제협력자금 3억 달러를 주고받는 것으로서 이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선언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한 규정이 그것이다.

회담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이것이 청구권 협정이라는 점에서 자국민에게 이 자금의 배상적 성격을 강조해 나간다 (최영호, 2009:31). 동일한 자금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축하금’이라고 규정했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 또한 이것으로 모든 보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해결 완료라는 인상을 심고자 노력한 것이다.

104)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1965년 한일 협정 시 재한원폭피해자 문제를 제외시킨 것에 대한 한일정부의 책임과 이에 대한 외교적 보호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심판 청구'에서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원폭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08헌마648-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1년 8월 30일) 이는 2005년 공개된 2005년 8월에 있었던 한일조약 당시 협정문 공개에 따른 것이었다.

2)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결성과 초기 활동의 방향

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전신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협회 창립을 도모하던 것이 바로 이 한일협정 직후의 일이다. 1965년 한일협정을 계기로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에 의식이 생긴 몇몇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 신생 한국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한국원폭피해자 연구의 언론 발표¹⁰⁵⁾ 민단 히로시마현 본부의 모국 방문 당시 한국원폭피해자와의 만남 및 한국 정부에 대한 실태조사 의뢰 등이 협회 결성을 추동하는 복합적인 계기로 작용했다.¹⁰⁶⁾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후 20여 년이 지난 1966-67년의 일이었다. 1967년 1월 27일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준비모임 사무실이 서울 용산의 한 작은 건물에 설치되고, 곧 사람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릴 공고문이 게시됐다.

공고문¹⁰⁷⁾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양 시에서 원자폭탄으로 상처받은 우리 동지들에게 공고하나다. 우리는 8·15 이후에 상처받은 몸으로 조국의 품안에 들어와서 어언 20여년 성상이 지났어도 우리의 상처는 가실 줄을 모르고 악화 일로에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외석행사의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딱한 처지를 스스로 타개하여 나가기 위해 우리의 상처치료는 물론 재활의 방도를 도모하고자 피해동지들의 신상 및 상황을 파악코자 하니 피폭자들은 빠짐없이 참가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05) 1965년 한국방문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히라오카(平岡 敬) 전 히로시마시장의 개인적 회고에서 자신의 첫 한국방문의 상황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한국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원폭피해자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나온다. 「한국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안치열 소장은 그들이 한국원폭피해자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진 계기를 말해주었다. 그에 따르면 1963년 8월 6일에 연구소 연구원 중의 한명이 “오늘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다. 한국에도 당연히 피폭자가 있지 않을까”하며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것이 화제가 되어 연구소에서는 이 문제를 실제로 조사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전국의 보건소와 도립병원을 통해 한국 내에 있는 피폭자 조사를 해보기로 하고 공고를 냈는데, 이를 통해 처음으로 203명이 등록을 했다」 (平岡敬, 1988 : 15).

106) 초창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창립 배경에 대해서는 이치바 준코의 『한국의 히로시마』(2002, 역사비평사),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에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국방사선의학연구소의 원폭피해자 연구 조사를 계기로 1966년 8월 6일부 중앙일보 제4면에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기사가 당시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최초로 개시된다. 그리고 이틀 후 8월 8일 오후 10시 반에는 동양TV에서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좌담회가 방송 됐다. 학계와 언론계, 보사부, 적십자사, 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 등의 대표자들과 피해자대표 3명이 참석했다고 보고된다. 이 두 개의 미디어 보도는 모두 방사선의학연구소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한국 내에 존재하는 원폭피해자의 실태에 대한 중앙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서울에 거주하던 원폭피해자들의 자각과 연대체 결속 움직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07) 이 공고문은 아사히신문에서 1975년 출간된 『피폭한국인』에 게재된 일본어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설립취지문을 번역해 실은 것이다. 전문은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109)

피해 동지들의 신상 및 상황을 파악코자 한 이 공고문은 1967년 2월 1일 각지의 원폭 피해자들에게 모임을 선전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다. 한국에서는 원폭피해자들이 최초로 그들의 존재를 대내외적으로 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11일 발기인 회합을 가진 15명의 참석자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연합군 측의 원자탄 투하로 인하여 양성 또는 음성적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 원폭병의 치료가능성 연구, 피폭자에 대한 치료알선,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생존자에 대한 원호를 행한다”라는 강령을 채택한 뒤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하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7월 보건사회부로부터 법인허가를 받아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9:7, 19).

그 전에 우리는 원폭이라는 것 ‘원’자도 몰랐어요. 뼈까단¹⁰⁸이다, 그런 말이나 했지. 그런데 그때 보사부에서 우리 원폭피해자 실태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라디오랑 신문에 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그게 65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 등록을 하고도 일 년이나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원폭협회를 만들자 하게 됐는데, 그때는 자갈치 시장 같은데 벽보를 붙여서 원폭피해자는 신청해라 하는 광고를 하고 그랬어요. 정보부에서 조사도 나오고 그랬어요. 시절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67년에 부산에서 발기를 하고,¹⁰⁹ 제가 부산지부 초대 지부장을 맡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원폭이 뭇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무작정이에요. 사람들을 죄다 찾아다녔어요. 그때는 원폭 피해자들 중에 심한 사람은 나병환자다 폐병환자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숨어서 있을 때라, 우리가 산 너머서도 찾아다니고 해서 만 든 거예요. (엄분연, 여, 1929년생)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결성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존재로서 원폭피해자의 부상을 의미했다. 나병환자라는 따가운 시선 혹은 귀환동포라는 편견 속에서 운명이나 개인적 불운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던 고통과 비참함이 “일본 군국주의가 창궐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라는 잔악한 괴물에 희생되어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완수했으나 그에 의해 무고한 수십만 시민이 참혹한 죽음을 맞고 불치의 상처에 신음하는 일대 비극”(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설립 취지서)이었음을 자각하게 된 것은 이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개인적 운명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원폭피해자라는 존재에 대한 정치사회적 책임은 어디로 향했을까?

108)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처음에 강렬한 빛이 ‘번쩍’한 뒤 ‘둥’하고 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어로 “뼈까돈-”(ピーカードン)이라고 하는데,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뼈까단’, ‘뼈까탄’이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인다.

109) 1967년 1월 27일에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발기인 회합이 있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108).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설립 취지서에 나온 요구 사항을 잠시 살펴보자. 한국원폭피해자들이 그들의 피해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요구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요구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설립취지서¹¹⁰⁾ 중에서)

(1) 국내

1. 위급한 원폭병 환자에 대한 의료보호
2. 빈곤피폭자에 대한 특별 경제보호
3. 피폭자에 대한 적정한 권위 있는 진단
4. 병원, 요양소, 재활센터 건설을 위한 토지 공여
5. 피폭자에 대한 의료 및 경제적 원조를 위한 특별법 성립
6. 본 협회의 활동에 대한 경제원조

(2) 국제

1. 일본-병원, 요양소, 재활센터의 건설기금 및 원폭투하에 의한 신체적 장애에 대한 배상요구
2. 미합중국-병원, 요양소, 재활센터의 건설을 위한 자재

위 원폭협회설립취지서에 게재된 요구에는 모두 세 개의 국가가 나온다. 우선 이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일본 측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원폭증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센터 설립이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 외무부가 일본 정부 측에 요구해줄 것을 꾸준히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으로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한국 정부에서 먼저 제의해 오면 인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상 일본 측이 먼저 스스로 그 문제를 제의해주지 않는 한 곤란하다’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실상 일본 정부가 한국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강수원, 2000).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결성 초창기에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원폭투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한 점도 중요하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병원과 요양소, 재활센터의 건설과 관련된 자재를 요구하며, 관련 호소문이나 집회를 열 경우에는 반드시 미 대사관 측에도 그 내용을 알렸다. 주한 미대사관측도 원폭병원을 지어주기 위해 주한미국인, 미군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향신문, 1968년 10월 3일). 1971년 8월 6일 조계사에서 위령제가

110) 이 취지서는 아사히신문에서 1975년 출간된 『피폭한국인』에 게재된 일본어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설립취지문을 번역해 실은 것이다. 전문은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2111-112)

끝난 후의 일이다. 강수원 전 원폭협회 회장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협회 사무국장 정창희씨의 인솔 하에 10여명의 협회 회원들이 '미국정부도 한국피폭자들을 보상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미국대사관에 '몰려가'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시 대사는 만나지 못하고 일등서기관을 만나 잠시 면담했다. 그는 피폭자들이 제시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고 '이것을 우리 대통령에게 전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은 역사상 이제까지 전쟁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 그러나 잉여물자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하지만 면담 이후에 어떠한 추가 조치는 없었고(강수원, 2000; 시위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9:21), 이후에도 원폭협회의 자료에서 미국 측에 대한 요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편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원폭투하에 대해 일본과 미국에 모두 책임을 묻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대상은 주로 한국 정부를 통해서였다. 이것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원폭 투하의 책임은 미국에 그리고 전쟁 수행 주체라는 점에서는 일본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도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 피해자 보상 문제는 해결됐으며, 이제 모든 피해자 보상 문제는 국내 문제라는 양국 정부의 입장에 따른 측면이 강했다.

한일협정 이후 그에 근거하여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 제정 움직임이 커지자, 원폭피해자들의 활동도 다른 청구권피해자 단체들의 보상법 제정 요구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으로 수렴되어 갔다. 1970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신고에 관한 법률」,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앞두고 한국원폭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소리를 높였다 (김승은, 2012a). 한국 정부를 상대로 원폭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의지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결성 당시 초대 회장으로 홍순봉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부회장에 배도환을 추대한 것과도 연결된다. 홍순봉 씨는 문교부장관을 지낸 사회저명인사라는 점에서 추대된 사람이었는데, 부회장이었던 배도환 씨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 원폭피해자는 아니었다. 1970년대 초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강수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발언력이 있는 인사를 영입해 피해자 보상 문제 등과 관련한 대정부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기대를 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강수원, 2000). 이러한 사정은 1972년 8월 6일 위령제 거행 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앞으로 제출된 진정서에도 나타난다.

협회에서 박정희대통령에게 제출한 진정서¹¹¹⁾

(진략) 원폭후유증은 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쉽게 피로하고 여러 병에 걸리기 쉬우며 일단 병에 걸리면 쉽게 낫지 않으며 특히 백혈병이나 암 등 난치의

111) 1972년 8월 6일, 조계사 위령제식전에서 읽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137)

병에 걸리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중략)...대통령 각하, 우리나라는 해방되었다고는 하나 도중 6.25동란을 맞았고 재건건국도상의 가난한 생계입니다. 누가 전재민, 전상자는 우리뿐 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단지 우리들 피폭자만을 우대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원폭후유증의 특이성은 일본정부도 인정했다시피 피폭후의 증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잠재적이고 항시 진행되고 있으며 자손에게 유전까지 된다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련한 처지에 있는 한국원폭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 입장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며, 한일양국의 마스크에 올라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죄책감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방한위문격려, 의사단과견, 모금운동, 진료소 및 병원의 건립추진 등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민간의 자선운동이며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각하에게 이와 같은 비참한 실정을 호소하고 진정해왔습니다만, 그때마다 각하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청와대비서실에서 보사부에 조사·선처하라는 회부만 받았을 뿐입니다. 보사부 실무자도 우리의 처지를 동정해 가련하게는 여기고 있으나 해당하는 법안 없이 예산도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하, 이 문제는 실무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하께서 관계부처에 하명하셔서 국내외의 조사를 행하고 진상을 알려 대책을 하명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무부가 한일회담에서 취급된 적 없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것
2. 보사부가 원폭피폭자문제의 조사입안을 위한 예산조치를 위할 것
3. 보사부가 국내피폭자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
4. 보사부가 일본의 원폭의료시설이나 원호실태 등을 조사할 것
5. 국회에서 적어도 일본의 원폭의료법, 동조치법에 준하는 원호법을 입법화할 것
6. 대한적십자사가 일본적십자사와 교섭해 피폭자가 원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7. 우리의 유일한 집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를 지도 육성해 주실 것
8. 협회가 일본민간의 원조로 계획 중인 피폭자복지센터를 지원해 주실 것

진정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정부(주로 보사부)와 국회를 돌아다니며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실정을 타개해줄 것을 호소해나갔다. 특히 한국 외무부가 일본 정부와 보상 문제를 논의해 줄 것과 국내법 제정을 통한 원폭피해자 원호의 요구는 단체가 결성된 초창기부터 사실상 오늘날지도 일관되게 요구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진정 활동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특별법 제정 운동이 대표적이다. 1968년 10월 열린 국회 보사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당시 정희섭 보사부 장관은 “피폭자를 위한 특별법을 일본과 같이 만들고 대일 민간청구권 자금에서 피폭자를 보상해 주자는 제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6.25 사변의 뒤처리가 남아 있어 특별법 제정은 어렵다”고 답변한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118). 1970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신고에 관한 법

를, 1975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적용 대상을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원폭피해자들은 보상 문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 두 법 제정 후 신고한 유족 8,552명에게 한하여 1976년 위로금조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뒤 사실상 식민지배 및 전시동원에 따른 피해자 보상 문제를 종결시킨 것이다 (최영호, 2009:33).

이처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결성 초창기부터 단체는 한국원폭피해자의 피해 책임을 전쟁수행 주체로서의 일본 정부 혹은 원폭 투하 주체로서의 미국 정부, 그리고 자국민을 보호할 것으로 응당 요구되는 한국 정부에 지우기는 했지만 그 활동 대상으로는 단연 한국 정부가 우선됐다. 일본과 미국 정부에 대한 요구와 호소는 한국 외무부와 주한대사관이라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여러 호소에 대해 무시에 가까운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로부터 경제협력자금을 차질 없이 받아내기 위해,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최대한 양국의 외교문제로 만들지 않고자 한 한국정부가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행동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승은, 2012a). 또한 냉전시기 미국이 주도한 전후 동아시아 지배체제 하의 한미일 동맹구조가 사실상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통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남긴 참상이 미국에게는 영광이자 감추어야 할 수치라는 점에서) 원폭에 대해 거론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은 무의식적 장치”(정근식, 2005:15)로 기능했던 시대적 상황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좀 더 정확하게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 제국의 패전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탈식민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이는 미·소(美·蘇) 대립으로 인한 냉전의 시작이기도 했다. 식민통치와 해방 이후의 미·소점령이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국가 건설을 지연시키는 가운데 벌어진 한국전쟁, 그리고 서구적 의미에서의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이 지역의 특수한 지정학적·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권현익, 2008)은 한국원폭피해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식민과 피식민 관계, 그리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정치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성장을 추구한 한일 양국의 ‘특수한 공도 관계’는 냉전체제 하의 분단국 내에서 ‘핵무기’의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리지 않게 했다. 일본에서 손진두 소송이 첫 승소판결을 받은 1974년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원폭피해자 문제가 잠시 사회적 이슈가 되어갔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국정부는 이 소송이 최고재판소에서 승소 결정을 받은 1978년 이후에도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요구한 자국 내 원호법이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원폭피해자구호에 관한 조치나 정책은 1980년대 후반까지도 사실상

‘기민’(棄民) 그 자체였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자조(自助)적 구호 활동과 정치적 연대 활동이 외부, 특히 일본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계열의 운동 단체나 조총련계 ‘좌익’ 단체로 연계되는 것에 끊임 없는 우려와 감시의 시선을 보냈다.

3) 구호와 교류의 정치색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설립으로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구호 문제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과 비교했을 때, 일본 시민사회의 응답은 훨씬 가시적이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1989년에 발간한 『연혁』에 따르면 한국원폭피해자의 현실을 알리는 보도들이 일본에 간간히 보도되면서 ‘속죄’와 ‘위로’의 뜻을 가지고 협회를 방문한 인사들과 이들이 전달하고 간 위로금과 인도적 구호금, 의료지원 등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임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들의 실정을 호소하고,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기록들도 남아 있다. 초창기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주요 활동은 이렇게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 정부 관계자나 언론사를 찾아가 실태를 알리고 구호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에서 교류를 원하는 단체와 상호 방문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설립 이후 약 20여 년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이 같은 대외 교류와 구호 활동에는 특징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교류가 주로 인도적 구호나 위로, 의료 차원에서 한정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줄곧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던 많은 원폭피해자들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구호금 및 위로금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허용된 활동의 방식이 구호금이나 인도적 지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히바쿠샤는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으로서, 구사회당과 공산당 계열의 운동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교류에 나선 일본의 단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매우 열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반부터 협회와 교류해 온 일본의 <핵금회의>(핵무기금지 평화건설 국민회의, 이하 <핵금회의>로 약칭)는 1961년 11월 15일에 학자, 문화인, 정당, 정치가, 노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단체로 공산당이나 사회당 계열의 반핵단체들 보다는 ‘정치색’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또한 1970년대와 80년대에 협회에 기부금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단체로는 일본의 재일 한인 단체나 종교 계열 단체들을 비롯해 ‘우익계열’의 단체들도 적지 않았다. 혹여 이들 중 ‘정치적 색채를 띠는’ 단체들과 교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따랐다. 재일교포유학생간첩단 사건 등으로 일본의 좌파 운동 진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계심이 극에 달한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특히 이러한 분위기가 강했

고,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도일'도 엄격히 제한받았다.

내가 일본에 처음 가게 된 건 동경이었어요. 일본 기자가 초청을 해서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알리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게 사토 수상 왔을 때(1971년-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방한함) 우리가 시위도 못하고 잡혀갔을 때 사이토라고 한 기자가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하고 손귀달이라고 초청을 했는데, 신원조회에서 걸려서 나만 가게 됐어요. 배타고 시모노세키 내려서 기차 타고 히로시마 갔다가 동경으로 갔어요. 손진두 씨 소송(1972년) 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일본 가기 전에 소양교육을 받는데, 그거 받으러 갈 때 협회를 거쳐서 갔어요. 그걸 서울에서 받아야 했거든요. 빨갱이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소양교육을 받아야 일본을 가던 시절이에요. (이진선, 여, 1930년생)

안보위기와 반공 담론이 지배한 냉전시기 한국의 정치 질서 하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활동은 그 이후로도 줄곧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사회단체와 교류하는데 있어서도 엄격하게 제한받았다. 또한 위의 이진선 씨의 이야기에서처럼 한국원폭피해자의 일본 시민사회와의 교류에 있어서 정치사상적 제약은 도일(渡日)이라는 실질적인 월경(越境) 행위에 가해지는 행정관료제적 제약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신원조회를 통해 월경을 제한하고 소양교육을 통해 다시 행동의 반경을 제약하는 것이다. 월경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제약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일반적이긴 했지만, 그것이 일본으로 가는 경우에는 특히 심했다. 권숙인(2002:18-19)의 재일한인 사회내의 남북문제에 대한 설명에서 묘사된 것처럼, 분단 체제 하의 남북한 양쪽의 정권이 유지해온 억압적 체제는 재일한인 사회로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원폭피해자들과 교류하는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실천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1년 한국 방문에서 처음으로 만난 한국원폭피해자와의 인연으로 이후 줄곧 히로시마에서 한국원폭피해자의 도일치료 및 피폭자건강수첩 취득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토요일가 게이자부로(豊永惠三郎) <시민회> 히로시마 지부장은 "71년 방한 이후 한국원폭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1974년에 협회 회장이던 신영수 씨의 피폭자건강수첩취득을 위해 증인을 찾아주는 활동 등을 하게 됐다. 당시에 협회 회장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본 방문이 비자 발급부터 까다로운 시기였지만, 특히나 신 회장은 우리 일본인들과 만나는데 있어서 엄격하게 제약을 받고 있었다. 가령 일본에서 조총련 계열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가 공산당이나 혹은 좌익 세력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닌지를 감시당한 것이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정보당국에 항상 보고해야 했다. 우리도 행동에 조심했다. 되도록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인사들과의 접촉은 조심하고, 조총련 계열의 사람과도 만나지 않았다. 일본의 정보당국도 우리의 행동을 경계하던 때였다"라고 이 시기를 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1975년 히로시마에서 조총련 계열의 조선인

피폭자운동조직(경북 의령 출신의 리실근(1929년생, 조선적)이 중심이 됨)이 결성되었지만 이 조직과 <시민회> 히로시마 지부는 직접 교류하지 않았다. 자칫 일본을 방문한 한국원폭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1965년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원폭피해자를 만났던 히라오카 씨 또한 당시를 "정치적으로 매우 억압적이고 좋지 않았던 때였다. (한국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기독교 관련 단체에 일본인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온하게 여겨졌다. 한국원폭피해자를 돕는 일본 사람은 공산주의에 물든 이들이라는 색깔이 덧칠해졌고, 일본 시민사회운동의 일부 진영에서도 한국원폭피해자 지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¹¹²⁾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이 너무나 고립되어 있었던 때였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원폭피해자 운동, 그 중에서도 정부의 감시가 직접적이었던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활동은 국내의 정치세력과의 연대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1970년대 중반부터 반전반핵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함께 원폭피해자운동을 해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다. 1974년 2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미국교회여성연합회>의 한국방문과 일본 평화회의 참석을 계기로 평화운동의 한 일환으로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에 뛰어든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공덕귀 여사를 비롯해 사회 고위층의 기독교계열 여성 인사들이 주로 참여한 운동이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이전까지의 운동과도 맞물려 있었다. 당시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참여했던 <일본평화회의>에서는 손진두 소송과 관련해 한국원폭피해자 문제가 이미 주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들이 기존에 진행해 오던 재일교포 인권운동(박종석 군의 히다찌사 입사투쟁 재판)이 어느 정도 결실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운동의 영역을 찾고 있었던 때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은 주로 원폭피해자 구호를 위한 기금 마련과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국원폭피해자 실태조사 활동이었다. 1974년 가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의뢰와 협력으로 이뤄진 첫 번째 실태조사, 1977년 일본에서 열리는 반전반핵평화 국제심포지움에 참여하기 위한해 이뤄진 두 번째 조사, 그리고 1979년 <미국장로교여성선교회> 후원으로 진행된 조사까지 모두 세 번에 걸친 조사가 그것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당시 이 실태조사를 정리 보고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도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 조사 중 뒤의 두 차례 조사는 당시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이 결성한 동아투위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해직기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조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후원하는 일환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이뤄진 실태조사결과는 10·26과 광주민주화항쟁 등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조사를 맡았던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자료를 압수당하

112) 히라오카씨는 손진두씨가 일본으로 밀항해, 밀입국과 불법체류로 수감되어 있으면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왜 외국인 범죄자에게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을 해야 하느냐"라는 반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는 등 출간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1983년 정국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시민회>의 도움을 받아 출간하게 된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4)

1970년대 후반 <시민회>의 회원으로, 지금은 <시민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치바 준코는 당시 한국을 방문해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교류하던 시기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혹시나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와 감시를 할까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건물을 들어갈 때조차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거리고, 들어가서는 목소리가 새어나갈까 소곤소곤 말하던 때였다." 그녀 또한 토요일이나 <시민회> 히로시마 지부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혹여나 자신들의 행동이 한국원폭 피해자들에게 누가 될까 조심했다.

그런데 소위 일본과 한국의 '좌익운동' 진영과 연계될 것에 대한 감시는 한국원폭피해자 자신들의 활동과 발언에 대한 자기 검열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0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원폭 피해자협회에 처음으로 가입한 한 회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읽힌다. 피폭 당시 8살이었던 방일호 씨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또한 피폭사한 뒤 귀국해 친척집에서 힘들게 살았다. 다행히 군대 입대 후 운이 좋아 진급을 빨리 했다. 파월을 앞두고 하사관으로 소대 하나를 이끌고 훈련을 받았는데, 보안조사에서 걸렸다. 아버지가 (피폭사한 뒤)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어 '행불' 상태인데다가, 일본에서 출생한 것이 문제였다. "영부인이 조총련계 인사한테 암살당했다 하는 시대에, 어떻게 내가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에서 태어났다 말을 합니까. 신원조회에서 일본에서 태어난 것만 나와도 빨갱이로 엮일까 봐 걱정하던 때 내가 원폭피해자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실 그때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뭘 어떻게 걸고넘어질지 모르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겼어요." 방일호 씨는 원폭피해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것조차 2009년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방일호 씨의 사례는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한국원폭피해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극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설립 후 이십여 년 간 운동을 벌이던 시기의 시대적 분위기였음은 짐작할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았던 8월 6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인 한국인원폭피해자위령제가 열렸다. 매년 꾸준히 행사에 참석해 한국원폭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치바 준코 <시민회>회장은 이날 위령제에서 "처음으로 그 분들이 6·25전쟁 당시 피난하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이 언제나 원폭이 떨어지던 날 혹은 귀국 이후의 어려움 등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훨씬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졌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활동은 감시당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유학하며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해 일본에서 수첩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던 일본의 한 시민 단체 회원은 자신의 우편물이 감시당하거나, 서울에서 머무르던 집에 정보당국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

의 소재를 파악하곤 했던 사실을 이야기해주시기도 했다.

그런데 이처럼 개별적 차원에서의 자기검열과 정부의 직접적 감시 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제약당한 한국원폭피해자 운동, 특히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활동이 구호금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가장 안전한 방식의 교류 쪽으로 틀 지워지면서 생겨난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형성되어 간다. 그것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이다. 회원들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나 회원 수 자체가 많지 않았던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결성 초창기부터 구호금이나 인도적 지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단체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회비를 내는 회원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대체로 모금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전달된 이러한 구호금 등은 정부 기관 등과 같은 곳에서 개별 원폭피해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단체 간부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협회로 도착한 구호금 등이 단체를 운영 유지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구호금 배분의 형평성과 관련된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구호금 문제 등으로 나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내가 일본에서) 빨갱이 상대하고 있다고 발도 하고 시모노세키 영사관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가서 싸움까지 하고 그랬어요. 내가 지부 활동을 너무 하면서 선동을 하고 하니깐 그랬나 봐. 그때는 일본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 자체를 곱게 보던 때는 아니니까. (유연실, 여, 1929년생)

위에 인용된 유연실 씨의 발언은 지부 내에서 1970년대 구호금 배분과 관련된 갈등이 정치적인 색채를 문제 삼는 것으로 비화된 사례를 언급한 것이지만, 연구자가 만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다수 특히 단체의 간부진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형이다. 구호금이나 지원금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협회 초창기부터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 단체에 내재한 갈등의 뿌리 깊은 요인으로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과 정보당국의 감시,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하에서 거의 유일하게 허용된 인도적 지원금이나 구호금 중심의 단체 운영이 조직 내부의 분열과 외부 사회로의 정치적 연대에 대한 의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 내에서의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원폭피해자운동이 고립된 하나의 섬처럼 존재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급격히 보수화되는 방향으로 틀 지워지는 한 요소가 되었다.

3. 한국 원폭피해자와 일본 시민사회의 연결

1) 일본에서 ‘자이칸히바쿠샤’에 대한 지원의 사회문화적 배경

한국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공식적인 대외 활동은 정치사회적 제약 속에 고립됐고, 당연히 사회적 환기라는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활동에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시민사회였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설명되겠지만 일본에서 자이칸히바쿠샤로 불린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에 대해 일본의 시민운동 진영이 주목하고 이들 사이에 교류 혹은 연결망이 만들어진 것은 흔히 이야기되는 이른바 손진두 소송(1972년)이라는 사건¹¹³⁾ 이전에 이러한 사건들을 만들어낸 두터운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도 한국원폭피해자들과 일본 시민사회 사이의 연결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였으며, 연결지점이라는 측면에서도 협회라는 조직이나 단체 간의 공식적인 채널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 한국원폭피해자를 지원해온 일본의 시민들이나 활동가들의 지원 계기로부터 설명을 시작해보겠다.

히로시마에서 오랫동안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히라오카(平岡敬) 전 히로시마시장¹¹⁴⁾의 인연은 조선으로부터의 ‘히키아게샤(引揚者)¹¹⁵⁾로서의 개인사를 반영하고 있다. 1927년 오사카에서 출생한 히라오카 씨는 부모의 고향이 히로시마였는데, 1934년 가족의 사업 관계상 식민지 조선이었던 지금의 북한 선봉, 흥남, 서울 등지에서 소학교 일부와 중학 시절을 보냈다. 조선에 가기 전에는 후일 히로시마의 폭심지가 된 혼가와 소학교(本川小學校)에 1년 정도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패전 후 귀국해서 이곳의 동급생 중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원폭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그의 이후 이력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생활 그리고 히로시마의 지역 주재 기자로서 반핵평화운동에 관심을 가진 진보 성향의 그의 이력은 자연스럽게 자이칸히바쿠샤문제로 연결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적인 계기는 1964년 한국으로부터 도착한 편지였다. 마산의 국립병원에 폐결핵으로 입원한 박수암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그 편지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실태와 구호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편지를 받고 한일회담을 즈음해 한국을 방문해 처음

113) 손귀달은 밀항 직후 체포되었다가 당시 일본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송환 조치되었는데, 이 사건이 일본의 시민사회에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를 각인시킨 결정적 사건이 되면서, 뒤이어 이어진 손진두의 밀항은 그 누이 때와 달리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만들어 내면서 재한피폭자구호라는 운동적 차원으로 전환되어 갔다. 특히 손진두의 밀항은 현재 한국원폭피해자운동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용된다. 손귀달과 손진두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치바 준코(2003), 그리고 사건 일지와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외교 교섭 태도에 대해서는 김승은, 2012a, 「재한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교섭태도(1965~1980)」, 『아세아연구』 제55권 2호 pp.104-135를 참조.

114) 『주코쿠신문』 홈페이지 인물 인터뷰 기사 참조 (<http://www.chugoku-np.co.jp/kikaku/ikite>)

115) 일본제국주의 시절 군인과 군속을 포함해 약 700여만 명의 일본인이 조선과 만주, 중국 대륙 등에 진출했는데, 패전에 따라 이들은 모두 본국으로 송환된다. 이들 가운데 군인과 군속의 귀환은 대개 '복원(復員)'이라 하고, 식민지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다가 귀환한 이들을 '인양자(引揚者) 즉 일본어로 '히키아게샤'로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일본어 발음대로 '히키아게샤'로 통칭한다.

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만날 것을 계획하게 된다. 짧은 취재기간이었지만 그는 서울과 부산에서 아홉 명의 자이칸히바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그때 그들이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정말 늦은 것이었음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일본인은 역시 피폭한국인, 피폭조선인의 문제를 잊고 있었거나 혹은 무시하고 원폭피해의 문제를 이야기해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도 유일 피폭국이라고 하는 또는 피폭국민이라는 입장에서 평화를 호소해온 것을 겨우 알아차린 것이다. 더욱이 당시는 전후 20년이 다 되어 가는 때였던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平岡敬, 1988:10-12).

일본에 돌아온 히라오카씨는 그해 11월 25일부터 『쥬코쿠신문』(中國新聞) 조간 1면에 「이웃나라 한국」(隣の國 韓國)이라는 제목으로 10회의 연재 기사를 실었다. "한국 전쟁의 상처 자국이 여전히 생생한 전시체제 하에서 사는 서민의 모습을 전하고 빈궁의 수렁에 빠져 있는 '자이칸히바쿠사'의 존재와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그는 이 기사를 가필한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방문하고」(韓國の原爆被災者を訪ねて)를 잡지 『세카이』(世界) 1966년 4월호, 그리고 단행본 『증언은 사라지지 않는다』(証言は消えない) (未來社刊, 1966)에 발표한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원폭피해자와의 인연은 이후 손진두씨 수첩 재판 지원 등으로 이어진다.¹¹⁶⁾ 1970년 12월 부산에 거주하던 손진두가 사가 현으로 밀입국해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곧장 그를 면회하러간 히라오카 씨는 손진두의 사진을 찍어 그가 피폭 당시 살고 있었다고 하는 히로시마 시 미나미간온마치(南觀音町)로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히로시마대학의 학생들에게 강제송환반대 투쟁을 부탁하고, 히로시마의 젊은 의사들에게 손진두씨의 건강 진단을 의뢰한다. 이때 <손진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가 결성된다. 1972년 손진두씨의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취소청구소송이 시작됐을 때 히라오카 씨는 당시 이 소송과 관련된 후생성, 법무성과의 교섭을 친구이자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 동료였던 나카지마 타츠미(中島龍美) 씨에게 부탁하고, 그 자신은 재판을 지원해줄 변호사를 물색하고 비용 등을 모금하러 다녔다. 그는 이후에도 반핵평화운동과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취재했고, 쥬코쿠신문 사장을 거쳐 1990년대에는 8년간 히로시마 시장으로 재직하면서도 그러한 관심은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연구자가 2012년 히로시마평화기념식전을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¹¹⁷⁾

116) 『쥬코쿠신문』 홈페이지 인물 인터뷰 기사 참조 (前広島市長 平岡敬さん(1927年~) <9>在韓被爆者取材-日本人の責任見つめる(2009年10月14日) (<http://www.chugoku-np.co.jp/kikaku/ikite/>))

117) 히라오카 씨는 보수색이 짙은 히로시마의 지역색에도 불구하고 1991년 보수 분열에 의한 후보자 난립 속에서 진보적 성향의 인물로 히로시마시장에 첫 당선, 1995년에 재선 1999년까지 2기 8년 동안 재직하면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왔다 (위의 『쥬코쿠신문』 홈페이지 인물 인터뷰 기사 참조). 2012년 8월 연구자가 히로시마에 방문했을 당시는 '원폭연구의 남아 있는 문제'라는 주제로 제37회 히로시마대학평화과학심포지움이 열리고 있었는데, 히라오카 씨는 여기에서 '한국피폭자 문제를 돌아보며'(韓人被爆者問題を振り返って)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다.

19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히로시마에서 한국원폭피해자의 도일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히로시마 가와무라(河村) 병원의 초대원장인 가와무라 토라타로(河村虎太郎)씨도 히키아게샤였다. 식민지 시절 서울에서 경성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방 후 히로시마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그는 197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방문한 일본 <오리츠르회>(折り鶴の會)¹¹⁸⁾의 활동을 통해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처음 접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한국원폭피해자구원한일협의회>(이하 <한일협의회>로 약칭)를 결성한 뒤 지인인 의사 세 명과 함께 <속죄의 의료단>(贖罪の医療団)을 꾸려 1971년 9월 일본인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진료를 실시했고, 72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위해 방한한다.¹¹⁹⁾ 그리고 이 방문을 계기로 그는 일본 <핵금회의> 히로시마 지부와 함께 합천에 원폭피해자진료소 건립에 의료적 지원을 시작하고, 1974년에는 일본기독교단 중부교구와 함께 <재히로시마한국인·조선인피폭자구원회>를 발족시킨다.¹²⁰⁾ 이 모임은 1974년에는 성금을 모아 피폭자지원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재한국원폭피폭자를 히로시마로 초청하는 운동> 그리고 이어서 <재한피폭자도일치료히로시마위원회>(이하 <도일치료위원회>로 약칭)로 발전해나가게 된다. 가와무라병원은 도일치료위원회에서 초청한 한국원폭피해자를 직접 입원시켜 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히로시마 내의 여러 원폭전문 병원을 섭외해주는 역할도 했으며, 이러한 사업은 그의 아들이 2대 원장으로 취임해 병원을 물려받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153-155). 한편 손진두 씨의 소송을 계기로 <재한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약칭 <시민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나카지마 타츠미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서 시민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2008년 1월에 사망할 때까지 오랫동안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나카지마 타츠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라오카 전 시장의 지인으로서, 그녀가 자이칸히바쿠샤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한일조약 체결 직후였다. 한일조약 체결 직전에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일본을 방문한 한 한국인원폭피해자가 주고쿠신문 히라오카의 협력으로 (자신의 원폭 피해 사실을 증명해줄) 증인을 찾아 원폭수첩을 받아 히로시마시민병원에 입원했다. 그 후 그 한국인원폭피해자는 오사카를 경유해 동경의 한 결핵전문병원으로 옮겨갔는데,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일본 체재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입국관리소가 퇴원 즉시 강제송환을 명하는 상황에서, 법무성대신에게 호소편

118) 오리츠르회는 히로시마원폭희생자2세 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심각한 원폭장해에 시달리던 사사키라는 소녀가 '학을 1000마리 접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신념으로 죽어가면서 학을 접다가 미처 다 접지 못하고 숨을 거두자, 이를 기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원폭피해자들을 돕는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사사키 소녀의 이야기는 이 오리츠르회의 결성 계기뿐만 아니라 원폭피해자위령비에 놓인 종이학들의 유래가 된 것이기도 하다.

119) 한국원폭피해자협회(2011:131) 기록에 따르면 1971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5일간 서울에서 70명, 부산에서 65명, 합천보건의소에서 117명 등 모두 252명을 진료했다.

120) 가와무라씨가 일본기독교단 중부교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 자신이 이 교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지를 써 보내는 등의 애를 써주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한국원폭피해자를 처음 만나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무력감은 1968년에 밀항한 손귀달 씨의 문제에 관여하고, 또 2년 후 손진두 씨를 지원하게 된 경위가 되었다. (中島龍美, 1988:43-44)

1959년 당시 <동경도원폭피해자단체연합회>(별칭 東友會¹²¹) 사무국 일을 맡고 있던 이토 다케시(伊東壯, 1929-2000)의 진술에서는 앞의 두 사례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상황이 읽힌다. 그가 처음 자이칸히바쿠샤를 만난 것은 1959년의 일이다. 어느 날인가 집으로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했다. 서투른 일본말로 자신들은 히로시마에서 피폭 당한 이들이라 소개한 두 남자는 식민지 시절 강제 연행되어 히로시마에 어디선가 근무를 하다가 원폭을 맞았으나 경황이 없어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토 씨는 당시 일본에서 원폭의료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그 조치가 실효성이 크지 않고 또 원폭피해자수첩을 받아 자신들을 원폭피해자로 등록함으로써 어떤 차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던 시기였으므로 두 사람이 일부러 자신을 찾아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임을 알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伊東壯, 1988:27-28). 그러면서 그는 자이칸히바쿠샤는 일본의 히바쿠샤들과 마찬가지로 반핵의 '살아있는 증인'임과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의 반민주주의를 고발할 수 있는 증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 책임을 묻고 연대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의 이 같은 연결과 대응은 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보다 일본 사회에서 더 깊은 호소력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데 실마리가 된다. 그 가운데 우선 나카지마 타츠미가 언급한 일본의 사회운동사적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1960년대는 일본 시민사회에서 베트남전을 두고 벌어진 반전평화 운동, 그리고 아시아인을 배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하는 입국관리행정에 반대하는 운동,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 움직임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 운동이 고양되던 때였다. 반핵 운동에 있어서는 비키니피해를 계기로 점차 고양되던 반핵 움직임이 차차 정당 계열화되어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1960년대 초반 미일안보조약을 기해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두고 사회당 계열과 공산당 계열이 차차 분열되기 시작하고, 1964년 소련의 핵실험 반대 여부는 그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廣島縣被團協史編集委員會 2001:77-86). 냉전체제 하의 반핵 평화라는 주제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이 시기는 히로시마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는 원폭돔 보존이나 원폭피해책서만들기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원폭 관련 기록 보존 및 복원 활동이 한창이던 때이기도 했다 (根本, 2006 3장). 이토 씨의 회상에서도 잠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폭의료법(1957년

121) '東友會'는 <동경도원폭피해자단체연합회>의 별칭이다. 이 명칭은 원폭피해자라는 말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던 당시 상황에서 집으로 우편물 등을 보낼 때 원폭피해자라는 신분을 숨기는데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伊東壯, 1988).

제정) 실시 이후 그 실효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운 보상법을 제정하라는 움직임이 커지는 등 원폭피해자 처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높이고 있었던 때였다. “6.25동란과 재건건국 도상의 가난한 생계 속에서 전재민, 전상자가 ‘우리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시절’”(앞의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 박정희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中), 그리고 이후에는 ‘다 같은 식민의 피해자’ 혹은 ‘일제의 피해자’라는 범주 속에서 ‘원폭의 피해’라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별다른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지 못하고, 더군다나 강제 동원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되어 법적 지원도 받지 못한 이 시기에 비하면 일본 시민 사회의 원폭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은 한국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거기에 연대한 일본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은 그간 ‘유일피폭국’, 그리고 ‘평화의 초석’으로서의 ‘히바쿠샤’라는 담론 속에 가려져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과거 피식민자들과 마주하는 데서 온 충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히라오카 전 히로시마시장이나 가와무라 병원장 등의 활동 계기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에게 자이칸히바쿠샤의 존재는 놀라움을 넘어, 식민지 조선에서의 식민자였던 자신들의 과거를 직시하게 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피폭을 매개로 한 이들 과거의 피식민자들과 식민자들 사이의 만남에는 언제나 ‘반성’과 ‘속죄’, 그리고 ‘위로’의 심정들이 강하게 결합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움’과 ‘속죄’, 그리고 ‘위로’의 심정들은 전후 세대로서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운동가들에게도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의식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유일피폭국’이라는 언설이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 수행의 책임에 대해 언제나 애매한 입장과 회피로 일관할 수 있게 한 주류적 내셔널리즘의 보편적 수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속에 내포된 모순과 균열에 대한 자각 또한 그 언설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정치사회적 의미는 매우 양가적이고 또 역설적이다.

2) 히로시마 한인사회와 모국피폭동포의 연결

한국원폭피해자와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결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운동사적 측면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이는 식민지 시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의 조선인 이주와 귀환, (귀환 이후 일본으로의) 재입국 등을 통해 형성된 재일한국인 커뮤니티와 귀환 동포(한국 거주 원폭피해자)들 간의 친인척간 연결망이라는 차원에서도 깊은 뿌리가 있다. 특히 이 부분은 강제동원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진 기존 연구들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점이다.

앞서 이미 언급했던 민단의 <모국피폭동포구원대책위원회>의 방한은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일본 시민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가 된 사건 중의 하나다. 이들의 방한 소식은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 “한국에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이들이 있다”

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처음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나가사키에서 나가사키증언회를 만들고 오랫동안 반전반핵평화운동을 해온 가마다 사다오(鎌田定夫) 교수는 민단의 방한에 대해 “1965년 6월 한일 기본 조약의 체결을 전후해 일본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가 부상하고 마침 베트남 전쟁이 개시되어 일본 내 반전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에 민단의 한국 피폭자 실태조사가 신문에 실리면서 처음으로 외국인피폭자 특히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廣島·長崎の証言の會·在韓被爆謝医療調査団, 1986).

그러나 민단 히로시마본부 재한피폭자실태조사단의 방문은 단순히 조직적 운동 차원의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당시 이 조사단의 방한은 히로시마의 재일한국인 커뮤니티의 모국 연줄망¹²²⁾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1964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이루어진 민단의 ‘본국가족초청사업’도 한국원폭피해자와 히로시마의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의 모국 연줄망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당시 이 ‘본국가족초청사업’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주재하고 있는 교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하게도 그들의 가족 중에 히바쿠샤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열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민단의 본국가족초청사업에 히바쿠샤가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앞서 민단의 모국내 피폭동포구원대책 관련 사업의 개시를 언급했듯이, 민단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1964년 동경올림픽 개최 당시 본국가족초청사업에 피폭자를 포함시킨 것이었다. 그 중 대구에 거주하고 있던 박모씨가 민단과 일본 주재 친척의 도움으로 후생성에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신청하게 된다. 이에 대해 당시 후생성은 히로시마 시에서 피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수첩을 교부하라고 지시한다. 그렇게 박씨는 수첩을 교부받아 히로시마 적십자(日赤)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히로시마도 방문해 ABCC에서 진찰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연이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7).

이렇게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결성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양국 시민사회의 연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간다. 그 중에서도 히로시마의 재일한국인 커뮤니티와 한국원폭피해자들과의 연결은 식민지 시기 히로시마로 이주하기 전 고향의 친인척 혹은 지인이라는 지역적 연고와 밀

122) 이들 사이의 연줄망에 대한 자료는 합천 출신의 원폭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원폭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한 합천진료소를 마련하는 것,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피해자위령비 건립 추진 등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여기 합천보건소 개소할 때 우리 오빠도 나오고 부인회 하는 언니도 물건 보내고 그랬어. 다들 나와서 약품도 가져오고 그랬어. (그 일도 아시면 아주 일찍 이 일을 보신 건데, 회원 가입은 안 하신 거네요.) 네, 몰랐지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우리 오빠가 친정집 산소 돌본다고 자주 나왔어도 저는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오빠가 돈 좀 잘 벌던 때고, 빠징코 사업을 하니까. 자주 오고 돈을 보내던 때인데. 또 그 위령비 세울 때에도 돈을 많이 내고 민단에서 그걸 찬조해서 했잖아요. 그것도 다 합천 사람들이 민단에 있으면서 한 거잖아요.”(김선이, 여, 1929년생) 같은 증언들은 합천 출신 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 간간히 나온다. 협회 기록에는 지역 출신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부인회나 민단과의 교류 속에서 물자지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나온다.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앞의 민단 히로시마현 재한피폭자조사단의 일원이었던 강문희는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 에바(江波) 공장(폭심지에서 4.6km)에서 근무 중 피폭된 '히바쿠샤'로서, 그의 처가가 합천이었다. 또한 민단 히로시마본부의 주요 간부들 중에서도 합천 출신들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었다. 강문희씨는 첫 방문 이후로도 민단 히로시마현본부 내 모국피폭동포구원대책위원회(이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로 개칭) 위원장으로서 와병중인 최근까지도 그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히로시마에서는 재한원폭피해자대책 등을 지원했고, 1970년대 중반에는 합천의 원폭피해자진료소 건립에 힘썼다.¹²³⁾

한편 이 같은 지역적 연고에 기반을 둔 교류가 일본의 시민 활동가나 단체들의 한국원폭피해자와의 연결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간의 교류는 그 성격에 있어서 정치적인 색깔이 훨씬 더 열린다. 송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 서신을 통한 일상적 정보 교환, 그리고 무엇보다 '원폭수첩' 취득에 필요한 일본 체재 시 주거지 제공과 '증인' 역할 등이 특히 히로시마의 재일조선인 커뮤니티 혹은 재일동포의 존재로부터 가능했던 것들이다.

언어적 차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원폭피해자운동이 태동하던 초기에 이 문제를 일본 시민사회에 알리고자 적극적이었거나 혹은 일본의 시민 단체 혹은 활동가와 연계하고자 했던 한국원폭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일본에서나 혹은 식민지 조선에서 소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로서 문어나 구어적 측면에서 일본어 구사가 가능했던 이들이었다. 일본 '세정(世情)'에 밝아 일본 시민 단체 혹은 활동가들과 직접 교류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등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개진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이들이었던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직접 교류가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언어적 장벽에 부딪치게 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장벽을 넘을 만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친인척 연줄망에 기반을 둔 교류에 있어서는 당연히 언어적 장벽이 구애될 것이 없었다. 물론 앞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위 두 가지 형태의 교류가 완전히 별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서 재일교포들의 지원이 일본 시민사회 진영과 한국원폭피해자 간의 교각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피폭된 뒤 한국에 돌아온 이들이 한국원폭피해자운동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어딘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 현실을 본다면, 이 두 형태의 교류가 갖는 언어적/문화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123) 2007년 8월 5일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원폭피해자 위령제에서 강문희씨를 만났을 때, 그는 와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해 추도문을 읽었다. 히로시마평화공원에 위치한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의 피폭자증언비디오자료(平和データベース)에서 한국원폭피해자로서 처음 증언한 그의 피폭체험과 활동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위령제는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에 설치된 '한국' 원폭희생자위령비 앞에서 민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위령비와 위령제가 식민지 시절 이들을 지칭했던 용어였던 '조선인'이 아니라, 탈식민 이후 남한 정부에 속한 국민을 이르는 '한국인'(원폭희생자)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 경위와 이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억의 정치와 투쟁에 대해서는 Yoneyama(1999, Chapter 5)를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사회에서 자이칸히바쿠샤, 즉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가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한일협정이 이루어지던 1965년을 즈음한 기간 동안 양국 시민사회 간의 '연결'은 시민사회 운동 진영 인사들과의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히로시마의 재일한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간 연결망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 토대는 식민지 시기의 '내지'와 '조선'으로의 이주와 귀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는 특히) 귀환 이후 밀항을 통한 재(일본)입국 과정 등을 겪으면서 형성된 한국원폭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운동가들의 사회적/인적/문화적/교육적 자본 등에 깊은 사회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가 이후 일본의 시민 사회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보다 직접적인 호소들에 응답하는 배경이 되고, 한국 정부의 원폭피해자 원호에 대한 무관심 및 방치와 맞물려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된다.

4.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의 속지주의적 시행의 논리와 의미

1) 치료와 운동의 방편으로서 수첩의 교부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부산지부장 엄분연 등 회원 10명은 1일 오전 11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온 일본 사토 수상을 만나 피해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 생활대책, 자녀들의 교육대책 등을 세워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키위해 주한일본대사관으로 몰려갔다가 종로서로 연행했다. (1971년 7월 2일, 동아일보)

여기 하나의 짧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기사에는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부산지부라는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원폭협회의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 요망서 전달 시도는 부산에 거주하던 여성 원폭피해자들이 감행한 것이었다. 당시 나이 마흔 전후의 이 중년의 여성 원폭피해자들이 경호도 가장 삼엄했을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날을 잡아 광화문 한 쪽에 자리 잡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중앙 간부진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국빈으로 방문한 일본 수상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였을까? 편지의 내용은 조금 길지만 앞으로 분석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이므로 번역해 인용한다.¹²⁴⁾¹²⁵⁾

124) 이 요망서 전문은 『被爆韓國人』(1975) 뒷부분에 1971년 8월 30일 일본 정부에 전달하려는 서신으로 신영수 당시 원폭협회 회장의 이름으로 게재되어 있으나, 그에 앞서 촬영된 다큐멘터리 『倭奴~』 영상에서 이미 엄분연 씨의 음성을 통해 낭독되고 있다. 또한 이 영상에서 부산지부의 여성 회원들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간부들이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이 편지가 이 여성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자가 2011년과 2008년 이태순, 엄분연, 이진선 등 당시 시위 참가자들과 인터뷰했을 때,

사토 총리대신 각하

한일친선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세계항구평화를 위해 애쓰는 각하의 열의에 대해 우리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에는 1만 5천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원폭피해자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6,258 명이 우리 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원폭피해자는 태평양전쟁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물론 무차별 대량학살의 무기로서 처음 사용된 원자폭탄은 미국(연합국 측)이 투하한 것이지만, 우리는 일본정부를 위해 징용, 징신대 등의 명목으로 징발되었고 일본의 전쟁목적에 사역된 사람들입니다. 강제로 연행되어 그곳에서 희생된 선의의 제3자인 우리에게 대해서는 전쟁당사자인 일본 및 미국정부가 당연히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한피폭자들(유족 및 피폭생존자)은 원폭이나 그 환자들의 특수성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한국 사회 어디에서도 돌아봄 없이 그 생활이나 병증은 비참할 데 그치었으며 정치적 혹은 국제법적 문제는 참으로 애석하고 인도적 입장에서 보아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서 이제야 국제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후(戰後)는 끝났다며,¹²⁶⁾ 이제부터 세계평화질서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귀국 일본이 전쟁 전에는 같은 동포로서 같은 혈육이라 부르며 사역하고 희생한 한국피폭자들에 대해 짐스러워하게 된 지금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일본국의 법률 밖의 문제라는 이유로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어제의 동포 한국피폭자들에 대한 태도로서는 아무래도 비인도적인 것이라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략)....피폭26년, 망각된 한국피폭자들은 여기에, 이 고통과 그 뜻을 각하에게 호소하는 광영을 얻은 기회에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대해 특히 요망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1. 재한피폭자에 대한 원폭수첩 교부는 사실문제로서 인정받았으면 합니다. 원폭투하 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거주하면서 피폭 당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

그녀들은 이 편지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여성회원들이 사토 수상에게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그 내용을 협회 본부에 전달해 그것을 다시 협회 대표인 신영수 씨가 일본으로 건너가 수상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일 수 있다. 편지의 발송자에서도 ‘한국원폭피해자 일동’이라고 되어 있는 점도 그러한 추측을 가능케 한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진 호소문에 담긴 협회의 공식적 요구 사항에 ‘수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없다. 이 요망서의 번역된 전문은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2011)에 실려 있다.

125) 이 편지는 그 자체로 1970년대 당시 부산의 중년 여성원폭피해자들에 의해 쓰인 세련된 문어적 표현들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을 가능케 한 그녀들의 교육적 배경 등을 추측케 하지만, 사실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다보면 특히 1930년대 초반 이전에 태어나 일본어 교육을 받은 이들이 보통 수준의 일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특히 연구자는 현지조사 기간 동안 이미 다른 많은 원폭협회 회원들로부터 이 시위의 주요 기획자였던 엄분연 씨에 대해 ‘그이는/그 언니는 우리 일본말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글도 말도 너무너무 유창하고 똑똑하게 잘한다’는 말을 들어왔던 터였다.

126) 1971년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반환협정을 체결한 후 사토 총리가 한 말로 그때까지 일본을 규정해 온 전후 질서가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는 일이 아닙니까? 치료를 위해 일본에 입국해도 특별수첩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예도 있습니다...(하략)

<1971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 일동>

신문 지면을 통해 짧은 단신 기사로 기록을 남긴 위 사건은 일본 누노가와(布川徹郎) 감독의 다큐멘터리 『倭奴へ』(한글제목: 왜놈에게)라는 53분짜리 영상 속에서 보다 생생하게 그려진다. 부산의 한 언덕배기 좁다란 골목에 위태롭게 자리잡은 허름한 판잣집들과 햇볕은 달동네 아이들의 모습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발랄한 목소리의 일본 여성이 흡사 여행 가이드처럼 나레이션 하는 이 영상은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카메라는 사또수상에게 재한원폭피해자에 대한 원호를 바라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을 다녀오는 한국 여성원폭피해자들을 따라 다닌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찰차에 호송되어 종로서로 향하는 모습, 작은 사무실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전면 에 걸어놓고 사무를 보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 사무실의 모습도 비친다. 1968년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귀환 조치된 손귀달과 그녀가 밀항 당시 탔을 범한 작은 통통배며, 초창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에 소속된 회원들이 중간 중간 인터뷰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일본에서 살던 시절에 배운 일본어 노래를 애잔하게 부르는 장면들도 비친다. 경찰서에서 풀려나 부산으로 돌아온 이들에게서는 서울의 협회는 이런 일에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불만들이 쏟아진다.

연구자가 이제는 할머니가 된 이 영상 속의 세 중년 여성을 만난 건 2008년과 2011년이 었다. 2008년에는 원폭협회에서 회원카드를 정리하던 중 영상 속의 인물들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분을 일부러 찾아간 경우였고, 2011년에는 생애사 인터뷰를 위해 들른 합천 복지 관과 부산에서 지부를 통해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추천된 분들을 만났는데 우연찮게 -하지만 증언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생애사 인터뷰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어떤 점에서 필연적으로-그렇게 된 것이었다. 세 사람 모두 40년이 다 된 그 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세 분들 중 그 누구도 이 영상이 담긴 테이프를 건네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누노가와 감독이 테이프를 한국으로 보냈지만, 정보당국이 압수했기 때문이라고 이태순씨는 기억하고 있었다.¹²⁷⁾ 또한 영상에서는 “시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잡혀간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시위는 당연히 못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오히려 “잡혀가야 뉴스가 된다”고 생각

127) 하지만 그 이유가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원폭피해자문제를 다룬 것이어서 그랬는지, 혹은 이 영상의 주제가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그랬는지, 혹은 두 이유 모두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일본의 평화운동의 맥락에서 원폭피해자가 그 존재 자체로 ‘반핵’과 ‘반전’ 메시지를 담는 중요한 표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히로시마의 한국원폭피해자위령탑의 평화공원 안으로의 이전 문제를 통해 ‘자이칸히바쿠샤’ 문제를 알게 된 누노가와 감독이 사토 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반전(反戰) 메시지를 담기 위해 한국의 여성원폭피해자들을 만나러 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해 그렇게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영상 속에서도 그들은 다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미디어 재현에서 일반적으로 비치는 수동적이고 비참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지만, 실제로 만난 이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당차고 힘센 어조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었다.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을 히바쿠사의 경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또 다른 경계 중의 하나는 초기 원폭의료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다. 정책이 미치는 범위로서 시정권(施政權)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경계가 처음 문제가 된 것은 미군 점령 하에 있었던 오키나와제도의 원폭피해자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겨난 논란에서였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는 일본국의 시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는 입장에 따라 원폭의료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본국의 시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현재하지 않는 자는 히바쿠사가 될 수 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에 의해 수립된 당시의 유구(琉球)정부, 즉 지금의 오키나와현의 원폭피해자들을 법 적용으로부터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하지만 오키나와 현 원폭피해자들의 반발이 생겨나고, 1964년 오키나와현원자폭탄피해자연맹을 결성해 일본정부에 원폭의료법 적용을 요구하는 운동을 착수하자, 일본정부는 이듬해인 1965년 4월 5일 유구 정부 후생국, 미국 민정청(USCAR) 사이에 ‘유구제도 주민에 대한 전문적 진찰 및 치료에 관한 요해각서’를 교환하고 이들에게도 원폭의료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유구제도의 원폭피해자가 ‘테초’를 받을 수 있는 히바쿠사이면서 ‘인정피폭자’가 되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보내져야 하며, 일본으로 보내진 ‘유구제도의 히바쿠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히바쿠사와 동일한 치료와 특권, 수당을 부여한다고 명시됐다. 같은 해 오키나와현원자폭탄피해자연맹은 그 명칭을 오키나와현원폭피폭자협의회로 개칭했고, 이후 오키나와현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1972년 반환 이전까지 이 같은 요해각서에 따라 일본법이 특수하게 적용되는 형태로 실행됐다. 반환 이후에는 시정권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오키나와가 문제될 것이 없었다.

원폭의료법이 다시 한 번 시정권이라는 경계를 내세우게 된 것은 과거 식민지 시절의 조선인원폭피해자의 존재의 등장과 관련된다. 앞서 인용한 부산의 여성원폭피해자들의 편지에서처럼, 이 “외국인”들은 “전쟁 전에는 같은 동포로서 같은 혈육이라 부르며 사역하고 희생한 한국피폭자들”로서 자신들에게도 ‘원폭수첩 교부’를 사실문제로서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 요구는 앞서 1968년 역시 부산지부의 회원이던 손귀달 씨의 밀항 사건이 마무리되던 시기 또한 같은 부산지부의 엄분연 씨와 서울에 거주하던 임복순 씨의 도일 후 원폭수첩 신청과 관련되어 있었다.

1968년 12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부산 지부장이던 엄분연 씨와 서울에 살고 있던 회원 임복순 씨는 손귀달 씨의 밀항 사건을 계기로 연대하게 된 <한국피폭자구원한일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교토의 제2차 세계대전 한국인전몰자위령제에 참가하게 된다. 이들은 위령제 참례 후에 히로시마원폭병원에 치료차 입원했다. 그리고 임복순 씨는 “나는 여자정신대

원으로 작업 중에 피폭 당했다. 일본인으로서 피폭된 우리에게 일본정부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피폭자건강수첩을 주어야 한다. 우리들은 일본에 가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다"라고 호소하며 히로시마 시에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을 했다. 임복순과 엄분연이 1968년에 신청했던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에 대해 히로시마 시는 "일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의 방침이 확실하지 않아 후생성에 문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고, 얼마 후 후생성은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해 2월 14일 일본 후생성은 재한피폭자 엄분연(부산), 임복순(서울)의 수첩교부신청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치바준코, 2003).

2011년 7월 9일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엄분연씨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한국 사람은 외국인으로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신청한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서 일본정부가 한번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해주게 되면 그 이후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각하 결정)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본장 3-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64년 동경올림픽 때 본국가측초청에 의해 관광차 일본을 방문했던 박모씨가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면, 손귀달 밀항 사건 등으로 한국인원폭피해자의 존재와 이들의 수첩 신청에 대해 민감해 있던 때에 일본 정부(후생성)가 이들의 수첩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히바쿠샤의 시정권적 경계를 확실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일본 후생성과 법무성은 1969년 5월 8일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회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원폭의료법, 원폭특별조치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주된 거주지가 일본이어야 함이 전제로 되어 있다. 즉 속인주의가 아닌 속지주의 방침을 취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¹²⁸⁾ (제61회 일본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는 입국심의과장의 발언 中)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해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것은 1970년 손진두의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게 된다. 1968년 그의 누이의 밀입국과 이후의 조치, 그리고 한국원폭피해자 문제 등이 이미 일본사회에서 떠들썩해진 상황 속에서 그의 밀입국과 수감은 본장 2-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시민운동가들과의 연대 움직임 속에서 이른바 수첩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본 절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통해 자신들을 히바쿠샤로서 인정해달라고 하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요구에 관한 것이다. 수첩의 교부라는 요구는 단체 설립 이후 국내법 제정을 통한 보상과 일본의 인도적 지원과 보상을 요구한 한국원폭피해

128) 제61회 일본 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회의록 제16호 (1969년 5월 8일) 제16호 6항. 이치바준코, 2003 재인용.

자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분명히 구분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것은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대정부 혹은 대일본 요망서를 전달해온 원폭협회의 주요 활동 궤적에서도 벗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정부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고와 원폭증의 고통을 개별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개인들이 일본으로의 밀항/입국이 비교적 용이했던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만들어진 독자적 행위의 결과였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일본 정부에게도 한국 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보상/배상의 차원이 아니라 국내법을 외국인이지만 ‘히바쿠샤’인 것이 분명한 한국원폭피해자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독특한 법적/행정적 요구에 가까웠다. 이것은 원폭의료법이 복지법으로서 일본에서 복지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정책적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었다.¹²⁹⁾ 즉 이것은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근간인 원폭의료법의 법 적용 문제로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한국 정부와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의 문제를 논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내 복지법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로 한정될 수 있는 문제였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이 원폭의료법이 기반하고 있는 특수한 전쟁 피해로서의 방사능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를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의 문제와 맞물리게 하면서 매우 복잡한 논란 속에 빠져들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이러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요구는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할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행정관료제적 판단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샤의 또 다른 경계가 드러나는 맥락이다.

2) 국경을 넘으면 휴지가 되는 피폭자 수첩

손귀달의 밀항과 엄분연·임복순, 손진두 씨가 신청한 수첩 교부에 대해 잇따른 각하 결정이 나면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수첩 교부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는 점차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2장 3-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4년 3월 손진두 씨의 수첩 재판 1심에서 승소 결정이 내려진다. 그리고 이로써 한국원폭피해자들도 드디어 수첩을 받아 히바쿠샤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1974년 6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 회장이었던 신영수 씨는 자신의 얼굴 한쪽을 덮고 있는 켈로이드 상처 치료를 위해 도쿄로 간다.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적 조치가 히바쿠샤, 즉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신영수 회장은 우선 수첩을 교부받아야 했다. 일본 <시민회> 히

129) 당시 일본 정부는 국가 보상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원호법인 ‘군인은급법’과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에는 ‘국적’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구식민지 피식민자들과 외국인을 배제하는 원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우즈미 아이코, 2010:68-71).

로시마 지부의 토요일가는 히로시마에서 신영수가 가지고 있는 재일(在日) 당시의 기록을 바탕으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을 때 필요한 두 명의 증인을 찾아 도쿄로 보냈다. 1974년 7월 25일 도쿄도 지사는 신영수 씨에게 수첩을 교부했고, 그는 1965년 한일 양국 간의 국교가 성립된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원폭피해자로서는 정말 말 그대로 법적 의미에서 첫 '자이칸(在韓) '히바쿠샤'가 되었다.¹³⁰⁾

하지만 신영수 씨에게 수첩을 교부하기 직전인 1974년 7월 22일 일본후생성은 후생성 공중위생국장 통달(위발 제402호, 흔히 '402호 통달'이라고 불리며, 이하 '402호 통달'로 약칭)을 발한다. 후생성은 이 '402호 통달'을 통해 "원폭특별조치법은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피폭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의 영역을 넘어 거주지를 옮긴 자에게는 동법의 적용은 없다"라는 행정 방침을 정한다. 그리고 히바쿠샤가 되기 위한 "수첩교부 조건을 치료목적으로, 적법하게, 입국하여 1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할 것"을 명기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수첩의 신청과 교부, 그리고 치료 등은 일본의 영역 안에서 거주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 행정규칙으로, 일본에 거주관계를 갖는 자들만이 히바쿠샤로서의 자격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402호 통달'의 이러한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은 제약으로 나타난다. 일본에 입국할 수 없거나 입국하더라도 한 달 이상 체재할 곳이 없는 한국원폭피해자의 경우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는 불가능하다. 즉 우선 물리적으로 일본의 국경을 넘는 월경(越境)이 가능하지 않은 자는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는 것, 즉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상정하는 히바쿠샤가 될 수 없다. 또한 흑여 도일(渡日)해서 피폭자건강수첩을 취득해 히바쿠샤가 되더라도 귀국과 동시에 일본을 떠나면 더 이상 그의 히바쿠샤로서의 자격은 실권된다.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폭자건강수첩을 취득하고 건강수당을 신청한 이들에게는 수당과 함께 "히고키 닛다라 키레마스요"(飛行機乗ったら切れますよう, 비행기 타면 끊긴다)라는 통보도 같이 따라온 연유다.

① 상징 혹은 기적

비록 일본에 있을 때만 효력을 가진 수첩이기는 했지만, 자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물론이고 원폭증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의료진조차 없었던 1970년대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본 적도 없고 병명도 뚜렷하게 진단받아 본 적 없는 많은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도일 후 수첩을 받아 히바쿠샤가 된다는 것은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보통의 원폭피해자들에게 수첩을 받는 일은 물론 일본으로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때이기도 했다.

130) 그러나 역시 '402호 통달'이 발효된 것이 그가 수첩을 교부받기 3일 전인 1974년 7월 22일이었으므로, 그가 교부 받은 '피폭자 건강수첩' 또한 그가 '일본의 영역' 안에 거주할 때만 유효한 것이었다.

심옥희 씨의 아버지 심일출 씨(생년미상)¹³¹⁾는 경남 밀양 태생으로 어린 시절 모친을 일찍 여의고 외가댁에서 키워지다 청년기가 되어 부산으로 나왔다. 호적상의 생년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마흔 넷이던 해인 1936년에 심옥희 씨가 태어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1893년 혹은 1894년생으로 추정된다. 1910년 전후인 열일곱, 열여덟 살 즈음에 일본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결혼이 늦어져 자녀들의 출생 또한 그의 나이 30대 중반을 넘어서서 보았다. 심옥희 씨가 학창시절 때 이미 시집간 만언니는 1920년대 후반생으로, 그 아래 형제들도 모두 일본에서 출생했다. 심옥희 씨의 아버지는 그녀가 철이들어 있을 시기(본인이 기억이 나는 시기)에는 이미 노동일과 같은 것에서 손을 떼고 조선인들을 상대로 침이나 부항을 뜨는 일을 하고 있었다.

히로시마 시내 근교인 구사츠(草津)에서 출생해, 소학교 3학년인 열 살 되던 해 해방을 맞았다. 원폭 투하 당일 폭풍에 집이 반파되고,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언니를 찾아다녔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던 언니는 며칠 뒤 재를 뒤집어쓰고 돌아왔다. 하지만 귀국한 뒤 시름 시름 노랑병¹³²⁾을 앓다가 이듬해 갑자기 사망했다. 그녀 자신은 피폭 직후에는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않았으나 처녀 시절부터 온 몸에 멍이 든 것처럼 울긋불긋한 반점이 생겨나기 시작해 결혼을 하고는 점점 더 심해졌다. 반점이 심하게 올라왔을 때에는 사람들 시선 때문에 목욕탕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반소매 옷이나 스커트도 입지 못했다. 나병환자들이 먹는 약이 효과가 있다 하여 복용해 보았지만 제대로 먹는 것이 없던 시절에 위장 벽만 훑어내고 효험이 없었다. 그녀가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귀국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남편은 그녀의 병이 원폭 때문이라고 했고 시어머니로부터는 “남편 등골 빼먹는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홀로 생계를 도맡아 꾸리던 1970년대 초반 우연찮게 원폭협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협회 창립 초창기 멤버가 동생과 지인이었던 인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비교적 일찍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원폭피해자다는 딱지가 붙지 않을까” 걱정되어 망설이기도 했지만 “혹시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하고 회원 가입도 했다. 하지만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초반 한일양국 정

131) 연구자는 인터뷰한 원폭협회 회원들의 회원카드에 첨부되어 있는 호적자료 등을 통해 그들의 가족관계 및 가족들의 생년월일 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심옥희 씨의 경우에는 호적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등록 요건에서 그녀가 이미 일본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이로서 다른 일체의 서류들이 필요치 않아 그녀의 다른 기록들이 회원카드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생년월일도 호적 자료 등을 참고하기는 했으나 인터뷰 결과 호적에 기록된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터뷰를 한 경우에는 인터뷰와 호적 자료를 종합해 생년월일을 기록했다.

132) 귀국 후에 병을 진단조차 해보지 못하고 사망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가 많은데 ‘노랑병’도 대표적인 사인(死因)중의 하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시가 발행한 원폭재해지에 따르면 피폭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장애 중 하나가 백혈병이다. 백혈병은 특히 피폭 당시 나이가 어릴수록, 쪼인 선량이 높을수록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원폭재해지에 따르면 백혈병의 연차별 발생건수의 추이를 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모두 1951년, 1952년에 정점에 달했다고 보고된다 (廣島市・長崎市 原爆災害誌編輯委員會, 2005).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노랑병’에 대한 묘사는 대체로 이 백혈병 환자들을 묘사하는 것과 비슷하다.

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빠듯했던 현실에서 협회가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그녀의 표현대로 기적이 찾아왔다. 규슈 오오무타 탄광에서 발견된 한국 인유해를 고향에 전달해주러 온 일본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협회를 들어 한국의 '히바쿠샤'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우연히 나가게 된 것이다. 당시 변씨의 몸 상태를 보고 놀란 일행 중 한명이 그녀에게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고, 도일 후 초청하기로 약속을 한다. 1973년의 11월의 일이었고, 그녀가 실제로 초청되어 치료를 받게 된 것은 1976년의 일이다.¹³³⁾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신이 만나게 해 준거다'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는 당시에 원폭증을 모르잖아. 서울대학병원 의사도 몰라. 구보상이 와서 알았지. 그 사람이 꼭 (나를 초청해서 치료 해준다) 한다더니 오사카 <시민회>에 가서 물어봤대. 거기서 (치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내 계좌에 얼마간의 돈이 있어야 한다고 했나봐. 그러니 그 사람이 돈도 보내고 원폭협회에 초청장을 보내는 거야...(중략)... 그리고 일본에 가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데, 체재기간이 길어져서 규슈의 영사관에 (비자 연장을 하러) 갔어. 그때 거기 영사가 구보상한테 한국에 삼 만 명의 피폭자가 있다는데 왜 변상을 선택했냐 하나 "연령대도 같고 (고향도) 히로시마로 같고 몸 상태도 비슷하고 해서 도저히 넘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영사가 '아나따와 삼만노호시노나 까데 에라바레다호시데스요'(あなたは三万の星の中で選ばれた星ですよ) 하더라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내가 "선택된 별이라"고 "행운아"라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감격도 많이 하고 분노도 많았고...(하략) (1936년생, 여, 심옥희)

심옥희 씨가 일본에서 수첩을 받은 것은 손진두 소송의 1심 판결이 난 이후 원폭협회 전 회장이던 신영수 씨가 운동적 차원에서 수첩을 받은 이후 세 번째였고, 치료 비자를 받아 입원한 뒤 수당까지 받은 것¹³⁴⁾도 당시로서는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일 혹은 신의 힘으로 특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¹³⁵⁾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심옥희씨의 사례처럼 1970년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위치 지워져 있던 정치사회적/역사적 제약 속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라는 공적 단체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

133) 11월 6일 각 언론사 신문들에 나가사키의 유족 없는 유골 154구 봉환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 1973년 11월 13일자). 나가사키의 스에오카(末岡) 탄광에서 채광작업을 하다가 원폭에 희생되었거나 강제노동으로 중병을 얻어 숨진 이들이었다. 이 일을 주관했던 이들은 나가사키에 거주하는 재일 교포 권수용 씨와 구보 간이치 및 구보사토코(久保里子) 부부였는데,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구보 씨 부부의 부탁에 따라 심옥희씨가 처음으로 이들을 만나게 됐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록에 이들의 방한 시기가 1973년 11월 20일에서 24일로 나왔다. 심옥희 씨가 말한 일행 중 한 인사는 구보사토코(久保里子) 씨였다.

134) 공식적인 기록상에도 1976년 5월 서울의 정철선 씨가 '재한피폭자'로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시로부터 건강관리수당의 지급을 인정받았다고 나와 있을 정도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135) 『민중국어사전』 기적(奇蹟).

격으로 합법적인 치료 비자를 받아 일본으로 건너가 수첩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은 그녀의 체재연장 비자 심사를 담당했던 이의 말처럼 “삼 만 명 중에서 선택된 별”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이다.

물론 심옥희 씨는 그녀가 당시 큐슈의 오오무따 탄광의 유해를 가져온 일본 사람을 만난 그 시점을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원폭피해자라는 자각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자각을 했다라든가 히바쿠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 이들이 있는 현실에서, 당시 그녀가 신이 만나게 해 준 것이라 묘사한 기적은 단지 그 시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협회에서 자신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한 그 날은 자신이 겪고 있던 병이 히로시마에서 떨어졌던 원폭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동생의 인연으로 우연찮게 원폭협회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으며, 신청을 하고 곧바로 협회에 가입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기적’도 ‘402호 통달’에 따른 행정 조치로 인해 일본에 체류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수첩’을 받아 치료를 하는 것이 기적으로 묘사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시기 대다수의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처했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해준다고 할 수 있다.

② 휴지조각 혹은 자격증

일본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402호 통달’의 효과는 한국원폭피해자가 이 정책에 있어 히바쿠사라는 범주 안에 상시적인 존재로서 포함된 것이 아니라, 월경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잠시 포함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 존재로 남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 정부간 합의에 따라 독일치료 제도가 일시적으로 이뤄지고, 히로시마의 민간단체인 <도일치료위원회>가 그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독일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수첩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도 여전히 유지됐다.

그 때는 패스포도(passport)가 6개월이면 없어져. 그걸 신청하고 기다리면 비자는 안 나오고 패스포도는 기한이 넘어가고 하면서 일본에 간 거야. 그리고 일본 가서 패스포도를 연장하고 그랬지. 그때 오오무따 사람들이 너무 잘해줬어. 내가 초청을 받고도 일 년 있다가 갔나봐. 처음에는 3개월 있다가 왔어요. 두 번째 재검진 갔을 때 나가사키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키겠다고 한 거야. 다 안 나왔으니 고쳐가지고 가라 한거야. 근데 내가 거기 있으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호수당을 받자 한거야. 근데 당시 한국 사람으로서는 수당신청 한 사람이 없었나봐. 벳도(ベット, 침대)에 누워있을 때 누가 와서 나한테 그런 거야. 김종필이 와서 다 돈 가져갔고 너희 정부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근데 그때 우리가 정부에 ‘피폭자’다 뭐다 할 계제가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 수당은 비행기 타면 끝나니까 ‘히고키 닛다라 키레마스요’(飛行機乗ったら切れますよ) 그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서럽고. 내가 그랬어, “내가 병 고치러 왔지 돈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병 나오면 갈 거다.” 옛날에는 너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지금은 일본에 있으라고 해도 안 있는다, 건강만 돌려도, 흥분해서 일본말로 막 해댔어. (1936년생, 여, 심옥희)

손진두 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완료된 1978년 이후 한일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1980년에서 1986년까지 도일치료 제도가 임시 운영되어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수첩 취득이 잠시나마 제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시기가 있다.¹³⁶⁾ 1980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부가 1979년에 양국의 여당이 합의한 3개 항목(한국 의사의 일본 연수, 일본 의사의 한국 파견, 한국 원폭피해자의 도일치료) 중 도일치료에 관한 사항만 실시할 것을 결정한 가운데, 도일치료는 기간 2개월, 치료비는 일본정부 부담, 도항비는 한국정부 부담으로 하고 총 5년에 걸쳐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도일에 수반되는 여비(항공비 등 교통비)를 지급해 왔던 한국 정부가 그 연장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1986년 11월 2일 제도적 차원의 도일치료는 중단된다. 총 349명의 한국원폭피해자가 정부 지원의 월경 수속을 통해 수첩을 받고 히바쿠샤가 된 시기였다.

사실은 내가 1970년 오사카 박람회 할 때 오빠가 초청을 해서 일본에 관광을 갔어요. 그래서 만나고 여기 저기 둘러보는데, 고종오빠가 혹시 너 이거 수첩 내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수첩이 뒤틀리고 나서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예사로 듣고 왔거든. 그리고 나서 86년도 되기 전에 83년도쯤 됐나, 내가 서울 있을 때 지부를 찾아가봤어. 정재수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그때 대구에 일본 의사들이 와서 원폭 맞은 사람들 진찰하고 그랬거든요.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하니깐 내가 아기 놓다가 밑이 빠져 있었거든요. 의사가 그걸 보고 수술을 하러 일본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사람 몇, 부산 사람, 합천사람 몇 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86년도 3월에 치료를 간 거예요. (김선이, 여, 1928년생)

세 살 때 가족을 따라 히로시마로 건너간 김선이 씨가 원폭을 맞은 때는 친정 근처인 미나미간온마치(南觀音町)에 신접살림을 차린 지 5개월 되던 때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다. 해방되고 고향에 돌아와 낳은 아이가 스무 살이 채 되기 전에 원폭 후유증을 앓던 남편이 사망했다. 원폭협회에 대해서는 일찍 알고 있었지만, 홀로 생활을 꾸

136) 1979년 6월에는 한국과 일본의 여당 간에 “재한피폭자의 의료원호에 관한 3개 항 합의”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후생성 관계관이 자민당 정조회 부회장과 자민당 전문위원들과 방한했다. 이들은 한국 여당과의 협의회에서 ① 한국 의사의 일본연수, ② 일본의사의 한국파견, ③ 재한피폭자의 도일치료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후 한국에서는 공화당 정책연구실장 주선으로 공화당 내 원폭피해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원장에 공화당 의원 김상식 씨(합천출신)를 선임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그러나 10·26과 5·18 등 한국의 정치적 격랑 속에 일본과의 교섭은 크게 후퇴하여 위 세 사항 중 ‘도일치료’만이 성사되었다.

려나가느라 바빠서 특별히 가입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1985년에 협회에 가입했다. 1970년 오사카에서 열린 박람회에 고종사촌의 초청으로 다니러 갔던 중 수첩을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예사로 넘기다가 1983년 도일치료자로 선발되어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수첩을 받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이 수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시기였다. 하지만 곧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던 도일치료가 종료되면서 수첩 취득은 다시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그게 제가 왜 그걸 잘 알았나면 제가 (일본을 오가는) 배를 타고 선원생활을 하고, 누님도 일본에 살고 하니가 일본 소식을 잘 알았어요. 시즈오카 県(靜岡縣) 원폭피해자협회 지부장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소식을 잘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잘 알아도 수첩을 받아도 별 도움이 되겠냐 했는데, 00씨가 자기도 받았다고 저도 받으라고 해서 가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들, 외사촌 동생들 다 데리고 가서 받아오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수첩 받아놔야 휴지나 한가지지만, 어차피 일본에 잘 다니니까 일단 받아둔 거죠. 도일 치료도 따로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한 십삼 년 동안 일본 누님 집에 있었어요. 누님 집 경영하는 일도 돕고 수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폭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있었고, 수첩을 받고 나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주 일본에 갔다가 왔다가 그랬어요. (김경호, 남, 1932년생)

수첩은 제 첫째 아들이 일본에 교환교수로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일본 가서 수첩을 받았어요. 돗토리대학에 1년 교환교수로 갔는데, 장손이 태어나니 제가 그걸 보러 가서 두 달인가 있었어요. 노느니 받는다 하고 받았어요. 그때 제가 돗토리 현청에 가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니까 내용을 써라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하고 이 사진 가지고 증인도 없이 수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수첩 받아도 소용은 없었지만, 일본에 있는 동안 할 일도 없고 하니가 이거나 하자 해서 받게 된 거예요. 원폭피폭자라고 해도 자기만 이야기 안하면 사람들도 모르고 그거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전혀 원폭피해자 수첩 받는 거에 거리낄 건 없었어요. (정일봉, 남, 1924년생)

위의 김경호 씨와 정일봉 씨는 모두 일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수첩을 받은 경우였다. 한국에 오면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일종의 증명서로서 받아둔 것이었다.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 이외에 일본 <시민회>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부, 그리고 히로시마의 <히로시마도일치료위원회>¹³⁷⁾ 등과 같이 일본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치료를 위해 도일했다가 수첩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137) 1974년 손진두 소송을 계기로 일본기독교단 중부교구(히로시마 현)가 중심이 되어 만든 <제히로시마한국인-조선인피폭자구원회>를 전신으로 한 한국원폭피해자구호단체로 히로시마 가와무라(河村) 병원과 연계해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도일치료를 도와왔으며, 현재까지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인 김진환 목사가 주도가 된 이 모임에는 <시민회> 히로시마 지부장인 토요나가 씨도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在日本韓基督教廣島教會, 1998).

따라서 정부지원의 도입치료가 마감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정확히는 1994년 전까지) 한국원폭피해자들 중 일본에서 수첩을 받는 경우는 첫째, 위의 엄분연 씨나 손진두, 신영수 전 원폭협회 회장과 같이 운동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 둘째 위에서 묘사한 심옥희 씨와 같이 아주 특별한 기회가 닿은 경우나 제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도입치료 제도가 지원되어서 거기에 선발된 경우, 그리고 셋째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본의 친인척과의 연줄망이나 직업적 측면에서 일본을 자주 오가면서 수첩을 내는데 수반되는 거래비용 혹은 기회비용이 크지 않은 이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수첩의 의미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크게 변화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뤄진 일본의 40억 엔의 인도적 지원금 교부 등의 조치가 한국의 유일한 원폭피해자 단체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회원가입 문제와 맞물리게 되면서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수첩’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크게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수첩을 1990년에 내셨는데 어떻게 계기가 됐는지요?) 협회를 가입해서 적십자에서 발행하는 그것(원폭피해자등록증)부터 받고, 수첩은 나중에 받았어요. 여기 입주한 게 2001년 2월인데, 여기 가서 보니 적십자에서 받은 것보다는 ‘일본 수첩’ 받은 사람이 행세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 타고 일본 가서 우리 고모하고 증인 세워서 수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양준일, 남, 1933년생)

한국에 거주하는 이상 받아봐야 별 소용이 없고, 도입치료를 위해서 일본에 건너가서나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수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1994년 협회 회원가입 자격이 수첩 소지자로 변화하면서 그 의미도 달라졌다. 일본에서 수첩을 받더라도 일본에 체재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휴직조각’이나 마찬가지로였지만,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가입해 피폭자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의료비 약간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 수첩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가입하기 위한 하나의 자격 혹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라는 인증으로서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때문에 1990년대 이후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일본으로의 월경은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진짜 히바쿠샤임을 인증받는 유일한 증명서를 받으러 가기 위해 필요해졌다. 그리고 수첩은 이전에 한국의 협회 심사를 통해 적십자사에서 받은 등록증보다 더 확실히 진짜를 증명하는 것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수첩을 받아오는 일이 진짜 원폭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면서 역설적인 상황이 하나 생겨난다. 40억 엔의 인도적 지원금의 거출을 통해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한국 내에서 해결하게 하고자 한 일본 정부의 시책이 오히려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는 일본에서의 수첩 취득이 중요해지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원폭원호법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피폭자복지기금의 예산이 점점 고갈되어 언젠가는 의료비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한국원폭피해자들과 일본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새로운 구호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5. 한국원폭피해자 소송의 경과

1) 보상청구운동의 좌절과 수첩 재판으로의 전환

본 절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은 일련의 소송들의 결과와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원폭피해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러한 일련의 소송들이 한국원폭피해자운동의 역사에서 갖는 성격을 우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1절에서 인용한 부산지역의 여성원폭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 피폭자건강수첩 발급 문제를 실질적인 문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한 요구는, 국내법 제정을 통한 보상과 일본의 인도적 지원을 요구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당시 그 행위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대정부 혹은 대일본 요망서를 전달해온 원폭협회의 주요 활동 궤적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예외적인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단독 행위였다. 그리고 이 단독 행위는 위 소송들 가운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거의 대부분이 제기한 '402호 통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978년 손진두 소송의 최고재판소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자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압박해 일본 정부가 외국인 피폭자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개선하는 등 기존에 해온 운동의 방식을 변경하지 않았다.¹³⁸⁾ 실제로 당시 협회 임원들은 수첩 교부를 통한 일본의 국내 원폭2법의 적용보다는 대정부 진정 활동을 통해 한국원폭피해자 구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도 강했고, 손진두 소송의 최종심까지 승소판결을 받은 만큼 그에 대한 기대도 컸다 (정근식 편·진주 채록 (2005) 서석우 증언 편 참조). 그러나 대정부 진정과 양국 정부에 대한 협회와 일본 시민단체들의 압박은 10·26사태로부터 시작해 이후 지속된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다시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일본 정부가 제안했던 세 가지 방안 중 1) 한국 의사의 일본파견 2) 일본 의사의 한국 파견 등이 제외되고 동일치료만이 유일하게 남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

138) 4월 1일 협회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요지는 1) 손진두 원폭수첩재판은 손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피폭자와 일본정부와의 쟁의다, 2) 이번 승소로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적극 회피하려고 했던 한국인피폭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3) 차체에 법적 투쟁을 한 손진두씨와 그를 지원한 일본시민단체에 사의를 표한다, 4) 일본최고재판의 판결은 일본인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경의를 표한다, 5) 일본정부는 외국인 피폭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치바 준코(2003), 김승은(2012a, 2012b) 참조).

물론 이 시기에도 일본에 건너가 치료나 운동 차원에서 수첩을 받는 협회 임원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시적인 치료와 운동의 방편 중 하나였다. 이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문제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일본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보는 협회의 입장은 1980년대 후반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 진행한 23억 달러 보상 청구 운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87년 11월, 전후 미처리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일 양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도일 치료 중단 등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 대하여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그 보상책임을 묻는 23억 달러 보상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9).

당시 이 보상청구운동은 일본변호사협회 및 <시민회의>, <시민회>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에서의 고양된 일제 피해자 보상 여론과 함께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갔다. 민주화 이후의 여타 대일보상청구운동과 때를 같이해 미디어에서도 원폭피해자 관련 소식이 연일 오르내렸고, 협회는 대선정국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을 찾아 자신들의 요구를 압박해나갔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그 방문의 결과가 나온 시기는 언론을 통해 한국에서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보도되고,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대사회적으로 가장 격렬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던 때였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보상요구는 한일 양국 정부의 교섭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피폭자에게 '원조'를 하는 형식으로 변형되었고, 한국피폭자 원조를 위한 지원금의 액수 또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요구한 금액의 1% 정도에 해당하는 40억 엔에 그친다. 일본 외무성에서 국제기출명목으로 계상된 이 돈은 원조라는 성격상 한국의 구호단체인 대한적십자사에 송금되었고, 그 운용은 협회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임원 및 회원들은 크게 낙담하고, 이에 반발해 40억 엔에 대하여 수령 거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 돈은 1991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적십자사로 보내진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보상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다.

23억불 청구 관련 대외무부 요망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정부에 대한 23억불 요구를 외교문제로 상정시켜 주실 것 2. 한일회담때 청구권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입장에서 무엇인가 해주겠다고 일본 측이 수차 말한 것을 실행에 옮기라고 촉구할 것 3. 원폭병원 건립, 센터건립 등 그 후 추진상황 촉구 4. 한국 원폭피해자 방치문제가 일본국간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한일우호관계에도 지장을 준다는 걸 강조해 주실 것 5.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난처하시거든 원폭협회가 비공식 교섭토록 측면 지원해 주실 것 6. 피폭자가 자비로 치료차 도일할 때 치료비자로 여권을 발급해 주실 것 7. 도일치료 한 가지만 가지고 일본이 생색을 내는데 도일치료는 극히 일부대책에 지나지 않으니 근본대책을 세우도록 고자세로 나와 주실 것 8. 한국 국내에서의 피폭자 치료비를 일본 측이 전액 부담하여 줄 것 9. 최근 대만인 원일본군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문제가 일본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되는 이때에 한국피해자 문제는 대만군인문제 이상으로 진지하게 토의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10. 도일치료 재개할 때 지금 같은 표시효과만 노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도록 할 것을 일본 측에 촉구 도일치료여비 등 일체를 일본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실 것
피해보상액 산출내역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화59년도(1984년도) 히로시마 시 위생국 발행 원폭피폭자 대책사업개요에 의거함 2. 상동 책자 제170항, 예산상황 중 소화 59년도 후생성 예산액 99,171,068,000엔을 기준으로 함 3. 상동 책자 예산액 중 히로시마 현 히로시마 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기준에 계상치 아니함. 4. 전국피폭자건강수첩소지자수(1984년 3월 31일 현재) 368,259명 ----- 1. 소화59년도 후생선 예산액 99,171,068,000엔 2. 피폭자 1인당 1년예산액 269,297엔 (99,171,068,000/368,259) 3. 해방 후 42년간 1인당 예산 11,310,474엔(269,297*42년) 4. 한국피폭자 23,000명에 대한 총액 260,140,902,000엔(11,310,474*23,000) 5. 총금액을 달러로 환산한 액수 1,858,149,300불(260,140,902,000/140불) 6. 향후 10년간 추가예산 442,416,500불(269,297*23,000*10/140불) 7. 총액 2,300,665,800불(23억불)

표 1 23억 달러 보상 청구 요망서와 보상액 산출 내역서

한편 '수첩' 재판을 통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운동은 한국원폭피해자와 일본 시민단체간의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소위 '소송을 통한 운동'이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까지 일본 <시민회>의 한국원폭피해자와의 연대는, 설립 당시부터 1980년대 중반

까지는 기부금 후원과 한국원폭피해자 일본 초청 등을 통한 홍보와 교류,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원폭피해자 도일치료 시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과 치료기간 동안 필요한 각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히로시마도일치료위원회>와 일본 <시민회>의 활동이 한 예다. 이들은 단체가 설립된 1972년 이래 한국에서 치료의 길이 없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일본으로 초청해 치료를 돕는 일을 해왔다. 물론 설립 초창기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¹³⁹⁾ 한국원폭피해자의 도일치료가 제도적 차원에서 중단될 위기에 처한 1984년부터는 단체 차원에서 한국원폭피해자 초청 도일 치료를 정례화하게 된다. 이들은 한국원폭피해자 초청에 따르는 각종 출입국 수속 문제까지 포함해 일본에서의 입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물품과 일시 체류지, 통역 등을 제공하고, 피폭자건강수첩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인을 찾아주는 등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영역 안에서 히바쿠샤로 있을 수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각종 경제적, 의료적 지원의 수속과 체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도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제외한다면, <시민회>와 <히로시마도일치료위원회>의 한국원폭피해자 지원 활동은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있어 히바쿠샤가 되는 데 있어 중요한 가교가 된 것이다. 아래의 표3은 그 중 <히로시마도일치료위원회>를 통해 도일 치료를 받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402호 통달' 조치와 관련된 일련의 소송들이 승소 판결을 받고, 일본의 영역 안팎을 가르는 경계가 히바쿠샤들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지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진 오늘날 도일치료는 숫자면에서 크게 줄었다. 도일치료 대신 일본 <시민회>는 앞의 3·3절에서 인용한 내용처럼,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 내에서 여전히 겪고 있는 차별적 대우들을 철폐하기 위한 소송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냈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139) <시민회>가 결성된 1972년 이후 꾸준히 기부금이 도착했고, 1984년부터는 <히로시마도일치료위원회> 쪽으로 활동의 중심이 옮겨졌다. 이미 언급했듯이 두 단체는 중복 활동하는 이들이 다수를 이룬다.

연도	기부금액	연도	기부금액	연도	기부금액
1973	1,416,912	1978	10,000	1983	2,578,673
1974	2,017,892	1979	260,240	1984	1,566,796
1975	2,375,761	1980	81,000	1985	737,600
1976	1,931,758	1981	-	1986	1,381,965
1977	303,103	1982	1,043,712	총계	15,705,412

표 2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록에 남아 있는 <시민회> 기부액

연도	남성	여성	합계	총인원	연도	남성	여성	합계	총인원
1984	0	4	4	4	1999	7	9	16	399
1985	24	16	40	44	2000	19	16	35	434
1986	8	7	15	59	2001	18	16	34	468
1987	8	3	11	70	2002	4	6	10	478
1988	12	8	20	90	2003	9	11	20	498
1989	15	10	25	115	2004	2	5	7	505
1990	9	14	23	138	2005	8	2	10	515
1991	22	10	32	170	2006	2	6	8	523
1992	13	10	23	193	2007	5	4	9	532
1993	12	5	17	210	2008	2	3	5	537
1994	22	8	30	240	2009	9	2	11	548
1995	22	14	36	276	2010	3	3	6	554
1996	22	20	42	318	2011	1	0	1	555
1997	13	16	29	347	2011년 5월 15일 현재까지				
1998	15	21	36	383					

표 3 재한피폭자도일치료히로시마위원회를 통한 도일치료자수

[출처: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그런 의미에서 뒤에서 보게 될 각종 수첩 재판들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주류적 운동 방식이었다기보다는 23억불보상청구운동의 좌절과 40억 엔의 인도적 지원금 교부로 왜곡되기 시작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내부 갈등에서 약간 빗겨나 있었던 일본 <시민회>, <시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원자들과 변호인들이 한국의 개별원폭피해자들과 접촉해 만들어낸 것에 가까웠다. 시작 당시에는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운동적 차원에서 시작한 '곽귀훈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정근식 편·진주 채록(2005) 곽귀훈 증언 편). 오랫동안 <시민회>와 교류해온 그는, '한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수첩'이지만 '일종의 증명서'로서 일본에 갈 때마다 수첩을 교부 받았다. 1998년 미쓰비시징용공재판(3-3절 표 3, 4번이 해당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차 처음으로 일본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신청한 피폭자건강관리수당이 한국으로 출국 한 뒤 "당신은 귀국으로 인해 히바쿠샤로서의 자격이 실권됐다"는 통지와 함께 지급중지되자, 현 일본 <시민회> 회장인 이치바 준코와 그녀의 지인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히바쿠샤는 어디에 있어도 히바쿠샤"라는 표어를 들고 '소송을 통한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 소송은 한편으로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보상적 측면이 아니라 피폭자건강수첩 발급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적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협회 설립 이후부터 각종 지원금 등의 운용에 있어 갈등이 있어오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40억 엔이 거출된 이후에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

고, 회원들의 고령화 등으로 보상 투쟁 운동의 동력을 상실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내부적 요인들도 작용하였다. 협회 차원의 보상 요구 운동은 한국 정부의 무대응과 일본 정부의 입시방편 속에서 회피되는 가운데 40억 엔 거출금이 지급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결과들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식민지배와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방사능의 피해자'로서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상정한 히바쿠사라는 경계 안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2)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수첩 재판 일람과 광귀훈 소송의 의의

일본 후생노동성 '402호 통달' 조치가 일본의 영역 바깥의 원폭피해자들을 배제하는 논리로 기능하는 가운데 1998년 처음 시작된 광귀훈 소송(아래 표 5번)과 이강령 소송(아래 표 6번)의 최종 결과가 나온 2000년대 초반은 일본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히바쿠사라는 범주에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상시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2002년 12월 오사카지방법판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히바쿠사에게는 건강수당 지급을 중단하게 하는 후생성 '402호 통달'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본의 영역에 거주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했다(아래 표 5번, 6번). 그리고 이 판결은 또한 이후 '소송을 통한 운동'이라고 할 만큼 일본 정부(후생노동성)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시발점이 되었다. 아래의 표는 그 가운데 현재까지 일본 <시민회>와 변호단 등의 도움을 받아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을 정리한 것이다.

	제소자	제소일	제소 내용	결과 및 비고
1	손진두	1972.10.2	후쿠오카지방법원에 '수첩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 제소	1974년 3월 30일 1심 승소, 피고측 고법에 상고 1975년 7월 17일 2심 승소, 피고측 최고재판소에 상고 1978년 3월 30일 최고재판소에서 승소
2	김순길	1992.7.31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에 강제동원되어 피폭된 부산의 김순길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강제노동·피폭의 손해배상 및 미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재판을	1997년 12월 2일 1심 패소, 김순길 측 항소 (1998년 2월 10일 김순길 사망으로 유족이 재판 승계)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제소	
3	한국원폭 피해자 미쓰비시 징용자동 지회 회원	1995.12.11	‘한국원폭피해자 미쓰비시징용자 동지회’ 회원 6명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강제노동·피폭의 손해배상 및 미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재판을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제소	1999년 3월 25일 1심 패소, 원고 46명 가운데 재판 중 사망한 6명을 제외한 40명이 항소 2005년 1월 19일 2심 승소,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402호 통달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일본정부로 하여금 1인당 120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강제연행에 대한 배상청구는 각하.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 재판 진행 중에 원고 46명중 23명 사망 2007년 11월 1일 최고재판소 승소, 1인당 120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일본정부에 명령
4	상동	1996.8.29	‘한국원폭피해자 미쓰비시징용자동지회’ 회원 40명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제소	2001년 6월 1일 1심 승소 2002년 12월 5일 2심 승소, 일본 정부 상고를 포기 ‘402호 통달’의 위법성 확정 이 재판으로 수첩을 교부받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한국에서도 ‘피폭자건강수당’을 지급하게 됨
5	곽귀훈	1998.10.1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인 곽귀훈씨가 일본에서 취득한 ‘건강수첩’이 한국 귀국에 의해 무효가 되고, 5년간의 수급권이 인정된 건강관리수당을 중단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오사카 부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소	2001년 12월 26일 1심 승소 2003년 2월 7일 2심 승소 2006년 6월 13일 최고재판소는 ‘재외피폭자에 대한 수당지급 주체는 국가가 아닌 도도부현, 히로시마 시, 나가사키 시’라고 판결
6	이강령	1999.5.31	나가사키 시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곽귀훈과 동일한 피폭자원호법 재판을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 제소	2003년 3월 20일 1심 승소
7	김재삼	2001.10.3	오사카시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중단된 특별수당의 지불과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	2005년 12월 20일 1심 승소 2007년 1월 22일 2심 패소 2008년 2월 18일 최고재판소 승소. 이 판결의 결과로 시효로 미지급된 건강관리수당을 소급해 받게
8	최계철	2004.5.18	시효로 미지급된 건강관리수당 지급과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시효재판’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제소 (같은 해 7월 25일 최계철씨 사망으로 유족이 재판 승계)	

				됨
9	최계철의 유족	2004.9.21	최계철씨 유족이 한국에서 신청한 장제비지급신청 각하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제소	2005년 3월 8일 1심 승소 2005년 9월 26일 2심 승소, 나가사키 시 상고 단념
10	정학련 박원경의 유족	2004.9.21	정학련, 박원경씨 유족이 한국에서 신청한 장제비 지급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소	2005년 9월 26일 승소
11	이상화·주창윤	2005.6.16	피폭확인증을 교부받은 미쓰비시 히로시마 정용공 피폭자 소송 원고인 이상화씨가 한국에서 신청한 피폭자건강수첩교부신청 각하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재판, 주창윤씨는 한국에서 신청한 건강관리수당신청 각하처분취소와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히로시마지방법판소에 제소(주창윤씨가 같은 해 7월 9일 사망하고 유족이 재판 승계)	2006년 9월 26일 1심 패소, 2007년 4월 2일 이상화씨 사망으로 유족이 재판 승계
12	강미자외 6명	2006.8.1	피폭확인증을 교부받은 한국원폭피해자 7명이 한국에서 신청한 수첩교부신청, 건강관리수당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취소 및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수첩재판’을 오사카지방법판소에 제소	2009년 6월 18일 승소
13	정남수	2007.2.21	피폭확인증을 받은 정남수가 한국에서 신청한 수첩교부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제소	2008년 11월 12일 1심 승소 이 재판 승소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에 직접 가지 않고, 한국에서 수첩 신청과 교부가 가능해짐.
14	한국원폭 피해자협회 회원 대부분	2009.12.18	원폭피폭을 인정받았으나 일본에서 떠났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1인당 110만 엔을 지급하기로 결정. 일본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한국인 피해자 1408명 가운데 오사카 지방법원에 가장 먼저 소송을 낸 130명이 우선 대상,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이 진행됐으며 현재도	일명 ‘402호 통달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가입된 이들 중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은 이들이 지부별로 집단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위자료를 받게 됨.

			진행 중	
15	장영준	2011.5.	2009년 1월 나가사키 시에 입시피폭자로서 수첩 교부를 신청했지만, 증인이 없는 것 등을 이유로 기각.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현에 심사 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증인은 없지만 본인의 기억만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2012년 9월 18일 승소. 장영준씨는 재판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 2012년 10월 2일 나가사키 시는 후생노동성의 지도에 입각 "죽은 사람에게 수첩을 교부하는 것은 제도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후쿠오카 고등법원에 항소
16	김승남 곽복남 곽풍자	2011. 12.28	김승남씨는 나가사키에서 생후 8개월 때 피폭 당했으나 증인이나 기억이 없어, 곽복남과 풍자 자매는 기타규슈에 살던 중 10일간 나가사키에 소개해 있다가 피폭해 증인이 없어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이 각하됨. 이에 나가사키에서 피폭 당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신청이 각하된 것은 부당하다며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각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냄	2013년 2월 현재 진행 중

표 4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원폭피해자 소송

[이 표의 내용 출처: 1번~13번(이치바 준코, 2003; 우즈미 아이코, 2010), 14번(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15~16번(『長崎新聞』)]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이 소송들을 통해 우선 2003년부터는 일본의 영역 바깥에서도 피폭자건강수첩 취득자, 즉 히바쿠샤로서 피폭자건강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의 표 5, 6, 7번이 해당 소송). 그러나 일본 후생성은 여전히 이 수첩의 신청과 교부는 일본의 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에서 신청한 수첩 교부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본에 갈 수 없는 고령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 수첩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는 2008년 11월 '정남수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이후 한국에서의 수첩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했다 (위의 표 11, 12, 13번이 해당 소송).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402호 통달' 조치의 위법성이 2007년 11월 1일 최종 확정됐다. 1995년과 1996년 '한국원폭피해자 미쓰비시징용자 동지회'에 소속된 회원 46명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강제노동·피폭의 손해배상 및 미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재판에서였다. 2005년 1심 패소에 항소한 이들에 대해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402호 통달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일본정부로 하여금 1인당 120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2007년 최고재판소는 이를 확정 판결했다 (위의 표 3, 4번이 해당 소송). 이 재판은 이후 '402호 통

달로 인해 피폭자건강관리 수당 등의 지급 등에 피해를 받은 모든 재외국민 히바쿠사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 판결로 이어졌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위의 표 14번이 해당 소송). 또한 일본 사법부는 '402호 통달'과 시효 문제 등을 이유로 과거에 미지급된 피폭자건강관리수당의 지급도 명령했다 (위의 표 8번이 해당 소송). 이로써 이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의 영역과 거주관계를 갖지 않고도 히바쿠사가 될 수 있게 되었고, 히바쿠사의 시정권적 경계는 허물어지게 되었다.¹⁴⁰⁾

2002년 광귀훈 소송의 승소 판결은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수첩의 의미도 크게 변화시켰다. 한국에서도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지한 히바쿠사들에게 수당의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수첩은 이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가입하기 위해 자신들이 진짜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상정한 히바쿠사라는 범주로 직접 편입되기 위한 '통행권' 혹은 '혜택'을 보장하는 '보험증' 혹은 '연금증서' 같은 것이 되었다. 이제 수첩은 회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히바쿠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되었다.

6. 소결: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초국경적 적용의 의의와 한계

2011년 8월 30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심판 청구(2008년 10월 29일)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¹⁴¹⁾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문에서 "한일 협정 제3조에서 양국 간에 분쟁이 있으면 중재위원회 등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국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에 따른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일 협정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해석 차이가 존재하므로 협정 절차에 따른 외교적 경로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국가가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귀환 동포들이 한국의 원폭피해자로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며, 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지 46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그들의 국가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140) 이 소송들의 결과는 한국원폭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지로 귀환한 옛 피식민국의 원폭피해자들, 그리고 일본 국적으로 전후 브라질, 미국으로 이민 간 원폭피해자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의 원폭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41) 「2008헌마648-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부작위 위헌확인」.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제출된 위안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의) 의무”를 언급한 것이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이렇게 그들의 고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깨닫는데 필요했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자신들을 구제할 방도를 찾았다.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결성한 이들은 한편으로는 한일양국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손상된 몸에 대해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되려고 시도했다. 밀항(密航)과 합법적인 도일(渡日) 등과 같은 실질적인 월경(越境) 행위를 통해서 치료와 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피폭자건강수첩 받기를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핵심인 히바쿠샤의 시정권(施政權)이라는 또 다른 경계를 해체한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운동 과정에서 이들이 원폭 투하의 책임은 미국에 그리고 전쟁 수행 주체라는 점에서는 일본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 피해자 보상 문제는 해결됐으며, 이제 모든 피해자 보상 문제는 ‘국내 문제’라는 양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그들의 주요한 활동의 대상으로는 일관되게 한국 정부가 우선시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된 과정은 이들의 구호와 관련해 사실상 한국 정부가 ‘부재(不在)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뒤늦은 판결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이는 ‘국가적 의무’의 방기에서 연유했다. 한국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여러 호소에 대해 무시에 가까운 대응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활동에도 끊임없는 제약과 감시를 행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 하에서 1960년대 후반 이후 줄곧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을 지배한 것은 ‘정치색’을 띠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개별적 차원에서는 ‘자기검열’로, 조직적 차원에서는 정보 당국의 직접적 감시로 이어졌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활동 또한 구호금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가장 안전한 방식의 교류 쪽으로 틀 지워져 나간다. 그러나 구호금이나 위로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에는 명암을 뚜렷하게 남겼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원폭피해자운동의 고립 및 정치사회적 보수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한국정부와 한국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활동에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시민사회였다. 물론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연대가 한국정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 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중심으로 보상청구운동과 특별법 제정운동이 한국 사회와 정부의 일관된 무관심 그리고 일본 정부의 회피와 임시방편 속에 표류했다면, 피폭자건강수첩 받기로 대별되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실천과 운동은 ‘손진두 소송’을 필두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소위 ‘수첩’ 재판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그 효과를 내면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일본의 원폭피해지구호정책의 장에서 국적 조항을 명기하지 않은 원폭3법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지함으로써 '히바쿠샤'의 경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이 '히바쿠샤'라는 범주의 경계 안에 편입되는 것 자체는 1990년대 후반까지 그 자체로 가장 중심이 되는 운동의 수단은 아니었지만, '23억불보상청구운동'의 결과에 대한 낙담, '40억 엔의 인도적 지원금'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운동의 동력 상실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수첩'의 교부와 그 효력의 문제가 이후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과 의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시민회>, <시민회의>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활동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고양되기 시작한 전후보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법적 소송을 통해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자국의 원폭피해지구호와 관련된 국내법인 원폭원호법의 내외차별을 문제 삼으며 이를 자이칸히바쿠샤 구호 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수첩 재판들의 승소를 통해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히바쿠샤'의 범주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의미하는 바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제의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다. 히로시마에서 한국원폭피해자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해온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 변호사 또한 "나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자이칸히바쿠샤를 원고로 한 소송에 임할 때, 미쓰비시재판에서는 식민지주의 문제를 주장·입증해 왔으나,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시키기 위한 논리 구성에서는 일본 히바쿠샤와의 차별시정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주장·입증해 왔다. 이 방침은 일본 재판소에서 승리 판결을 획득하기 위함이라는 관점에서는 꼭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원폭피해자의 심정을 배려한 것인가는 재고를 요한다고 느꼈다"(足立修一, 2012:46)고 한 말은 이 소송들이 갖는 의미와 한계들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원고가 된 일련의 수첩 재판들의 결과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언설이 내포하는 식민지배와 전쟁에 대한 '피해보상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일본 시민사회 운동 진영의 노력은 분명히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연대의 손길을 건넨 이들의 활동은 국가적 구도로는 과거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관계였지만, 피폭을 매개로 한 이들의 만남에는 언제나 '반상'과 '속죄', 그리고 '위로'의 심정들이 강하게 결합했다.

또한 오늘날 수첩을 받아 히바쿠샤가 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내외 차별' 없이—일본에서 모든 '일반의 전제민' 가운데 유일하게 '원폭'전제민만이 원호의 대상이 된 것과 동일한 논리로—직접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한국 사회의 다른 '일제피해자'들과는 어느 정도 다른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받는 피폭자건강수당을 어쨌든

‘일종의 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이 같은 독특한 지위는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일제’의 피해자보다는 ‘원폭’의 피해자로 규정하는데 방점이 찍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던 날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단체 차원에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한국 정부에 대해 강한 보상 요구 시위는 하지 않았다. 같은 날 동일한 판결을 받은 위안부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는데 동참하지는 요구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았다.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한국 정부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는 거론했지만 원폭피해자 문제는 적극 거론하지 않았다. 수첩을 받아 히바쿠샤의 경계 안으로 진입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이제 말 그대로 ‘자이칸히바쿠샤(在韓被爆者), 즉 일본 히바쿠샤가 되어 버렸다. 이들에게 수첩은 이제 휴지조각도 아니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가입하기 위해 자신들이 진짜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격증도 아닌,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상정한 히바쿠샤라는 범주로 직접 편입되기 위한 ‘통행권’ 혹은 ‘보험증’, 그리고 ‘연금증서’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수첩은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히바쿠샤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증명서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히바쿠샤가 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피폭자 건강수첩의 교부라는 특정한 관료제적 통과의례(bureaucratic rite of passing)(Kravel- Tovi, 2012)를 거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일본피폭자건강수첩 교부 과정을 통해 일본의 히바쿠샤의 경계 통제가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되며, 왜 이러한 관료제적 통제가 특정한 부류의 원폭피해자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V. 한국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범주로의 편입 과정

1. 회원에서 히바쿠샤로의 지위 변화

1) 회원과 히바쿠샤의 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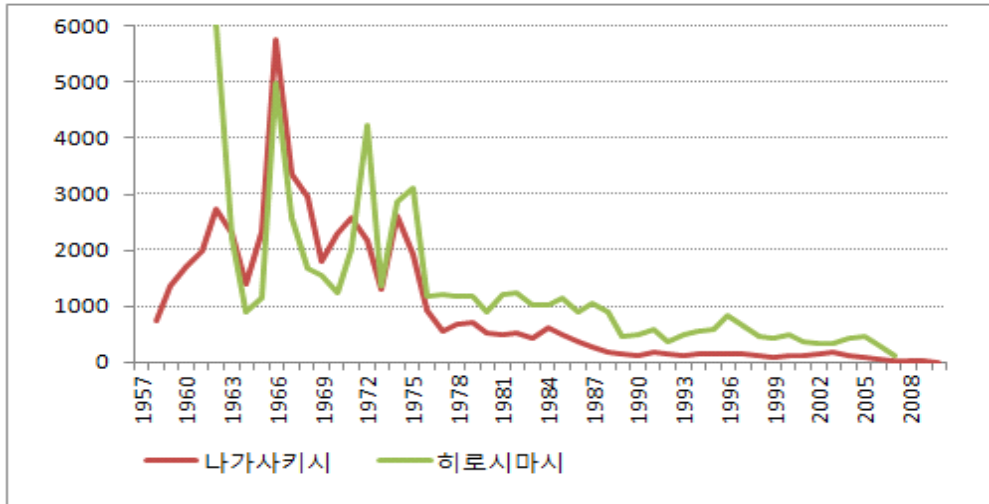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비키니 피재로 방사능 피폭의 위협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고양되고, 그것이 1958년 원폭의료법의 제정으로 이어져 히바쿠샤 구호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연구자는 여기에서 원폭의료법 제정 이후 일본의 원폭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구호와 보상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인식¹⁴²⁾ 이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아 히바쿠샤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을 비교 사례로 삼아 한국 사회에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와 보상 문제가 어떤 독특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원폭의료법이 시행된 첫째 나가사키에서는 1957년 66,782명이, 히로시마 시에서는 1961년까지 87,752명이 수첩을 교부 받았다. 아래 그림 2는 이후 히로시마 시와 나가사키 시에서 신규로 수첩을 교부 받은 이들의 숫자를 표기한 것이다.¹⁴³⁾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첩을 교부 받는 수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중간 중간 급격하게 수첩 교부수가 증가하는 구간들이 있다. 그런데 그 증가폭은 대체로 원폭의료법 시행에 따른 각종 행정 규칙과 규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 2의 그래프 중에 대표적으로 증가폭이 큰 네 개의 구간이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구간인 1962-63년은 1960년 도입된 특별피폭자제도(3장 3-2절 참조)에서 특별피폭자 인정 자격이 직접피폭자에서 입시피폭자까지 확대되고, 공간적 측면에서는 폭심지 2km에서 3km로 완화되며, 또한 소득에 따른 수당 제한도 폐지된 때였다 (廣島市衛生局原爆被害對策部編, 1996:109;

142) 어떠한 정부의 구호나 보상에 대해 개인이 그에 응하지 않는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 예를 들어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와 같은 개인적 동기 혹은 그러한 보상이 없어도 지장이 없는 등의 경제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원폭피해자라고 해서 모두가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본 절에서 주목하는 것은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제약하거나 혹은 추동하는 제도적/사회적 수준의 이유를 검토하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원폭피해자들에게 갖는 의미이다. 또한 일본의 원폭피해자들이 1970년대를 정점으로 피폭자건강수첩을 적극적으로 교부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시 이들이 자신이 '히바쿠샤'임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에 개의치 않았거나 사회적 낙인이 없었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수첩을 교부받는다라는 사실은 대개 본인과 일부 가족들에 한정해 알고 있고, 외부로는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143) 히로시마 시와 나가사키 시는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할 수 있는 여러 지방정부 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 숫자가 일본의 전체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수는 아니며, 사례 비교를 위해 가장 주요한 곳으로서 두 도시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被爆者援護法令研究會, 2003).



<그림 2> 히로시마 시와 나가사키 시의 피폭자건강수첩교부 현황

* 나가사키 시는 1957년 66,782명, 히로시마 시는 1961년까지 87,752명이 가입. 차트에서는 신규 가입자만 표시. (데이터 출처: 広島市健康福祉局原爆被害対策部, 2008, 『原爆被爆者対策事業概要』. p.63; 長崎市原爆被爆対策部, 2011, 『原爆被爆者対策事業概要』. p.17. 연구자 작성)

두 번째로 증가폭이 큰 구간인 1966-68년은 1963년 동경원폭소송의 재판 결과(2장 3-2절 참조) 국가 보상에 의한 피폭자원호법 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원폭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그 성과가 이어진 때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동경원폭소송 재판 결과가 나온 이듬해인 1964년 소련의 핵실험에 대한 입장 차로 분열된 구사회당과 공산당 계열의 피폭자단체가 각자 조직을 추스르고 1966년 다시 운동을 재개하고 활발하게 회원을 모으던 때라는 점이다 (根本, 2006:97). Yoneyama(1999:92-96)가 일본의 반핵 운동의 흐름 속에서 원폭생존자들이 히바쿠샤라는 하나의 단일하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열망을 가진 정치 주체로 내세워지고, 그것이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아 히바쿠샤로 인증되는 제도적 절차와 결합했다고 진단한 시기이기도 하다.

세 번째 구간인 1971-72년 시기는 원폭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 각각 60세와 55세로 완화되고, 피폭 지역 또한 확대되던 때이다. 히로시마 시에서는 시외의 행정단위들이 속속 추가됐고(3장 3-2절 참조), 나가사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확대됐다. 앞의 구간들에 비해 증가폭은 적어졌지만, 히바쿠샤들에 대한 수당 지급 연령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고, 특별피폭자제도가 없어진 1974년 10월에도 수첩 교부자가 크게 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첩 교부 증가폭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나가사키는 2005년 이후 100명 이하로, 히로시마시도 100명 정도의 선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신규가입

자는 2003년 402호 통달이 폐지된 이후 재외피폭자들의 신규가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의 신규 수첩 교부 수는 거의 의미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일본의 원폭피해자들의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는 한편으로는 제도적 지원 수준과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제약이 완화되는 것에 따라 실제로 지원 대상이 되는 이들이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강력한 정치적 주체로 부각된 히바쿠샤 단체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추동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의 원폭피해자들이 수첩을 교부받아 히바쿠샤로서 제도적 지원을 받은 수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정점을 이뤘다.

그에 반하여, 원폭 이후 심각한 외상을 입은 이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병을 문둥병이나 귀신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외상이 없이 그저 몸이 약하다고만 생각했던 많은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에게 같은 시기는 자신들의 신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치료하거나 구호할 어떤 방도가 있는지, 어떤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지, 그와 관련해 어떤 개인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알 수조차 없는 시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국 사회는 원폭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있어도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료적 진단을 할 사람도, 지식도, 그리고 제도적 지원도 없는 곳이었다. 이런 시기에 한국의 개별 원폭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구호를 위해 어떤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 원폭피해자라는 자각을 하면서 시작되고, 그런 자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라는 조직과 연결되면서부터다. 원폭3법의 제정에 따라 일찍부터 자국 정부가 원폭피해자 구호와 보상에 대한 주체로 나서고, 그 대상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수첩을 교부받아 히바쿠샤가 되었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라는 자조적(自助的) 결사체가 자신들의 권리 성취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투쟁의 주체임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유일한 원폭피해자 구호단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1967년 설립된 이후 한국에서는 원폭피해자들의 자조(自助) 조직으로서 원폭피해자의 구호 등과 관련된 정보와 지원이 모이는 거의 유일한 거점이었다. 일본에서 거출된 40억 엔의 피폭자복지기금이 운영되기 전에는 아주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원폭피해자에 대한 구호와 지원 물품이 도착하는 곳이었고, 그것의 배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조직이었으며, 민간 의료 기관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치료 지원이라도 받으려면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했다.¹⁴⁴⁾ 1990년대 일본정부에서 거출된 40억 엔의 집행은 대한적십자사에게 맡겨졌지만, 이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의료비는 협회 회원으로서 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라야 했다. 이것은 비록 보상과 구호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2003년까지 한국의 개별 원폭피해자들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그 대상이 될 수 있었

144)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록에는 설립된 이후 서울시가 회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밀가루 등의 물품을 지원했다거나 일본에서 도착한 구호금 내역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참조.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혹은 그 하부 조직으로서 지역별 지부¹⁴⁵⁾는 그 같은 경제적/의료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피폭자가 뭔지도 모르는 한국”에서 협회는 이들에게 필요한 일본의 사정을 듣고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그것의 현실적 실행의 형태가 “결국 그게 뭐하자는 소리인지”를 알려주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정에 밝지 않은 보통의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협회, 그리고 이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부는 자신들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쟁점이나 제도적 지원 등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많은 경우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히바쿠샤의 경계 넘기는 이 협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물론 4장 2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일본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나 친인척 연줄망에 기반해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이들이 있었지만, 그 또한 오랫동안 협회나 지부와 별개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히바쿠샤의 경계 넘기의 시기와 방식은 이들의 협회 가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2) 디딤돌과 문턱으로서의 협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설립 당시 원폭피해자에 대한 원호와 구호를 표방하고 있었고, 4장 1-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설립 초창기에는 원폭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대표와 사무장을 맡는 등 그 회원 구성에 있어서도 원폭피해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70년 처음으로 원폭피해자 당사자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단체는 상호구호 및 투쟁단체로서 재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는 기존의 명칭에서 ‘원호’를 빼고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 개칭하게 된다.

1970년대 협회가 원폭피해자 자조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는 했지만, 회원 가입에 있어 특별한 심사 절차를 행하지는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쉽던 시절”이었다. 라디오나 방송에서 우연찮게 원폭협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 보건소 등을 통해 신고 접수를 받을 때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협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십 원짜리 한 장 나오는 것 없는” 때에 돈까지 내가며¹⁴⁶⁾ 가입하려는 사람이

145)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지부 사무소는 설립 당시에는 서울(기호, 호남 포함), 대구(경북), 부산(경남), 합천에 소재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 평택의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공장 등에 동원된 징용자들을 중심으로 기호지부가 결성되고, 1989년 부산에서 경남지부가 분리되었으며, 호남지부도 신설됐다. 2000년대 후반까지 서울(강원, 충청 포함), 기호, 호남(제주포함), 대구, 부산, 경남, 합천 지부가 있었으나 2013년 현재에는 기호와 호남지부가 서울지부와 통합돼 ‘중앙지부’가 되었다. 과거 지부는 회원들의 의료비 지원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받고 분류해 ‘협회’로 보내는 일 등을 했으나 이런 관료제적 절차는 대부분 ‘협회’ 사무실과 대한적십자사로 이관되었고, 지금은 회원들 간의 친목 및 정보 유통을 위한 회합 등을 주선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다.

146) 초창기에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 회비가 5000원 정도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식

많지는 않았다.

협회가 설립된 초창기 “알음알음”으로 사람을 모으던 시절 협회 회원은 “누구네 친척, 누구네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이진선 씨는 원폭협회 설립 당시 회원이다.¹⁴⁷⁾ 협회 창립 인사가 합천이 고향인 그녀의 친척이었다. “아버지 사촌 간들, 종조할아버지네, 올케네 친정 가족” 할 것 없이 “집안사람들 모두 히로시마에 갔다 온 이들”이었다. 이런 사정은 협회가 설립된 이후 10여 년 간 줄곧 비슷한 사정이었다.

(그럼 어르신 원폭 협회는 언제 가입하셨어요?) 내가 합천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갔거든요. 78년도 그때 가입했는데, 그 전에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대구 내당동 살면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우리 엄마 택호를 부르면서 “독배기실네 신동댁 딸이 누구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내다보니까 나를 찾아. 그리고 보니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 일가(一家)라. 강대술 씨¹⁴⁸⁾가 찾아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일본 사람 세 사람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때 가입했어요. 합천 지부 지부장하던 안영천 씨가 우리 집안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대구로 갔으니까 소식을 잘 몰랐던 거지요. 우리가 전쟁 후에 대구로 나갔으니까요...(중략)... (강대술 씨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외가쪽 일가예요. 우리 엄마가 강 씨잖아요. (히로시마) 고이(己斐)에는 안 씨, 강 씨가 많았거든요. 그 일가들이 많았어요. 전 씨들도 좀 많았고요. 그 사람들도 (합천군) 쌍책 사람인데, 서로 서로 결혼하고 하니까 일가고 그랬지요. 다들 노동일 하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삼촌이 조금 일찍 일본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이라 그 관계로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 삼촌은 시체도 못 찾고 그 가족도 다 죽어버렸어요. 원래는 예바(江波)에 살다가 고이로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삼촌이 공사를 떼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가친척이에요. 그 날도 사오십 명 데리고 시내에 일 나갔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사실 그때는 전쟁이 심하니까 시골로 피난하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히로시마는 공습이 직접적으로 없기도 했고 시골로 가면 일을 못하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근처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히로시마는 안전하다고 봤어요. 비행기는 지나다녀도 폭격은 없으니까. 또 고이는 시내 중심도 아니고, 오히려 판 데 사는 사람도 불러들였는데 뭐. 우리 아버지가 그 해 나고야(名古屋) 있던 사람들도 불러오고 그랬어요. (한일순, 여, 1930년생)

한일순 씨가 협회 대구 지부의 지부장이던 친척으로부터 회원가입을 권유받은 시기는

적인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비추어 정기적으로는 아니어도 모임을 할 때 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47) 그녀의 어머니가 일본에서 토목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을 찾아 히로시마로 건너간 것은 1920년대 중반이었다. 1927년 오빠 정규가 일본에서 태어난 뒤 그 아래 형제는 모두 일본에서 태어났다. 소학교고등과 2학년 때 군수공장인 동양공업에 학도 동원되어 군용기 부속품 만드는 일을 하다가 열여섯 살이 되던 해 ‘원폭을 맞았다.’

148) 강대술 씨는 1917년생으로 합천군 쌍책면에서 태어났다. 한일순 씨가 회원 가입하던 1970년대 이후 줄곧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지부 사무를 보아 왔다. 그의 아버지는 합천군 쌍책면 출신들이 히로시마로 이주하는데 중요한 매개자였다.

1970년대 후반이었다. 손진두 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전후로 한일양국정부 사이에서 한국원폭피해자와 관련된 문제가 잠시나마 사회적 이슈가 된 때여서, 한국원폭피해자가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소식도 언론에 오르내렸다. 한일 양국 정부에 원폭피해자문제 해결을 촉구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맞은 협회로서는 “회원 수가 많아야 대정부 압박”에 힘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으던 시절이었고, ‘도일치료’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됐던 때이기도 하다. 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가입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회원들은 대체로 혈연과 지역을 연고로 한 연줄망에 기대어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혈연과 지역을 연고로 한 연줄망이라는 것은 회원 가입 당시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로 이주하던 시기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1980년대 일시적으로 운영된 도일치료 제도가 정부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협회는 도일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인솔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한국 정부는 이 시기에 도일치료에 필요한 도항비를 제공했지만 도일치료자 선발은 전적으로 협회에 일임되었다.¹⁴⁹⁾

이렇게 협회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약간의 의료적 지원이 생겨나면서 이전까지 거의 임의가입형 단체였던 협회는 느슨한 가입제한형 단체로 변화한다. 협회의 회원 가입 요건이 이전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나 두 명의 증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협회가 보관중인 회원카드 기록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보관하고 있는 회원카드에는 1983년도부터 작성된 것인데, 1980년 도일치료를 계기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 체계적인 회원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도입된 것이다. 카드에 적어야 할 내용들은 일본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것들과 거의 유사한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피폭관련사항(피폭 당시 상황, 피폭당시 같이 있던 사람, 피폭 직후 상황, 피폭 후 상황)과 피폭 후 후유증(재일 당시 후유증, 귀국 후 병력, 피폭 후 출산력, 현재 건강상태 및 요망사항), 두 명의 보증인 서명과 필요시 보증서(호적, 주민등록 등본, 일본에서 발행한 피폭자건강수첩 등). 그 외 기본적인 인적사항 이외에 눈에 띄는 것은 도일과 관련된 사항(도일시기, 도일사유, 귀국시기, 재일당시 거주지 주소 및 상황, 재일시 가족현황)을 적는 란이다. 당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카드에 관련된 내용을 적고 두 명의 보증인 서명과 증명서를 첨부해 협회 임원의 간단한 심사를

149) 1980년 도일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월 29일 협회는 일본 측의 관계자들과 재한피폭자 도일치료에 관한 합의를 교환한다. 도일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원에 한정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선정해서 보내는 책임이 협회에 주어졌고, 10월 27일 도일 치료를 위한 도항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불되어, 협회는 이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실무도 담당했다.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이긴 하지만 국고보조로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치료를 지원받기도 했다. 치료를 받는 것 또한 회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다.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회원 가입의 역사에서는 '구가 입자들이 들어오던 때로 이야기된다. 앞서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언론보도를 통해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 보다는 친인척들과의 연줄망 속에서 원폭피해자 구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알음알음 찾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런 협회 회원 가입의 양상은 1987년 협회 주도로 이루어진 23억불 보상청구운동을 계기로 크게 변화했다. 협회는 각 지부에 회원 가입을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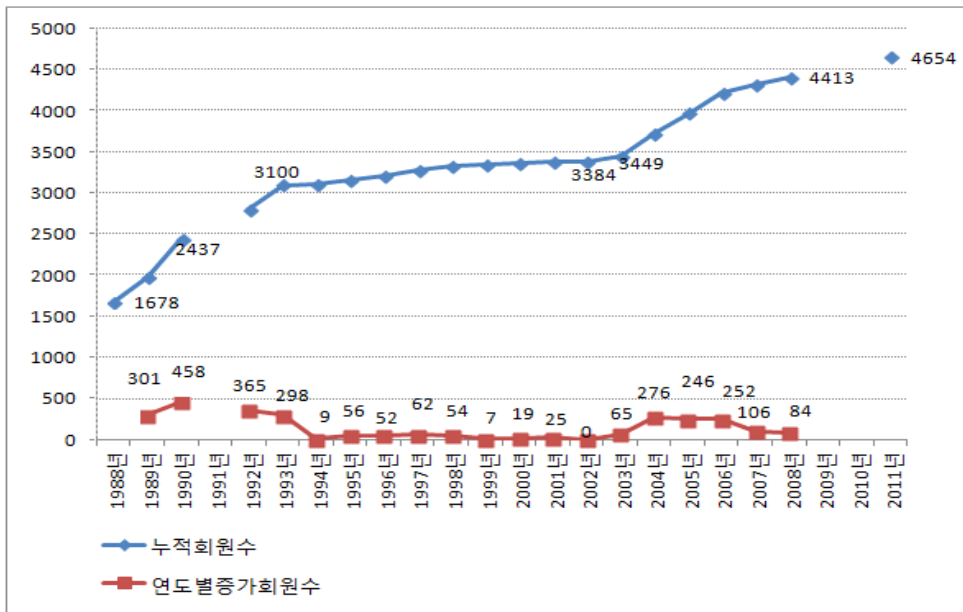
(합천을 제외하고) 경남 사람들이 원래는 부산에 등록을 했다가 (89년) 이때 처음 경남 지부를 만든 거예요. 우리 지부 설립할 때는 <시민회> 회장 마츠이 요시코 씨하고 가와이 아키고, 그리고 선린교¹⁵⁰⁾에서도 도와주고요. 그때 우리가 부산에 같이 있다가 나뉘어서 나올 때 100명 정도 명부를 쳤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만 둘 때는 300명 정도 됐고, 돌아가신 분이 1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세우고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울산으로 밀양으로 진주로 하동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모았어요. 고성에도 사람이 많아서 거기도 가고 거제도 통영으로 돌아다니면서 광고도 많이 하고, 우리 지부 하는 일도 알려주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중략)...그 당시는 심사해서 협회 회원으로 등록을 해주던 때거든요. 합천 사람들은 예전부터 했었으니까 자동으로 된 게 많았는데, 우리는 신규로 다 하나씩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해줬어요. (김일선, 여, 1932년생)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협회의 23억불보상청구운동이 한창이던 1988년 11월 신설된 경남지부의 초대 지부장을 지낸 김일선 씨는 일본 <시민회>와 일본신흥종교법인 <선린회>의 도움을 받아 경남 곳곳의 회원들을 찾아다녔다. 퇴직 전 공직에 있었던 남편은 협회 가입에 필요한 회원들의 서류 작업을 도왔다. 이 시기는 경남지부 뿐만 아니라 호남지부도 신설된 때로, 일본의 시민단체들에서도 원폭피해자 구호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해 회원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힘쓰던 시기다. 회원들을 찾아다니던 시기이기는 했지만, 그것 또한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네 아는 사람이 히로시마에 있었다”거나 “친척 중에 히로시마에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이 징용 간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 등과 같이 실제 찾아가는데 실마리는 여전히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꼬리물기 식으로 찾아다니는 경우가 상당수를 이뤘다.

이처럼 협회의 회원가입 독려 활동과 노태우 정부 수립 이후 선거 공약이었던 보상 교섭이 가시화되어 그에 대한 언론 보도가 크게 늘어난 1990년 전후는 협회의 역사상 가장

150) 일본의 신흥종교 법인체인 선린회(善隣會)는 1920년 교조인 리기히사(力久辰濟) 씨가 식민지 시절 서울의 삼각산에서 입산 수도 끝에 득도했다는 인연이 있어 이곳을 성지로 지정해 매년 교도들과 성지 순례를 한다. 1974년 손진두 소송으로 한국원폭피해자문제가 한일 사회에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종교 가적 양심과 선린회의 교지에 입각해 한일간의 정책적인 해결에 앞서 우선 민간차원에서 속죄하고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1974년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매년 협회에 지원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8월 6일에 개최되는 한국원폭희생자위령제도 후원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단체에 가입한 시기였다. 이러한 추세 또한 역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보관되어 있는 회원카드에 나타나있다. 아래 <그림 3>에서 1983년 처음 시작해 회원이 가입할 때마다 순서대로 부여한 회원 번호는 그 숫자 자체가 회원가입 수를 나타낸다.



<그림 3>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가입현황 (2008년 8월 현재)

* 누적회원수와 연도별 가입 회원 수는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하는 원폭피해자등록 번호 기준.

** 누적 회원 수는 사망자 포함. 사망자를 제외한 2011년 8월 현재 협회 등록 회원 수는 2650여명.

*** 1992년, 2008~2011년 사이의 연도별 가입자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2011년 8월 현재까지 총 4654명이(누적) 가입

23억불 보상청구 운동이 시작된 1987년부터 협회는 회원 가입을 독려하기 시작하면서 회원들이 점차 늘어 1983년부터 이듬해인 1988년까지 그 수는 1678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협회 창립 당시부터 가입한 이들이 협회 회원 관리 제도의 변화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이 숫자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8년까지 협회에 가입한 이들 중 1983년 이전 사망한 이들을 제외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1989년부터 급격하게 변화한다.

나는 서울 있다가 (합천 원폭피해자복지관으로) 왔는데,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고성이 고향이야. 우리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신랑 따라 온다고 온 게 합천으로 온 거야. 근데 오고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데리고 사느라고 여기 저기 돌아다녔거든. 그때는 원폭이고 뭐고 몰랐어. 얼핏 듣기에는 합천에 보건소가 있어서 약도 준다 어쩌다 소리를 들

었는데 별로 듣고 살다가 대구에 십 년 있다가 서울로 갔거든.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그 사람이 일본 가서 돈을 얼마를 받아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등에 뛰어 갔어요. 뉴스에 보니까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내가 "원폭피해자인데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하는 거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내가 구청으로 뛰어갔는데, 거기도 모른데. 지금도 사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 그때 서울 협회가 삼선교 근처에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전화국에 있는 막내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지. 노태우 대통령이 원폭피해자 보상을 받아 왔다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좀 알아봐라 했더니 전화번호를 찾아서 알려주더라고. 사무실을 찾아가니까 "아주머니,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 사람이나 신청을 하이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하고 왔어요. (백두이, 1928년생, 여)

4장 4.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 결과는 23억불보상청구운동에 힘을 썼던 협회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실망스러운 결과였지만, 위에 인용한 명지운씨의 증언처럼 오랫동안 원폭피해자 구호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에서 원폭피해자 보상금을 받아왔다"고 회자되고, 신규로 협회에 가입하려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으로부터 40억 엔 중 1차 분이 송금된 1991년 사이에 협회 회원가입 수는 크게 늘어났고 이러한 추세는 1993년까지 지속됐다. 그렇게 5년간 협회에 신규 가입한 회원은 그 이전 동안 가입한 수를 훨씬 상회하며, 사실상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설립 이래 단기간에 가장 많은 수의 회원들이 신규로 가입한 시기이기도 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히바쿠샤의 수가 정점에 달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 2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일본으로부터 교부된 40억 엔의 인도적 지원금 즉 피폭자복지기금의 운영은 협회의 회원가입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이 기금의 운영에 따라 협회 회원에게 약간의 의료적·경제적 혜택¹⁵¹⁾이 주어지게 되면서,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협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피폭자인정심사제를 통해 기존보다는 좀 더 공식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승인하게 된다.¹⁵²⁾ 일본에서 소양 교육을 받은 임원들이 심사위원이 되었고, 심사는 한 해에 한두 번 일주일씩 지부별로 한꺼번에 이뤄졌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구호나 원호가 제도화된 일본에서 후생노동성과 지방정부가 히바쿠샤의 경계를 통제하는 주체였다면, 한국에서는 일시적이거나 1990년대 초만까지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그 역할을 맡은 것이다. 협회가 엄격한 가입제한형 단체로 변화하면

151) 40억 엔의 기금 운용을 통해 원폭협회 회원에게는 1) 무료치료(보험진료에 의한 의료비의 자기부담 분 지급), 2) 연1회 건강진단, 3) 1인당 매월 10만원(2013년 3월 현재, 실시 당초에는 5만원) 진료보조비 지급, 4)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건립(1996년 10월 완공)해 입소를 원하는 회원에게 제공.

152)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행하는 심사를 통과하면 복지증진대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협회에 등록하고 대한적십자가가 발행하는 '피폭자검진증'을 수령한 뒤 이 기금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 원폭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유사 관료조직으로 자리잡아 나가게 된다. 협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에서 회원가입 여부가 결정되면서 그에 대한 불만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 같이 원폭을 당한 사람들”인데, 누구는 심사를 하고, 누구는 심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폭 때 얘기였던 사람이 뭘 알고 심사를 하느냐”는 불만은 예사였고, “돈을 받고 회원을 가입시켜준다”는 말까지 나왔다. 특히 1994년 협회 심사에서 탈락된 한 회원이 그 부당성을 대한적십자를 비롯해, 언론, 일본 변호단 등에 호소하면서 이러한 심사제에 대한 불만이 외부에서 크게 문제가 되자 협회의 자체 회원자격 심사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른다.¹⁵³⁾

협회에서 ‘신규’가 들어오는 것을 꺼려 심사를 어렵게 했다는 말이 생겨나고, ‘진짜’와 ‘가짜’에 대한 말들이 많아진 것이 이 즈음이다. 협회 가입에 필요한 기존의 서류들을 다 작성하고도 계속 ‘빠꾸’ 당했던 이들에게서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이 빨리 떨어지니까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말이 생겨났다.¹⁵⁴⁾ 그러나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던 시절로 기억되는 이때는 역으로 구가입자들에게는 “돈을 주니까 아닌 사람도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고 이야기되는 시절이기도 했다.

(협회 가입은 83년에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게 83년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회원) 카드 만든 때고, 그 전부터 이미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임복순¹⁵⁵⁾씨가 우리를 초기부터 가입시킨 거예요. 그 무렵에 친척들도 다 했지요. 사무실 쫓아다니던 데도 몇 군데인지도 몰라요. 필동도 갔고요. 세운상가 맞은편에 거기 다락도 갔었고, 동선동, 삼선교 있는데 다 다녀봤어요. 하여간 결혼하기 전부터 가입한 거예요. 60년대 말이죠. 그게 초기 협회 만들 때잖아요. 설립할 때 한 거죠. (초창기 멤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머니 계실 때는 안 나오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나오기 시작하니 남자 하나가 저를 보고 “저 여자는 왜 나왔어? 돈 준다고 하니까 아무나다 온다”고 그런 말 하니까, 그때 박OO 그분이 사무국장 하던 때인데, 그분께서 ‘그러지 마라, 저 아주머니가 그래도 여기 손가락 꼽히는 순서로 가입한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랬었어요... (중략)....그때는 이미 임복순 그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하니까, 여기를 나와야 정보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고임이, 여, 1937년생)

153) “1994년에 합천에 계신 숙부님과 남동생, 본인이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대구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당시 어느 심사위원회에서는 참 세밀하게 잘 작성했다고 하시고, 또 어느 심사위원은 이런 사유를 가지고 왜 이제 신청하느냐고까지 했습니다. 동생이 다니던 학교장님의 증명서까지 증명할 만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사진까지 첨부했는데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들으니 저희 숙부님과 보증인의 나이차가 15세 이상 난다는 것이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15세 이상 차이가 나는 아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너무 억울해서 국제변호사 다카사 사무소에 호소했고, 적십자에도 호소했습니다. 동아일보 무료 변호단에도 보냈습니다.”(하위년 씨의 원폭피해자협회 회원 카드에 작성된 내용)

154) 정근식(2005)의 박국현 증언 편에도 협회 가입 문제와 관련된 부분(p.363)을 참조할 수 있다.

15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초창기 회원으로 협회 설립 직후인 1968년 12월 부산지부 지부장이던 엄분연 씨와 함께 도일 뒤 ‘수첩’ 교부를 신청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한데, 최OO씨와는 친척이었다.

연구자가 한 회원과의 인터뷰 중에 회원카드에 회원 가입 날짜가 1983년으로 되어 있어 확인 차 이야기를 시작하자 협회 창립 당시 가입한 것을 강조하고, 90년대 초반 어머니 대신 협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준 위의 사례는 협회 회원들 사이에서 가입 시기가 ‘진짜’임을 드러내는 한 표식이기도 한 것을 보여준다. ‘신규’와 ‘구가입자’ 사이에서 생겨난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 “나는 오리지날”이라거나 “진짜”라는 이야기가 흔히 오가게 된 상황과도 연관된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 자체가 행정관료제적으로는 ‘진짜 피폭자’를 가리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 절차의 핵심이 누군가가 실제 원폭의 경험을 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 한동안 협회라는 조직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 진실성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얽혀버렸다. 가령 구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예전에 아무것도 혜택이 없을 때 협회에 가입한 사람이 진짜라는 이야기가 돌지만, 이는 반대로 신규들 사이에서는 “예전에 알음알음으로 한 사람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와 맞물리고, “일본에서 수첩을 받은 사람이 진짜”라고 이야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는 “수첩은 증인만 잘 세워서 받으면 된다”라거나 “요즘엔 심사가 건성건성이라 아무나 된다”는 이야기와 짝으로 돌아다니며, 수첩 또한 진짜를 보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규나 구가입자, 혹은 누가 진짜인가에 대한 논란이나 오해는 그 논쟁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논쟁 자체가 생겨나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진짜와 가짜 논란은 한편으로는 원폭피해자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지원과 관련된 제도 속에서 진짜로 판별 받는 행정관료제적 통제 과정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생겨난다.¹⁵⁶⁾ 그리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완전한 책임 인정과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한정적인 인도적 지원금을 나누는 것처럼 틀 지워진 상황에서 생겨난 불만이 일본정부나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진 것이 아니라 가짜나 신규 혹은 구가입자의 탓으로 투사된 결과이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회원의 신규 가입을 둘러싼 잡음으로 인해 협회 자체 내의 심사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새로운 회원자격이 일본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되면서 오히려 협회 가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소액의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 몇 백 만원의 돈과 일본까지 가는 수고를 들여 수첩을 받아 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수첩 낼 때는 돈이 조금 드셨어요?) 그렇지. 수첩 낼 때에는 보증인 서주는 사람

156)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함으로써 ‘진짜 피폭자’를 인정해주는 행정관료제적 절차는 그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증명을 요구한다.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 ‘진짜’의 문제는 단순히 구가입자, 신규의 구분뿐만 아니라 이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여러 기제들, 호적, 사진, 신체, 명부, 각종 증명서, 기억, 정체성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커피값, 밥값, 차비, 또 일본 가게 되면 (인솔하는 사람) 수고비나 차비를 내줘야 하잖아요. 그때는 사람들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 커피값이 7천원이야. 그것도 내가 내야지. 밥 먹으면 밥값 내야 하고, 또 수고비도 줘야 하고, 안 그러면 안 데리고 가려고 하던데요. 나야 그 사람을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니까 더 그러더라고요. 나는 게다가 보증인도 한 사람밖에 안 세우니까 안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못 했잖아요. 엄마가 가난하니까 나를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럼 어르신은 글을 모르세요?) 글 몰라요. 일본글도 모르고, 한국 글은 대충 보면 “아, 그런가” 하지 확실히는 잘 몰라요. 내 이름자랑 숫자나 제우[겨우] 알고. (그럼 수첩 신청하고 할 때도 서류도 다른 사람이 다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써주고 그랬지요. (명지윤, 여, 1928년생 1992년 수첩을 취득한 뒤 협회 가입)

일본에서 수첩을 받아오는 것이 협회의 회원가입 자격 심사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회원가입 자격의 변화는 사실상 신규 가입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위의 그림 3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402호 통달이 폐지되기까지 신규 가입자는 한 해 50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에 따라 사실상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협회 회원 수는 제 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2002년 광귀훈 소송의 승소 판결로 한국에서도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지한 히바쿠사들에게 수당의 지급이 가능해지고, 수첩 교부에 드는 비용 또한 일본 정부에서 지급하게 되면서 회원 가입률은 다시 크게 상승한다. 그 이전까지 매달 약 10만 원 정도의 의료비와 약간의 건강보험상의 비용 차감에 그치던 지원이 광귀훈 소송의 승소 이후 일본에서 제공하는 12만 엔의 의료비와 30-40만 원 정도의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수첩을 받기 위해 도일하는 경우 도항비와 가이드 비용 등을 일본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변화하면서 신규 가입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피폭자건강수첩을 받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원폭피해자면 누구나 수첩을 받아 건강관리수당 등을 일본에서 직접 지급 받게 된 것은 “신규가 많이 들어올수록 더 빨리 기금이 바닥난다”는 경계심 속에서 신규 가입을 꺼리거나 원폭피해자구호 사업의 외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던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봄 일간지를 통해 특수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원폭피해자 구호 사업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싣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지부나 회원들 사이에서도 신규를 모으는 일은 더 이상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일본의 영역 내에 거주관계를 갖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피폭자건강수첩의 효력이 인정된 이후 지금까지 협회에는 초반 4년 동안에는 250여명이, 그리고 이후로도 매년 100여명 정도의 신규 회원이 가입했다. 사실상 1994년 협회의 회원 가입요건이 ‘일본수첩소지자’로 변화하면서 신규로 가입하지 못하고 지연된 것이 2003년 일본에서의 수당 지급이 확정되면서 다시 증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원폭피해자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는 이들은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하

던 2011년 여름까지도 간간히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찾아오고 있었다.

3) 경계 진입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비용

앞서 협회 회원가입의 역사에서 협회의 대내외적 활동에 따른 회원가입의 증감을 설명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회원 가입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비용 측면에 서 설명될 점 또한 있다. 2005년 4월 처음으로 수첩을 받고 히바쿠샤가 된 김치우씨의 사례 를 실마리로 논의를 시작해보자.

김치우 씨는 해방 전 나가사키시의 우라카미(浦上)지구 상단 골짜기에 위치한 이에노(家野町)에 살았다. 1938년 어머니보다 네 살이 어렸다는 사촌형이 나가사키 시에 소재한 토목 공사장의 현장책임자로 있다가 고향인 경북 청도의 친척들을 부른 것이 독일의 계기가 되 었다. 아버지는 약 40명 정도의 인부를 인솔하는 가츠이구미(勝井組) 합바가시라(飯場頭, 공 사현장 중간책임자)였고, 큰아버지 또한 김치우 씨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따 로 임시가옥을 지어 놓고 합바를 하며 토목공사일을 했다. 가족을 포함해 모두 26명의 친척, 그리고 100여명의 인부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그런 한국인들이 아주 많았다고 기억했다. 당 시 아버지를 비롯한 인부들이 한 작업은 주로 군수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짓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 우라카미 지구에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병기 부품소개지(疏開地) 창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합바를 운영한 아버지는 숙식 제공뿐만 아니라 작업장 공사 책임 과 월급을 정산해 나누어주는 일을 같이 했다. 어머니는 합바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했 다. 김치우 씨의 부모가 운영하던 합바에서는 미곡배급등록자로 파악된 인원수에 대해 배급 으로 식량을 받았으나, 그의 어머니는 남은 것들을 다른 이들과 ‘야미’로 바꾸어 식량을 조 달했다. 귀국해서도 여러 가지로 늘 수완이 좋았던 어머니의 살림 솜씨 덕택인지 일본에서 의 생활도 넉넉하게 꾸려가서 적어도 일본에서는 배가 고팠다는 기억이 없었다.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8월 9일 점심 시간이 되어갈 무렵이었다. 공습경보가 울려 당 시 거주지였던 이에노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공습대피장소였던 터널 공사장으로 피신해 있 다가, 해제 사이렌이 울리고 점심을 준비하러 많은 사람들이 나가던 차 김치우 씨는 어머니 가 마침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온다고 계속 터널 안에 있었다. 그 순간 상공에서 작열한 폭탄에 밖으로 나갔던 이들이 모두 폭탄에 그을렸다. 김치우 씨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오하시(大橋) 근처로 여겨지는 병기부품저장고 공사장 근 처에서 피폭당한 아버지는 보름 만에 숨을 거두었다. 폭심지에서 모두 2 킬로가 넘지 않은 곳들이었다. 그리고 친척 중에는 아버지 이외에도 네 명의 사망자가 더 있었다. 모두 스물 여섯 명의 가족 및 친척 중에 5명이 사망했다.

제 사촌동생 경태이라고 그 애는 그때 나가사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공습이 심해지고 하니

까 외동아들이라 폭격에 죽을까봐 한국에 외삼촌 집에 보내서 당시에 거기 없었어요. 또 처음 오신 사촌형님이 동생 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분도 나가사키하고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거기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일본에 가서 자리잡으셨다는 그 사촌형은 (폭격 후에)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촌형님의 딸 하나가 죽고, 그 사촌형의 막내딸이었는데 젓먹이였어요. 아키코(秋子)라고. 근데 당시에 사촌형수가 이 애를 업고 있었는데,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니 그걸 찾으러 다니다가 그 애가 죽은 것도 모르고 그리고 다니셨어요...또 다른 사촌 동생 하루코(春子)라고 그 애가 목욕하다가 죽었고. 내가 시체를 봤어요. 모래 밭 위에 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애가 물가에 있었는데 햇볕하고 원폭광선하고, 그게 물에 비친 그것까지 붙어서 더 세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새카맣게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개 집에 큰 아버지는 마루에 앉았다가 얼굴하고 가슴 그쪽이 다 탔는데, 얼굴이 엉망이에요. (중략) 아버지는 감나무 그늘에서 (원폭) 그걸 맞았는데 몸을 땅에 엎드리고 가리니 팔하고 다리 목 뒤쪽 여기가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같으면 치료해서 낫을 것인데.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 바닷물, 소금물을 발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화기를 먹은 거예요. 핵을 마신 거예요. 상처는 다 나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보름 만에. 그래서 그 아버지 시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무너진 바라쿠 나무 같은 것을 태워서 화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루를 타도 다 안 되서 다음날 또 태웠어요. 그걸 상자에 빼 하나 안 버리고 다 담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걸 귀국할 때 내가 메고 왔어요. (1935년생, 남, 김치우)

가족과 친척 중에 다섯 명이 사망하고 한국으로 귀환한 김치우 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술 빚는 일을 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우연한 기회로 좋은 조건의 직업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했던 유언을 어길 수가 없어 유년 시절 한동안 어머니의 가업을 도운 것이다. 그런 김치우 씨가 원폭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가입하고, 수첩을 받은 것은 2005년이었다.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경험하고, 아버지가 폭사한 지 60년이 되던 해였다.

지금 병원에는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데, 그건 약을 먹으니까 괜찮고. 발이 쥐가 잘 나요. 이게 수술한다고 신경 옆으로 침을 찔러가지고 모니터로 보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아파요. 두 번 다시는 못해요. 다리가 아프다기 보다는 좀 걷다 보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척추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위험한 주사예요. 근데 그건 안 맞고 유명하다 하는 병원 가서 해봐도 안 되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약을 받아서 먹기는 하는데 낫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주저앉기도 하고요. 눈도 오른쪽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왼쪽은 안 좋아요. 눈에 두 개 세 개 보이고 이것도 검진 결과가 곧 나오는데 그것 따라 수술 받아야 되고. 허리도 안 좋아요. 허리 이것도 다리 때문에 그렇다는데, 못 걷디게 아프지는 않은데 더 악화하는 안 되면 괜찮은데...(중략)...우리는 원폭이 뭔지 모르니까. 전에 원폭 맞으면 3년 동안 풀도 안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한테 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람,

두 시간 있었던 사람도 (피폭자건강수첩을 신청) 하라 하던데 그걸 보니 그게 위험한 거구나 안 거지. (한국에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협회나 적십자사에서 광고도 했는데 소식을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광고가 애매한 거예요. 그게 상세하게 몇 킬로 이내에 살아서 화상을 안 입어도 몇 주 이상 있었던 사람은 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원폭피해자는 신청해라 하나까, 꿈꿨고 장해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하는 건줄 알았지 우리같이 걸보기 괜찮은 사람이 하는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중략)....그리고 이런 보통 사람이 신청하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 싶고, 티비 같은 데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1935년생, 남, 김치우)

원자폭탄에 아버지와 네 명의 친척을 잃고 고혈압과 척추질환, 백내장, 근무력증 등¹⁵⁷⁾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김치우 씨는 그런 질환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걸리는 것이라 생각했고, 걸보기 괜찮은 자신과 같은 ‘보통사람’이 원폭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조카가 우연히 뉴스를 보고 일본에서 ‘수첩’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십자사에 이러저러한 절차들을 알아보면서, 비로소 자신도 ‘원폭피해자’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앞서 협회 회원가입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잠시 언급되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협회를 가입하거나 일본에서 수첩을 받을 때 이를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의료적/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의 경우에는 가입을 한 뒤 숨길지언정 가입 그 자체를 꺼리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협회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오랫동안 가입에 따라 주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 그에 비해 가입을 위해 독일 자체와 도일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해 들여야 하는 비용은 지나치게 컸다는 것, 혹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정보의 부재나 왜곡은 앞의 김치우 씨의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원폭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질환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장 2절에 인용됐던 기사가 대표적이지만, 한국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묘사는 대체로 기형이나 불구, 유전 등이 강조되는 가운데 미디어나 반핵 관련 전시 등에서는 고통의 신체적 흔적으로서 외상이나 상처가 드러나는 영상들이 차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원폭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이러한 영상적 재현은 오랫동안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편견을 만든 동시에 원폭의 피해가 갖는 만발성 장해 혹은 후장해에 대한 사회적 무지도 동시에 만들어냈다. 특

157) 원폭방사선의 인체에의 후장해 중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악성종양의 발생이다. 1950-1985년의 35년간의 RERF 집계에 따르면 백혈병, 유방암, 폐암, 위암, 결장암, 다발성골수종 등에 있어서는 밝혀진 방사선량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혈압, 척추질환, 백내장 등과 같은 질환이 대표적인 후장해에 속한다 (重松逸造 外, 2007:13).

히 3장 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고도의 통계적 해석을 통해서’ 이해된다고 하는 ‘만성원자폭탄증’ 혹은 ‘원폭의 후장해’로 이야기 되는 암이나 고혈압, 척추 질환 등과 같은 것은 생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일반인들이 겪는 질환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상이나 상처를 가진 사람을 원폭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을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켈로이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켈로이드는 방사선 보다는 열상에 의한 외상이라는 것이 일찍부터 알려져, ABCC에서도 원폭의 장해로서 특수하게 연구할 영역에서는 제외되었을 정도로 원폭만의 특수한 피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외상이 없는 원폭피해자의 신체는 미디어적 재현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구성되는 원폭피해자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정상적인’ 모습이다. 연구자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을 때 단체의 대표가 방송국이나 라디오에 출연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녹화가 끝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원폭피해자신데 왜 이렇게 건강하시나” 혹은 “멀쩡하시나”는 말을 들곤 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겉은 이래도 속은 다들 문드러졌다”거나 “원폭 때 방사선 치료를 해서 나쁜 것은 다 없어졌다”는 농담을 던져야 했다고 말하곤 했다. 일본 사회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원폭피해자들이 발언하는 정치사회적 기회의 장이 많지도 않지만, 혹여 그런 자리가 있을 때에는 의례 미디어나 전시장에서 재현되는 원폭피해자로서의 외형을 기대받는다. 이는 원폭피해자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만난 이들 중에도 원폭피해자들이 책이나 신문에서 보는 것하고 너무나 다르게 건강해 보여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는 현지 조사 초기의 연구자 자신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태도이기도 했으며, 그것은 다시 원폭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미디어적 재현과 사회적 편견이 4장 2절에서 인용한 기사가 작성된 194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도 거의 변함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원폭피해자에 대한 미디어적 재현과 사회적 편견, 혹은 그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무지는 원폭피해자의 구호에 대한 정보의 문제와도 맞물리면서 좀 더 복잡해진다. 이 점은 협회 회원카드의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협회 회원카드 작성 내용 중 회원 가입이나 수첩 발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작성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는 원폭피해자와 그들의 신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가입을 미루고 있다가, 뒤늦게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장남 OO의 만류가 있었다. 장자 사망 후 수년간 경과했지만 나가사키 원폭 당일 희생된 나의 친척 추OO와 시내에 수회 입시한 자로서, OO의 과오로 사망신고가 잘못되어 신음조차 외면당하는 처지에서 피폭 사망의 엄연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폭구호대상의 수혜자 가능성을 굳게 믿고 고행에 짧은 여생에도 불구하고 염치없지만 신청을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생존 시 원폭을 당한 병은 유전이 된다면서 피폭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망설이다가 유전하고는 관계가 없다가에 또한 생활

이 어려워 혜택이 있다기에 신청케 되었습니다” “장성하여 혼인하면 후손에 지장 있다는 풍문도 있고, 원폭협회가 있다는 것도 몰랐으며, 알았을 때는 소재를 몰랐다”, “협회를 모르고 있었고, 수첩발급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유전관계로 가족이 아는 것이 두려웠다” 등과 같은 이유가 그런 사례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의 만류, 혹은 풍문 등의 문제는 수첩이나 회원가입 시 주어지는 지원, 그리고 원폭피해자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정보들이 부재했거나 관심이 없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어 온 측면이 강하고, 또한 협회 가입에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나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었고, 피폭자에 대한 편견도 있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조금 소문이 안 좋긴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무관심한 게 더 컸죠. ‘수첩’은 제가 2000년에 받았어요. 그 전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저는 교육행정직에 오래 근무를 하다가 1998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정년퇴직 하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도 원폭으로 돌아가시고 하나까 사실 원폭피해자인건 아주 옛날부터 잘 인식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우리 집안에 피폭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많은데,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인형일, 남, 1939년생)

가족 중에 원폭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앞의 김치우 씨의 사례와 같이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 행정관료제적 규정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수첩 취득이 늦어진 경우도 있다. “원자폭탄으로 인한 병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이라는 사유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 병은 ‘보통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걸리는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나 불구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폭피해에 대한 외관상의 심한 상처나 후유증이 없었기에 심사절차에 누락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한 해 두 해 신청을 미루어 오던 중 합천 고향에 다니러 갔을 때 함께 피해를 본 고향 사람들이 수첩을 받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신청하게 됨”과 같은 사례들도 이에 해당한다.

협회 가입에 관한 소식이나 피폭자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그에 필요한 행정관료제적 절차로 인해 수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원폭피해자 협회 회원가입 자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증인이나 증명의 문제다. “원폭투하 될 당시 친구 두 명은 이북인들로서 해방 후 고향으로 귀국하고 객지에서 혼자 지내서 보증인도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폭협회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지내왔으나 88년도 들어 자주 매스컴에 반영되는 탓으로 비로소 알게 되어 면, 군, 도 경우 보건복지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치료 및 도일치료를 원하는 바, 특히 군속으로 소속된 바 보증인이 없는 관계로 어렵게 되고 보니 실로 억울합니다”와 같은 사례들은 특히 강제동원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징용된 이들, 혹은 원폭으로 일찍 부모와

친척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오히려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싶지만 그에 필요한 것을 갖추지 못해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1994년 이후 일본수첩 소지가 회원가입의 자격이 되면서 수첩을 받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도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과 경제적 비용 때문에 회원 가입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던 남성 원폭피해자들 중에는 퇴직 이후 시간이 남아서 '이 관계'를 알아보고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2009년까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수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으로 건너가 각종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시간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도 해당한다. 물론 도일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고통이어서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즉 도일이라는 월경 행위 그 자체가 수첩 교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늦어지게 하면서 회원가입도 미뤄진 것이다. 다음절에서는 이러한 협회 회원 가입-1994년 이후에는 수첩 교부-의 역사가 반영된 협회의 회원 구성을 재해석 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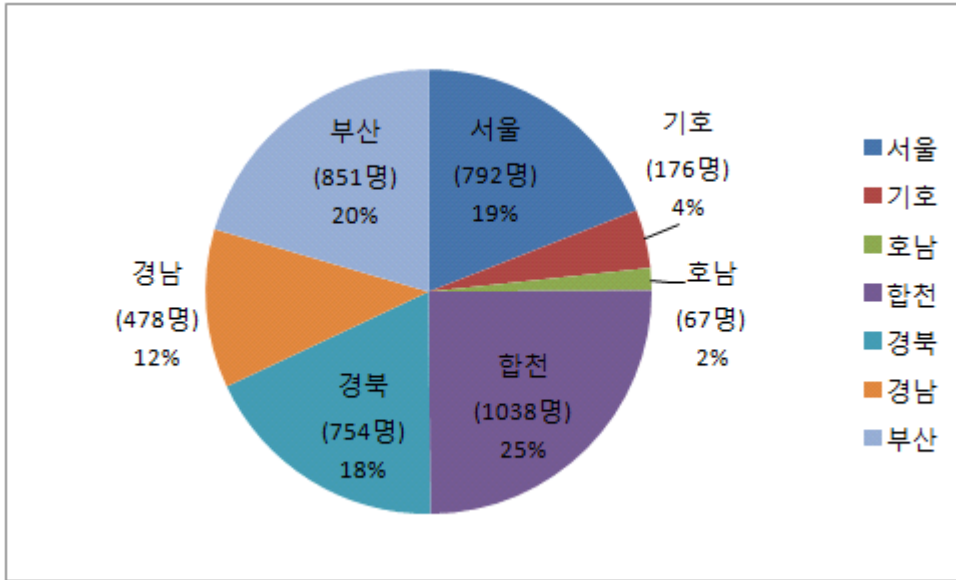
4) 협회 회원 구성의 재해석

원폭3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원폭피해자 구호 조치가 일본 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 비록 때늦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항상 받기는 했지만, 자국 정부가 직접 원폭피해자 구호와 보상에 대한 주체로 나서고, 반핵평화운동의 상징으로서 히바쿠샤 구호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일본 사회에서 이들의 구호에 대한 정보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하게 유통된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원폭피해자 구호에 대한 사회적 무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도 자국의 원폭피해자 구호와 관련된 어떠한 실질적인 행위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라는 자조적(自助的) 결사체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인 투쟁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유일한 원폭피해자 구호단체로 기능해왔다. 그리고 구호의 대상이 될 회원으로의 가입을 통제하는 주체이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까지 실질적이고 유효한 구호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협회 운영은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국내의 일부 기독교단체의 구호금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시기 회원이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친인척 연결망에 따라 알음알음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다. 1990년대 일본정부의 40억 엔의 인도적 지원으로 만들어진 피폭자복지기금의 운영은 협회 회원 가입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신규 회원들이 들어온 시기였고, 2003년 일본 정부로부터 직접 수당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도 신규 회원들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원폭의 피해를 입은 지 70여 년이 다 지난 때에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여전히 기존에 가입한 회원들과의 연결망과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협회 회원가입이 인우보증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진주, 2004, 2005). 1994년 이전 협회 회원가입의 요건에 필요한 보증인 제도와 한때 협회에서 이뤄진 회원가입 심사 과정에서도 기존에 피폭자건강수첩을 가진 자의 보증 혹은 기존 회원 두 명의 보증을 요구한 제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협회 회원가입의 문제에서 친인척 및 지인과의 연줄망이 문제되는 것은 인우보증에만 관련되지 않는다. 즉 협회 회원 가입이 여전히 기존에 가입한 회원들과의 연줄망 속에서 이뤄지는 이유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회 가입이나 수첩교부에 따른 혜택에 대한 정보도 이러한 연줄망을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협회에 가입하거나 수첩을 받는 계기 자체가 친인척이나 지인과의 연줄망 속에서 이뤄지고, 실제 가입 자체와 수첩 교부 또한 증인을 요구하는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다. 원폭피해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내오다가 우연히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과 같이 많은 친인척이 모이게 되는 날 우연히 소식을 듣고 가입하게 되었다는 사례들은 협회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비중 높은 협회 가입 계기이다. 이는 역으로 친인척 연줄망이나 미디어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이 원폭피해자 구호나 보상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가령 합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협회에 가입한 지역의 출신들의 경우에도 협회 가입이 늦어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대체로 “전라도에서 외지 생활하느라 피폭자 처우를 전혀 몰랐다”거나 “행상으로 각지를 헤매는 바람에 무지한 탓에 못했다”는 등과 같이 이들이 혈연과 지연에 기반을 둔 사회문화적 연줄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제일 당시 출신 지역이 히로시마보다 다양했던 나가사키와 단신 이주자들이었던 강제 동원된 징용자들의 협회 회원가입 비율이 낮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음 절부터 설명하게 될 수첩 교부 과정의 까다로움과 복잡성까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 구성 요소로서 지역과 친족 그리고 조직에 기반을 둔 연줄망과 이를 기반으로 습득된 정보 혹은 지식이라는 사회문화적 요소는 한국 원폭피해자 구호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조건들과 결합해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 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들을 만들어낸 결정적 요소 가운데 하나다.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있어 친인척과 지역에 기반을 둔 연줄망과 이를 따라 흘러 다니는 정보들은 이들이 일본으로 이주할 당시부터 해방 후 귀환하고 협회에 가입하거나 수첩을 받는 등 모든 단계에 핵심적인 요소였으며, 이것이 오늘날에는 일반이주와 강제동원,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 간의 귀환 이후 이들의 구호의 정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히바쿠샤의 경계라는 문턱 넘기의 디딤돌로서 기능해왔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유일한 원폭피해자 구호 단체로 기능해왔던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회원 가입 추이와 회원 구성 정도는 그러한 차이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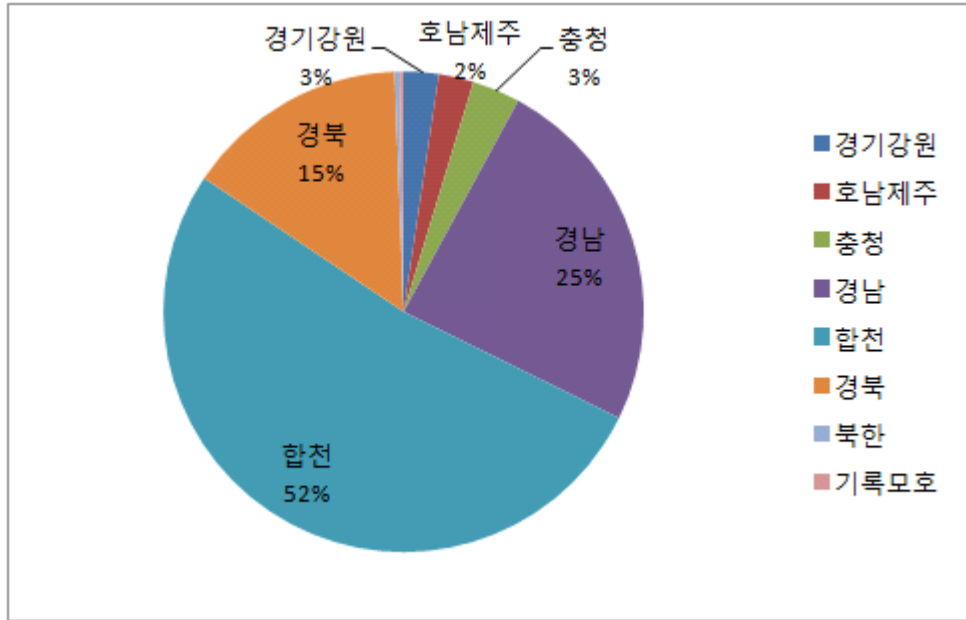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지부별 누적 회원 수 (2008년 8월 현재, 4156명)

*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보관중인 회원카드는 지부별로 보관된다. 지부에 가입한 경우 카드상단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므로 사망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가입한 적이 있는 누적회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사망자의 경우 회원 카드를 폐기해 남아 있는 호적수는 그에 비해 적어진다.

	서울	호남	기호	합천	경북	경남	부산	합계
누적회원	792	67	176	1038	754	478	851	4156
남은 호적	640	42	90	861	611	380	696	3320

<표 5> 지부별 누적 회원과 남아 있는 호적수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회원 10명중 7명은 합천 출신"이라는 말이 있다. 이치바 준코(2003:275)의 책에서도 "전쟁 중 히로시마에서는 '거리에서 조선인을 만나도 고향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합천이라고 답한다'고 할 정도였다," "모임 간부에 따르면 협회 등록자 중 본적지가 합천군에 해당하는 자는 약 반수, 정확하게 하면 약 3분의 2가 될 지도 모른다"고 한 발언이 인용되고 있는데, 위의 <그림 4>와 <표 5>는 그 말이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표 5>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보관중인 회원카드의 수를 지부별로 정리한 것이다. 모두 4156명의 회원 중 지부별 회원 수로 보면 경남 합천과 경북, 경남, 부산 지부 등에 회원들이 집중되어 있고 호남과 기호지부(2012년 현재는 서울지부와 통합되어 중앙지부로 편입됨) 회원은 극히 미미하다. 지부별 회원 수에서도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는 회원카드에 첨부된 호적자료 중 원적지(남성의 경우는 본적지, 여성의 경우 본인의 결혼 전 본적지)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그러한 지역적 편차를 좀 더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들의 재일 당시 출신 지역(원적지 기준, 전체 3320명)

경기강원	호남제주	충청	경남	합천	경북	북한	기록 모호	전체
78	78	107	809	1730	498	11	9	3320

<표 6>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들의 출신지역별 인원

위의 <그림 5>와 <표 6>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들의 히로시마 이주 전(혹은 출생 전) 출신 지역을 원적지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망으로 인해 자료가 폐기되고 남아 있는 3320개의 호적 자료가 바탕이 되었다. <그림 5>와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3320명의 회원들의 호적상의 원적지 기준 출신지역을 보면 합천을 연고로 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전체 회원의 2/3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반 수 이상이 합천 연고자다. 또한 경북과 경남을 연고로 하는 비율도 낮지 않은데, 특히 호적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들이 이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군의 면단위 소재지에 분포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북 금릉군 농소면 등). 회원들의 출신지가 지역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면단위 소재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합천의 사례에서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면단위별	생활권역별	1974년 정기장 씨의 조사 당시 원폭피해자수		2008년 8월 현재 등록된 원폭피해자수	
		면 단위 인원	생활권 단위 인원	면 단위 인원	생활권 단위 인원
봉산면	경남 거창 생활권	12	12 (0.3%)	22	22 (1.8%)
가야면	경북 고령 생활권 경북 성주, 고령으로 연결	154	311 (7.6%)	15	51 (4.2%)
야로면		11		19	
덕곡면		146		17	
대양면	옛 합천군 생활권 (합천시장) 경북 고령, 대구로 연결	19	2351 (57.3%)	108	864 (70.4%)
묘산면		575		90	
용주면		278		89	
울곡면		415		347	
합천읍		1064		230	
적중면	옛 초계군 생활권 (초계시장) 경남 밀양, 창령, 부산으로 연결	618	1262 (30.8%)	30	274 (22.3%)
쌍책면		373		161	
청덕면		107		54	
초계면		164		29	
삼가면	옛 삼가군 생활권 (삼가시장) 경남 의령, 진주로 연결	24	165 (4.0%)	2	17 (1.4%)
가회면		14		3	
대병면		97		11	
쌍백면		30		1	
합계		4101		1228	

<표 7> 합천군 생활권 권역으로 본 1974/2008년 원폭피해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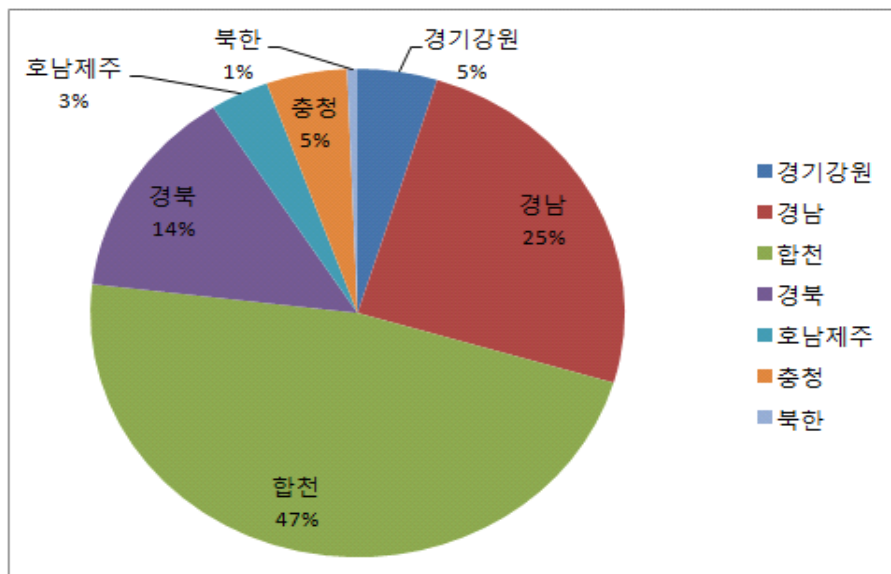
* 자료출처: 1974년 정기장 씨의 자료는 원본 형태로는 남아 있지 않아 이치바 준코의 『한국의 히로시마』(p.287) 표 12를 참조함. 2008년 자료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카드 중 호적자료에서 원적지 확인 가능한 것 중, 정기장 씨의 자료와 비교 가능한 것에 한해 추출함.

위의 <표 7>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가입된 회원 카드와 1974년에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 지부 회원이던 정기장 씨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출신지 분포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합천지역 중에서도 옛 합천군과 옛 초계군 일대에 원폭피해자들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¹⁵⁸⁾ 그리고 이러한 분포는 2007년 현재 협회 회원가입 비율에서도 어느 정

158) 합천 지역의 경우 이러한 면단위는 생활권인 동시에 통혼권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지역적 연고는 대개 친인척에 기반을 둔 혈연적 연결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치바 준코는 합천이 내륙 산지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상 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권이 통혼권(通婚圈)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같은 군내라 하더라도 원폭피해자비율(즉 히로시마로 이주한 사람들의 수) 크게 다른 현상을 반영한다. 즉 옛 합천군과 옛 초계군, 그리고 옛 삼가군에서는 합천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합천의 경우 동성동본 가(家) 20호 이상으로 이루어진 동족 부락이 117개에 이를 정도로 친족적 결합이 매우 강하게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도 혈연과 지연을 통해 만들어진 연결망의 강고함을 만들어냈다. 동족 부락의 수는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 216개 마을, 통영군 122개 마을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한국 전체 162군 중에는 열일곱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한

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이치바 준코(2003)가 히로시마에 합천 출신들이 많았던 것을 식민지 시절 합천 지역의 생활난과 합천 출신의 인물들이 매개가 되어 이주가 이루어진 것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 것처럼, 친인척과 지역을 연고로 한 연줄망은 일본으로의 이주 당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귀환 이후에는 원폭피해자로서 협회에 가입하거나 수첩을 받아 히바쿠샤가 되는 데에도 그대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회원들의 재일 당시 원적지[출신지역] 분포는 전체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출신 지역 분포가 아니라 협회 회원들의 구성 비율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앞 절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원폭피해자라고 해서 모두 협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표 자체가 협회에 가입하는데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기회비용은 적은 이들의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령 협회 가입 시 필요한 정보의 문턱이 낮고 기회비용이 적어지는 요인 중 하나는 친인척 연줄망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같이 가입하게 된 경우인데 이는 회원들의 호적 자료 중 호주(戶主)가 같은 경우, 즉 같은 호적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드러난다. 위의 호적 자료 중 가족 관계에 중복된 호적을 제외한 회원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중복된 호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출신 지역 분포 (원적지 기준)

다. (경상남도, 1987:257 이치바준코, 2003:306 재인용)

	경기 강원	호남	충남	경남	합천	경북	북한	계
히로시마일반	7	29	27	336	671	173	1	1244
나가사키일반		4	7	12	3	22		48
히로시마징용	58	10	19	4	3	2	4	100
나가사키징용	3	8	19	5		4	6	45
계	68	51	72	357	677	201	11	1437

<표 8> 중복된 호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출신 지역 분포

위의 <그림 6>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된 호적을 제외시킬 경우 합천 지역의 회원 구성 비율은 줄고, 충청 등과 같은 지역의 비율이 조금 늘어난다. 또한 아래의 <표 10>의 재일 당시 가구원 수와 중복된 호적 수 비율[평균 두 명]을 비교해보면, 재일 당시 평균 가구원 다섯 명 중 두 명 정도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 연줄망에 의한 회원가입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친인척과 지역에 연고를 둔 연줄망이 협회 회원가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앞선 지적들을 뒷받침 해준다.

역으로 친인척 및 지역적 연고가 약한 이들이 협회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위의 <표 8>에서 보듯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강제동원된 이들의 회원 등록률이 현격히 떨어진다. 나가사키의 경우 강제동원에 의한 노무자 숫자만 해도 만 삼천 여명, 히로시마도 확인된 경우만 5천 명이 넘는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¹⁵⁹⁾ 100 여명이 채 되지 않는 회원가입 숫자는 피폭 후 사망자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적다. 이는 강제동원된 이들의 경우 단신 이주가 대부분이고 출신 지역 또한 지방의 군 단위에서 여러 곳에 산재되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 원폭협회 가입 절차에 필요한 정보습득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협회 가입에 필요한 요건들—인우보증이나 1994년 이후에는 수첩 취득—을 충족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¹⁶⁰⁾ 특히 <표 8>에서도 보이듯이 강제동원된 이들의 송출 지역은 매우 다양해서, 귀환 후 이들의 지역적 공통점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로 강제 동원된 이들의 경우에는 경기도 평택과 안성 등을 비롯해, 경북 의성, 전남 진도, 보성, 전북 정읍, 남원, 충남 공주, 예산, 논산, 대덕 그리고 평양 출신 등이며 대부분 시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가사키 또한 경기도 고양, 경남 거제, 의령, 통영, 남해, 경북

159) 강제동원된 노무자 수와 송출지역에 관해서는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2011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1, p.10-17 참조. 다음은 나가사키의 조선인 피폭자 수 추정 결과들.

달성, 영양, 문경, 전남 강진, 보성, 해남, 나주, 전북 고창, 김제, 충남 당진, 금산, 공주, 서천, 예산, 천안, 충북 진천, 음성 그리고 황해도 및 평안남도 등이 송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여준다. 강제동원 된 경우에는 호적 자료가 회원가입 등에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며, 피폭 당시 이제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증인을 필요로 하는데, 동원됐던 작업장의 동료들 귀환 이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만약 그들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협회 가입 시 필요한 증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강제동원된 이들의 경우 협회 가입률이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¹⁶¹⁾ 그리고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 보겠지만, 이들의 수첩 교부 과정에도 비슷하게 영향을 미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재일 당시 가구원수/대상 가구 수	7,000/1248 (5.61명) ()는 평균 가구원 수	268/51 (5.25명) ()는 평균 가구원 수
귀국 시까지 사망자	102(1.5%), ()는 사망률	21(7.8%) ()는 사망률

<표 10>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의 재일 당시 평균 가구원수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카드에 첨부된 호적자료 등을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2008년 9월 현재)

** 가구 수는 가족관계에 의해 중복된 호적, 강제동원된 징용자를 제외하고 산출.

협회 회원 구성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나가사키의 경우 일반 이주자들의 협회

조사기관 및 단체	조사 /발표시점	피폭자 총수	사망자수 (사망률)	생존자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72년 4월	20,000	10,000 (50%)	10,000
『広島・長崎の原爆被爆災害』 広島大学 原医研 湯崎 稔ら ¹⁾	1978년	12,000~14,000	1,500~2,000 (10~17%)	10,000~12,500
『平和文化研究』 鎌田定夫 ¹⁾	1978년	13,000	3,000~4,000 (23~30%)	9,000~10,000
長崎在日朝鮮人の人権を守る 会	1982년	19,391	9,169 (47%)	10,222
長崎市 ¹⁾	1981년 6월	12,000~13,000	1,400~2,000 (11~17%)	10,000~11,600

<표 9> 나가사키재일조선인 피폭자 및 사망자 추정 조사들 (사망률은 연구자가 표기)

*출처: 長崎市原爆被爆50年史編輯委員會, 『長崎原爆被爆50年史』, 1996.

160) 이 경우도 상세한 내용은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1 참조.

161)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보고서(2011:25)에서는 이와 관련해 '피폭지역에 있었던 사람과 이를 인정받은 사람과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두고, 1) 당사자가 원폭피해자임을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 2)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지한 사람만을 '피폭자'로 국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등록 비율도 매우 낮다는 점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원폭협회의 피폭인구 추정수에 따르면 히로시마에서 5만 명,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2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살아서 한국으로 귀국한 수가 히로시마에서는 1만 5천명, 그리고 나가사키에서는 8천 명 정도라고 이야기 된다.¹⁶²⁾ 그러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가사키 출신의 회원 등록 수는 93명 그 중에서도 강제동원된 경우를 뺀 일반 이주자였던 회원은 48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는 일본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활동가들이 나가사키 출신의 한국원폭피해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호소와도 연관되는 현상이며, 연구자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어려움이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나가사키 조선인들의 출신 지역이 히로시마에 비해 다양하다는 점이다. 출신 지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귀환 후 이들의 결집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앞서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회원 등록률이 낮은 이유 중 회원 가입과 관련된 정보 취득의 어려움, 그리고 증인이나 증명 서류 등을 찾는 것의 어려움 등을 든 것과 유사한 이유일 수 있다. 나가사키의 조선인 원폭피해자의 도일 이전의 출신 지역은 훨씬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지역으로 경산, 영일, 금릉, 청도, 영천, 달성, 선산, 상주 등이 있었으며, 전남 고흥, 제주도, 충남 논산과 당진, 충북 영동 등지에서 이주해온 조선인들도 있었다. 히로시마의 일반 조선인들이 경상남도 합천과 그 주변 일대의 경상남북도 생활권과 통혼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혈연과 지연이라는 연결망에 기반해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기 쉽고 기회비용이 낮은 데 비해 나가사키의 경우는 그 정도가 훨씬 높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 이는 현재 협회의 회원 중 호남을 연고로 하는 이들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¹⁶³⁾

요컨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회원 구성에 있어 나가사키보다는 히로시마의 원폭피해자가, 그리고 강제 동원된 이들보다는 일반 이주자들의 비율은 압도적이다. 한·일 양국정부의 원폭피해자 구호에 대한 회피와 임시방편적 조치가 이어져온 가운데 원폭피해자와 이들의

162)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9, 『연혁』.

163) 나가사키로 강제 징용된 이들이 원폭으로 인해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귀국 후 사망자 비율이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원폭협회의 공식기록이나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보고서(2011)는 이와 반대되는 추정을 하고 있다. 이중 주장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 후자의 보고서에서는 히로시마 시에서 피폭 당일 대규모로 이루어진 시내 중심지에서의 소개(疏開) 작업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많았다는 점, 나가사키에서는 폭심지에서 가까운 대형 공장에 동원된 노무자들이 훈련 등으로 당시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이 내세워진다. 그러나 동위원회의 보고서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장군(群)에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가사키의 폭심지 근처에 존재 하던 소규모 건축 작업장에서 일하다 평일 점심시간을 맞고 있던 상당수의 조선인 노무자들이나 일반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폭사했을 가능성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폭 투하 당시 일반 조선인 노무자들이나 그들 가족의 상당수가 폭심지 근처인 우라카미 강 북부의 수원지나 터널 공사, 병기 부품 저장고 건축 작업장 등지에 대규모의 함바군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나가사키는 플루토늄으로 구성된 원자폭탄으로 폭심지 근처에서의 위력이 히로시마의 것에 비해 훨씬 컸으며,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피해도 훨씬 컸다고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논란에 대해 명확히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다.

구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원폭피해자 구호에 대한 정보는 미디어 보다는 친인척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줄망을 따라 흘러 다녔다. 여기에 알음알음으로 회원을 모으던 협회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 1980년대 인우보증이 협회 가입 요건이 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큰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는 수첩 취득을 협회 회원가입의 요건으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협회 가입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결과다.

2003년, 원폭이 투하된 지 60여년이 다 되어가던 즈음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수첩 취득을 통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직접 편입되게 되면서 이제 문턱은 사라졌다. 이제는 회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일본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첩을 소지해야 한다. 기존에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에서 수첩을 취득해야만 했다.

2.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서의 관료제적 형식과 내용

1) 특정한 시공간적 좌표 상에 문자화되어야 할 기억

마비성 장폐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빈혈, 백혈구의 장애,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이 병명들은 한국원폭피해자 장영준 씨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자신의 실정을 호소하며, 수첩을 교부받는데 도움을 얻고자 보낸 편지에 첨부된 의학진단서에 적힌 것을 옮겨 놓은 것이다. 나가사키 시내에서 함바를 하던 부모님이 폭격 날 돌아오지 않자 이튿날부터 시내를 돌아다니며 부모를 찾고 이후에도 귀국 준비 차 함바의 가산을 정리하기 위해 계속 시내를 오가던 장영준 씨는 귀국 후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다. 자신이 겪는 병이 원폭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후에는 협회 회원으로도 가입하고, 2003년 이후에는 히바쿠샤로서 치료를 받기 위해 나가사키 시청에 수첩 교부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비록 폭격 당시의 당사자인 '직접피폭자'는 아니었지만, 입시(入市) 피폭에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하지만 수첩을 교부받기 위한 그의 시도는 계속 좌절 됐다. 제일 당시 자택의 주소는 나가사키의 지정 피폭 지역이 아니었고, 자신의 입시 사실을 증명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세 번에 걸쳐 수첩 교부를 신청했지만, 나가사키시청은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장영준 씨는 증인이 없어도 수첩을 교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승소의 이유는 그의 신체에 나타난 병이 원폭에 기인했을지 모른다는 의학적 판단에서가 아니라, 그의 진술 내용이 피폭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큼 상세하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샤를 식별하는 것, 즉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하는

것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현재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인체 피폭량 측정, 피폭자의 신체에 대한 생물학적 진단이 이들의 피폭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원폭 투하 직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이루어진 여러 과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실제 인체 영향을 생물학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콜로이드와 같이 외상을 통해 진단이 가능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의미했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샤의 경계를 만드는 데-거리에 따른 피폭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중요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것 즉 히바쿠샤를 판별해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하는 과정은 과학 혹은 의학적 진단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관료제적 통제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장영준씨의 재판 내용이 보여주듯이,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 및 의학 연구가 원폭 의료법 제정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히바쿠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진단이 아니라 증명서나 증인, 혹은 증언 등과 같은 요소들이다.

<첨부자료 1> 평성7년(1995년) 12월 3일 일본 신문기사 스크랩 (신문명 확인 안 됨)
 제목: 피폭의 증인을 찾고 있다. 원폭투하 후에 나가사키로. 병으로 불안 '수첩' 교부를 원함.
 <첨부자료2> 창원시 창원파티마병원 진단서 (2011년 1월 12일)
 병명 최종진단: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향후 치료의견: 상기 병으로 진단 후 현재 경과 관찰 중이며 상급 병원 권유 상태임. 백혈병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첨부자료3> 진해연세병원 진료의뢰서 (2010년 9월 9일)
 상병명: 마비성 장폐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명시된 빈혈, 기타 명시된 백혈구의 장애,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첨부자료4> 진해시 진해의원 진단서 (2009년 12월 8일)
 병명 최종진단: 백혈구 감소증, 고혈압
 향후 치료의견: 상기인은 2001.10.8부터 상기 병명으로 항고혈압제 투여중이며 백혈구 감소증은 관찰중임.

<표 11> 故장영준 씨가 생전에 원폭협회에 보낸 편지에 첨부된 병원 진단서와 신문기사
 장영준 씨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 '증인'이 없어도 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의학적 진단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진술'의 내용이 '피폭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상세한 것이었다는 것이 이유가 됐다.

그렇다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샤의 경계를 통제하는 행정관료제적 방식이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작동되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 국가의 관료제적 행정은 단순히 공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주어진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한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적 차원의 구성적 실체이면서 물질적 기반을 갖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Heyman, 2012:1270). 따라서 이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관료주의적 행정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세계를 가진 사회적 관계의 구축물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회와 정치, 과학 등과 상호작용하는 구성적 지점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Long(1992)이 '인터페이스' 상황이라고 부른 이 지점은 국가와 과학(좀 더 넓게는 지식), 그리고 시민 사회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영역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피폭자건강수첩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 제도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제도가 작동되는 행정관료제적 절차 안에서 그에 필요한 각종 수속들을 알아나가야 한다. 2002년 12월 광귀훈 씨 소송의 2심 승소로 402호 통달의 위헌이 확정되었고, 2008년 11월 정남수 씨의 소송의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164) 이제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신청하고 또 취득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수첩을 가지고 있는 히바쿠사라면 원폭의 장해 정도에 따라 일정 정도의 수당과 의료비를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은 자"라고 정의된 히바쿠사의 법적 규정은 히바쿠사의 경계를 넘으려는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폭자건강수첩을 받고자 하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의 원폭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행정 절차와 심사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히바쿠사라는 자격을 인정받으면 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당연하고도 평범해 보이는 수첩의 교부 과정은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는 '히바쿠사의 경계를 넘는데 있어 행정관료제적 통과의례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의미와 제약 속에서 행해지고, 또 실천된다. 이는 4장에서 주로 설명한 개별 국가 단위의 거시적인 차원의 권력 행사 즉 정치적·외교적 배제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개별 원폭피해자들이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고자 서류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는 행정관료제적 절차 과정에서 겪게 되는 미시적인 차원의 국가·지식 권력과 통제의 경험과 관련된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히바쿠사의 행정관료제적 통제 절차가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또 어떤 지점과 맥락에서 이들의 히바쿠사 경계 넘기를 가능하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약으로 경험되는지를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 절차는 수첩교부신청서를 작성

164) 2003년 일본정부(나가사키 현이 계약의 대표가 됨)는 대한적십자사와의 계약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가 국내의 '피폭자' 지원과 관련된 일본의 행정 절차를 대신 수속해주고 일본에서 지급되는 수당도 개별 '피폭자'들에게 지불하는 일을 담당하게 했다. 원호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등과 같이 일본정부에서 개별 한국원폭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 각종 수수료 문제가 없이기 때문에 수첩 신청 등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에 위탁한 것이다.(백옥숙, 2004:32) 대한적십자사는 1990년 피폭자복지기금 운영 이후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국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었는데 2003년부터는 수첩 신청과 도일 수속 업무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정남수 씨 재판 승소(2008년 11월) 이후에는 도일 수속 업무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졌다. '수첩'을 신청하는 이들이 가이드를 따라 일본으로 가서 직접 심사를 받는 제도가 '전환' 심사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음의 표는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서 중 피폭 당시의 상황과 피폭의 상황에 대해 기입해야할 내용들을 적은 것이다. 피폭자건강수첩교부신청서는 어느 공식 서류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형식과 작성 규칙에 맞게 정형화되어 있지만, 일본의 원폭 피해자구호정책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하는 것은 기억 그리고 그것의 발화된 형태로서의 구술과 증언을 문자화하는 과정 자체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기록된 기억이 심사된다는 점에서, 이 신청서에 쓰인 내용 자체가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p>1. 피폭 당시의 상황</p> <p>{당시, 어려서 상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에게 들어서, 또는 태내피폭자의 경우는 귀하를 낳은 모친의 것을 써주십시오.}</p> <p>(1) 당시의 주소 또는 소개처(疏開處)</p> <p>(2) 당시의 본적</p> <p>(3) 당시의 세대주(호주)와 귀하의 관계</p> <p>(4) 당시의 만 연령</p> <p>(5) 당시의 직업, 학교 등 (근무처, 소속부대, 학교명, 사무 종류 등)</p> <p>(6) 당시의 가족사항 (관계, 성별, 당시 이름, 생년월일, 당시직업, 주거지: 현재 사망자 포함)</p> <p>(7) 6개월 이내 나타난 증상의 유무</p> <p>1. 화상 2. 상처 3. 설사 4. 잇몸 등에서의 출혈</p> <p>5. 반점 6. 탈모 7. 빈혈 8.기타</p>

<표 12> 피폭자건강수첩교부신청서 중 '피폭 당시의 상황'에 써야할 내용들

* 2000년에 일본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한국원폭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신청서를 연구자가 번역한 것으로 위의 내용은 현재에도 동일하다. 다만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에서는 한글본 신청서가 존재하며, 이를 신청자가 작성한 뒤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장의 1-3절에서 인용했던 김치우 씨의 경우에는 수첩 신청 과정에서 본인을 비롯해 자신의 형제와 사촌들의 서류를 모두 작성했다. 피폭 당시의 상황을 '반쯤'되지 않을 만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서류 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제 조카들이 우리들보다 조금 늦게 했는데, 제가 우연히 그걸 적 십자 갔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보니 이름, 주소 등은 다 적었는데 그 다음에 상황 같은 거 하나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거 소설 같이 아주 상세히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빨간 펜으로 '상세기입요망' 그런 소리를 다 붙여놓고 '반쯤'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제가 꾸미는데...(중략)....그 애[늦게 신청한 사촌동생]는 서류 만들 때도 힘들었어요. 제가 동생들 하고 같이 할 때는 한꺼번에 하니까 동생들 거는 '이건 김치우 씨를 참조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애는 그걸 다 다시 적어야 하고. 또 그걸 '이랬다' 이게 아니고 '아저씨 말씀에 의하면 이렇다 하더라' 이렇게 적어야 하잖아요. (김치우, 남, 1935년생)

1. 직접피폭자 및 직접피폭자의 태아피폭자의 경우

{태아피폭자로서 귀하를 낳은 모친이 직접피폭자인 경우 그 모친의 것을 써주십시오}

(1) 귀하는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원자폭탄이 폭발한 순간) 어느 정촌(町村) 몇 번지의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시의 정촌(町村)명을 써주십시오)

(2) 귀하는 상기의 장소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 귀하는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함께 있었던 경우, 그 사람의 성명, 관계, 생사여부를 전원에 대해 써주십시오.

(4) 귀하는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옥외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옥내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장소, 건물이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0로 표시하세요)

(a) 옥내 ①목조 ②콘크리트건물 ③ 석조 ④기타 ()

(b) 옥외 ①건물의 그림자 가린 곳 ②건물 그림자 없는 곳 ③ 기타 ()

(5) 귀하는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상, 상처, 건물 등에 대해서)

(6) 귀하는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날의 행동을 순서에 따라 적어주십시오.

(7) 귀하는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2. 입시(入市)피폭자 및 구호(救護)피폭자인 경우

(1) 귀하가 처음에 입시한 곳은 어디입니까.

(2) 귀하가 처음에 입시했을 때, 함께 입시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성명, 관계, 생사여부를 전원에 대해 써주십시오.

(3) 귀하가 처음에 입시했을 때, 도중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그 사람의 성명, 관계, 생사여부를 전원에 대해 써주십시오.

(4) 다른 날에도 입시했습니까. (처음으로 입시한 날 이외)

① 들어갔다 (계속해서 들어간 사람도 포함한다) ② 들어가지 않았다

(5) 그 날짜와 입시처와 그 순서를 써주십시오. (2일 이상 들어간 경우는, 최초의 2일간에 대해서 써 주십시오.

(6) 그 때 같이 입시한 사람이나 도중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각각의 날에 그 사람의 성명, 관계, 생사여부를 전원에 대해 써주십시오.

<표 13> 피폭자건강수첩교부신청서중 '피폭의 상황'에 써야할 내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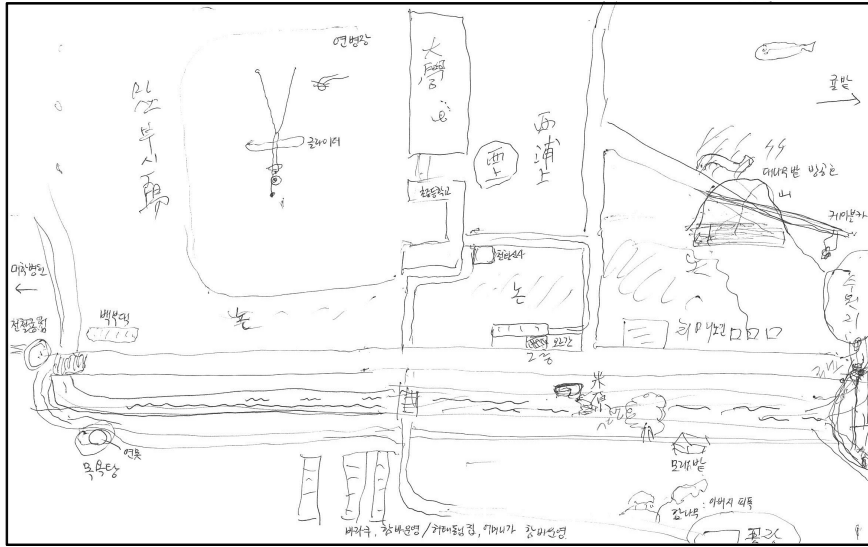
김치우 씨가 이 신청서를 쓰는 일을 '아주 소설 같이' 쓰는 것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이 피폭의 상황에 기입되어야 할 내용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 서류나 호적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일 당시의 가족사항과 제일 당시 주소, 그리고 피폭 당일의 상황과 그 직후 및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한편 위의 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폭피해자들이 겪은 장해나 피폭의 생물학적 영향(특히 만발적 영향)에 대한 언급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술서는 반드시 원폭이 투하된 날 8시 15분 경(나가사키의 경우에는 11시

30분 근처)에 어느 피폭 지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되도록 상세하게 적고 있다. 특히 앞의 피폭당시의 상황과 피폭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입하기를 요망하는 행정관료제적 절차는 히바쿠샤가 되려는 원폭피해자들의 증언과 기억이 특정한 시공간적 좌표에 따라 정형화된 틀 안으로 재배열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어디 증인이 있어요? 또 내가 아버지 친구분을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증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역전 아저씨 집이라고 통했는데, 그나마도 돌아가시고 증인이 없잖아요. 주소는 내가 웬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십자사에 이야기할 때 원폭피해자라 하니까 “증인이 있나?”, “없다.” 하니까 여러 번 이것저것 묻더라고. 근데 그 똑같은 걸 한 보름, 한 달 있다가 계속 묻는 거야. 하여튼 수도 없이 똑 같은 걸 물어. 나중에는 내가 성질을 내면서 왜 똑같은 걸 그렇게 계속 묻느냐고 그랬었어요. 결국 우리는 증인은 없었어요. (옆에 같이 계시던 회원 분들이 듣고 있다가, “신기하네”라고 말씀하심) 그리고 신청서, 그리고 내가 당했던 일 쓰고, 우리 살던데 약도 같은 거 그리고 해서 냈어요. 내 눈에 선해요. 그때 동네가. 여기는 어디고 그런 걸 다 쓰고 보냈더니, 얼마 안 있다가 사람이 온대.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린 지도랑 당시에 지도를 내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그린 부분도 설명을 했어. “공터에 에바(江波)라는 훈련장이 있었다” 같은 거.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맞다” 하면서 일 본으로 오라고 통지가 왔대. 그래 가지고 가서 (수첩을) 타게 됐지. (박정자, 여, 1934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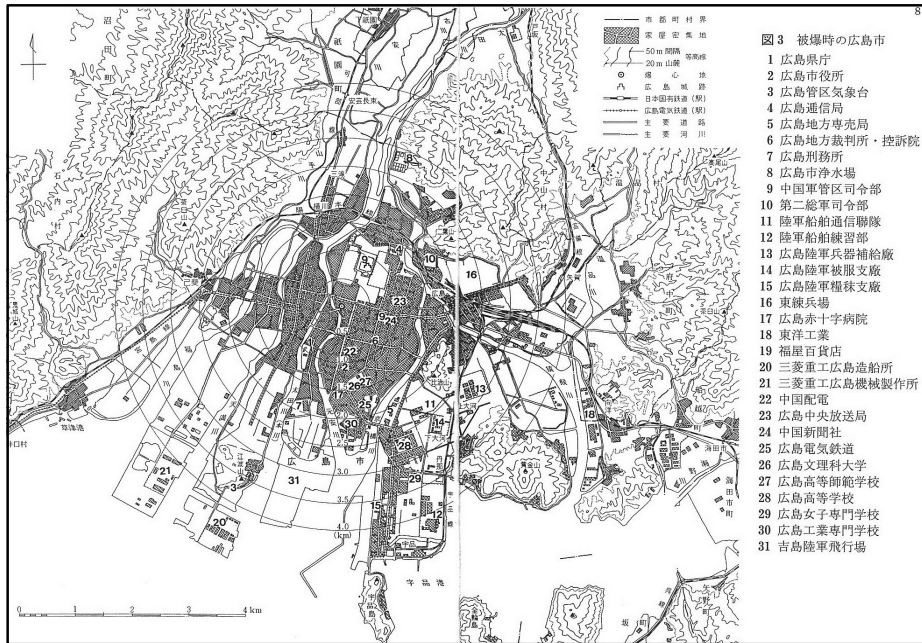
앞의 4장 1절에서도 인용한 바 있는 박정자 씨의 경우는 제일 당시 히로시마의 요시지마(吉島)에서 생활했고, 소학교 5학년이 재학 중이었던 만큼 당시에 대한 기억도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는 편이었다. 원폭피해자 지원에 대한 소식은 ‘깜깜히’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다가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알게 되었다. 적십자사를 통해 2006년에 수첩을 신청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직전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수첩 교부를 신청할 당시에는 피폭 상황을 증명해줄 사람이 없어 증인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동생의 호적상 출생지가 히로시마로 되어 있고, 자신의 피폭 당시와 히로시마 거주 당시의 공간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던 덕에 신청서에 자세한 사연과 당시 살던 곳의 주변 약도도 같이 그려서 냈다. 비록 심사 과정에서 주변의 정확한 지명 자체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살던 곳 주변의 강과 감옥, 에바(江波)에 있던 비행장 등과 같이 주요 거점이 되는 도시공간과 건물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서와 약도, 그리고 당시에 대한 기억을 구술함으로써 증인 없이, 같이 있던 다른 협회 회원의 평가처럼 “신기하게도” 수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7> 한 원폭피해자가 재일 당시 자택과 피폭 지점 등을 설명하면서 그린 지도

* 한 원폭피해자가 연구자와 생애사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그린 재일(在日) 당시 지도 (나가사키 니시우라카미(西浦上)근처). 자택 위치, 피난처, 통학하던 학교, 참배에 동원된 신사(神社), 친구의 집, 피폭 지점, 부친의 피폭지점, 친인척의 거주지, 주변의 주요 건물 등이 표시되어 있다. 재일 당시 거주지 혹은 피폭 당시 지점에 대한 감각은 피폭 지점을 중시하는 ‘수첩’ 교부 신청서 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사 과정에서는 그것이 모두 ‘사실’임을 증거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박정자 씨의 사례는 역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공간과 지역에 대한 감각이 부재하거나 혹은 희미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린 나이에 피폭을 경험하고 한국으로 귀환한 이들, 일본에서나 한국에서 글을 배워본 적이 없는 이들, 그리고 징용으로 공장에 동원되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 지역[대개 시내]에 입시한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특히 나가사키의 경우는 시내가 아니라 바닷가에 위치한 섬의 탄광에 징용되었다가 원폭 이후 시내에 사체 처리 작업에 일시 동원된 경우들이 있다—의 피폭 지역에 대한 시공간적 감각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당연히 피폭 당일의 사정을 쓴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보다 어려운 작업이 된다. 『고통의 역사』(정근식 편·진주 채록, 2005:245-258)에 실린 김동일 씨의 증언은 원폭피해자들 개인의 폭격 당시 공간/지역에 대한 감각이 이 신청서 쓰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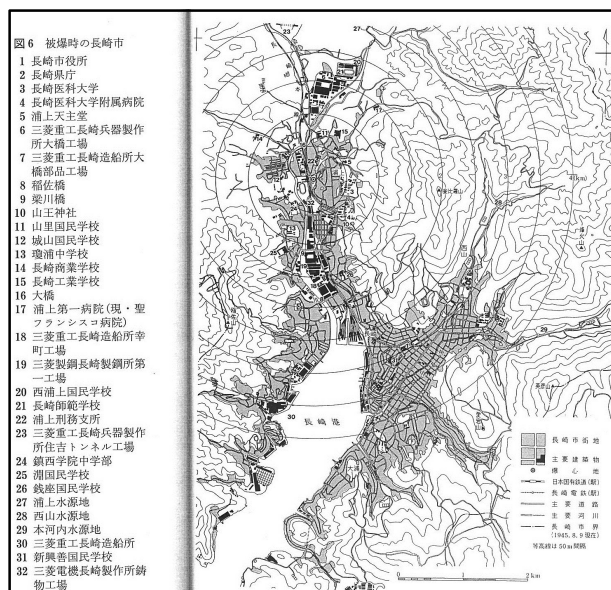
<그림 8> 히로시마 원폭재해지도

(출처: 広島市長崎市原爆災害誌編輯委員會, 2005. p.8)

*폭심지를 중심으로 500미터 간격으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 짙게 표시된 부분은 화재와 폭풍으로 전소·전파 된 지역이다. 폭심지로부터 약 1.5~2km에 해당. 일본에서 원폭피해자들의 면담과정이나 증언 과정에서 이 지도들은 거의 빠지지 않지만, 한국원폭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는 이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다. 어린 나이에 원폭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 지도상의 좌표와 지점들이 갖는 의미는 수첩교부과정 속에서 학습된다.

김동일 씨는 1923년생으로 1944년 3월에 가와나미중공업 후카오리(深堀)조선소(책에서는 줄곧 '후카보리'라고 쓰여 있다)에 징용됐다. 8월 9일 당시 편도선염을 앓으며 대학병원(그냥 병원이라고도 이야기한 곳이 더 많다)으로 치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격을 당했다. 온 몸에 당시 날아온 유리 파편들에 타박상을 입은 상처가 남아 있었으나, 그의 기억은 흐릿했다. 그는 이 증언 당시(2003년 1월)에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한 번 제대로 말했는데 다시 이야기하다가 틀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도 채록자는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면담을 할 당시이던 2003년 1월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위해 협회 호남지부 사무실에 서류와 자신의 원폭 당시 입은 상처를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그해 7월에 수첩 발급을 위한 서류 내용이 불분명하고, 피폭 당시 징용지[후카오리조선소]가 피폭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송되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증언 채록자는 이것이 김동일 씨의 말을 일본어로 통역해 서류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투리 등이 섞인 신창자의 말이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연구자 또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많이

접했기에 그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 반송의 사유가 그러한 번역과정에서의 오류뿐만 아니라 김동일 씨의 피폭 지점에 대한 진술이 불충분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에 더 눈길이 갔다. 왜냐하면 김동일 씨가 증언에서 자신이 징용된 곳을 후카보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채록자의 오기(誤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신이 이 서류 작성과 관련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그의 폭격날의 행적, 즉 나가사키의 중요 피폭 지역 혹은 공간적 지점들에 대해 큰 지식이나 의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의 증언에서 피폭 지점에 대한 묘사가 정확히 드러나는 곳은 거의 없었다. 김동일 씨는 나가사키에 있는 조선소에 징용됐던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에 징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첩을 받을 수 없었다.¹⁶⁵⁾



<그림 9> 나가사키 원폭재해지도

(출처: 広島市長崎市原爆災害誌編輯委員會, 2005. p37)

나가사키의 원폭재해 정도는 왼쪽 우라카미지구에서 더 심각했다. 오른쪽의 시가지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고, 나가사키만으로 이어지는 바닷가는 폭심지역 바깥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나가사키 만에 산재한 탄광과 공장들에서는 조선인들이 많이 동원되어 있었는데, 원폭 투하 이후 사체처리작업에 동원되어 시내로 입시했다는 증언들이 많다. 하지만 입시 피폭의 경우는 동원된 소재지가 아니라 입시한 장소가 중요하다.

이는 나가사키의 여러 탄광 지대에 징용된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경우에는 나가사키에 징용된 것 자체보다는 폭격 당시나 그 이후 어떤 경로-사체처리를 위해 입시한 경우라든가 혹은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입시한 경우-로든 나가사키 시내의 일정 구역 안으로 들어왔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신청서에는 그 피폭 지점을 쓰는 것이 요구된다. 때문에 연구자가 보기에 김동일 씨의 서류에서는 후카오리조선소에 징용된 사실보다, 그가 증언 중에 잠깐 언급했던 대학병원(나가사키의과대학부속병원의 약칭, 폭심지에서 600미터 정도에 있었다)에 통원 치료를 다녀오던 길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해 보였지

165) 김동일 씨의 징용지였던 후카오리조선소는 고야기시마조선소와 함께 가와나미중공업의 나가사키소재 조선소였다. 대일항쟁기동원피해조사및국의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2011)의 자료를 보면 이 중 후카오리 조선소에는 후생성명부에 기록된 898명의 조선인징용자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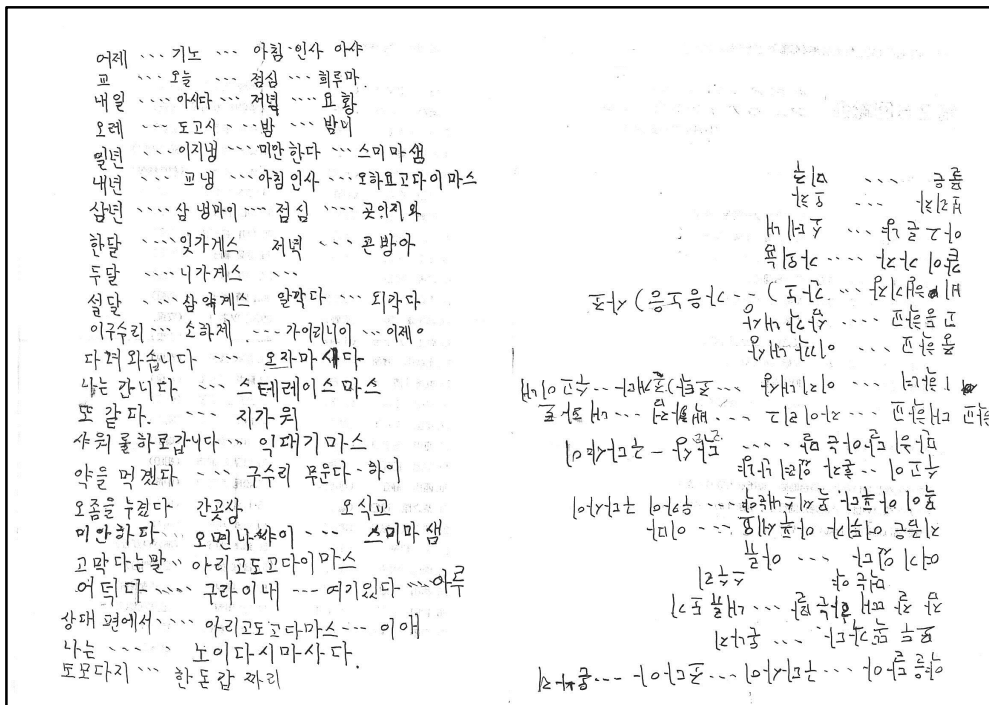
만, 그의 원폭협회 회원 가입 당시 서류나 수첩 신청을 위해 만들어 놓은 메모 어디에도 이 부분은 강조되어 있지 않았고 쓰여 있지 않았다.

김동일 씨의 사례에서도 잠깐 드러나지만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 생겨나는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다. 특히 위의 내용이 모두 일본어로 작성되어야 했던 2003년 이전까지 이 언어적 제약은 개별신청자들에게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소모하게 한 요인이었다.

(서류 작업은 누가 주로 해주셨어요? 아드님이 하셨어요?) 그 애들은 한자를 잘 모르니까. 예전에 협회나 일본 갈 때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은 복덕방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이 일제 때 순사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일본 말을 아니까 그걸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구멍 가게를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술을 받아다 주거나 돈을 얼마를 주거나 하면서 그 아저씨가 써줬어요.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쓰기도 하고, 또 협회에서도 써 준적도 있는데, 그건 그냥 써주더라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타주고 하니까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도 잘 알아도, 서류 같은 거 복잡한 거 쓸 때는 2만원이라도 주고 그랬지요. 간단한 거는 그냥 술을 받아주고 그랬지요. (목순우, 여, 1932년생)

원폭 후유증으로 양친 부모와 형제들을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에 혼자되어 국문 배울 기회도 없었던 목순우 씨는 1986년 독일치료를 위해 일본에 가서 수첩을 받았다. 수첩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협회에서나 혹은 일본어를 아는 복덕방 주인에게 대필을 부탁했다. 그래도 그녀는 기억이 환했기 때문에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 잠시 남의 손과 약간의 비용이 드는 것만 감수하면 되는 경우였다.

수첩교부 과정에서 신청서 쓰기에서 이 언어적 제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서류 작업의 복잡성과 (번역과 통역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었다. 제일 당시 소학교 고학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어렸거나 혹은 일본어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이 언어적 제약은 상당했다. 그리고 이는 한글로 서류를 작성해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에서 번역을 거쳐 수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오늘날에도 개별적으로 일본에 독일해 수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림 10> 한 원폭피해자가 독일치료 당시 한글로 적어놓은 간단한 일본말

이 메모는 피폭 당시 여섯 살이던 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독일치료를 위해 일본의 병원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간단한 일본어들을 한국어로 적어놓은 것이다. 입퇴원 수속이나 의사 면담 등 중요한 때에는 통역자가 있거나 자원봉사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도 많았다. 인사말, 날짜 등을 비롯해 ‘약을 먹졌다’, ‘목이 아파다’ 등과 같은 말들이 적혀 있다. 채일 당시 소학교 고학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어렸거나 혹은 일본어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독일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수첩신청과정 등에서도 역시 이 언어적 장벽을 넘기 위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2) 기억과 기록의 상호구속과 교정, 그리고 학습

원폭이 투하된 후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에 따라 기억 또한 희미해지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뒤늦게 수첩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서류를 만드는 작업의 어려움은 단순히 쓰기라는 기술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다. 특히 피폭자건강수첩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폭의 경험을 쓴다는 것은 당사자의 당시에 대한 기억이나 이해, 경험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와 행정관료제적 형식에 맞게 재배열되면서 물화되고, 그 정도가 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에 맞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은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쓰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끔은 학습과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의 각종 서류를 정리하며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상상하는 연구자가 그들보다

그 당시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2012년 12월은 연구자가 협회에서의 공식적인 현지조사를 마치고 1년이 훨씬 지난 때였다. 집에서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때였는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조심스럽게 연구자의 이름을 확인하며 말을 건넨 그 분은 자신의 친척 누이의 수첩 신청 때문에 연락을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연구자가 협회에 있는 동안 정리했던 자료와 회원들의 증언을 봤는데, 연구자가 그 작업을 했으니 원폭 당시의 상황을 잘 알 거라면서 수첩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피폭자건강수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과 심사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봐온 연구자는 원폭이 투하된 7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 그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이 얼마나 지난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약속을 잡았다. 일주일 뒤에 연구자는 전화를 걸어왔던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수첩 신청을 도와주려했던 피폭 당사자였던 황경이 씨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연구자가 자리에 앉자, 전화를 걸었던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들을 꺼내면서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폭피해 당시 누이의 호적 자료, 누이가 피폭 당일 어머니와 함께 잠시 머물렀던 큰아버지 댁의 히로시마 주소, 직접 그린 당시 가게도, 그리고 협회의 회원증도 있었다. 누이는 이미 원폭협회 ‘회원’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언니가 신청하는데 덩달아서 ‘회원’에는 가입했지만,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기르느라 중간에 ‘이런 혜택-수첩을 가진 사람에게 원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생긴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했다.

누이는 원폭 당일 해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큰어머니의 산후조리를 위해 큰댁에 머물고 있던 어머니의 등 뒤에서 폭격을 맞았다. 폭격 직후 발생한 화재로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꺾어진 채로 화상을 입어 손가락 안쪽이 녹아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손을 펴지 않는 돌쟁이 아이였든지라 그것이 화상 때문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좀 더 커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아 그제야 화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정도로 신체에 원폭의 흔적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뒤늦게 수첩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는 증인도 없고, 각종 서류를 작성하려니 돌쟁이 때 어머니 등 뒤에서 당한지라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기억이 있을 리 만무했다. 본인의 출생지 또한 히로시마 외곽의 작은 마을로 나와 있는데, 폭격 당일 있었던 곳은 자신의 다른 어떤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았으니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어 수첩을 못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같은 해 적십자사로부터 증인이 없어도 기억이나 정황만으로 수첩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 왔고¹⁶⁶⁾ 마침 글 아는¹⁶⁷⁾ 친척 동생인 이 할아버지가

166)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서 ‘증인’ 없이 ‘증언’만으로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결정한 장영준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4장 5절 표 참조), 2012년 하반기에 적십자사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가입된 회원 중 ‘수첩’이 없는 이들에게 ‘수첩’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67) 또한 이것은 글을 쓴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는 ‘글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2003년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가 중간에 ‘번역’을 해주는 일을 공식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일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글을 안다는 것’은 ‘일본어를 안다는 것’이기도 했다.

도와주기로 해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니 원폭 시점과 원폭 당일 그리고 그 이후 며칠 등등 글로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 볼까 해서 협회를 찾아갔지만, 이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우연찮게 연구자가 협회에서 정리했던 자료와 증언들을 보면서, 거기에 몇 시 몇 분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렇게나 적어서는 '불합격' 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구자는 이 날 그 간 연구자가 학습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가며 이전의 회원들의 서류들 속의 내용들을 참작해서 신청자와 신청을 도와주는 친척 동생의 이야기 속에서 서류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개의 문장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심사에서 꼭 말해야 하는 것들을 짚어주었다. 앞의 김동일 씨의 사례처럼 원폭을 경험했다는 것이 심사에 적절한 요소들에 따라 배열되지 않은 경우, 그 경우는 심사에서는 반드시 '결격' 사유로 수첩 교부 각하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에서 원폭피해자들의 수첩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에 요령있는 사람들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날처럼 연구자가 신청서를 쓰는 작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움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구자는 원폭피해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나 또 처음 히로시마에서 수첩을 신청하러 온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에도 그들보다 폭발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에는 심사에 대비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준다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거나 혹은 제일 당시 살았던 동네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중요한 공간적 장소들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 연구자가 한국원폭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원폭피해자들과의 만남이나 그들의 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피폭체험기를 보고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원폭 피해 상황에 대해 학습하며 상상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상과 문자로 재현된 '그 날'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구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지기 직전의 전시 상황, 건물 소개 작업 상황,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심지도와 그 안에 표시되는 중요 지점과 공간들, 폭격 당일의 기상 상황, 폭발 후의 화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과 그 영향 범위, 폭풍과 열과 방사능의 분포 정도, 화재 발생의 진전 과정, 폭발 후의 방사능 영향에 대한 데이터, 원폭의 급성장해와 사망에 이르는 과정, 원폭 후 피난과 구호 과정에 대한 객관적 정보 등을 의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었다.

<그림 11> 8시 15분을 형상화한 조형물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한편에 자리 잡은 조형물로서, 희생자명부가 보관된 건물 위에 설치되어 있다. 8월 6일 8시 15분에 히로시마평화기념식전에서 울리는 평화의 종소리는 국영방송인 NHK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히로시마평화기념박물관에 보관된 히바쿠사의 증인들의 상당수 그리고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이 시각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기점으로 재구성된다. (2007년 1월 연구자 촬영)



<그림 12> 8시 15분을 지나 멈춰 있는 시계

이 사진은 히로시마평화기념박물관에 전시된 실물을 사진으로 찍어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 지어진 '핵박물관'(Nuclear Museum)에 전시한 것이다. '리틀 보이'(little boy,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별칭)가 떨어진 시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히로시마의 원폭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구조물과 영상 속에서 자주 인용된다. 일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물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시각은 물론 8월 6일이라는 날짜도 제대로 기억되지 않는다. (2013년 3월 연구자 지인 촬영)

무엇보다 연구자는 일본의 원폭기념박물관이나 자료들, 그리고 영상물들을 접하며 이러한 매체들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피폭의 순간이나 그 경험이 공적으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중시되는 부분들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체험기나 이야기들 속에서 개별 원폭피해자들이 경험했던 고통스럽고 끔직한 풍광들에 대한 상상은 결코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이해하는 것에는 절망적일 정도로 이르지 못했고, 이를 수도 없었으나,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을 상기하는 틀이 필요할 때, 혹은 원폭 투하 당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수첩 신청의 행정관료제적 통과이레 절차에서는 연구자의 학습된 지식들이 그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거나 교정하고, 재배열하는데 필요한 구석이 있었던 것이다.

피폭의 상황을 서술하는 데 있어 연구자와 원폭피해자 간에 만들어진 이 역설적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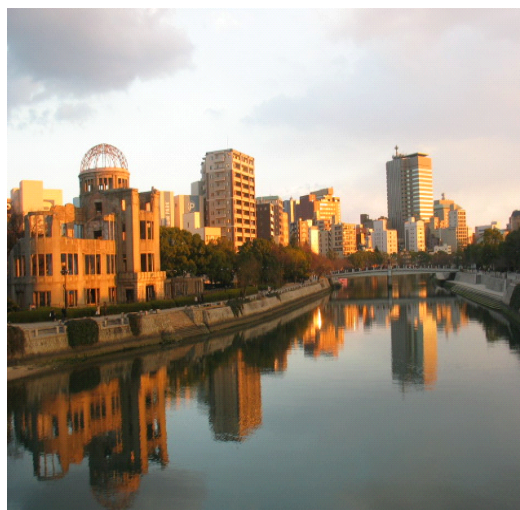
은 일본원폭피해자들에 비해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이 신청서 쓰기가 (단순히 언어상의 문제를 넘어서) 왜 더 어려운지를 잘 말해준다.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원폭3법의 적용에 있어 시정권의 논리를 들어 한국원폭피해자들을 히바쿠샤의 경계 밖으로 배제해 온 402호 통달은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선긋기이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히바쿠샤 경계 넘기는 오랫동안 시간적·물리적으로 지연(遲延)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지연된 시간 동안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기억도 자연발생적으로 희미해져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원폭에 대한 사회문화적 담론과 이해,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도시 공간의 지형지물에 대한 기억과 감각의 차이는 그 망각의 질과 양, 그리고 속도에 확연한 차이를 낳는다.

할아버지가 고물상 하러 간다고 가고, 아버지는 화물 관계로 고이철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나봐요...(중략)...우리 집은 고이 역에서 조금 내려와서 화원이 있고 꽃밭이 있었는데 그 옆에 역관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집이 강 넘어 물이 넘어오고 그래서 물이 한 번씩 넘치고 그랬어요. 바로 독 뒤에 있었으니까. 지금은(수첩 받을 당시) 가보니까 아주 물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나기를 거기서 났으니까 거기서 한 칠팔년 살았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별로 몰라요...(중략)...그리고 그 강 너머로는 소 잡는 데 후쿠시마. 어머니는 거기 염색공장에 다녔어요. 염색을 잘 했어요. 하얀 광목 같은 거 그런 거를 염색하는 걸 한국에서도 잘 했어요. (나는) 고이국민학교 1학년 다녔는데 그 날은 안 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 당시 고모가 5학년이었는데 4층이 교실이었던 거예요. 나는 1층이고. 그럼 내가 집에 갈 때 고모네 교실에 가서 항상 한국말로 ‘고모, 나 집에 간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고 집에 가면 집에 와서 고모가 한국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고 화를 내고 혼내고 그랬지. 조센징 표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중략)...나는 심사할 때 내가 고이역 근처 어디 살았다 하니까 심사하던 꼼추인 사람이 “됐다” 하면서 몇 마디 안하고 바로 받았어요. 사실 나는 관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수첩 받으러 가서 가보니까 안 거지요. 근데 그 심사하는 사람은 알지요. 원폭도 어디다 때렸다 하는 거니까 어딘지 알지, 그때는 몰랐지요. 원폭 그 날도 잘 생각은 안 나오. 우리는 그때 어른들 하는 대로 따라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기억은 하늘에 먼지 날아다니던 거 그런 거고, 다다미라고 그런 거 날리던 거 그런 거만 생각나. 힘이 얼마나 썩는지 모르지, 다른 거는 뭐 기억이 남지 않아요. 원폭피해라는 것은 요즘 확실히 안 거지. 실감은 해본 적이 없어요. 원자폭탄을 던졌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어떤 병이 있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모르고 지냈지요. 솔직히 2004년에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에도 가보고 (히로시마평화)박물관에도 가보고 하면서 아는 거지. 바로 한국 왔으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강재우, 남, 1939년생)

강재우의 가족은 조부 아래 가족들이 모두 고이 근처에 모여 살았다. 아버지는 고이 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고, 어머니는 도살장이 있던 후쿠시마 강변에 있는 염색공장에 일을 하러 다녔다. 원폭 당일에는 비교적 폭심지에서 자택이 멀어 다행히 가족 중에는 큰 부상자

는 없었다. 소학교 1학년까지 고이에 있었지만, 강재우씨가 수첩을 받을 당시까지도 자신이 살던 고이나 어머니가 다니던 후쿠시마, 원폭이 떨어진 지점 그 어디도 그의 기억 속에는 명확한 것이 없었다. 수첩을 받기 위해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비로소 자신이 서류에 쓴 곳(주택, 모친의 공장, 폭심지 등)의 장소들을 다 안내 받았고, 박물관과 공원을 돌아다니며 원폭에 대해 알게 됐다. 히로시마와 원폭투하에 대한 강재우씨의 기억은 불분명했지만, 그의 서류 작업은 그곳을 잘 아는 지인에 의해 이뤄졌다.

그림 13 아이오이교(相生橋)에서 바라본 원폭 돔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목표지점으로 삼았던 아이오이교는 하늘에서 봤을 때 상류로부터 흘러오던 오타(太田川)강의 물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T-자형을 이뤄 육안으로도 쉽게 관측이 됐다. 이곳을 목표로 해서 투하된 원자폭탄은 그곳에서 조금 빗겨난 지금의 폭심지에 떨어졌고, 주변 대부분의 건물이 전소·전파된 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 들만이 겨우 형체를 남겼다. 히로시마 원폭의 전형적인 표상으로,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히로시마에서의 옛 시절의 생활공간과 상관없이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이곳은 이제 히로시마의 시공간을 상상하거나 설명하는데 중요한 거점으로 이용된다.



강OO씨 사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기억을 신청서로 쓰기가 협회나 친인척이나 지인 등과의 사회문화적 연출망 속에서의 정보교환에 의해 보완된 경우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례는 역으로 그러한 사회문화적 연출망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들의 경우 서류 쓰기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면서 보완이나 교정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도 짐작케 한다. 즉 현실적으로 이러한 실패는 주로 어린 나이에 원폭을 경험했으나 그것을 전달해줄 수 있는 부모 혹은 친인척이 없는 이들, 글을 알지 못해 원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2,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상징은 전후 내셔널리즘의 한 축으로서 이해되어 왔고, 그와 함께 원폭 피해와 그 경험,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시공간에 대한 영상 및 문자적 재현, 그리고 원폭피해에 대한 생의학적/법적/제도적 담론들 또한 한국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유통된다. 앞서 연구자의 원폭에 대한 의도적인 학습의 자료의 대부분이 모두 일본 사회에서 생산된 자료이며, 현지조사 기간 동안 연구자가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의 원자폭탄의 경험의 사회적 재현에 대한 간극은 그 자료의 양적 차이만큼이나 컸다. 이는 일본 원폭피해

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이러한 영상 및 문자적 재현물이나 법적·의료적·제도적 담론들에 참고하거나 준거해 구성하거나 재구성하고 혹은 때로 해체해갈 기회를 얻거나, 혹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재현이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기억에 의해 역으로 구성되거나 재구성되고 또 해체되어가기도 했음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과 원폭 피해자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망각 혹은 역사적 망각이라고 할 만큼 무지했고,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협회나 친인척 연줄망에 의해 원폭에 대한 이야기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본인이 원폭피해자 당사자라 하더라도 그 기억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시공간에 대한 감각은 개별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그들의 기억을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교정하거나 혹은 간직 하는 기회는 많지 않다. 기억과 기록의 사회문화적 상호구속과 교정능력과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기억을 재배열하거나 준거할 기록을 한국 사회에서 접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3) 심사될 기억의 정형화

신청서 쓰기가 피폭의 상황을 개인의 체험과 기억에 기반을 두어 작성하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신청서는 단지 자신들의 기억을 있는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에 적절한 '관료제적 형식'(bureaucratic aesthetics)(Göpfert, 2013)¹⁶⁸)에 맞게 구성되고 작성되어야 한다. 즉 이들의 신청서는 단순히 자신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쓰는 차원이 아니라, 기록물과 영상, 사회적 담론 등을 통해 원폭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재현해 놓은 일본 사회의 공무원, 더욱 정확하게는 원폭에 대해 학습한 일본 공무원의 객관적 지식과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작성되어야 한다. 신청서 쓰기는 원폭의 경험과 관련된 특정한 지식이거나 상황 혹은 기록 그리고 특정한 내러티브들을 참조하거나 준거해 교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런 점에서 원폭 피해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관료제적 형식에 따라 완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일부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서 간직되는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연구자는 한국 원폭피해자들과의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 대신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진술서로 전달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회적으로 원폭 피해에 대한 소통의 장이 많지 않고,

168) Göpfert는 나이지리아 경찰들에 대한 민족지적 작업을 통해 이들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문서 작성이 갖는 의미를 '관료주의적 미학'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는 관료주의의 작동 방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서 작성이 일정한 미학적 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관료제적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미적 형식 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 업무가 이뤄지는 실용적 측면과 법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결합되는 부분으로, 이들에게 문서의 미학은 그 형태와 스타일, 그리고 내용의 모든 측면을 만족시켰을 때 완성된다. Göpfert가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관료제적 미학'은 관료들이 작성하는 문서에서의 미학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연구자는 이것이 관료제적 행정에 편입되는 민원인(본 연구에서는 피폭자건강수첩 신청자)들의 문서 작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학'이라는 표현보다는 '형식'으로 바꾸어 적용했다.

원폭협회나 피폭자건강수첩 신청과 같이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피폭 경험을 나누게 되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 이렇게 기억과 쓰기는 더욱 심사라는 형식에 맞추어져, 진술서의 형태로 나타난다.

<피폭상황진술서>¹⁶⁹⁾

진술인 되는 장영준은 원폭이 떨어졌던 때에는 나가사키 현 히가시소노기 군 가와타나마치(東彼杵郡 川棚町) 구 일본육군헌병대 목조건물(토목함바)에 있었습니다. 8월 12일 오전 11시경 입시했습니다. 부친 오카다 사부로(岡田三郎)가 운영하며 살던 나가사키 시 혼고우치 수원지 근처 국도측 함바(토목)에 계시는 부친의 안부가 염려되어 원폭투하 이틀 후에 부친을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65년 전 과거의 일이라 2일째였는지 기억이 어렴풋합니다. 저도 벌써 81세입니다. 원폭이 떨어졌을 때는 15세였습니다. 아침 일찍 가와타나 역에서 나가사키행 기차에 올라 나가사키로 향했습니다. 나가사키 시내에는 열차가 통행할 수 없어 미치노오(道の尾)역 근처에서 내려 걸어서 우라카미를 통해 나가사키 역 근처를 돌아 혼고우치의 함바 근처로 갔습니다. 나가사키 시 공습 이후 부친 오카다 사부로(장기선)의 소식이 전연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입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폭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대공습이었다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미치노오에서 기차를 내려 폭심지 우라카미를 통과한 후 나가사키 역전을 돌아 호타루자야(螢茶屋) 전차 차고를 통과 혼고우치 2초메 수원지 도로변의 부친이 운영하며 살던 토목함바에 도착했습니다. 함바는 목조 기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아래 비탈길 쪽에 절이 2개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입시처까지의 길 순서는 자택 가와타나마치->가와타나역->이사하야(諫早)역->미치노오역->도보->우라카미폭심지->나가사키역전->호타루자야->혼고우치 함바...(중략)...도중 이사하야 역 뒤편에는 이재자가 많았습니다. 옷은 전부 타고 피부는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벗겨져 암적색의 하지가 노출된 상태로 피부에서는 피와 진물이 섞여 끈적끈적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앉지도 못하고 맨발로 멍하니 서있었습니다...(중략)...매일 그랬습니다. 8월 12일부터 11월 중순경까지, 약 3개월간 입시했습니다...(중략)... 약 3개월 후인 11월 하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후 저의 부친 장기선은 피폭의 원인으로 1961년 6월 12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도 입시피폭의 영향으로 몹시 나빠져 빈혈, 고혈압,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기타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단지 희망은 일본현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의 진단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저의 피폭상황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진술인 장영준

추신. 저는 이번에 3번째 나가사키 시를 방문해 원폭피폭자수첩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폭의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 각하 당했습니다. 원폭 후 6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곳도 건물도 도시계획 정비로 없어지고 고향의 어른들을 찾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69) 장영준 씨는 1930년생으로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 일본어가 더 익숙하고 한국어는 맞춤법조차 어색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 편지 또한 일본어로 된 것을 연구자가 번역했다.

위 진술서는 연구자가 앞에서 언급했던 장영준 씨(1930년생)의 진술서로 그는 여기에 쓰인 진술서와 그의 증언만으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진술서는 연구자가 현지조사 하는 시기에 협회로 도착한 편지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일본에서만 교육을 받았던 터라 일본어로 적힌 것을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장영준 씨의 경우에는 폭격 당시에는 나가사키 시내에 있지 않았지만, 시내에서 함바를 하던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자 시내로 진입해 찾아 나선 경우였다. 장영준 씨의 진술서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가 자신이 돌아다니던 나가사키 시내의 지점들, 특히 전차 역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다는 것이다. '입시피폭자'의 경우 호적에 기록된 자택 주소가 피폭지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그들이 입시한 곳이 어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영준 씨는 앞의 김동일 씨와 달리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고 제일 당시 나가사키 시내에서 함바를 운영하던 부모님에게 자주 오갔고,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도 귀환 등을 위해 가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가사키 시내에 오가는 전차 등을 타고 다녀서 비교적 상세하게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가사키시정부는 장영준 씨가 세 번에 걸쳐 신청한 수첩 교부 신청을 각하했고, 법원은 그의 진술 내용이 '피폭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그에게 수첩 교부 신청을 허가한 것이었다.

한편 이 진술서들은 수첩을 신청한 이들이 당시 필요한 절차에 따라 쓴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자꾸 희미해지고 영키게 되면서, 기억을 확실히 남겨 두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연구자처럼 한 번씩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쓰기도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 그 날의 기억을 해야 할 때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진술서들은 수첩 신청 시에 필요한 기억을 쓴 기록이기도 하지만, 기억되기 위한 기록이기도 한 것이다.

다른 말은 인자 할 말이 없소. 내가 할 말은 더 이상 없어라. 헛갈리고, 이랬다저랬다 하든 쓰겠어요? 오죽해서 내가 어깨를 못 쓴 게 요것을 세밀히 적어놨을 것이요? 근데 다른 말은 할 것이 없어. 맞는 말 했다가 또 물어보면 틀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인자 마감이제? (『고통의 역사』(정근식 편·진주 채록, 2005:258)에 실린 김동일 씨의 증언 中)

물론 피폭의 사실을 쓰는 것이 한국원폭피해자들에 있어 갖는 독특한 의미 또한 짙을 필요가 있다. 사실 피폭의 상황이 기억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한국원폭피해자들만의 독특한 양상은 아니다. 이 기억을 쓰고, 말하고, 기록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기록의 목적과 청자(audience)는 훨씬 다양하다. 일본의 원폭피해자들도 수첩을 신청하기 위해 그들의 기억을 쓰지만, 일본에서 '히바쿠샤'들의 글쓰기와 증언은 단순히 원폭피해자구조정책에서 히바쿠샤의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세대에, 그리고 전 세계에 전해져

야 할 것으로서 그들 히바쿠샤의 체험은 공적인 집회에서도 그리고 대안적인 사회운동에서도 다양한 지점에서 다양하고 모순적인 형태로 말해지고, 쓰여진다.¹⁷⁰⁾ Yoneyama(1999)가 누마타 씨나 토요나가 씨 등과 같이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중요한 축으로서 '피해자로서의 일본'을 강조하는 주류적 히바쿠샤 담론에 대항하는 이들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듯이 일본 사회에서 원폭에 대한 기록과 증언은 이를 둘러싼 복잡한 기억의 정치의 장이다.

그러나 많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원폭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는 것의 청자는 대개 심사하는 담당공무원이나 일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심사에 맞춰진 진술서와 그에 기반한 증언들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험에서 식민의 경험과 같은 정치적 요소들이 배제된다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구자가 생애사 인터뷰를 행하는 과정에서도 가끔 경험했던 것으로 연구자는 인터뷰를 끝내고도 "일본 사람이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느냐" 혹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일본에서 심사하러 온 것이냐"는 말을 듣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 또 그런 경우 대개 자신들이 써놓은 진술서를 전달해주는 것으로 만남을 마감하려는 경우도 많았다. 당연히 이러한 진술서의 작성 스타일은 '일제의 피해자'가 아닌 '원폭의 피해자', 좀 더 명확하게는 '피폭된 사람'을 걸러내는 첫 번째 경계 통제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3. 문서의 매개와 위계

1) 이재증명서, 명부(名簿): 식민모국과 전후(戰後) 일본에서 생산된 문서

수첩을 받으려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신청서에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을 쓰는 일이 히바쿠샤의 행정관료제적 경계를 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자신이 피폭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나 기록을 찾는 것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문서나 기록을 통해 피폭의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원폭피해자 구호 정책에서 히바쿠샤의 경계를 행정관료제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생산된 기록과 문서들이 다시 이들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피폭의 사실을 재구성해내는 데 동원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히바쿠샤로 인정받기 위해 수첩을 교부받으려는 사람들은 자신들

170) 물론 일본에서 이렇게 '히바쿠샤'의 증언과 글쓰기 등의 활동이 모든 '히바쿠샤'들에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개별 원폭피해자들에게 있어 자신이 '히바쿠샤', 즉 '피폭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쉽지는 않은 일이다. 다만 여기서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러한 피폭 체험에 대한 증언과 쓰기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된 내러티브로서 사회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으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준거할 내러티브를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의 ‘피폭의 사실’을 증명기 위해서 무엇보다 ‘당시’에 생산된 기록이나 증명서와 증인을 증거로서 수반해야 한다. 가령 법시행과 관련된 통지에서 이런 서류로는 1) 당시의 이재(罹災) 증명서,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앞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경우 당시의 서간, 사진 등의 기록서류, 3) 그것이 없는 경우 시정촌장 등의 증명서 등이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被爆者援護法令研究會, 2003:200). 이는 히바쿠샤의 경계를 과학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선택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 행정관료제적 대안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히바쿠샤의 행정관료제적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낳을까?

본 절에서는 이러한 행정관료제적 통제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왜 그것이 좀 더 차별적이고 배타적으로 효과를 드러내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첩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증명이 되는 서류 중 가장 틀림없는 것은 당시의 이재증명서,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혹은 당시의 서간이나 당시의 시정촌장이 발행한 증명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선 ‘당시의 시정촌장이 발행한 증명서’는 ‘고국’으로 귀환한 한국원폭피해자들 중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여전히 친인척이 남아 있어 그 연줄망으로 인해 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증명 방식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재증명서나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있어서도 크게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결국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당시’의 증명서는 이재증명서와 같은 직접적인 기록보다는 그 ‘당시’ 자신들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이를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의 소재를 증명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일본에서 생산된 공적 문서(official documents)가 가장 권위를 갖는다.

저는 그때 어릴 때지만 우리 오빠는 나이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오빠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건설하는데 돌아다녔어요. 중학교 다닐 나이인데 공부는 안하고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었어요. 건설 중에도 도비(薦)171)라고 해서 건물 꼭대기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는 거 위험한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중략)...제가 17살일 때인데, 소학교고등과 2년을 배우고 졸업할 때가 되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죠킹쿄쿠(貯金局)나 시청 둘 중에 원서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조선 사람들은 잘 못 들어가는 데니까, 우리 친척들은 “아예 넣지를 마라”, “어차피 넣어 봐야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면접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면접관 중에 하나가 가족사항을 보다가 우리 오빠 직업이 도비라고 적혀 있으니 그걸 보고 “너 혹시 조선에 친척이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리마스”(あります),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은행 같은 데는 한국 사람들 잘 안 넣어주잖아요. 신원증명이 중요하니까. 그

171) ‘도비쇼쿠’(薦職)라고도 한다. 토목·건축 공사장의 노무자 중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비계를 세워 놓고 지붕 공사 등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른다.

러니까 자기들도 고민이지요. 시험 성적은 너무 좋으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저보고 미모토쇼메이쇼(身元証明書), 신원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국에 가서 떼어 오라고 하는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작은아버지가 있기도 하고, 그냥 내가 고령군 쌍림면 면주재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면에서 "이 사람은 틀림없다" 하는 편지가 왔는데, 면장 도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행 면접관)이 나를 부르더니 이거는 도장이 없어서 안 된다 다시 내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이제는 제대로 해서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받아서 17살에 들어가서 1년 7개월 근무했나 봐요. (1928년생, 양점이)

1928년에 경북 고령에서 출생한 양점이 씨는 일곱 살 되던 해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가 일하고 있던 히로시마로 건너갔다. 아버지와 장성한 큰 오빠는 모두 건축 일에 종사했고, 그녀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고등과 2년까지 학업을 지속했다. 졸업할 때에는 성적이 좋아 담임선생님의 추천에 따라 히로시마저금국에 취직했는데, 당시 히로시마저금국 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었다. 폭격이 있던 날은 "살려고 그랬는지"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가는 전차를 탔다. 회사 건물에 들어서고 가방을 놓고 막 일을 하려고 의자에 앉던 순간 콘크리트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유리창이 모두 폭풍에 깨져 건물 안으로 들어와 온 몸에 박혔다. 한참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출혈과 통증으로 온 몸이 퉁퉁 부어 있는 상태였다. 정신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간 것이 폭격 후 5일째 되던 날이다.

폭격 때 출혈이 아주 심했어요. 보따리 같은 거 주워서 차매고, 내 몸뚱이만 데리고 나왔어요. 센다마치(千田町)가 폭심지에서 1.5킬로라. 아마 다른 건물 안에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중략)...우리 오빠도 (저를 찾으러) 저금국에 갔었는데요. 근데 죽었겠다 싶어서 시체만 들춰 보며 다니다 갔다고 하더라고요...(중략)...저는 가족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우리 어머니랑 형제간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미숫가루를 만들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나를 찾으면 준다고.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나를 보고 말도 안하고 마치 귀신 보듯이 이게 뭔가 싶어 하더라고요. (한참 말을 잊지 못하시다가) 부모님은 제가 많이 다쳤으면 "죽는 게 낫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있었는데, 11월 가을쯤 되니까 한국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미군들이 들어와서 처자들을 전신 강간하고 그런다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가자고 하더라고요. 왜 아가씨들 마후라 메고 무슨 아가씨라 하던데, 미군들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오빠가 걱정을 했나 봐요. (양점이, 여, 1928년생)

해방이 되고 고향에 돌아온 양점이 씨는 한동안 한국말을 몰라 시집을 바로 가지 않고, 그때로서는 늦은 나이라고 하는 스물한 살에 시집을 갔다. 살림은 돌볼 줄 모르는 남편을 두고 혼자 부산으로 나가 과일 도매를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원폭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한참 원폭피해자들 보상해준다는 소식이 들릴 때 원폭협회 부

산 지부를 찾아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회원 가입은 시켜주지도 않고, 수첩을 내고 싶다고 해도 “그거 받아봐야 소용없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그러던 중 1994년에 우연히 과일 가게에서 구레(吳)¹⁷²⁾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수첩 받는 인연이 됐다.

이노우에 우라유키라고 그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제가 다니던 직장에 직접 가서 명부를 찾았나 봐요. 제가 이름이랑 본적지랑 직장 이름을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직접 직원대장을 찾았는데, 첫날에 못 찾고, 둘째 날에도 못 찾았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아닌가” 했는데, 삼일 만에 내 이름 그대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면서 이걸 증명서로 해서 제가 그 수첩을 냈거든요. 그게 94년도예요. 그리고 제가 적십자에도 제대로 등록을 했어요. 그것도 면담을 하고 들어갔어요. 왜 이제야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명확한 사람이. 제가 이것 때문에 회원들이 10만원 받는 것도 2년 후에나 받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증인도 필요 없이 됐지요. 근데, 내가 그때 (수첩 받으러 일본) 가서 “저금국에서 해방되고 4천 엔 찾아가라는 엽서가 왔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그건 그때 2년 기한으로 된 것이라 안 찾아가는 것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공제조합비도 안 받았지요, 퇴직금도 안 받았지요, 월급도 못 받았지요. 근데 그거 소송을 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양점이, 여, 1928년생)

양점이 씨가 수첩을 받았던 때는 협회에서 수첩이 있어야 회원의 자격을 주기 시작하던 1994년이다. 한국원폭피해자로서는 아주 이른 시기도 그렇다고 늦은 시기도 아니었지만,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히바쿠샤의 행정관료제적 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는 일본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재증명서는 아니었지만, 일본 현지에서 생산된 공식 기록으로서 직원 명부는 그에 준하는 것이었다. 양점이 씨가 히로시마저금국의 옛 직원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 수첩을 받는 것은 당시 슈코쿠 신문에도 게재됐을 만큼 화제가 됐다 (아래 <그림 15>). 히바쿠샤의 경계를 넘는 데 있어 이러한 명부들은 단순히 이름이 적힌 종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명부는 히바쿠샤의 경계에 대한 행정관료제적 통제가 이뤄지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172) 히로시마 시 동쪽에 인접한 해안 도시로서, 전전(戰前)부터 일본 해군의 주요 거점 도시였다.



<그림 14> 옛히로시마저금국이 소개된 소학교 책자

한 원폭피해자가 제일 당시 다녔던 히로시마저금국. 폭심지에서 1.5km 떨어져있는데,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었으면 살아남기 힘든 거리였다. 현재는 센다(千田)소학교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직원명부에서 이름을 찾지 못했다면, 이 건물을 찾아 당시 상황을 재연했어야 했을 것이다. (2011년 7월 연구자 촬영)

<그림 15> 재일당시 직장에서 찾은 직원 명부

히로시마저금국의 옛 직원 명부에서 본인의 이름을 찾고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이 주고쿠신문에 실린 것을 스크랩한 것. 신문의 제목은 'ヒロシマ(히로시마)의 기억 영원히-50년 전의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 도일 치료 한국여성 중구의 모교에서 조사' (2011년 7월 연구자 촬영)



히로시마에서는 철도공기부가 야가마치(矢賀町)에 있었고, 그 바로 옆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살았어. 그 중심에서 3.8키로더만. 나는 맨 기술사무직으로 일을 한 거야. (철도와 관련된) 부품 같은 거 만들어지고 제작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일을 한 거지...(중략)...아버지가 당시에 시내 중심가 건물 소개(疏開)를 가셨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거기서 피폭을 당했어요.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 아마 폭탄이 뒤에서 터졌나봐. 그래서 뒤에 등 쪽이랑 다 화상을 입어서 뭘 덮어쓰고 집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14일에 돌아가셨지. 그 당시만 해도 첫날에는 공장에 약이라도 조금 있으니 발라주고 해서 괜찮고, 지금만 같아도 살지. 근데 그 다음날 가니 약이 아무것도 없어. 온 전체가 다 환자니까. 그러니 집에서 소금물이나 닦아주지. 그렇게 돌아가시니,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공서를 가보니 적당한 데서 태워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 내가 뭐 어떻게 공장에 가서 화물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리어카에 싣고 강가에 가서 내 손으로 태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옆에 다 사람 태우는 연기. 굉장했어요...(중략)...그러면서도 회사는 갔어요. 가봐야 일도 없지만 그래도 가긴 갔어요. 10월 29일까지 다녔어요. 그 날 나오는데 월급을 11월 달 치까지 줍니다. 한 달 땡겨 준거지. 그래서 그거 받아서 29일 날 한국으로 나왔어요...(중략)...그리고 나중에 당시에 작업반장을 하는 사람하고 연락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있고, 교토 사람이야. (수첩 받을 때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도 일본 철도국에 이름이랑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때 이름이 가나하라(金原成洛) (위영준, 남, 1922년생)

위영준 씨는 경북 군위군 출신으로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있는 시가켄(滋賀縣)으로 도일했다. 그곳에서 소학교 졸업 후 동경에서 철도학교를 졸업한 뒤 북해도 철도공장에 취직했다. 1944년 히로시마의 야카마치에 새 철도공장이 들어서면서 자리를 옮겼다. 히로시마의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다소 떨어진 외곽이어서 조선인들이 밀집해 있던 곳과는 거리가 있었다. 해방되던 해에는 결혼을 해 아이도 하나 있었다. 폭격 당일에는 본인은 공장의 현장 사무실에 있었고, 부인과 아기는 집의 방공호에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히로시마 시내에 건물 소개 작업을 하러 나갔던 아버지가 크게 부상을 당해 2 주가 채 되지 않아 사망했다. 아버지 시신과 주변 이웃의 시신 수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직장에 출근했으나 해방이 되고 그해 10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위영준 씨의 경우는 일본에서 익힌 기술로 한국에서도 관련 일을 하던 중 우연히 원폭 협회에 회원이던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하다가 협회에 가입하게 됐다. 1984년의 일이었다. 위영준 씨는 히로시마에 살던 시절 주변에 친척이나 조선인 지인이 있지 않았지만, 앞의 양점이 씨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다니던 철도회사 사가 국영기업이었고, 명부까지 현재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도일 치료 시에도 쉽게 수첩을 받을 수 있었다.

저는 원폭협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언젠가 신문에 나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증인도 있어야 된다 어쩐다 해서 제가 그때 포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때는 촌에 있었기 때문에 증인 찾는 일이 쉽지도 않잖아요. 지금에야 서울에 와서 할 일도 없으니까 제가 여기 저기 알아보고 찾아볼 시간이 되니까 하게 된 거죠. 늙으니까 할 일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신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아,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하고 2005년에 하셨네요.) 네, 그래요. 그때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때 증거로 뭘 내셨어요?) 이거예요. 이 사진을 붙여서 냈어요. 사진 뒷면에 우리가 있던 주소랑 도장, ‘검열 필’ 해놓은 것 그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찍은 건데 이게 증거가 되었어요. 아니면 모를 판이다. 그 원본은 거기 위원회에 자료로 기증했어요. 6·25 때 저도 이사당기고 하면서 다 없어지고 할 터인데, 저는 시골에 있으니까 이걸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진으로 인해서 친구도 찾고 지금 연락도 됐고 증거도 된 거예요.(유장석, 남, 1923년생)

유장석 씨는 1923년생으로 전북 김제 출신으로, 서울의 경성상업실천학교 야간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4년 징용으로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에 배치되었다가 징용해제를 얼마 남기지 않고 피폭 당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연구자에게 본인의 증언이 실려 있는 책(2008년 12월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온 구술자료집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 내 몸에 새겨진 8월』)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면담에 응해주었다. 유장석 씨는 징용되었던 이들 중에서는 협회 가입이 상당히 늦은 편으로 2009년 2월에 일본으로부터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았다. 수첩을 받게 된 것 또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 등록하고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면담을 해주었던 담당자가 협회 가입 절차 등을 알려준 것이 계기였다. 본인의 설명으로는 피폭 당시에는 별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협회 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특히 증인을 찾는 등의 문제가 있어 포기한 측면이 많았다. 본인 건강상에는 백내장이나 고혈압, 전립선 등에 문제가 있지만, 아픈 것이 특별히 원폭 때문이기 보다는 나이가 들면 “남의 나이로 산다”고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첩을 받는 데 있어서는 징용 당시 찍었던 사진이 중요한 기록이 된 경우였다.



<그림 16> 징용 당시 같은 숙소를 썼던 친구들과 찍은 사진

유장석 씨(1923년생)가 보관 중이던 사진을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의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기증하면서 원본을 복사하고, 설명을 써놓은 것. 사진 속 이희열 씨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인데, 이 사진 뒤에 찍혀 있던 ‘검열 필’ 도장(일본에서 당시 찍힌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이 사진으로 ‘수첩’을 받고, 친구인 이희열 씨가 ‘수첩’을 신청할 때 ‘증인’이 되어 주었다. (2011년 4월 연구자 촬영)

사진 그 자체로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증하는 ‘검열필’ 도장이 이 사진의 ‘실제’를 입증해주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남기는 행위를 피하거나 혹은 행하는 것 그 자체가 국가 혹은 그 도장의 소유자의 권력이 행사되는 것(Hull, 2012)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록물에 찍힌 도장의 힘은 강력하다.



<그림 17> 운전면허증

원폭협회 한 회원이 원폭이 투하되던 해 봄에 단 운전면허증. 이외에도 각종 성적표, 증명서, 편지, 사진 등을 간직하고 계셨다. (2011년 5월 연구자 촬영)

<그림 18> 성적증명서

중학시절 성적표. 2학년 때 조형과목에서 을이 하나 있고 모두 갑을 받았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해서 당시 조선인들로서는 들어가기 힘들었다는 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었다. (2011년 5월 연구자 촬영)

또한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 재일 당시의 졸업사진이나 학교 성적표, 각종 증명서 등과 같이 과거 식민지 시절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남긴 기록 혹은 거기에 남겨진 기록들이 이들의 히바쿠샤 되기에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된다. 물론 이 기록들은 반드시 그와 덧붙여진 상세한 기억을 동반했을 때 그 진실성이 입증된다. 기록과 기억이 결합할 때, 특히 그 기록이 식민지 시절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남겨진 것이었을 때 이들의 경계 넘기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림 19> 졸업사진

* 원폭협회 한 회원이 히로시마 내연기유한회사 내에 ‘청년학교’를 다니던 시절 찍은 졸업 사진. 사진 속의 동기들 중 징병검사에서 ‘갑종’을 받은 이들이 필리핀으로 배치됐으나, 본인은 ‘을종’을 받아 연구과로 진학하고 군사훈련을 받으며 배치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 사진 하나로 수첩을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모습. (2011년 11월 연구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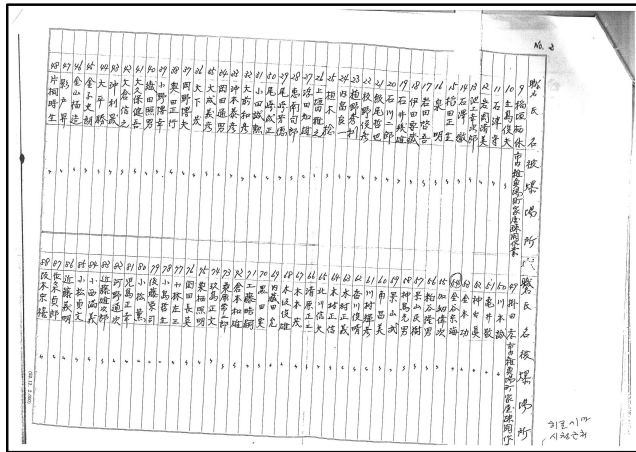
민두영 씨의 아버지는 1930년 경 히로시마로 건너가 건축일에 종사하며 돈을 벌었다. 해방 되던 해 전쟁이 격화되면서 히로시마 시내 덴마강 옆에 있던 집을 두고, 외곽에 집을 하나 더 얻어 민두영 씨와 할머니가 소개(疏開)하고 있었다.¹⁷³⁾ 폭격 날 다른 가족들은 무사했지만 히로시마 현 산요(山陽)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형이 시내에서 소개 작업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¹⁷⁴⁾ 민두영씨는 장남을 잃은 아버지의 평생의 한(恨)을 풀기 위해 1990

173) 『廣島原爆戰災誌』 第1卷(25) 기록에 따르면 당시 히로시마 시는 1944년 11월 18일 소방도로, 방공용 공터 조성을 결정하고, 1944년 말까지 제1차 건물소개 400건, 인원소개 1,029건(총 4,210명)의 소개 작업을 완료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5년에도 인원소개와 건물소개가 속행되어 제2차 인원소개 5,532건이 완료되고, 건물소개는 제2차 2,154건, 제3차 1,400건, 제4차 2,180건, 제5차 167건, 제6차 2,500건을 진행하던 중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되자 시내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습을 대비한 임시거처나 피난처를 마련해두는 경우도 있었다.

174) 전시 상황에서 폭격으로 인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의 건물을 무너뜨려 화재 방지선을 구축하는 건물 소개 작업도 이뤄졌는데, 히로시마에서도 원폭 당일 이러한 건물소개작업이 있었다. 『廣島原爆戰災誌』 第1卷(57)에 따르면 원폭 당일에는 (1) 히로시마시청 뒤편의 자코바마치(雞魚場町), (2) 현 도하시 및 가와하라 근처의 도하시쵸(土橋町) 부근, (3) 현 나카지마(中島) 근처의 현청 부근, (4) 쓰루미바시(鶴見橋)와 히지야마바시(比治山橋) 부근, (5) 현 미나미마치(皆實町) 전신대(電信隊) 부근, (5) 시내 상업중심가인 핫쇼보리 부근이 소개 작업 구간이었는데, 이 가운데 미나미마치의 전신대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폭심지에서 1~1.5km이내에 속한다. 민두영씨의 형은 시청에 소개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위 소개 작업장 중에서 (1)번 작업장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시 지정된 건물 소개 대상 지역에는 시내 각 초중고에서 학도동원된 학생 약 8,387명(『廣島原爆戰災誌』 第4卷:33~36)과 히로시마 현 각 군수작업장별로 조직된 직역의용대, 그리고 지역별로 편성된 ‘지역의용대’가 아침 7시부터 건물소개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廣島原爆戰災誌』 第3卷:532~533, 567).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카드에서도 “형 길재가 산요(山陽)중학교 1학년

년대부터 형의 흔적을 찾고자 노력했다. 한국에서는 원폭피해자2세 활동을 지원하고 일본에 교환교수를 다녀오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형의 흔적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러던 중 일본 마이니치신문사 기자의 도움으로 폭격 당시 산양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중 살아 남은 이들이 만든 희생자명부에서 형의 이름을 찾게 된다.

형의 존재는 그렇게 히로시마평화기념박물관의 한 모퉁이에 명부로서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곧 자신도 '입시피폭자'로서 수첩을 받았다. 그 자신은 수첩이라는 것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첩 받는 문제에 절실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공식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수첩을 받기로 했다. 폭격 당시 나이 네 살에 불과해 그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고, 히로시마 외곽에 소개(疎開)하고 있어서 폭격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희생자명부에 남아 있는 형의 이름은 그러한 기억의 부재를 상쇄했다.



<그림 20> 히로시마 산요 중학교 희생자 명부

원폭 당일 히로시마시청 뒤편의 자코바마치(雑魚場町)의 건물 소개 작업에 동원된 산요중학교 학생 명부. 야외에서 노출되어 사상자가 많았다. 이러한 희생자명부는 당일 작업조(組)가 아니어서 화를 면한 사람들이나 혹은 부상자로서 회복된 목격자들, 혹은 학교에 남아 있는 기록에 근거해 만들어진다.

재학 중 히로시마시 자코바마치 가옥소개작업을 위해 출근했다가 당일 피폭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근로봉사대원으로 동원되어 히로시마 역에서 남쪽으로 기와장을 모으는 장소에 보행으로 한 시간 가량 가다가 휴식 중 나무 밑에서 피폭” 당했다는 기록 등이 다수 남아 있다.

143	143	143	氏名
山科 晋也	金谷 景海	西澤 孝平	
20. 8. 7		20. 8. 20	死亡年月日
日本		日本	死亡場所
明子 1917		孝平 1917	遺族
新田町 新田町 新田町		舟橋町 舟橋町 舟橋町	現 現 住 籍 地

<그림 21> 히로시마평화기념관에 보관된 희생자 기록

* 히로시마평화기념관에 보관된 희생자 명부 가운데 이름의 아래에는 사망일, 사망장소, 유족, 본적 등이 모두 적혀 있지 않은데, 사망 후 유해를 찾지 못하고 귀국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동기는 8월 20일 자택에서, 왼쪽의 동기는 8월 7일 왼쪽 투하 이튿날 日赤(일본적십자히로시마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컨대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면 피폭 당시의 이재증명서나 명부, 서간 등과 같은 증명서들은 한국원폭피해자들 중 상대적으로 식민지 시절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식민 모국의 공적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을 경우에 좀 더 많은 혹은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히로시마의 당시 조선인의 유업자/무업자 구성 비율은 그 같은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구분	유업자													무업자			합계
	관공리	군인	의사	통역	사무원	농업	광부 하역 각종 인부	고용인	직공	행상 상업	요리 하숙 업	어업	교통 운수 업	기타	수감자	학생	
1920		1		5	3	2	425	17	253	6		7	16		8	33	776
1930			1			98	3,400	232	577	282			23	45	148	2,145	6,951

<표 14> 1920년, 1930년 히로시마 현 주재 조선인의 직업별 인구

(이광열, 2010:p.236, 228의 표를 재구성; 內務省警保局, 『社会運動の状況』 1920, 1930년판)

구분	직업별 유업자																		
직업	유 식 적 직 업	상 업	농 업	어 업	광 업	섬유 공업	금속 기계 공업	화 학 공 업	전 기 공 업	출 판 공 업	식료 품제 조업	토목 건축 업	통 교 통 운 수 업	항만 하역 업	일반 사용 인 자	기타 노동 자	접 객 업	기타 유업 자	소계/ 현전체 인구
히로시마	77	2,306	573	10	148	1,017	613	696	28	50	666	6,081	408	1,597	1,119	2,994	127	1,408	19,868 /38,221
백분비	0.39	11.61	2.88	0.05	0.74	5.12	3.09	3.50	0.14	0.25	3.35	30.61	2.05	8.04	5.63	15.09	0.64	7.09	100
일본전체 백분비	0.59	11.26	1.26	0.06	2.73	6.74	9.41	7.87	0.66	0.4	0.85	23.58	2.26	4.16	4.57	8.62	0.8	4.18	100

<표 15> 1940년 히로시마 현 주재 조선인의 직업별 인구 (유업자)
(이광열, 2010:p.236의 표를 재구성; 內務省警保局, 『社会運動の状況』 1940年版)

구분	무업자						
직업	실업자	학생/생도	소학교아동	수감자	무직	소계	합계
히로시마	26	700	3,771	48	13,808	18,353	38,221
백분비	0.14	3.52	18.98	0.24	75.23	100	
일본전체백분비	0.04	3.6	22.42	0.23	73.66	100	

<표 16> 1940년 히로시마 현 주재 조선인의 직업별 인구 (무업자)
(이광열, 2010:p.236의 표를 재구성; 內務省警保局, 『社会運動の状況』 1940年版)

<표 15>와 <표 16>은 1940년의 히로시마 현의 조선인 유업자와 무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1920년과 30년대의 것을 표기한 <표 14>에 비해 비교적 그 항목이 상세하다. 표의 구성은 일본 전체와 비교하기 위해 연구자가 따로 떼어 백분비를 추가한 것인데, 히로시마의 경우 군수 산업이 밀집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금속기계나 화학, 전기 공업에 종사한 사람의 비율이 일본 전체에 비해 낮은 편이고 대신 토목과 항만 하역,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미쓰비시중공업이 '조선'으로부터 대규모 정용을 통해 조선인 취업을 주선했던 1945년경에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수치들은 당시 일반의 조선인들이 히로시마에 밀집한 대규모 군수산업 공장보다는 소규모의 공장에 취업하거나 토목이나 하역 일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연구자의 현지조사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생애사 인터뷰 과정

에서도 그 같은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표 15>에서 보듯이 기타 유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핵심생산인력인 젊은 남성들의 직업이었기 보다는 대체로 지인이나 친척들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노인들이나 여성들 혹은 어린이들이 폐품을 수집해 주거나, 시다 등과 같이 작은 공장에서 잡역으로 불리는 보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 혹은 신문 배달 등과 같은 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면담과정에서 다수가 이러한 일로 가계를 도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밖에 작은 철공소와 제재소 등에 취업해 있었다는 비율도 높았고, 후쿠시마의 경우 도살장에 근무하거나 그곳에서 나온 내장 부속 등을 판매하거나 조리해서 조선인 커뮤니티에서 유통시키는 행상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물론 일반 조선인들 중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나 산요공업주식회사, 혹은 위에서 '유식적 직업'으로 표기된 직업군(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근무하던 이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 비율이 높지 않고, 또한 이들이 대체로 일본에 건너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 세대들이나 조선인들 중 교육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이들로서 그들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과는 별도의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1940년대 들어 1920-30년대에는 거의 없던 유식적 직업을 가진 조선인들이 대개 이 층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표 14>와 <표 16>의 무업자 비율에서 학생/생도의 비율이 늘어난 것도 이를 지지하며, 조선인들 사이에 이러한 직업 분화가 1940년 이후에는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일본의 전체 비율에서 보면 조선인들의 실업, 무직 비율이 좀 더 높으며, 유업자 중에서도 일용 노동에 해당하는 건축과 하역, 그리고 자영업에 가까운 식품업이나 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짜 히바쿠샤를 증명하는 데 있어 '당시'의 증명서가 가장 우선시되는 현실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은 '고국'으로의 귀환으로 인해 '당시'의 시정촌장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을 기회가 사라졌고, 혹여 다른 '당시'의 증명서가 있더라도 거기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적잖게 소요된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당시의 증명서'는 단순히 접근성과 그것을 찾고 얻는데 필요한 비용 문제보다 좀 더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와 연결된다. 즉 토목이나 건축, 행상 등과 같이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식민모국의 하층 노동시장을 형성했던 '당시'의 상황 그 자체가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이러한 공적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갖는다는 것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2) 호적: 식민지 조선과 해방 후 한국에서 생산된 문서

일본에 소재한 기관이 남긴 문서, 혹은 명부에 남겨진 기록들이 이들의 '피폭 경험'을 보증해 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록을 찾는다는 것은 앞 절에서 보듯이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때문에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피폭 사실을 증명해주는 매개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보다 이들의 '호적'에서의 본인 및 가족들의

출생과 사망 기록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 아니면 친절 가서 호적 뜯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수첩을] 하려고 보니까 제적등본을 떼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보려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 집 부모님 제사 지내 주는 육촌한테 갔어요. 내가 바보인 게 그때까지 어머니 택호만 알았지 엄마 이름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물어봐서 떼었잖아요. 나는 글을 모르니까 내 호적에 엄마 이름이 있어도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언니들 혼인신고가 다 되어 있고, 우리 아들이 출생 기록이 딱 (히로시마로)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지금도 그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수첩을 냈어...(중략)... 근데 그전에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캐묻고 겁이 날 정도로 심사를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 그래서 시청에 갔어. 그리고 여러 가지 묻고, 한국에도 전화하고 하데. 별것도 아니더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내 서류를 보더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 사는 곳을 짚으면서 가미텐마쵸 어찌고 하길래 내가 ‘소요, 고고가 가미텐마쵸요’ (そうよ、ここが上天満町よ.그래요, 여기가 가미텐마쵸예요)하니까 바로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그때 나하고 다른 사람 둘하고 구OO하고 해서 네 명이 갔었거든요. 근데 내가 바로 나오는 거 보더니 구OO이가 내가 지금까지 (‘수첩’ 받을 때 인솔하는 거) 많이 해도 명지윤만큼 빨리 나온 거는 처음이다 하더라고요. (명지윤, 1928년생, 여)

명지윤씨는 열여섯 살 나던 해 징용 갔다 도망쳐 나온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폭격을 맞은 해에는 어린 나이에 낳은 아들 그리고 일찍 홀로되신 친정어머니도 같이 살고 있었다. 폭격이 있던 날 가미텐마쵸(上天満町) 자택 안에 있던 본인과 아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바깥에서 크게 화상을 입은 어머니와 남편이 얼마 후 사망했다. 경황이 없던 차에 유골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 가묘(假墓)도 쓰지 못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돈 받아 왔다”고 하던 때에 소식을 듣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남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협회를 가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수첩을 받게 되었다. 어머니의 이름도 모르고 택호밖에 몰랐던 그녀였지만, 부모님 제사를 지내주는 육촌이 떼어준 호적에 그녀가 낳은 아들의 출생지와 어머니의 사망지가 히로시마로 되어 있어서 증인도 다 채우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수첩을 받을 수 있었다.

명지윤씨의 사례는 앞 절에 히로시마의 공적 기관에 명부를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적 상에서 가족 특히 직계 가족의 출생과 사망지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로 되어 있는 경우 수첩을 받는 데 있어 좀 더 수월한 과정을 밟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호적 상에서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주거지 변동 사항이 기본적으로 그 호적에 실린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생산되는 공적 문서라는 점에서 “삼중고에 시달려온 한국원폭피해자”(이치바 준코, 2003)라는 표현은 개별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에 대한 공적 기록의 역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호적법은 식민지 시절 일본 총독부가

도입한 것으로 1915년 일본 총독부는 조선에 기존에 존재하던 민적법을 개정해 일본식의 호적법¹⁷⁵⁾을 시행해 나갔다. 새롭게 도입된 호적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호'(戶)를 단위로 편제되어 그와 관계를 따라 기재되고 개정되며, 호적에 기재될 항목과 등기 목록에는 출생이나 사망, 양자, 파양, 분가, 실종자 복귀, 기류(寄留) 등의 보고사항이 신설되어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려 엄격하게 유지되게 했다는 점이다. 호적은 식민지 조선의 주민들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변동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공식 기록'으로 자리잡아 나가게 된다 (임경택, 2012; 양현아, 2000).

따라서 이러한 호적에 적시된 기록이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서 매개된다는 사실은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 호적법의 실행 과정에서 '호주'는 반드시 그 '호'에서 부친 혹은 부친이 사망할 시 그 부친의 지위와 핏줄을 이어 받은 남성 혈통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 호적의 기재 책임이 호주에게 있었다는 점이다. 즉 호주는 남성이어야 하고, 그러한 호주는 호 내의 가족들의 신분관계 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로서, 일종의 최말단의 호적관리자로 규정되며, 이 '공식적인 기록'의 구성 자체가 일차적으로 '호주'의 신고에 작성된다는 점이다. 호주는 그 호에 속한 구성원에게 발생한 변동 사항을 기재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 받으며, 이렇게 호주에 의해 신고된 호적은 상급의 공공기관에 감독을 받아 일원화된 목록에 따라 정렬된다. 그런데 이러한 호주의 '신고 의무'를 원폭의 피해를 입고 한국으로 귀환한 원폭피해자들이 완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한참 전쟁 중이니까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폭 당일에는) 그 이삿짐을 (시외로) 옮기는 중이었나봐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중요한 것들을 구루마에 끌고 가다가 노지에서 완전히 노출됐어요. 우리는 집안에 있었으니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노출되어서. 우리는 아침에 맞아도, 오후 늦게 구제됐대요. 몽땅 그 집에 깔려서 나중에 구출이 되었나봐요. 어머니가 기절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늦게 정신이 돌아왔대요. 돌아오고 보니 자식 생각도 나니까 우선 자기가 나와서 우리를 미친 듯이 찾아서 구하고. 근데 그 이튿날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완전히 화상을 입어서 보지도 못할 정도였는데도 목숨은 안 끊기고 집을 찾아왔는데 그러고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치료해줄 곳도 없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형님은 학교 간다고 버스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폭탄이 떨어졌는데 자기 앞에 사람은 햇볕에 노출되었는데, 자기는 마침 그늘이 졌나봐요. 그래서 운이 좋게 아주 큰 피해는 피한 거지요. (근데 아버지 사망신고가 54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참. 내가 아버지를 강제동원 그것도 신청해보려고 호적을 떼어보니까 히로시마에서 돌아가신 걸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175)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과 함께 제정된 일본의 호적법은 몇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친 뒤, 1898년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대적 호적법의 근간이 되었다 (임경택, 2012).

서 화장도 다 하고 강에 버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난리 통에 그걸 챙기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가져옵니까. 나오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남편 잃고 자식 셋 데리고 사니까 정신없어서 그 신고를 제대로 안 한거예요. 그러다가 사망신고 일제 신고 기간에 했다고 해요. 인우보증을 해서 사망신고를 한거지요. 근데 사망처를 일본으로 안하고 그냥 금릉군에서 돌아가셨다고 해버린 거예요. (조상록, 남, 1941년생)

(아버지 사망 신고가 안 된 이유가 있었는지요?) 그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먹고 살기 급급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또 우리 큰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구장을 했으니까 다 맡겨놓고 있지 다 알아서 하시는 걸로 알았지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73년 호적 총정리 기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터리로 되어 있거나 행불자들은 증명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일제 정리를 한거지요.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사망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신고자의 자격을 보고 그 일을 처리해 준 거지요. 사실 사망보다 행불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지가 체크가 안 되는 거니까. 사상 검토도 해야 하고, 빨치산을 한 거는 아닌지. 근데 내가 월남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버지가 행불로 딱 나오니까 바로 보안조사에서 자격이 안 된 거지. 교육은 1등급으로 받고, 승선번호도 받았는데 무산된 거죠. 나는 훈련 받으면서도 못갈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했어요. (방일호, 남, 1938년생)

나의 어머니는 히로시마에서 돌아와 그대로 병을 얻어 드러누워 하혈, 구토, 각혈을 반복하다가 점점 쇠약해져 두 달 후인 10월 6일 남편과 아이 다섯을 남겨둔 채 등잔불 꺼지듯 숨을 거두었다. 그때 어머니는 38세, 아버지는 41세, 나는 12세였다. 우리들 6인 가족은 추운 12월경 이웃 사람(일본인)들의 전송을 받으며 빌린 트럭에 타고 귀국을 위해 우지나 항으로 향했다. 도중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1개월 걸려 돌아 왔으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청나 생활고였다. 식량이 없어서 썩을 뜯어 와서 밀가루를 버무려 찐 것, 산에서 칩뿌리를 캐 와서 찢어서 가루를 내어 죽 끓인 것은 고급품이었다.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죽을 끓여먹고 보리 겨를 빻어 떡을 만든 개떡 등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줄 그때 처음 알았다. 5년 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다. 나도 군대에 징집되어 51개월을 복무하고 돌아 왔더니 형은 어깨 부상은 다 낫았는데 위장병(지금 생각해보니 위암인 것 같다)에 걸려 전쟁의 와중에 23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 갔고 얼마 후 아버지는 고생을 얼마나 하셨던지 기진맥진하여 한 많은 일생을 마감하셨다. 나는 26세 때 아무 것도 없는 집의 가장이 되어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세 가족을 데리고 정말 바닥 생활을 했다. 부모님의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겨우 1963년에 정부에서 강조 기간이 있어 그때 했다. (유영수[1933년생]씨가 연구자에게 준 手記 중에서)

위의 세 사례는 아버지들이 모두 원폭으로 히로시마에서 피폭사했지만, 해방 이후 귀환한 뒤 어린 나이여서 호적 신고 등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사망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경우였다. 하지만 이들 사례가 호적 신고가 실체를 반영하

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모두 호주인 부친이 사망하기 전 일본에서 출생한 형제 혹은 본인의 출생지가 히로시마로 되어 있어 수첩을 받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폭 당일에 본인 혹은 태아 피폭의 경우, 그 사람의 모친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존재'가 호적상에서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는 흔히 있었다.

참 그리고 이성연인가 김성연인가 그 사람이 참 억울한 사람이예요. (나중에 찾아보니 정성연 씨)여기 사는데 회원이고 우리 갑인데, 한국에 등록된 증은 있는데, 일본 수첩을 못 내요. 일본서 찍은 사진도 있고 학교 다니던 사진도 있고 하는데 그게 호적에 자기 이름도 틀리고 엄마 이름도 틀리고 하니깐 일본에서 수첩을 내지를 못해요. 그 애가 일조하고 같이 학교도 다녔대요. 근데도 호적이 틀려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일조가 맨날 그래요. 저 애는 참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한국 와서 그 사람을 사촌 집으로 호적을 했었나 봐요. 참 그때부터 잘못된 거죠. 호적이 틀리면 너무 힘들지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 중에 귀국하고 혼인신고랑 출생신고 늦어서 태아 피폭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 더러 있어요. (명지윤, 여, 1928년생)

위의 사례는 앞서 인용한 명지윤씨가 합천복지관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정길연 씨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합천복지관에 입주하고 있는 만큼, 한국적십자사 그리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이었지만, 일본에서 수첩을 받지는 못한 이였다. 해방 후 귀환한 이들이 호적 신고 과정에서 늦어지거나 혹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성연씨의 경우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일부러 사촌의 집에 호적을 올린 경우였다. 정성연 씨 또한 나이는 명지윤씨와 비슷하고 제일당시 학교를 다녀서, 일본말도 잘하고, 거기서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는 “참말로 진짜”인데도 히로시마에 있지 않은 사촌 집으로 호적이 되어 있는 바람에 그녀의 호적의 기록상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그녀의 히로시마에서의 '존재'를 증명해줄 것이 없었던 것이다.

결혼하고는 공장 같은 거는 그만두고 바로 임신이 되어서 집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임신 상태에서 폭격 맞고 한국 나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내가 혼인신고를 제대로 못하고 2년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니까 그 애 생일이 늦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가 46년 3월에 낳는데, 그 호적이 제대로 안되어서 피폭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애가 아주 여기 저기 아파요. 폐가 많이 안 좋아서 결국 죽었어요. 그걸 피폭자로 넣으려면 제 혼인신고 날짜 재판도 해야 되고, 그 애 생일 날짜 재판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고 돈도 들고 해서 안했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김선이, 여, 1928년생)

앞의 5장 1-1절에서 인용한 바 있는 김선이 씨의 경우 원폭 투하 당시 임신 중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것이 이듬해 3월이었다. 혼인신고며 출생 신고를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일본에 독일치료를 하러 가서 본인의 수첩을 받으며 비로소 자신의 아들이 '태아피 폭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호적상에서 아들은 어째든 1947년생이었고, 호적의 출생일을 바꾸지 않는 이상 수첩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기록이 '존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수첩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록이 '바루어' 저야 하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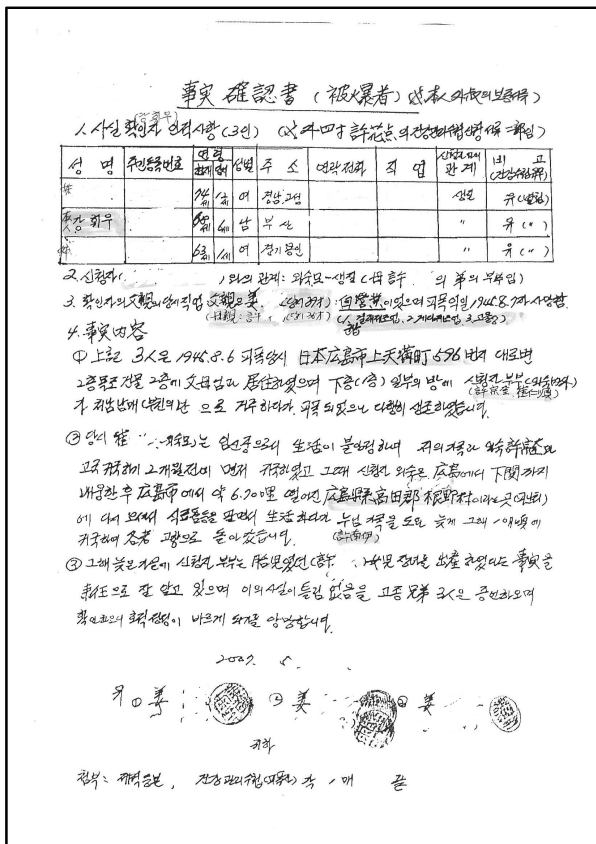


그림 22 호적 변경 당시 보증인 서류 1
 호적상 출생일의 변경을 보증하고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 호적 변경을 위해 모두 세 명(의 제적등본과 피폭자건 강수첩)이 보증을 썼다. 지인 중 피폭사한 가족들의 사망일이 모두 1944년으로 잘못 기재되어 '수첩'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없던 한 지인은 사망일을 변경하고자 했지만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오라는 법원의 요구에 도중 포기했다. (연구자 촬영 후 개인정보 삭제·수정)

1935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인형일 씨의 부친은 히로시마에서 군에 납품되는 정비용 갈레 공장과 게다(신밭)공장, 그리고 고물상을 운영했다. 주변에 친인척과 고향에서 온 지인들이 많아 부친은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직업을 안내하는 일을 했다. 원폭이 떨어지던 날은 수금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날 늦은 저녁 요코가와역(横川驛) 근처 오타가와(大田川) 쪽에서 심한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외삼촌에게 발견됐다. 치료도 하지 못하고 후루이치(古市)에 있던 청년학교 임시수용소로 갔지만, 이튿날 숨을 거두었다. 산요(山陽)중학교 2학년이 재학 중이던 사촌형도 피폭으로 한 달 만에 피를 토하고 사망했다.

(외국인) 申請者의 保證人과의 關係要約 (要約)

区分	申請者					備考
	許	崔	姜	保	証	
本籍	慶南道固城郡大面琴山里 372番地	慶南道固城郡永西面永里 209番地	慶南道固城郡大面松葉里 509番地	慶南道固城郡永西面 姜益里 681	慶南道固城郡永西面 姜益里 53番地 (1982)	慶南道固城郡永西面 姜益里 53番地 姓名 住所 家族 戶口
慶島居住所	○ 慶島市 廣利町 98番地 ○ 慶島市 中區町 98番地 ○ 慶島市 上天浦町 498番地	○ 慶島市 吉島町 673-1 ○ 上天浦町 498番地	○ 慶島市 廣北町 71 ○ 慶島市 中區町 98番地 ○ 上天浦町 198番地	○ 左 田 ○	○ 慶島市 99番地 ○ 上天浦町 594番地	姜 姓 住所 家族 戶口 姜 姓 住所 家族 戶口 姜 姓 住所 家族 戶口
連絡處						親戚關係住所持者
年 齡	渡日時期	16才	13才	13才	6才	16才
	結婚時期	20才 (1982.2.16)	17才	72才	66才 (1982.12.20)	70才
當時職業	○ 吉物業 補助者 ○ 衛生公社 従業員	主婦 (副業) (次子 崔 延 浩)	國民學生	兒童	主婦	親戚關係住所持者
大韓民國保證人과의關係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申請者와의關係 ○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故郷 村人との關係 ○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親戚關係住所持者 姓名 住所 死亡年月日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當時의 狀況	本籍 慶島市 2992番地 301 保身人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次 送還申請事由 ○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摘要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姜 姓 崔 延 浩 氏

그림 23 호적 변경 당시 보증인 서류 2

태아피폭자의 경우 피폭자건강수첩교부 신청서에서 출생일은 1946년 5월까지 인정된다. 인형일 씨의 사촌의 경우 원폭 투하 당시 임신 상태였으나 귀국과 출산 과정에서 호적 신고가 늦어져 1946년 11월 출생으로 기재됐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 재일 당시 상황과 피폭 및 귀환 시 상황 등이 모두 적힌 표를 만들었다. ‘수첩’교부 과정에 필요한 ‘호적’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들은 다시 이렇게 ‘보증’을 서는 사람의 ‘공적 문서’ 상의 기록(호적상 이름, 본적, 출생일, 호주와의 관계, 피폭자건강관리수첩상의 등록번호, 피폭지 등)에 의해 매개된다. (연구자 촬영 후 개인정보 삭제·수정)

아버지 유골은 네노무라(根の村)초등학교 뒤에 절이 있는데 거기 보관했다가 10월경에 귀국할 때 그 유골을 내가 안고 목선을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큰 목선으로 바꿔 타고 왔어요... (중략)...근데 우리가 나올 때는 우리 외삼촌 허중규, 외숙모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때 외숙모가 임신상태여서 두 달 일찍 나왔는데, 귀국하고 낳은 첫 애가 호열자를 앓아서 죽을까봐 신고를 늦게 한거예요. 그 애 원래 호적에 생일이 1946년 11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해방되던 해 그 전해 1945년 11월 29일로 바로 바꿨어요. (2007년 8월 28일에 개정) 수첩 낼 때 그게 중요하니까 가정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바꿨어요. 그게 애를 배서 들어온 게 확실하잖아요. 이 외삼촌, 외숙모는 저희보다 수첩을 늦게 받았어요. 그걸 제가 총무할 때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해서 수첩을 받게 되었어요...(중략)...참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고향, 고성군 영현면에 고향사람이 있는데 수첩을 내려고 하는데, 그 모친하고 두 형제가 원폭 때 죽은 사람이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수첩을 내려고 해도 보증인이 없고 농촌에 사니까 잘 모르고 하니가 그걸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못 내고 있다면 어머니하고 형제들 사망일이 1944년 8월 13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증거가 안 돼요. 이걸 여기저기 알아봐도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데, 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오라는 식인데,

어떻게 그걸 승소를 하겠어요. 참, 그게 안타깝고 그래요. 그 분의 삼촌이나 숙모도 그렇게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도 면서기가 단기로 되어 있는 것을 서기로 바꾸다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모두들 원폭 때 죽었는데, 똑같이 4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실수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인형일, 남, 1939년생)

인형일 씨의 경우에는 본인과 아버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종사촌의 출생일이 잘못되어 그것을 가정법원에서 고치는데 보증을 선 경우였다. 해방 후 귀국 당시 히로시마에서 같이 살던 외숙모가 출산을 위해 자신들 보다 두 달 일찍 들어와 그 해 11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출생신고가 1년 뒤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렇게 일 년이나 늦어진 출생신고는 그 사촌에게 그 이전까지는 호적과 실제 생일이 다르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수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달랐다.¹⁷⁶⁾ 결국 사촌은 인형일 씨 형제들의 보증을 받아 가정법원에서 호적상의 출생일을 변경하고, 수첩도 받게 됐다. 하지만 비슷한 경우인 다른 지인은 호적을 변경하지 못했다. 원폭 당시 피폭으로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두 사망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사망일이 모두 1944년 8월 13일로 되어 있었다. 사망일 변경에는 당시 사망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대개의 경우는 호적상의 기록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존재를 반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래의 사례처럼 호적의 기록들이 히로시마 혹은 나가사키에서의 부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여기 김순자하고 같이 형제인 태진이라고 학교는 내 동기인데 이 애는 당시에 일본에서 학교는 다니고 했는데 공습이 심해지고 하니까 외삼촌댁으로 보냈는데, 이 애는 오히려 그때 증명이 거기 있어요. 학교도 다녔으니까, 그 애가 하고 싶어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때 퇴학되어서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 김순이 애는 내가 데리고 나온 게 확실하거든요. 그 조카가 병이 서너 가지 있는데, 그것도 병원에서 진단서 받은 것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이 애가 그 애 아버지가 거기 사시려고 주소를 옮겼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잠시 돈 벌러 왔다 갔다 하니 주소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학적부 같은 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 애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남이고 하니까 옮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 집이 있을 리가 없을 것이고, 지금 될까요. 참 그래서 내가 그 애한테 그랬죠. 왜 그렇게 연락 끊고 살았나, 연락하고 살았으면 쉽게 되었을 텐데. 그랬죠. (김치우, 남, 1935년생)

해방 되던 해 전황이 악화되고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이 심해지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거주하던 조선인들 중에도 조선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연구자와 인터뷰를

176) 1946년 5월까지 '피폭자인 모친'이 출산한 아이의 경우 '입시피폭'에 해당되어 수첩을 받을 수 있다.

한 한국원폭피해자들 가운데서도 해방 이전 귀환한 이들에 대한 증언이 다수 있었다. 위의 김치우씨의 사촌 또한 그런 경우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공습을 피해 조선으로 들어간 사촌의 경우에는 호적과 학적 상에는 기록이 남아 있고, 반대로 임시 건물에 살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있다가 폭격을 맞은 사촌의 경우는 기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원폭투하로 인한 일차적인 자료의 소실 가능성—이는 일본 원폭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이 일차적인 것이라면,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귀환 과정에서의 혼란 속에서도 공공기관에 호적을 등재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더해진다. 또한 한국전쟁 기간 동안 폭격으로 인한 공적 기록들이 소실된 경우—실제 회원 카드 중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출신자가 제출한 호적 상에서 한국전쟁 동안 합천읍사무소가 폭격으로 소실되어 출생사유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도 이들의 기록이 ‘실제’를 반영하는데 갖게 되는 ‘오류’들을 강화한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과 ‘존재’, 혹은 ‘부재’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변경된 호적은 엉뚱하게도 앞의 5장 1절에서의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회원 가입 역사 등과 관련된 특수한 사정과 맞물려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 ‘진짜’와 ‘가짜’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하게 얽히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제가 나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OO씨가 나보고 가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두 살 낮게 호적에 되어 있어요. 우리 합천읍 사무소가 6·25 때 타버리면서 이장이 우리 형제들 것을 기록하면서 한꺼번에 2년씩 늦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번에 재판을 해서 우리 형제들 것을 다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38년생인데, 40년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생일로 내 나이를 아니까, 저보고 초등학교를 어떻게 다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다 하면서. 그래서 이OO씨가 직접 히로시마 시청에 가서 내가 가짜니까 빼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온 사람이에요...(중략)...나는 그때 학교에서 버쩍 하는 것을 보고 보증인도 없이 수첩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생일이 38년생이 맞으신 거예요? 고향은 합천읍이시고요) 네 맞아요. 호일이 형도 32년이 아니고 30년생, 일선이는 나보다 세 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35년생이에요. 호성이가 40년생. 그 애는 바꾸기 전에는 나하고 6개월 차이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거 보더니 ‘오카시나’(可笑しいな, 이상하다) 하더라니까. (박지훈, 남, 1938년생)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진짜’와 ‘가짜’의 논쟁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상대가 ‘가짜’여서가 아니라 본인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협회 내부의 갈등에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 혹은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대 피폭자복지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생겨난 회원 자격 심사에 대한 협회 내부의 시비와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 “일본에서 수첩을 받아와야 진짜”라는 말들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일반화된 담론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이 ‘피폭자건강수첩’을 수급한 히바쿠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적 차원으로 변형되면서, 일본에서의 심사를 통한 ‘인증’을 가장 우선시하는 권위의 외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 고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정책과 구제 프로그램의 실패를 설명하는 인류학적 설명에서도 관료제적 통치의 역설은 핵심적인 설명요소다 (Gupta, 2012, Kleinman, Das & Lock, 1996).¹⁷⁷⁾ 인도 빈민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관료주의적 실행을 구조적인 폭력으로 묘사하고 있는 Gupta(2012)의 연구에서도 지역적 맥락이나 사회적 고통의 특수성을 표준화하고 보편화하는 지식 속에서 형성되는 통치 행위는 그 결과를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패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된다. 또한 Gupta의 논의는 그와 같은 실패가 통치행위의 지식적 기반이나 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통치의 물질적 기반과 ‘물질적 실천(material practices)(Hull, 2008)들에서도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Gupta의 설명에서 인도 가난구제 프로그램의 실패는 국가의 (악한) 의도나 혹은 빈민들의 정치 무관심에 의한 것도 아니라 문서 작성(writing)과 문서화된 기록(written record) 그리고 분절화된 업무 속에서 실행되는 관료주의적 무심함, 즉 비의도적이고 자의성을 갖는 통치와 곳곳에 만연한 일상화된 부정(不正)이 결합한데서 비롯된다고 설명된다. 즉 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실패는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관료제적 실행의 메커니즘에 의해 체계적으로 생산된다.

히바쿠샤의 행정관료제적 통제가 기록으로 매개되는 과정은 신청자와 심사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 관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어떤 신청자들에게는 ‘이거 하나로’ 합격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심사 자체가 제약이 된다. 그런데 본 절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히바쿠샤의 행정관료제적 통제로 인한 제약은 신청자들 가운데서도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의 사회문화적 연결망과 언어, 교육 등에 있어 사회문화적 자본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관료제적 통제는 한국원폭피해자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원폭과 귀환, 전쟁 등으로 공적 기록을 가지지 못한 한국원폭피해자에게 가장 높은 벽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이러한 히바쿠샤의 행정관료제적 통제는 모든 원폭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그 효과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177) 예를 들어 Kleinman, Das & Lock(1996)은 사회적 고통이나 폭력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기술합리적 분석(rational-technological analysis)과 관료주의적 대응의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고통이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치료하거나 대처하고자하는 고통에 다시 기여하거나 오히려 그 고통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기술합리적 분석과 관료주의적 처방들의 결과는 도덕적, 경제적, 젠더적 효과를 예측할 수 없고 또 방향성 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그 고통을 표준화하고 병리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수첩 교부 심사의 경험

1) 회한과 분노: 과거 식민자와의 관료제적 재회

한국원폭피해자의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와의 면접(도일 심사 시에는 직접 대면, 전화 심사 시에는 통역자를 통한 대면) 과정은 그들의 과거의 기억이 새롭게 심사에 맞춰 재구성되어 '실제'로서 판단 받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는 일본의 원폭피해자들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징적 타자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무덤덤한 행동을 가리키는 '관료제적 무심함'(bureaucratic indifference)(Herzfeld, 1992) 속에 이뤄지는 까다로운 심사절차는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한 때는 식민과 전쟁의 수행 주체로서, 자신들의 원폭의 피해를 초래한 과거 식민자로서의 일본 정부를 다시 맞닥뜨리는 장이기도 하다.

1938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방일호 씨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해방되던 해에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외가댁과 작은댁이 모두 근처에 살았는데, 자택은 폭심지에서 2km 정도 떨어진 요시지마(吉島) 근처였다. 원폭 당일 직장에 출근했던 아버지는 히로시마의 요시지마 끝에 위치한 비행장 수용소에서 “연방 죽어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됐다.

(아버지 유골은요?) 유골이 뭐예요. 헤어질 때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원폭 맞고 어떻게 됐느냐. 왜 창호지를 문에 발랐다가 다시 바를 때 물을 뿌려가지고 찢어내잖아요. 그렇게 피부가 떨어졌었어요. 직장 나가시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처음에 발견한 것이 아니고 히로시마 비행장 수용소에서 처음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처음 보고, 내가 참 말을 하기가 싫어요.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중략)...그때 내 기억에 안 지워지는 게, 그때 강물을 보니까 그 강도 상당히 넓었어요. 내가 거기서 보면 해군이 훈련하는 것도 보고, 배 짓는 훈련하는 것도 보고 그랬던 데인데. 내가 흘깃 거기를 보는데 거기가 강물이 보이지 않아요. 폐기물하고, 전부 사람은 아닐 기고 사람하고 다 어울려서 떠내려 와요. 거기가 급류가 아니고 천천히 물이 흐르는데 그 폐기물하고 사람하고 섞여서 거기가 다 찼어요. 또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누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어떤 여자가 몸이 다 그슬렸는데 살이 희잖아요. 근데 몸이 그슬려서 색깔이 검은데, 애를 안고 가는데 우리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견지를 얹고, 훌쩍훌쩍 뛰면서 환장하겠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라. 애기를 팔에 안고 있기는 한데, 죽지도 않고 뭐가...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어본 사실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모습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잊히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성당에 가서도 항상 아버지 기도를 해요. ‘불쌍한 우리 문달호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죽어서라도 편하게 사시게’ 그 기도를 빠진 날이 없어요. (방일호, 남, 1938년생)

아버지를 여의고 숙모와 새어머니를 따라 고향이던 합천으로 돌아간 첫 해에 두 살 난 동생도 사망했다. 알 수 없는 병과 가난 속에서 겨우 유지되어 가던 방일호 씨의 '고국'에서의 생활은 군에 들어가 조금씩 안정이 되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호였다고 할 만큼 건강을 회복하고 군에서의 진급도 빨랐다. 하지만 원폭피해자인 것과 일본 출생 사실은 오랫동안 숨겨왔다. 앞의 4장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파일을 앞두고 이뤄진 신원조회에서 아버지의 호적이 사망이 아니라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 있어 합격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원폭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미뤄오다가 군 전역 후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회사를 퇴직하고 아무 눈치 볼 것 없는 2009년에 처음으로 "원폭 관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늦가을 수첩 교부 신청을 시작했다. 서류를 접수하고,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심사를 하는데 반 년이 걸렸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심사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는 데 1년 이상 걸리던 것이 그나마 줄어든 것이었다. 이제 사람이 월경을 해서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작성한 서류는 여전히 국경을 넘어야 하고 심사는 전화로 이루어진다. 신청자가 일본으로 직접 도일 할 경우에는 길어도 1주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서류들이 번역되고 월경한 뒤 행정관료제적 절차에 따라 대기되는 시간이었다. 즉 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은 순전히 문서들이 행정관료제적으로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다. 관료제적 형식주의 혹은 관료제적 문서주의(red tape)에 따른 시간 지연의 대표적인 예다. 어쨌든 그렇게 서류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전화 심사에서 그는 심문(審問)과도 같은 조사를 받았다.

그때 신청하고 나니까 나중에 (심사를 위해서) 일본에서 전화가 오드만요. 그때도 (자원봉사로) 밥 퍼주는 일 하고 있던 때인데, 물어보는 말이 "왜 이제야 신고하셨죠?"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군 생활 한 30년 하고, 또 정부기관에서 20년을 넘게 근무하는데 내가 내 보호를 안 하면 끝나는데 내가 어떻게 수첩 신청을 해서 내 신분(일본 태생에 원폭피해자인 것)을 노출 시키겠냐"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장가도 못 갈뿐 하고, 내가 애들 낳으면 기형이 안 나올까 걱정하면서 보낸 세월이 얼마며,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너무 분이 차가지고, 그 사람들 몇 마디 묻는 말에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처리하려면 빨리 하고 아니면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확실한 분이 이렇게 늦게 했냐" (일본 심사관이) 궁금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요.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같이 하게 된 거다. 왜 그렇게 묻는 게 많으냐. 학적 조사해도 다 나올 텐데, 왜 그렇게 따지고 묻는 게 많으냐"고 물어붙였어요. "왜 이렇게 늦게 신고했냐"는 말이 아주 화가 났어요. (방일호, 남, 1938년생)

위에 방일호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화심사 과정에서 피폭 당시의 상황 등을

꼬치꼬치 묻던 통역자는 마지막으로 “왜 이제야 수첩을 신청했냐?”고 물었다. 피폭자건강수첩교부신청서 한글본에도 적혀 있는 질문이었고, 심사를 하는 측에서는 절차에 따라 의례 물어야 할 사항이었지만 왼쪽으로 아버지를 잃고 결혼에 지장이 있을까, 기형아를 낳게 될까 두려워하며 보내던 세월에 대한 회한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비수वाद 같은 질문이 된 것이다.

(8월 9일) 재도와 함께 출근했다. 공습 경보가 해제되었다...(중략)...대형 철문을 막 지나는 순간 엄청난 폭음과 동시에 뒤에서 나를 세계 치는 것이다. 순간 육체가 붕 뚫다.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 귀에 철판이 부딪치는 소리, “다스케테”(助けて, 도와줘) 외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눈을 뜨고 앞을 보니 황색의 안개만 보이고 물체가 구별되지 않는다...(중략)...잠시 후 내 목 뒤에서 무엇을 바르는 느낌이 들자 일어로 “안따, 게가시다네”(あなた怪我したね, 당신 다쳤어요) 하는 소리를 들어 돌아보니 팔에는 십자 완장을 차고 깡통을 든 여자다. 다쳤나하는 생각에서 앞자락을 보니 앞 전체와 손, 팔목이 피로 젖어 있는 것이다. 죽는다라는 공포감에 내 얼굴 색이 창백해진 모양이다. 여자는 나에게 “다이쵸부? 다이쵸부?”(大丈夫? 괜찮아?) 하며 병원에 가라했다. 길 위에는 시체들이 많았고 빠진 눈알을 왼손으로 쥐고 달려가는 사람도 보았다. 병원에 도착하니 환자들만 딱 차 아우성이고 의사와 간호원은 보이지도 않았다...(중략)...숙소에 도착하니 3시가 넘었다. 재도를 찾으니 없어 료장이 있는 곳을 갔더니 거기에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재도야” 하고 불렀더니 “너, 살아 있었구나” 하며 안는다. “애들이 모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너도 죽은 줄 알았다”고 했다. “야, 우리도 다 죽는 줄 알았어. 창문마다 박살이 났어” 내 생각엔 숙소는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숙소 전체 창문이 박살 나 있었다...(중략)...재도가 나더러 밖으로 나가자 한다. 한참 걸었다. “여기 앉자, 가나야마. 심상치 않은데...일본이 망하는 것 아니냐?” 하고 재도가 말했다. “야, 입 함부로 놀리면 경처, 입조심해”라 하니 “자식, 너니까 말하지 인마” 했다. 재도에게 “놈들이 지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꿈으로 보내지 않을 것 같아서...야, 여하튼 입조심 하고 정신 바짝 차려.” “그나저나 밥을 주려나 몰라, 설마 굶겨 죽이진 않겠지?” 다행히 저녁 식사는 됐다.

(8월 10일) 전과 같이 출근했다. 아침 조회시간이다. 인원이 1/5도 안 되는 듯했다. 공장장이 강단에 올라서더니 경례하고 “와다시와 유-고도나시”(私は言うことなし, 본인, 말 할 것 없음) 한마디 하고 강단을 내려가 버렸다. 모두 비통한 표정이다. 공장에 가보니 아마구지 조장 혼자 있다. 나는 물었다. “불을 땠까요?” 했더니 “아니 일은 할 것 없고 지시가 올 때까지 너 자유의사에 맡긴다” 했다...(중략)...동료들 중 부상자 명단이 료장에게 전달되고 료장은 그들을 간호하기 위해 간호반 조를 편성하라고 했다. 재도와 나는 한 조가 되었다. (김한수 씨의 일기 중에서)

4장 1-1절에서도 인용한 바 있는 김한수 씨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에 동원되어 일을 하다가 공장 안에서 왼쪽을 맞고 손과 발에 입은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해방 후 회사로부터 어떠한 귀환 조치도 마련되지 않자, 자비를 들여 밀선을 타고 귀국해 고

향으로 돌아가 해방 전에 다니던 연백전매지국으로 복귀해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1·4 후퇴 직전에 인천 본사로 출장을 내려왔다가 후퇴 명령이 계속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공주와 서산, 홍성 등지에서 객지생활을 하다 70년대에는 사이판으로 나가 10년간 외국 생활을 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원폭피해자 구호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2년 즈음 광귀훈 소송의 결과들이 언론에 보도되던 즈음 처음 원폭피해자 구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일본으로 동원되던 첫날부터 귀환한 날까지 적어두었던 일기를 원폭과 6·25 때 잃어버리고도 그대로 다시 “비디오 틀듯이” 재생해서 기록해둘 만큼 기억력이 좋았던 덕분에 수첩을 받을 당시에는 협회와 나가사키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증인을 세우고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문제는 본인과 같이 나가사키에 동원되어 부상을 당한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고자 했을 때였다.

김한수 씨는 자신이 수첩을 받은 뒤 다른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려던 때가 있었다. 조치원에 살던 이로 나가사키에 강제동원되었다 원폭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다. 자신이 나가사키에 있던 시절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 2003년 협회에 가입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다. 협회에는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가 많지 않아 증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첩을 가진 본인이 증인을 서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한수 씨는 증인을 서준 사람의 심사과정에서 그 사람의 피폭 사실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인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증인을 서주려던 사람은 결국 수첩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이 시기는 앞의 장영준 씨의 사례처럼, 기억에 의한 진술만으로 수첩을 교부하지 않고 철저하게 문서와 수첩을 지닌 증인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억이 환하고, 나가사키 사정을 잘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증인을 썼는데, 나가사키 시청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이 사람 증인을 썼는데,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이 틀림없고, 이 사람이 장애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말이다 하면 나가사키 사정을 그렇게 환히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을 하니, 그쪽에서 그럼 직접 피폭당한 것을 봤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싸웠어요. 당신들 수첩하는데 증인 뭐 이런 거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증인이라는 것은 그때 현황과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게 거짓인가 아닌가를 캐치하는데 중점을 뒀다, 원폭 맞는 거 봤다 못 봤다가 뭐가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같이 있다가 두 사람이 죽어버리면, 남은 한 사람은 증인 없어서 결국 못 받는 거 아니냐, 확실히 피폭자인데 어떻게 안줄 수 있냐.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싸웠어요. 먼저 두 번째 가서도 또 싸웠어요. (김한수, 남, 1918년생)

“거짓말이다 하면 그렇게 나가사키 사정을 환히 알 수 없는” 정황인데도, 그것을 그 신청자 한 사람에게 대한 인격적 대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서와 증거를 통해 심사에 임하는

행정관료제적 규칙에 의하면 그 신청자는 어쩌든 호적도 증명서도 그리고 증인도 없어 수첩 교부는 불가능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아무리 '실제'라 하더라도 문서를 통해 매개되는 히바쿠사의 행정관료제적 실행이 만들어낸 '의도치 않은 결과' 혹은 '자의적인 결과'(Gupta, 2012)다. 그리고 이 자의적인 결과는 사실 앞의 관료제적 무심함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행정관료제적 실행에 적합한 문서들과 증거들이 매개되지 않는 이들에게 좀 더 차별적으로 그리고 이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된다. 이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위의 김한수 씨가 들었던 예와 같이 피폭 당시 피해가 더 컸던 사람 그리고 이후 한국으로 귀환한 뒤 조직이나 친인척 연줄망에 의해 배제되어 증인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징용자들과 같이 호적만으로는 당시의 소재가 증명되지 않는 이들에게 더욱 그 '무심함'과 '자의적인 결과'의 파괴적인 영향을 드러낸다.

수첩을 받고 한일백년평화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초청해서 증언을 하러 간 거예요...(중략)...(거기 갔다가) 군함도(軍艦島)¹⁷⁸ 탄광에서 바다로 몰래 나오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길바닥에 세 구를 묻었는데 거길 갔어요. 그게 사람 다니던 길에 밟히는 데라. 그걸 일본 사람이 자기 집 창고에 옮겨 놓고 비석을 세웠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붙잡고 울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 매 맞아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 묻은 데. 그런데다 무더기로 묻어 놓고 아무 돌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놨어요. 참 그걸 보니까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자들 많이 왔었는데, "야, 이놈들아," "동양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찌 내 한 생명이 귀중하겠는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도요헤이와노 타메나라바 난데 이노치가 호시카로우." (東洋平和のためならば何で命が欲しかろう) 일종의 군가죠. 그 노래가 있는데, "당신들 눈으로 봐라. 이게 동양평화를 위해서 한 전쟁의 결과냐. 여기는 개 묻고, 여기는 고양이 묻고, 여기에 조선 사람들 묻은 묘냐. 이게 그 평화의 결과냐." 울음이 북받쳐서 막 퍼부었어요. (김한수, 남, 1918년 생)

심사 절차의 까다로움, 문서와 기록으로 매개되는 수첩 교부 과정은 이렇게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회한과 분노 등과 얽혀 복잡한 심정을 맛보게 한다. 그러나 이 관료제적 무심함과 비인격적인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첩 교부 심사 과정에서 과거 피식민자들의 회한과 분노는 향할 곳이 없으며, 당연히 히바쿠사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

2) 수첩의 교부: 히바쿠사 범주로의 편입 지점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수첩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쓰고, 그것을 증명할 기록이나 문서를

178) 나가사키 앞 바다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전시기 많은 조선인들이 탄광의 채굴작업에 강제동원되었다. '군함'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탄광이 운영될 당시에는 섬 전체가 폐쇄되어 감옥과 같은 작업 환경에서 혹사 당해 도망자도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동반해서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심사는 과거 식민지였던 일본이라는 국가의 추상적 차원의 권력에 대한 감각을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심사 과정에 필요한 도일 등을 통해 미시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차원의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수첩 받기로 상징되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히바쿠샤의 경계 넘기에서 심사는 해당 지자체장의 인장이 찍힌 수첩을 교부 받는 것으로 종결되는데, 이것은 수첩의 교부자로서 국가의 권력이 행사되는 지점임과 동시에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되는 '진입지점'(entry point)이기도 하다. 관료주의에 대한 최근의 인류학적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심사 과정은 한편으로는 하나의 의제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관료제적 활동의 바깥이나 그 안에서의 사회적 힘이 배치되고 경합되는 경향, 그리고 권력 관계가 행사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프리즘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Heyman, 2012:1270). 그런 점에서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폭의 상황'을 쓰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증명하는 각종 기록과 증인을 찾는 과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피폭'이라는 하나의 측면으로 전환시키게 되는데, 이는 심사 과정을 통해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서 극대화된다.

홍지만 씨는 원폭 당일 시내의 건축 공사장에 나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또한 행방을 찾지 못했다. 히로시마 고이 자택에서 폭격에 무너진 유리조각에 얼굴 안면이 크게 다쳐, 실로 여러 바늘 꿰매고 남은 흉터가 선명하고 깊게 남아 있었는데, 본인은 그것이 소학교 다니던 시절 그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던 아이를 놀린 업보가 아닐까 생각한다면 말을 시작했다. 친척을 따라 돌아온 '고국의 고향살이는 쉽지 않았다.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 군대에 입대한 뒤에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다. 군 생활을 10년 정도 더 하다가 그만두고 운전은 비롯해 안 해본 일 없이 객지 생활을 떠돌았다. 합천이 고향이고 원폭협회 합천지부장과 6촌 관계였지만, 집안 제사에 참석하는 일도 없고 친척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다보니 '원폭 가입'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당시 합천 사람들에 비하면 수첩을 받는 것도 늦었다. 1990년 협회를 가입하고 일본에서 수첩을 받을 때에는 호적 자료가 없어 고생을 했다. 원폭 당시 멸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을 보고 원폭장해로 기형아가 생길까 자식도 낳지 않고 살았지만, 심사에서는 그러한 그의 개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심사는 행해져야 하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고, 그는 이러한 까다로움을 '실제'가 아닌 '양' 진행된 것으로 경험했다. 한국에서 이뤄진 첫 번째 심사 이후 일본에 건너가 본인이 살았다는 고이까지 가서 직접 확인을 했다. 자신이 다녔다고 적은 고이소 학교와 신사(학교 소개령으로 1~4학년까지는 신사에 집합)를 직접 찾는 것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핵심이었다. 앞의 신청서 쓰기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피폭지점이었고, 문서상의 기록으로 증명할 것이 없었던 홍지만 씨에게는 실제 그가 이 공간상의 특정 장소에 소재하고 있었는지는 그가 말하는 장소들을 실제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증명됐다.


그때가 89년 정도 됐으려나. 백 몇 십만 원 만들어서 부산에서 4월 5일 날 일본 시모노세키로 들어갔어요. 그때 나는 무작정 갔어요. 히로시마에 김신환 목사(179)를 찾아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가와무라병원에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수첩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이 간 상태라 일본에서 만약에 피폭자 인정을 안 해주면 내가 치료비고 병원비고 다 물어야 될 상황이니까 김목사님이 아주 걱정을 하는 거라. 막상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시면서. 그리고 그때 미야가와 상이라고 토요나가 상하고 같이 시민회 하던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나를 보면서 혹시 피폭 당한 장소를 알고 있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다 뿐이냐고 그러니까 통역관을 태우고 나랑 같이 거기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학교 쪽에 소방도로가 딱 나고 신사랑 분리가 되어 있어. 그날이 4월 6일이라. 날짜도 안 잊어. 그렇게 내가 여기 길이 없었다고 하니깐, 미야가와상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동네 공민회라고 일종의 경로당 같은 데서 그 회 회장을 데리고 와. 그러니 그 회장이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새 길이 나던 데가 있는데 그게 미사사혼마치 삼초메(三篠本町3丁目) 가는 그 길 중간쯤에 큰 나무가 있는 집이 있었어. 그 터가 아주 크고 부잣집이었다고 하니깐 그 영감님이 그것도 맞다 하는 거야. 그래 그 집도 갔더니 그 나무가 없어. 그 나무가 왼쪽 떨어지고 5년 있다가 죽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바(大芝) 공원에 갔던 이야기도 다 하고, 야수이무라 오테라(お寺, 절)까지 갔어. 거기서 피난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흘 만에 수첩이 딱 나왔어. (최용효, 남, 1928년생)

최용효 씨의 경우 또한 앞의 홍지만 씨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피폭 사실'을 문서와 증인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을 직접 그 장소로 가서 당시의 시공간에 대한 기억을 재연함으로써 인정받은 사례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수첩을 통해 최용효 씨는 1990년대 협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회원 가입 심사에도 참여했다. 일본에서 받은 수첩이 그의 기억에 '진실'이라는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원폭 피해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식민 지배와 전쟁 수행의 주체로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대상이었지만, 히바쿠샤로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는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 심사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경험된다. 특히 심사를 행하고 '혜택'을 주는 주체로서 일본 정부를 대하는 이러한 인식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고령화, 정치적 연대와 호소에서 법적 소송으로의 운동 방향 전환, 그리고 그 결과로서 402호 통달의 폐지가 결정되어 수당을 받게 된 2003년 이후부터, 수첩을 소지하고자 하는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 더욱 급속하게 증가했다. 수첩을 교부하는 행정관료제적 절차들이 모두 이들이 '진짜' 혹은 '실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진행되고, 심사를 진행하는 면접의 엄격함과 까다로움은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과 비슷하게 경험된다. 많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수첩 교부를 '합격'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들의 '실제' 경험과 무관하게 이 심사 과정이 일본 정부를 수첩을 교부하는 심

179) 오랫동안 히로시마도일치료위원회 간사를 맡아왔다.

사자 혹은 심판관으로서의 최종심급의 권위를 갖는 기관으로서 경험된다.

公費負担者番号	1	9	3	4	6	0	2	2
公費負担医療の受給者番号	5	5	6	4	1	6	4	

広島市長 


フリガナ 氏名		明治 12 年 月 日生 性別 (男)・女
被爆時の年齢	満 21 歳	
居住地 (現在地)	韓国 ソウル特別市 陽川区	
交付年月日	昭和 21 年 2 月 4 日	

原社版108 17.2改 A 6

法第1条による区分	第 1 号
被爆の場所	広島市 江波町 爆心地から 4.5 キロメートル
被爆直後の動行 (おおむね 2週間以内)	8 月 日 入市
被爆当時の外傷・熱傷の状況	
被爆当時の急性症状 (おおむね 6箇月以内)	
過去の健康状態とかわつた主な傷病名及び時期	

<그림 24> 피폭자건강수첩의 안쪽 면

*왼쪽 상단에 공비부담자번호, 공비부담의료의 수급자번호(소위 '수첩번호') 아래 '수첩'을 교부한 히로시마시장의 인장이 찍혀있다. 그 아래에는 수급자의 이름과 생일, 성별, 현재 주소, 피폭 당시 나이, 교부일자 등이 표기되어 있다. 오른쪽 상단부터 피폭자 구분(직접-1호, 입시-2호, 구호-3호, 태아-4호), 피폭의 장소 및 폭심지로부터의 거리, 피폭직후의 행동, 피폭당시의 외상·열상의 상황, 피폭당시의 급성증상, 과거의 건강상태 등이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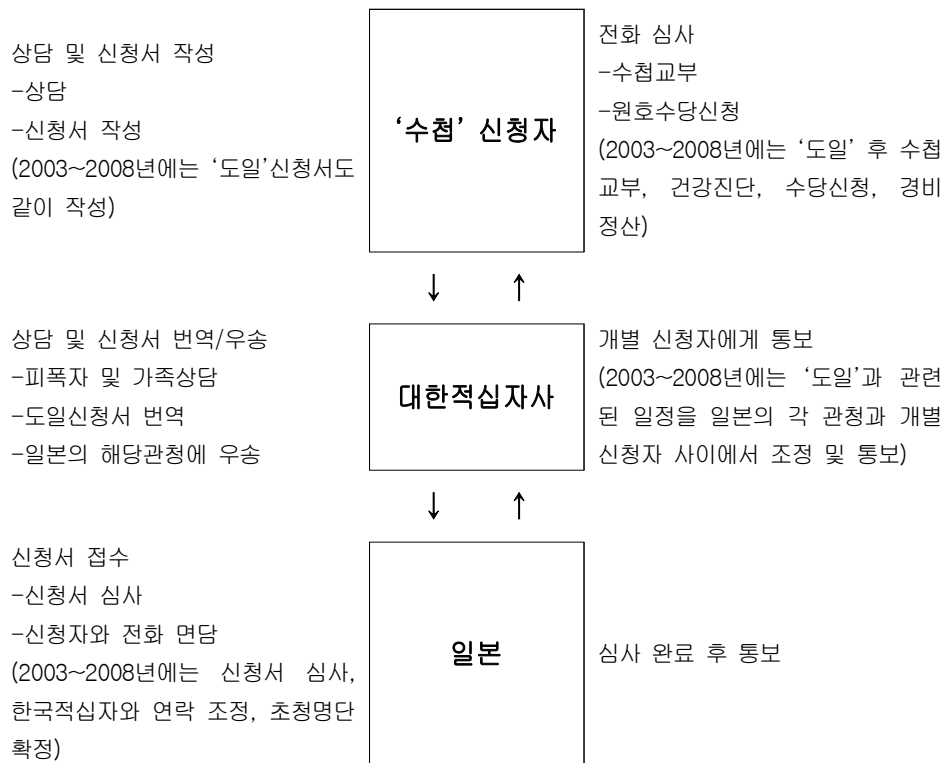
健康管理手当証書	
韓国 ソウル特別市 陽川区	記号番号 ひしけ 2.255 <small>被爆者健康 手帳番号</small> 55 16-6
	生年月日・性別 大正 12年 月 日 男
	疾病の名称 水晶体混濁による視機能障害
	認定年月日 平成 21年 11月 13日
	手当月額 金 33,800 円
	支給期間 平成 21年 10月から 平成 26年 9月まで
上記のとおり、原子爆弾被爆者に対する援護に関する法律によって、 健康管理手当を支給します。	
平成 21年 11月 13日 広島市長 	

<그림 25> 건강관리수당증서

*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은 후 건강 진단 결과에 따라 수당액이 결정된다.

3) 경계 진입 과정에서의 인솔자와 조력자

2003년 이후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수첩을 받고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상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를 통해 이행된다. 기억을 문자화하는 신청서 쓰기와 증거가 되는 문서와 기록들, 그리고 수첩을 소지한 증인을 찾아 '서류를 꾸미는' 일을 완성해 심사를 받는 일련의 과정은 이 특수복지사업소를 통해 일본의 해당 지자체와 연결된다. 아래의 <표 17>은 한국에서 히바쿠사가 되는 절차, 즉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고자 하는 이들이 거쳐야 하는 행정관료적 절차를 보여준다.



<표 17> 한국원폭피해자가 한국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신청할 경우의 발급 절차 (보통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됨) (출처: 백옥숙, 2004 『在韓原爆被害者の 특성과 지원현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II-8(p.33)을 현재 변화된 상황을 첨가해 재구성)

위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수첩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직접 일본으로 도일해 수첩을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 과정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가 이 일을 매개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더욱 더 그랬고, 동사업소가 업무를 주관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 '이 관계를 잘 아는, 혹은' '요령을 아는 사람'의 '인술'에 따라 수첩을 받기도 한다. 수첩을 교부 받는 일이 개인들에 맡겨져 있었던 예전에는 특별한 연줄망이 없는 경우 그 방법이 제일 빨리 수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어서 그랬고, 지금은 특수복지사업소를 통해 경유할 때보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수첩을 받는 편이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수첩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첩 신청과 관련된 모든 행정관료제적 절차를 마치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길게는 2년(주로 2003~2009년 사이에 소요되던 기간)이다. 흔히 '관료주의적 시간(bureaucratic time)(Hoag, 2011:86)이라고도 불리는 기다림 혹은 시간 지연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수첩 받기 과정에 그대로 적용된다.¹⁸⁰⁾ 민원을 통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외국에서 이뤄지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합격' 여부를 '초조하게' 혹은 '까막까막' 기다려야 하거나 때로 사망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관료주의적 시간의 지연과 기다림은 피폭자건강수첩 행정을 담당하는 일본 지방 행정 당국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비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료주의적 시간 지연은 인술자를 따라 일본에 직접 가서 수첩을 받는 경우에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 비용은 신청자들의 몫이지만, 시간과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고, 답답함과 초조함도 경감된다.

그러나 수첩 신청자들이 인술자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단순히 시간을 줄이기 위함만은 아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첩을 교부받는데 거쳐야 할 각종 서류 작성과 심사는 한편으로는 그 관료제적 무심함과 비인격적인 대면으로 과거 피식민자들이 갖는 회한과 분노를 배제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 식민지 시절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소재를 증명할 만한 문서를 수반한 이들이 여러 해 동안 이러한 문서작업을 해온 인술자를 만나게 되면, 그 과정은 매우 상투적이고 정형화된 일련의 작업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이들 '인술자'들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당시 전후 사정을 잘 알아 서류를 작성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 있고, 증인과 증명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혹은 심사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다. 즉 이들은 신청자들의 서류를 심사에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일본어로 번역해 작성해 주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주면서도 도일과 일본 체제시

180) Hoag(2011)는 관료주의적 시간은 관료제의 중요한 작동 원리이면서 관료들이 고객(민원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출입국 허가와 관련된 행정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을 갖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나치고 반복적인 지연은 결국 그 민원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암묵적인 버물이 오가게 하는 사인이 되기도 한다.

필요한 음식이나 숙박, 동선 문제도 요령 있게 짚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당연히 일본어도 잘하고, 히로시마를 훤히 아는, 그리고 이런 일을 많이 해 본 사람들로서 그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암묵지(tacit knowledge) 같은 것들이 있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거나 혹은 해당 지자체의 일본 영사관을 통해 수첩을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류를 만드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자가 현지조사 초기에 이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생각은 실제 원폭피해자들의 수첩 교부 과정의 지난함과 까다로움을 보면서 조금씩 사라져 갔다. 또한 일부 인솔자들의 경우 위의 사례와 달리 수첩을 교부 받는데 들이는 수고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수첩을 취득한 이후에 히바쿠샤로서 받게 되는 수당과 수첩 취득과 함께 당연히 가입되는 회원으로서의 의료 혜택과 의료비 지원을 감안했을 때 이들에게 아주 무리한 액수라고 여겨지지도 않는다는 사실도 접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간 합의에 따라 제도적인 차원의 도일치료가 이뤄졌던 1980년대 초반 6년을 제외하고 2003년 이전까지 수첩을 받고자 하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돈을 들여 일본에 건너가 해당 관청에서 각종 행정 수속을 밟아야 했다. 당사자가 서류 준비와 도일 수속, 일본 체제, 심사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본어가 능숙하고 일본 사정에 밝은 사람이라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주변의 지인이나 친인척, 혹은 일본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인솔자들이 한결같이 1930년을 전후로 출생한 이들로서 일본에서 소학교 고등과 혹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들이라는 점은 수첩을 받는 데 필요한 사회문화적 자본의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인솔자들을 통해 수첩을 교부 받는 것이 일정한 경제적 비용 혹은 거래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과 달리 연구자가 '조력자'라고 한 이들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수첩 교부 과정에서 인솔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그 형태와 의미는 조금 다르다.

(연구자: 협회 기록에 보면 금능군(현재 김천시) 사람들이 히로시마에 많았다고 하는데, 히로시마시청에 근무하던 공무원도 있었다고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대구에 저희 친척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만. 오래 전에 가입하셨어요. 초창기에 다 하신 분들이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일찍 회원으로 가입하셨을까요?) 대구에 계실 때 서로서로 아니까 회원가입 하자 하는 바람이 불었는지, (외가쪽 조카뻘의 인척) 이OO이 가족들이 이 소식이 빨라서 우리한테도 연락이 와서 우리가 대구까지 가서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 누구더라, 김분순이라고 그 분이 피폭자를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을 알게 되어서 우리까지 다 하게 되었어요. 일본에도 잘 다니고 전부 알선도 해주고, 어머니 일본에서 수첩 내려고 할 때에도 같이 도와주시고,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신청은 했는데, 일이 바빠서 나중에 오사카에 출장갔다가 히로시마로 가서 조금 늦게 냈지요. 김분순 씨가 애를 많이 썼어요. 히로시마 시청에 들어가서 통역

까지 해주고 그랬어요. 우리는 대화가 안 되니까요. 어머니도 일본말을 떠듬떠듬만 하지 잘 못하니까요. 그 분은 일본 말을 잘 하더라고요...(사레비틀) 일부러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고마우니까 차비랑 해서 조금 줬어요.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조상록 씨 본인의 아들 결혼식에서 축의금으로 돌려 준 것 같아요. (조상록, 남, 1941년생)

조상록 씨는 원폭 당일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인 김천으로 돌아왔다.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해서 항상 빠쁜 세월이었지만 어머니는 친정쪽 식구들의 연졸로 일찍 협회에 가입했다. 수첩을 받은 것은 80년대 후반이었는데, 대구에서 부지부장으로 오래 활동한 김분순 씨가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일본의 <시민회>나 <도일치료위원회> 등과 오랫동안 연대활동을 해오며 일본 사회에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권리를 호소해온 초창기 회원 중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한편 이들처럼 일본의 시민단체 인사들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에 11월에 방문한 조정호 씨에게 원폭수첩을 교부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씨의 아버지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나이를 먹고 증언이 일정하지 못했는데 일본에 사는 사촌 형의 소재를 알게 되어 사촌누나가 피난해 온 정호씨와 가족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5번째 신청으로 겨우 수첩을 받으신 겁니다. 너무 까다로운 일본 측의 심사에 분노를 느낍니다만 하여튼 나온 것을 기뻐하고자 합니다. 오른팔을 잃고 고생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좋은 보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산에서 일하신 고흥군의 서진수 씨와 진도의 김정근 씨의 신청서를 겨우 완성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히로시마의 친정에 갔다 왔는데 히로시마 역 뒤에 있는 후타바야마(二葉山)에 올랐더니 서진수 씨와 김정근 씨가 피난가신 고사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실감 있게 진술서를 썼습니다. (2013년 1월 수첩을 받지 못한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수첩 취득을 도와주는 일본 <시민회> 의 한 회원으로부터 받은 편지 중에 서>

위에 인용한 일본 <시민회>의 회원은 결혼 하기 전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1980년대 후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수첩 교부를 돕기 시작했다. 협회를 중심으로 23억불 보상청구운동이 한창이던 때였다. 당시 새로 생긴 경남 지부의 지부장이던 김일선 씨와 박귀훈 씨 등도 함께 경남의 여러 지방에 퍼져 있던 원폭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녀의 이런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녀가 하는 일은 원폭피해자로서 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의 수첩 교부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한국에 건너와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 피폭 당시의 상황을 듣고,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나서 '실감 있게' 진술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부터 이들의 심사 과정에 증인을 찾는 일 등까지가 모두 그녀가 하는 일들이다. 이런 활동은 일본 <시민회>의 여러 인사들과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그녀와 같이 한국어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을 직접 방문해 증언을 듣는 일이

주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된다.

본 장의 1절부터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수첩을 받는 일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명서나 기록을 찾는 것, 그리고 심사를 거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사회문화적 자본과 지식, 요령을 필요로 한다. 특히 증명이나 증인과 관련해서는 친인척 연줄망이나 식민지 시절에 작성된 공적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이와 같은 데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 수록 수첩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짐을 알 수 있었다. 위에 인용한 회원들과 같이 일본의 <시민회>에서 오랫동안 해온 일 중의 하나가 이렇게 수첩 받기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들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히바쿠샤'의 경계를 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助力者)들인 것이다.

이들은 '인솔자'들과 마찬가지로 원폭에 대한 지식과 학습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수첩 교부 행정과 관련된 요령에 대한 암묵지를 통해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일본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시킨다. 물론 이들이 한국원폭피해자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히바쿠샤의 경계를 넘게 하는 데에는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히바쿠샤의 행정관료제적 통제에서 이 일본인 조력자들의 존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들 시민단체들의 인사들은 오랜 세월 연대를 통해 히바쿠샤의 시정권적 경계를 허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첩의 교부 과정에서 과거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는 사상되고 기록과 문서들로만 매개되는 행정관료제적 통제 과정에서 많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기에 생겨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갖는 분노와 회한을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며, 수첩 교부 과정의 관료제적 무심함이 아니라 과거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원폭 피해 방치에 대한 속죄와 위로를 곁들인다. 때문에 이들 조력자들이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교부해 주고자 하는 수첩은 단순히 수당으로 나타나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둘러싸고 그 간에 형성되어온 한일 양국의 역사적 과오들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하는 그들의 오랜 노력의 또 다른 한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5. 소결: 관료제적 경계 통제에서 포섭과 배제의 논리

402호 통달이 피폭자건강수첩의 국경을 넘어선 효력을 제약하고 있던 2003년 이전까지 현해탄을 가로지르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월경과 피폭자건강수첩 받기가 정치적이고 상징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것과 달리, 광귀훈 소송 등 일련의 재판 결과는 오늘날 한국원폭피

해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일본의 ‘히바쿠샤’들과 같은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데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법적 지위의 동등성에 대해서는 주목하면서도, 이 지위를 얻는데 거쳐야 할 행정관료제적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즉 소송 중심의 연구들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의 승소 결과들이들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문제를 기억과 증언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주류적 평화담론의 모순이나 트라우마, 사회적 고통의 담론적 차원에 주목했지만, 상대적으로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가장 주변화된 이들이 경험하는 관료제적 통제 방식이 그러한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통을 강화하며, 이러한 측면이 과거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 장에서 연구자는 일본의 원폭피해자 구호 정책에서 문서와 기록, 그리고 특정한 시공간을 기점으로 문자화되고 정형화되어야 하는 기억을 통해 피폭의 사실을 증명하는 피폭자 건강수첩의 교부 과정이 특정한 지위에 처한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일련의 차별화된 배제로 구조화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정관료제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에서 인술자와 조력자라는 특수한 형태의 실천의 매개자들에 대해 조명하고, 이러한 매개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그중 전자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샤라는 법적 정의와 인정 요건은 모든 원폭피해자들에게 동일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며, ‘인격’에 기반하지 않은 심사 절차는 그 신청자의 국적이나 과거 식민지시절의 지위, 성별 등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인격적 대면에 근거한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는 탈식민후 일본의 영토에 거주관계를 갖지 않은 이들, 그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극심해서 이를 기록과 기억으로 남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고아나 강제 동원된 징용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 원폭피해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문화적자본이 적고 친인척과 지역을 연고로 한 연줄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이들에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원폭피해자 구호에 대한 정보가 미디어나 정부의 홍보와 같은 공식적인 경로보다는 친인척과 지역을 연고로 한 연줄망을 통해 더 활발하게 유통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즉 자신들의 구호에 대한 소식 자체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구호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좀 더 구조적으로는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행정관료제적 통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히바쿠샤 인증 절차의 관료제적 형식에 맞게 신청서를 완성하는 데서 시작해 이를 입증할 기록을 동원하고, 최종 심사 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관료제적 통과의례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방식으로 틀

지워진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피폭 당시의 시공간을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할 객관적인 상황 묘사와 식민지 시절 생산된 문서에 증명의 효력을 두는 문서간의 위계는 이 같은 관료제적 절차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 가운데서도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사 절차에 필요한 기록이나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에 대한 사회적 재현과 기억이 그다지 활발하게 유통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희미해지고 불완전해진 기억들을 교정하거나 재배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이 갖는 불리함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관료제적 경험에서 과거 피식민자로서의 분노와 회한을 경험하면서도 그러한 심경들은 이 같은 행정관료제적 절차를 넘지 못하며, 과거의 식민지들과의 재회의 장에는 '불합격'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긴장들—Lavie(2012)의 규정에 따르면 관료제적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만이 자리를 메운다. 이처럼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히바쿠샤의 경계가 갖는 문턱의 효과는 히바쿠샤의 경계를 통제하는 관료제 그 자체에 내재된 것이면서, 그것이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는 이들을 둘러싼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 강화되어 특수한 계층 혹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같은 맥락에서 1장 2-2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관료제적 조직과 절차가 확장되는 것”이 일종의 “지배와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지배와 규칙을 정당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근대적인 방식”이라는 베버의 지적은, 그 현실태가 관료제가 실행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특수성에 따라 서로 다른 계급과 인종, 혹은 종족과 성별, 성차, 지위에 따라 차별적인 방식으로 그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관료제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문서 쓰기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매개자나 인솔자의 기능을 조명했다. 이를 통해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일련의 문서 작업들이 그 작업의 정책적 대상이 되는 이들보다 특정한 행정적/관료제적 실행에 대한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훨씬 수월하고 일상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¹⁸¹⁾ 그중에서도 일본의 시민단체 인사들의 한국원폭피해자 수첩 교부 지원 활동을 주목하고자 했다. 이들은 원폭에 대한 일본의 사회적 재현과 지식, 학습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수첩 교부 행정과 관련된 요령에 대한 암묵지를 통해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일본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시켜왔다. 이들은 수첩의 신청자가 아니라 한국원폭피해자들이 갖는 분노와 회한을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며, 수첩 교부 과정의 관료제적 무심함이 아니라 과거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원폭 피해 방치에 대한 속

181) 그런데 이와 같은 문서 쓰기와 매개자 혹은 인솔자의 존재는 오늘날 한국 사회 나아가 현대 사회의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많지 않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많은 사업적 업무들은 문서와 쓰기를 통해 매개되고, 이러한 부분이 특화된 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한국의 관공서나 도심에 자리 잡은 각종 대서소(代書所), 공증/번역원, 유학원, 비자/여권 발급 대행 업소 등과 같은 곳들이 그러한 예를 잘 보여준다.

죄와 위로를 결들이고자 한다. 이들 조력자들의 행위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둘러싸고 그 간에 형성되어온 한일 양국의 역사적 과오들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하는 그들의 오랜 노력의 일부로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본 장에서 연구자가 이들 인술자와 조력자들의 존재를 조명한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구조화된 행정관료제적 통제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 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기 보다는, 이들이 현대 사회에서 행정관료제적 통제가 갖는 관료제적 무심함을 인격적인 면대면 접촉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로 전환하는 이들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소 중의 하나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혈연과 지역 연고의 연줄망이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월경을 통한 히바쿠샤의 경계 침범과 피폭자간 강수첩을 교부 받는 행정관료제적 문턱을 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추가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연줄'은 대개 혈연과 지연에 기반한 연고주의로,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나 인식이 있지만, 연구자는 '연줄망'이 연고주의의 핵심인 '인격적' 대면과 공통체적 기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줄망의 긍정적 측면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한국의 문화와 정치, 그리고 지역 사회의 권력구조 등에 있어 핵심 요소로 지적되어온 혈연을 기반으로 한 연줄망(김광익, 2012)과 출신 지역을 연고로 하는 연줄망(황익주, 2002)이 정책이 실행되는 관료주의적 행정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하나의 설명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VI. 결론

20세기 초중반 2차 세계대전이라는 문명국가간의 야만적이고 극단적인 대립과 파멸의 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 현장에는 일본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왔거나 혹은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로 강제 연행되었던 피식민국의 시민과 징용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인의 수는 전체 피해 인구의 약 10%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냉전시기 일본을 거점으로 동아시아 지역체제를 만들어낸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분단 한국에서 그들의 존재는 망각됐고, 원폭의 피해자 그리고 핵의 피해자를 구호하라는 호소는 힘을 얻지 못했다. 원폭의 희생을 초래한 전쟁 수행의 주체였으면서도 유일피폭국이라는 피해자 깃발 아래에서 전쟁의 책임을 회피한 일본 정부 또한 1980년대까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상 문제에 대해 한일회담으로 모 든 것이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에 대한 오랜 정치적·윤리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일찍 전쟁을 끝냄으로써 더 큰 희생을 막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미국에도 당연히 원폭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이들의 목소리는 닿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적 망각과 정치적 배제 속에서도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투쟁의 한 결과로서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의 국내법인 원폭원호법에 근거해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은 ‘히바쿠샤’라면 누구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피폭자건강수당과 의료비 등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관계 및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경험하고 한국으로 귀환한 이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상정하는 히바쿠샤의 범주로 편입되는—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배제되는—과정에 대한 역사인류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민족지적 사례 연구로서, 일본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현지조사와 한국의 각지에 거주하는 원폭생존자들과의 생애사 인터뷰, 그리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보관중인 3,000여 부의 호적과 문서기록 조사에 기초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통시적으로는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과학적 맥락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한국원폭피해자가 어떻게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상정하는 히바쿠샤의 범주 속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지를 역사인류학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나아가, 공시적으로는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소위 수첩을 교부 받아 히바쿠샤가 되면서 겪게 되는 관료제적 경험(bureaucratic encounters)과 그 의미를 과거 식민자와의 재회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근대국가의 권력 실행의 한 형태로서 정책에서 특정한 형태의 범주의 경계가 설정되고 통제되는 데 있어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가 작동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1)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와 의의

본 논문은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사례 연구로서 이들의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간과해왔던 몇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였다. 우선 소송의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연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과 담론의 차원에서 이들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간과해온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역사적 경험을 피폭의 시점이나 피해자화(victimization)하는 관점에 고정시키지 않고, 이들의 경험이 탈식민 이후 미소냉전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미군정기(일본에서는 GHQ의 점령기)와 한국전쟁, 군사정권, 탈냉전 등 한국의 격동적인 근현대사 흐름 속에서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연결되는 과정 또한 외교적, 정치적, 법적 차원의 보상 책임과 요구에 대한 응대로만 해석하지 않고, 이들이 해방 이전부터 축적해온 사회문화적 요소들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GHQ의 전후 재일조선인 그리고 재조일본인의 귀환 정책에 따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귀환동포(歸還同胞)들은 원폭의 급성기 장해에 대한 치료도 끝나지 않은 1945년 늦가을과 초겨울에 집중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전신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협회 창립을 도모하던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있던 한일협정 직후의 일이다. 한국원폭협회의 결성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서 원폭피해자의 등장을 의미했고, 또한 이는 이들의 피해가 개인적 비극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책임과 보상의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런데 한국원폭협회는 결성 초창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모두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 피해자 보상 문제는 해결됐으며, 이제 모든 피해자 보상 문제는 '국내 문제'라는 양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그들의 주요한 활동의 대상으로는 한국 정부가 우선시 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여러 호소에 대해 무시에 가까운 대응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활동에도 끊임없는 제약과 감시를 행했다. 그 여파로 1960년대 후반 이후 줄곧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은 '정치색'을 띠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이뤄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개별적 차원에서는 '자기검열'로, 조직적 차원에서는 정보 당국의 직접적 감시로 이어졌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활동 또한 구호금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가장 안전한 방식의 교류 쪽으로 틀 지워져 나간다. 이는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급격히 보수화되는 방향으로 틀 지워지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활동에 주목한 것은 일본의 시민사회였다. 일본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자이칸히바쿠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접하게 된 1960년대는 일본 시민사회에서 고양된 반전평화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운동이 활발하던 때였고, 반핵 움직임이 차차 정당 계열화되어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과 가난, 정치적 격동과 억압 아래에서 '원폭의 피해'라는 문제가 별다른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지 못하던 한국 사회와 비교했을 때, 일본 시민사회의 지원은 이후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거기에 연대한 일본 시민사회 운동 진영의 움직임은 그간 '유일피폭국', 그리고 '평화의 초석'으로서의 '히바쿠사'라는 담론 속에 가려져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과거 피식민지들과의 마주침에서 온 충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본에서 '유일피폭국'이라는 언설이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 수행의 책임에 대해 언제나 애매한 입장과 회피로 일관할 수 있게 한 주류적 내셔널리즘의 보편적 수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속에 내포된 모순과 균열에 대한 자각 또한 그 언설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정치사회적 의미는 매우 양가적이고 역설적이다. 또한 이와 같이 일본 사회에서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가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한일협정이 이루어지던 1965년을 즈음한 기간 동안 양국 시민사회 간의 연결은 시민사회 운동 진영 인사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히로시마의 재일조선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간 연결망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 토대는 식민지 시기의 '내지'와 '조선'으로의 이주와 귀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우는 특히) 귀환 이후 밀항을 통한 재(일본)입국 과정 등을 겪으면서 형성된 한국원폭피해자 및 일본 시민운동가들의 사회적·인적·문화적·교육적 자본 등에 깊은 사회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일본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직접 편입되는 것이 한국원폭협회와 일본 시민단체들이 연대 초기부터 목표로 한 바는 아니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형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일본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보는 협회의 입장은 1980년대 후반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 진행한 23억 달러 보상청구 운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이 40억 엔의 인도적 지원금 교부라는 형태로 변질되면서 협회 차원의 보상 요구 운동은 좌절되고 회원들의 고령화와 함께 운동의 동력도 크게 약화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결과들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식민지배와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원폭의 피해자로서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상정한 히바쿠사라는 경계 안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1978년 손진두 소송의 승소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 '402호 통달' 조치가 일본의 영역 바깥의 원폭피해자들을 배제하는 논리로 기능하는 가운데, 2002년 광귀훈

소송의 승소 판결은 그와 같은 402호 통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일본 피폭자원호법의 초국경적 적용을 이끌어냈다.

이로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이제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상정하는 히바쿠사라는 범주에 상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피폭자건강수첩이 갖는 의미도 변화시켰다. 402호 통달이 피폭자건강수첩의 국경을 넘어선 효력을 제약하고 있던 2003년 이전까지 현해탄을 가르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월경과 수첩 받기가 정치적이고 상징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것과 달리,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수첩 받기는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정의하는 히바쿠사라는 법적 자격을 획득해 일본정부로부터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관료제적 절차가 되었다. 하지만 신체와 기록, 그리고 기억을 통해 구성되는 행정관료제적 심사 절차는 원폭이 투하된 지 60여년이 다 되어서 진행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수첩 받기에 훨씬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며, 특수한 의미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는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사례 연구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경험이 과거 식민지들과 관료제적으로 조우(bureaucratic encounters)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재조명되고 구성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적 경험은 피폭 상황 기술이라는 형태로 물화되어 심사되는 과정과 크게 비교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이들의 생애사 인터뷰에서 얻은 구술 자료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2)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와 의의

패전 후 GHQ의 점령 하에서 일본의 원폭피해자들은 다른 전쟁피해자들인 소위 전재자(戰災者)와 차별화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후 전쟁피해자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원호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지만, 일본정부는 전쟁피해와 관련한 개인 보상의 문제를 '과거에 국가에 의한 고용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그에 준한다고 간주되는 자'에 한정하여, 그 이외의 경우를 배제했고 일본의 원폭피해자들 또한 일반의 전재민들과 차별화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군사 및 과학적 관점에서의 관심은 대단히 높아서 일본 군부와 학계는 원자폭탄의 인체에 대한 효과와 피해의 조사, 신병기의 전상(戰傷)의 연구와 치료방침을 수립할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나간다. 이후 실험이 아닌 실제로서의 첫 원폭생존자 연구를 진행한 ABCC(舊원폭상해조사위원회)/RERF(現방사선영향연구소)의 연구들은 미소냉전체제 속에서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둔 미국의 '시민방어계획'이라는 군사적 관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원자력(산업) 시대'를 맞아 예방과 치료 수단 강구라는 차원에서 틀 지워져 나가게 된다.

1954년 GHQ의 점령이 해제된 이후 2년 만에 벌어진 미국의 비키니 환초 수소폭탄 실험

힘으로 인한 어부들의 피폭 사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 구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비키니 피해는 이전까지 지역적이고 국소적인 차원에 머무르던 원폭피해자 구호의 문제를 일본의 정치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원폭피해자들의 '손상된 신체'가 일본 반핵평화운동과 원폭피해자운동의 중요한 표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런데 원폭피해자구호의 제도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원폭피해자단체나 평화 단체들이 사용하던 '원자폭탄피해자'나 '원폭환자', '원폭피재자', '원폭장해자' 등과 같은 용어가 아닌 '원자폭탄피폭자', 즉 그 단어를 줄여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히바쿠샤'라는 단어를 특정한. 이후 일본 원폭피해자구호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히바쿠샤' 범주의 경계가 구성되어온 과정은 피폭의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연구들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고, 일본의 국내외적 정치의 장에서는 과거의 '제국 일본'이 수행한 전쟁과 식민 지배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원폭피해자원호정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전후(戰後) 과거 피식민자들의 원폭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히바쿠샤의 자격은 일본국의 영토적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시정권(施政權)의 속지주의 논리를 들어 배제시키고, 자국 원폭피해자들의 원호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원자폭탄의 피해가 전쟁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와 구분되는 '특수한 피해'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수인론(受忍論)과 균형론(均衡論)을 내세웠다. 이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구호정책이 과거 일본국이 수행한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도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오직 원자폭탄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한정되는, 일종의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Petryna, 2002, 2004)으로서 틀 지워져나감을 의미했다.

그런데 히바쿠샤의 법적 개념이 그와 같은 원자폭탄에 의한 인체의 생물학적 피해의 특수성에 기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원폭생존자에 관한 과학연구의 한계와 피폭의 신체 영향에서 나타나는 내재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 정책의 장에서 히바쿠샤라는 범주로 포함되는 자격의 통제, 즉 히바쿠샤를 판별해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하는 절차에서는 생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억 그리고 그것의 발화된 형태로서의 문서화된 진술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즉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은 자"라고 정의된 '히바쿠샤'의 법적 규정은 '히바쿠샤'라는 용어가 단순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를 지칭하는 한 차별화된 이름이나 생물학적 상태에 대한 규정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공식적 자격'을 부여하는 관료제적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샤의 범주가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징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기반을 갖는 경계로서 구축되었음을 나타낸다.

물론 히바쿠샤의 통제 과정에서 기록과 문서, 기억이 중요한 매개가 된 점이 피폭자 범주의 경계를 구성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과학 연구의 무용(無用)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

후 일본에서 원폭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연구, 그리고 일본의 독자적인 연구에서 원폭피해자들의 기억과 기록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과거의 실재에 대해 발언했다 기보다는 상호간섭적이었다. 또한 피폭자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관료제적 통치 속에 편입된 과학 연구의 결과들은 관료제가 요구하는 각종 기준들로 재설정되어 고체화되고 표준화되었으며, 원폭피해자들의 기억과 기록들도 이러한 고체화된 지표들과 끊임없이 비교 계량되어야 했다. 또한 이와 같은 과학 지식이 단순히 국가 혹은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만 기능하지도 않는다. 3장의 3절의 원폭증 인정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항시적으로 불확실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 과학 지식들은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행정관료제적 통제 기준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행정관료제적 절차에 맞추어 굴절되며, 특히 경직화되고 고체화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에 의한 삼중 구조의 경계를 갖는 정책적 범주는 각각의 고유한 포섭과 배제의 논리로써 때로 서로를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어그러지기도 한다.

관료제적 실행에 편입된 각종 심사 기준들의 고체화, 그와 같은 관료제적 기준들에 부합되지 않아 소송을 벌여야 하는 경계 밖의 사람들, 수교(修交)가 되지 않아 '수첩'을 교부 받을 수 없어 '히바쿠샤'가 될 수 없는 북한 거주 원폭피해자들, 그리고 관료제적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해 '수첩'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진짜' 원폭피해자들은,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도 못한 채 스스로 그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해야 할 책임만을 떠안고 결국 히바쿠샤의 범주로 편입되지 못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단지 원폭피해자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에서 특정하게 형성된 정책적 범주들의 탄생과 이들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정책 프로그램의 관료제적 실천 과정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정책과 관료제에 관한 인류학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3) 정책과 관료제에 관한 인류학 연구의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의의

본 연구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역사를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과의 연결 속에서 분석하는데 있어 특정한 범주의 외연으로서 '경계'라는 개념을 채택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계'의 역사적이고 구성적인 차원을 조명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경계가 특정한 형태로 본질화되고 자연화되는 과정(a process of essentialization-naturalization)(Lavie, 2012:783)을 거친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경계가 정책의 장에서 가장 주변화되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장 물화된 형태로 경험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 중 전자와 관련해서는 피폭자 범주의 경계가 단일한 어떤 지표로서 완전하게 고정되지 않으며, 또한 외부의 침입이나 침범을 완벽하게 막아 내는 불투수성(不透水性)으로 묘사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자로서 문서와 기록, 그리고 기억의 진술을 통해

피폭의 여부를 판단해 히바쿠사의 자격을 인증하는 유일한 독점적 권위를 가진 심사자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히바쿠사의 범주적 경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지위를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했다. 일본의 원폭3법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자라고 규정된 히바쿠사의 경계가 피폭에 대한 과학 연구의 미완결성과 행정관료제적 통제 과정에서의 기록과 기억의 상호구속과 간섭, 그리고 과거 피식민자이면서 국경 밖의 재외국민피폭자들이었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물리적·상징적인 월경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침식되거나 확대되면서 변형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1970년대 손진두 소송과 2002년 광귀훈 소송은 “히바쿠사” 행정의 시정권 범위를 해체함으로써, 일본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초국경적 적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물론 이와 같은 히바쿠사 범주의 경계가 드러내는 불투수성과 구성성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형태의 경계는 관료제적 실천과 결합해 특정한 방식이나 방향으로 굴절되고 변형되어 고체화되고 구조화된다. 오늘날 일본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히바쿠사’의 과학적, 법적 경계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일본에 거주하는 히바쿠사와의 영토적 경계를 통해 나눠진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행정관료제적 실행상의 내외 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의 소송에 집중하고 성과를 얻고 있는 점, 또한 스스로를 히바쿠사라고 칭하지 못하고 원폭체험자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해나가는 히로시마검은비연락협의회 등의 활동 등도 이를 잘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경계의 구성과 통제 과정에 있어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문서를 매개로한 관료제적 실행과 그 효과에 주목했으며,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는 과정에 이르는 사회문화적 맥락들도 조명했다. 한국원폭피해자의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사례연구는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원폭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한다는 목표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료제적 실행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원폭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을 이들에게 가장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 구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을 높인다. 근대적 통치의 기반으로서 관료제가 ‘도구적 합리성’을 전제로 작동되는 기구라고 했을 때, 이는 통치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의미의 ‘실체적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베버의 지적은 본 사례 연구의 결과를 정확히 묘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실패 가능성은 자국 정부가 구호의 주체로 나서지 않고 원폭피해자들의 자조(自助)적 구호 및 투쟁단체로 활동해온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회원 통제 방식과 맞물리면서 무엇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시공간에 대한 감각이나 원폭피해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 그리고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연줄망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이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단지 그 형성과정에 대한 담론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의 관료제적 실천과 사회문화적인 관행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인류학자들이 어떠한 국가의 정책이나 관료제적 프로그램이 언제 그리고 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를 설명해야 한

다는 Gupta(2012)의 지적에 대해 본 연구 결과는 그와 같은 질문이 그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관료제적 통제 방식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누구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구조화되는지를 포함시켰을 때 좀 더 선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역설적 현상을 일본 정부 혹은 관료의 '악한' 의도에 의한 효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러한 현상이 정책적 실행 혹은 관료제적 통치에 내재한 모순과 양가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관료제적 통치의 문서적 기반, 그리고 문서의 물질성을 통해 구축되는 현대 국가의 통치를 기호학적 기술(semiotic technologies)–특정한 목표/목적에 의해 의미를 생산하고 해석하고, 규제하는 표상적이고 물질적인 수단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Hull(2008, 2012a, 2012b)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고, 연구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문서를 기반으로 한 통치는 문서 혹은 기록이라는 기호학적 표상이 통치의 목적으로 상정하거나 대상이 되는 '실재'와 언제나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3장에서 원폭생존자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과학 연구의 실패를 묘사한 장면은 관료제에 의한 통치의 실패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용될 수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생존자'들의 '피폭된 신체'에서 드러나는 '증상'은 과학의 장 안에서 데이터, 논문, 보고서의 수치들로 번역되어 '발안'되지만, 이는 역으로 어떠한 표식도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수치로 변환되지 못하는 '원폭의 생물학적 영향에 의한 증상'은 과학에서 '부재(不在)로 취급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나 존재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문서로 남긴 공증된 기록은 관료제 안에서 '실재'(實在)로서의 힘을 발휘하며, 역으로 공적인 문서로 기록되거나 '쓰이지 않은' 원폭의 경험은 관료제 내에서 '부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지식 생산 방식의 하나로서 과학이 극히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지식적 실재'를 만들어, 현대 사회에서 유일한 지식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료제적 실재' 또한 불완전하고 파편적이며 부분적인 '기록적 실재'들일 뿐이지만, 그들은 관료제적 통치와 정책적 실행 과정 속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 과학과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동일성, 그리고 그에 따른 역설은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과학주의, 전문가주의, 서류상의 환자, 위장 전입, 서류상의 복지수혜자,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등과 같은 사기와 기만 형태를 부추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의 견해, 공적 문서라는 통치 수단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을 끊임없이 주변화 시키고 배제하는 양가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나 정부에 의해 차용되는 '가독성'을 높이는 통치 수단들은 바로 그 통치 수단에 내재된 불완전성으로 인해 '비가독성'과 '불투명성'을 생산 (Scott, 2012[1998]; Hull, 2008:503)해 넘으로써, 그와 같은 양가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근대 국가의 통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인류학적 연구들은 이와 같은 관료제적 통치의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효과와 실천들이 현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전개되는 지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통치 행위를 이해하는데 있어, 지식과 담론적 실천 속

에서 관료제적 감시를 내적 규율화 하는 주체의 형성과 완전한 통제를 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통치 방식이 내재하고 있는 불완전하고 불투명하며, 삐걱거리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함으로써, 모순과 양가성을 띤 체 형성되고 변화되며, 또 명멸해가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책의 형성과 실행, 나아가 국가의 통치 과정에 대한 더욱 풍부한, 그러면서도 현실에 친착한 경험적 연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정책의 장에서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가 상호 작동하는 방식과 그 효과를 살피는데 있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진행되어온 역사적인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굴절을 조명했다. 그러다보니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행정 규칙이나 법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 역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또한 관료제적 실행과 통제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도 특정한 관료의 행위나 실천이 아니라 문서로 매개되는 관료제적 통치 방식 그 자체가 갖는 특성에 많은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관료들의 행위와 실천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료제 내의 관료들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은 오랜 세월이 걸쳐 축적되어온 강한 관료제적 통치 기반과 문화에 비해 그에 대한 인류학적, 더 나아가 사회과학적 연구와 해석은 극히 드문 편이다. 본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관료제의 실행이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관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국과 동아시아 각국의 관료제적 통치 문화에 대해서도 (관료제 실행에 대한)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책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범주의 탄생 과정과 그 정책적 함의를 경계라는 개념에 친착해 고찰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범주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지식적, 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 범주적 경계가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관료제적 작동 방식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계'라는 개념에 얽힌 상징적, 물질적, 영토적 함의들에 유의하면서, 이 개념이 정책과 관료제적 통제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분석적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투수성이 매우 강하고 고정되기 어려운 비본질적인 형태로 묘사되어온 '경계' 그리고 '국경' 등이 정책의 형성과 실행, 관료제적 통제 과정에서는 내외 구분이라는 본래적 의미에 매우 가깝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계급과 성차, 인종, 국적, 사회문화적인 자본 축적의 유무 등에 따라 매우 차별화되고 배타적인 형태로 경험된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초국경성이나 탈국가화,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경계 등과 같은 수사들로 설명되곤 하는 현상들이 현실에서는 계급이나 성차, 인종, 국적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경계 통제와 압박, 국가주의적 제약과 규

칙, 혹은 더 나아가 강한 국민 국가 내의 권력 장 속에서 맥락화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경계의 개념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원폭원호법의 초국경적 적용이 현상적으로는 탈국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같은 정책이 그 실행 과정에서는 국가 간의 영토적 경계와 물리적인 장벽에 근거해 각종 행정 규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국민 국가의 내적 논리와 제약 속에 더욱 강하게 포섭된다는 점은 그와 같은 적용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그와 같은 경계와 장벽을 넘기 위해 필요한 사회문화적·경제적 자본들에 의해서도 강하게 구속되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의 초국가성이나 탈영토화, 혹은 비-경계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연구들은 그러한 현상이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경계 내적, 영토적, 국가적 제약과 구속력,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특정한 권력 장 안에서 차별화된 위치에 놓인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 효과를 강화하거나 감쇄시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사례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좀 더 보완되거나 새로운 연구 주제들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대한 구술 자료를 얻기는 했지만 그와 관련된 문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950년대 말 합천지역 원폭피해자들의 모임이나 1960년대 미국에 대한 보상 요구와 그에 대한 응대, 1970년대 원자력발전 정책과 원폭피해자 문제의 연계 등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발전 정책은 미소냉전 대결의 대표적인 산물로서, 미국과 소련을 비롯해 강대국들 사이에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된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비록 명시적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에서 한국에서도 1960년대에 미국의 원전 수출 계획에 따라 기술 도입을 추진하던 때였고 (윤순진·오은정, 2006), 1970년대는 상업적 발전 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있던 중요한 시기였다. 이런 시기 한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원폭피해자 문제가 불거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증언 등이 있었다는 점은 한국의 원폭피해자 문제와 원자력발전정책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또한 세계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핵무기와 원자력발전 정책은 통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 그중에서도 전쟁과 평화, 반핵 담론의 중요한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으나, 이러한 담론들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체제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혹은 지역적으로는 어떠한 특수한 담론들과 결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나가사키 원폭에 대한 번제(燔祭)설의 역사적 기원과 기억의 문제에 대한 시조 치에(2013)의 연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의 표상이 역사적 조건과 구조, 그리고 문화와 지역적 차이 속에서 차별화된 형태로 유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한국원폭협회나 원폭피해자2세환우회, 혹은 반핵 단체나 평화 단체 등에서 그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자국의 해방'을 가져온 '원폭'이라는 상징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담론적 실천들이 어떠한 구조적, 지역적 맥락에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해방 후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일종의 '귀환 동포'들이기도 했다. 그간 해방 후 조선으로 돌아온 귀환 동포에 대해서는 정책 차원에서의 연구 등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그 양이 매우 적고, 인류학적으로 검토된 경우는 일제 시기 오사카 등지로 이주했다가 해방 후 제주도로 귀환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약간 있을 정도다. 특히 식민시기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일본 본토에 남아 있는 재일한인/조선인들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이들의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져온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4장 1절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해방을 전후로 한 한반도의 탈식민 과정이 냉전의 초기 형태와 결합하고 남한에서는 미군정기 그리고 일본에서의 GHQ 점령이라는 특수한 지배체제와 맞물리면서 과거 식민 모국으로부터 피식민국 혹은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귀환 동포'의 일부로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피식민국'과 '고국'에 대한 경험은 매우 특수하고 양가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식민지배와 해방, 미군정기, 한국 전쟁 등의 혼란상 속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 국가의 형태와 기능이 채 갖추어지지 않은 이 시기에 과거 식민 모국에서 귀환한 이민 1.5세대와 2세대의 '고국'에서의 경험과 그 이전에 '일본'에서의 경험이 재해석되는 양상, 이후 '한국사람'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현재 '일본'으로부터 '해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이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해석은 그간 단순히 '해방'은 곧 '고국으로의 귀환'이나 '기쁨' 등으로 등식화된 내셔널리즘적 수사들로 이해되지 않는 차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일본'에서의 경험 또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인'들의 '과거' 경험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측면도 좀 더 세밀한 학문적 고찰을 요구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학 연구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포함한 현지조사와 생애사 인터뷰, 그리고 문서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생애사 인터뷰가 갖는 구술의 역사적·정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가 문서, 특히 호적 등으로 보완되고 문서 또한 구술로서 보완될 때 연구의 자료는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자료들은 현지조사에 기반하고 있을 때에만이 그 자료의 인용 맥락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호적 자료나 관료제적 행정 안에서 유통되는 문서 자료들은 한국 사회에서 혹은 더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경험들이 기억이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호적과 같은 관료제적 문서 속에 기록되고 반영되어온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관료제적 실행 속에서의 문서 그 자체는 역사인류학 더 나아가 인류학 전반의 연구 작업에서 새롭게 고찰되어 통합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영역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1) 한국어 논문 및 단행본

강수원

2000, 『망국민의 통한: 나의 독립운동과 옥중수기』 좋은친구: 서울.

고승제

1973,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04, 『원폭피해자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

국사편찬위원회

2012,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의 역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소송 자료 기증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권숙인

2002 「월경(越境)하는 정체성: 재일 한인, 민족, 그리고 '우리」, 『OK times』 (해외교포문제 연구소) 통권 제103호 pp.14-26

2008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피식민 조선인과의 만남과 식민지식의 형성」 『사회와 역사』 제 80집 한국사회사학회 pp.109-139

2010 「히노데소학교의 덕혜옹주」 『일본비평』 Vol.2, no.1 pp.252-267. 서울대일본연구소, 그린 비

권태준

1998, 「서구 19세기 국가 합리화 과정」, 『도시·환경과 계획』, 한울.

권현익

2008, 「세계냉전과 현대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권혁태

2009,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과 '유일피폭국'의 언설」 『일본비평』 1호(서울대일본연구소), 그린비

김경남

2008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호 pp.305-359

김광익

2012 『문화의 정치와 지역 사회의 권력 구조: 안동과 안동김씨』, 서울대학교출판부.

김광열

2010, 『한인의 일본이주사 연구』, 논형.

김승은

2012a, 「제한(在韓)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교섭태도(1965-1980)」, 『아세아연구』 제55권 2호 pp.104-135

2012b, 「한일 과거청산과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운동의 역사적 의미」,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의 역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 자료 기증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p.109-126.

- 김재근
 1968, 「한국원폭피해자의 현실」 『신동아』 68년 3월호 pp.179-187
- 김정경
 1993, 「한국 원폭피해자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종성
 2003, 「원폭피해자들의 삶과 소외 의식의 형상화」, 『새국어교육』, No.65.
- 김태기
 1998 「GHQ/SCAP의 對 재일한국인정책」 『國際政治論叢』 제38집 3호 pp.247-269
- 김효진
 2010 「끝나지 않은 전쟁을 기억하다」 『일본비평』 Vol.2, no.1 pp.224-251.
- 나카야마 시게루·요시오카 히토시 편저
 2000, 『일본과학기술의 사회사:종전에서 1980년대까지』, 한일미디어.
- 다카기 겐이치
 1995, 『전후보상의 논리』 한울
- 대일항쟁기동원피해조사및국외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1a, 『히로시마·나가사키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를 중심으로』, 동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서울.
 2011b, 『전시체제기 규슈(九州)지역 ‘아소(麻生)광업’ 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동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서울.
 2009, 『강제동원명부해제집1』
 2008, 『내 몸에 새겨진 8월』
-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2006, 「함께하는 세상-10주년 사업보고서(1996~2006)」
- 도노무라 마사루
 2010, 『재일조선인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 동북아역사재단
 2009, 『세계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일본의 전쟁 책임 자유센터 편 (서각수·신동규 역), 동북아역사재단.
- 라투르 외 지음
 2010, 『인간 사물 동맹』 (홍성욱 편역서 참조), 이음
- 리처드 로즈
 2003, 『원자폭탄 만들기: 원자 폭탄을 만든 과학자들의 열정과 고뇌 그리고 인류의 운명』, 문신행역, 사이언스북스.
- 미국부부비밀외교문서·김국태역,
 1984, 「재한국정치고문이 국무장관에게 (서울, 1946.3.19)」, 『해방3년과 미국: 미국의 대한정책 1945~1948』, 돌베개.
- 박경섭
 2009, 「조선인원폭피해자와 초국적 시민(권)」, 『현대사회과학연구』 제13권, pp.153-166
- 박경식

- 1978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박경옥 역), (고즈윈:한국) 일어번역서
- 박기주
- 2000, 「1930년대 조선의 산업변화와 인구이동」 『경제사학』 제28호
- 박수복
- 1986, 『핵의 아이들』, 한국기독교가정생활사
- 1975,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한국원폭피해자 30년의 역사』, 창원사
- 반용기
- 2001, 「피폭자의 삶과 고통의 세월」, 『현대사진영상학회』, Vol.4, No.1.
- 백충현
- 1987, 「재한원폭피해자의 현황과 법적 구제 문제」, 『대한변호사협회지』, 2월호.
- 백옥숙
- 2004, 「한국원폭피해자의 특성과 지원 현황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브리디외
- 2002, 『과학의 사회적 사용: 과학장의 임상사회학을 위하여』, 조홍섭 역, 창작과비평사.
- 손종민
- 2006, 『한국원폭피해자 복지지원제도 보장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 재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시쵸 치에
- 2013, 「일본 나가사키 지역 원폭담론의 변화: 준신여자학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 (정근식·나오노 아키코 편), 선인: 서울.
- 안자코 유카
- 2001, 「일본의 전시 동원 관련 재판의 진전과 현황」, 『중한인문학연구』, Vol. 6, pp.309-333
- 양현아
- 2001,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60권, pp.60-96.
- 2000,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 10호, pp.214-237.
- 오명석
- 2012 「지식의 통섭과 인류학」 『비교문화연구』 18권 2호 pp.175-222.
- 외교부 일본담당관실 정리보존문서
- 「한국인원폭피해자구호」 1974, 1978, 1980년도분
- 우즈미 아이코
- 2010,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김경남 역, 논형.
- 유철인
- 2011, 「구술생애사를 텍스트로 만들기: 제주혜녀 고이화의 두 가지 텍스트 비교」, 『한국문화 인류학』 44(2), pp.113-138.
- 윤순진·오은정
- 2006, 「한국 원자력 발전정책의 사회적 구성 : 원자력기술의 도입 초기(1954~1965년)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제14권 제1호, pp.37-74
- 윤태림·함한희
- 2006,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 이덕복
 1998, 「복지주의적 국가개입 양식의 정당화 논리」, 『도시•환경과 계획』, 한울.
- 이상화
 1995, 「재한원폭피해자의 생활과 남아 있는 보상문제」, 『한국현대사연구회 근현대사강좌』, No.7, pp.192-210
- 이영진
 2012, 『전후 일본의 특공 위령과 죽음의 정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
 2012, 「한인원폭피해자문제 관련 연구와 자료현황」, 『일본공간』(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 Vol.12, pp.229-246.
- 이철우
 2008,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경제와 사회』 제79호, pp.62-87.
- 이치바 준코
 2003, 『한국의 히로시마』(이제수 역) 역사비평사: 서울.
 2005, 「한국인원폭피해자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할 수 있는가: 21명 피폭자 구술체험기가 말해주는 것」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정근식 편·진주 채록, 선인: 서울. pp.399-413.
 2012, 「한국인 원폭피해자 시각에서 본 한일청구권협정과 피폭자원호법」. 『한국인 원폭 피해자 소송의 역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 자료 기증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p. 89-108.
- 이현숙
 1994, 「한국원폭피해자 지원활동 및 반전 반핵 평화 구축운동의 역사(1974-1994)」, 『원폭피해자 돕기 및 반전 반핵 평화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이현주
 2005, 「해방후 인천지역의 전제동포 귀환과 사회변화」, 『인천학연구』 제4호 pp.245-279.
- 임경택
 2012, 「근대 일본의 국적제도와 '일본인'의 설정」, 『한국문화인류학』 45(2), pp.3-36.
- 장인성
 2010 「제국의 기억을 보는 시선」 『일본비평』 Vol.2, no.1 pp.4-27.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7, 『민단50년사』 재일본대한민국민단편집위원회, 서울신문사 :서울.
- 전진성
 2008,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 원폭2세 환우 김형률 평전』 휴머니스트
- 정근식
 2011, 「강제병합 100년, 한일과거사 극복의 과제와 전망」 『8·15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위기와 '갈등'을 넘어』(2011년 만해축전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0 「전쟁기억과 재현을 둘러싼 지역정치」 『일본비평』 Vol.2, no.1 pp.156-203.
 2005, 「한국현대사와 원자폭탄피해자의 증언의 의미」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정근식 편·진주 채록), 선인: 서울. pp.13-21.

- 정근식·나오노 아키코 편
 2013,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 선인: 서울.
- 정근식 편·진주 채록
 2005,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서울.
- 정정길
 1997,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정혜경
 2011,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선인:서울.
 2006,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I: 일본편』, 선인:서울.
 2003,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경인문화사:서울.
- 제임스 스콧
 2012[1998],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the State』, 전상인 역, 에코리브르:서울.
- 조용욱
 2005 「일본 내 한인의 '귀환'과 한국내 일본인의 '송환'에 관한 해방 직전 미국측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여름호 제33집 pp.247-282.
- 진주
 2004, 「원폭피해자 증언의 사회적 구성과 내용분석」,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증언으로부터 역사로」,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정근식 편·진주 채록), 선인: 서울. pp.23-50.
- 최영호
 1995a,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1995b, 「해방 직후의 재일한국인의 본국 귀환-그 과정과 통제구조」 『韓日關係史研究』 (4), pp.99-135
 2009, 「해제: 일본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후 처리 문제」 『세계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편(서각수·신동규 역), 동북아역사재단.
 2010,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호 pp.265-303.
- 최이수
 2003, 「일제강점기 인적 수탈에 대한 피해보상소송과 그 법적 검토: 민사법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 pp.147-172
- 최일출
 2002, 「한국원폭피해자와 전후보상문제」 『김해문화』 통권 제21호 pp.62-91
- 최정운
 1992, 『지식국가론』, 삼성출판사.
- 하중문
 2010,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p. 193-225.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75,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보고서』

- 1984,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
 1989, 『그날 이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기록』
 1994, 『원폭피해자 돕기 및 반전반핵평화운동』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5, 『한국피폭자들의 현황자료집』
 1989, 『연혁·현황실태』
 2011,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
- 허광무
 2011, 「전시기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과 원폭피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지역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004,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제6호 pp.93-122
- 현규환
 1976, 『한국유이민사下』 (삼화인쇄출판사:한국)
- 홍성욱
 1999,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기술』,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과학은 얼마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 『인간 사물 동맹』 (편역서: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 이음
- 황익주
 2002 「한국 도시에서의 향우회의 조직패턴: 경기도 성남시의 사례연구」, 『지역사회학』 제4권 1호, pp.107-142
- 足立修一
 2012, 「前 미쓰비시 징용 노동자 재판의 일본에서의 성과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한국인 원폭 피해자 소송의 역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 자료 기증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이하 국사편찬위 자료집), pp.37-60.
- 龍田紘一郎
 2012, 「피폭지 나가사키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재판의 의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소송의 역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 (국사편찬위 자료집), pp.61-68.
- 豊永惠三郎
 2012, 「히로시마의 재한 원폭피해자 운동」. 『한국인 원폭 피해자 소송의 역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 (국사편찬위 자료집), pp. 69-80.
- 赤澤史朗
 2006, 「전몰자 추도와 야스쿠니 신사」, 『공익과 인권』 제3권 제2호, pp.63-80.

2) 일본어 논문 및 단행본

- 伊藤直子·田部知江子·中川重徳
 2006 『被爆者はなぜ原爆症の認定を求めるのか』 岩波ブックレット.

伊東壯

1988 「原子爆弾被害者援護法制定要求と在韓被爆者問題」 『在韓被爆者を考える』(在韓被爆者問題市民會議編), 凱風社.

1975, 『被爆の思想と運動』, 新評論.

日本原水爆被害者被団協議會編

1966, 『原爆被害の實相と被害者の苦しみ』.

日米共同研究機關 放射線影響研究所 (RERF: 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

1999, 『財団法人 放射線影響研究所 要覽』

李瑜煥

1960, 『在日韓國人の五十年史』(新樹物産:일본)

鎌田定夫

1978, 「廣島・長崎における外國人の被爆」 『平和文化研究會』創刊号 (長崎造船大學長崎平和文化研究所)

韓國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會, 機關紙 「早く援護を！」

原爆被爆者對策基本問題懇談會

1980, 「懇談會 意見書」(1980年 12月 11日)

原水爆禁止廣島協議會原爆被害者救援委員會

1956, 『原爆被害者實態調査報告』 原水爆禁止廣島協議會原爆被害者救援委員會.

原水爆禁止日本協議會專門委員會

1961 『原水爆被害白書—隠された眞實』

建設省編

1991[1959], 『戰災復興誌』第1卷:1

小林聰明

2012, 「朝鮮人の移動をめぐる政治學: 戦後米軍占領下の日本と南朝鮮」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합동위크숍 2012년 10월 13일 발표문 (원문은 다음 책의 제5장에 실려있다. 貴志・俊彦 編著, 2011, 『近代アジアの自畫像と他者: 地域社會と「外國人」問題』, 京都大學學術出版會)

笹本征男

1995, 『米軍占領下の原爆調査: 原爆被害國になった日本』, 新幹社.

椎名麻紗枝

1988, 「在韓被爆者に對する法律責任」 『在韓被爆者を考える』(在韓被爆者問題市民會議編), 凱風社.

在韓被爆者問題市民會議編 (代表:高木健一)

1988, 『在韓被爆者を考える』, 凱風社.

在韓被爆者渡日治療廣島委員會, 會報 「廣島委員會ニュース」

在日本韓基督教廣島教會

1998, 『創立50周年記念誌』, 在日本韓基督教廣島教會.

中國新聞ヒロシマ50年取材班

1995 『檢証ヒロシマ1945—1995』, 中國新聞

中國新聞社編

- 1985, 『ヒロシマ四十年:森瀧日記の証言』, 平凡社.
- 竹峰誠一郎
- 2008, 「被爆者という言葉がもつ政治性」『立命平和研究』9号, p.21-3
- 中島龍美
- 1988, 「朝鮮人被爆の歴史的意味と日本の戦後責任」『在韓被爆者を考える』(在韓被爆者問題市民會議編), 凱風社.
- 長崎の証言の會
- 1978, 『長崎の証言』第10集・朴玟奎談, 長崎証言刊行委員會
- 1969, 『長崎の証言』創刊号, 長崎証言刊行委員會
- 長崎在日朝鮮人の人権を守る會
- 1982, 『原爆と朝鮮人』.
- 長崎市原爆被爆対策部
- 2011, 『原爆被爆者対策事業概要』.
- 長崎市原爆被爆50年史編輯委員會
- 1996, 『長崎原爆被爆50年史』, 長崎市原爆被爆対策部.
- 根本雅也
- 2006, 『廣島の戦後三〇年間にみる原爆被害の表象と実践』, 一橋大學社會學研究課修士論文
- 浜井信男
- 1967, 『原爆市長—ヒロシマとともに三十年』, 朝日新聞社.
- 被爆地図復元調査委員會
- 1968, 「爆心地地図復元の論理と原爆被災綜合の構想」『廣島醫學』12月号
- 肥田舜太郎
- 2004, 『ヒロシマを生きのびて』, あけび書房.
- 平岡敬
- 1988 「在韓被爆者の戦後史」『在韓被爆者を考える』(在韓被爆者問題市民會議編), 凱風社.
- 廣島縣環境保健部原爆被爆者対策課編
- 1986, 『被爆40年原爆被爆援護のあゆみ』, 廣島縣
- 廣島縣福祉保健部保健医療局
- 2007, 『原爆被爆者対策事業概要』
- 2011, 『原爆被爆者対策事業概要』
- 廣島縣原爆被害者団体協議會
- 2001, 『核兵器のない明日願って:廣島被団協の歩み』.
- 廣島縣「黒い雨」原爆被害者の會連絡協議會
- 2012, 『黒い雨—内部被爆の告發』.
- 廣島縣地域婦人団体連絡協議會編
- 1955, 『原爆被害者實態調査結果表』.
- 廣島市長崎市原爆災害誌編輯委員會
- 2005, 『廣島長崎の原爆被爆災害』, 岩波書店
- 1987(1979), 『廣島・長崎の原爆被爆災害』, 岩波書店.

- 広島平和記念資料館, 1998, 『広島原爆被害の概要』
 広島市編
 1971, 『広島原爆戦被災誌 第1巻 総説』.
 1978, 『原爆被災全体像調査事業報告書』.
 1983, 『広島新史—行政』.
 広島市衛生局原爆被害対策部編
 1996, 『広島市原爆被爆者援護行政史:被爆50年』, 広島市
 広島市社会局原爆被害対策部
 2011, 『原爆被爆者対策事業概要』, 広島市.
 広島市健康福祉局原爆被害対策部
 2008, 『原爆被爆者対策事業概要』.
 広島・長崎の証言の会・在韓被爆謝医療調査団
 1986, 『イルボンサラムへ: 40年目の韓国被爆者』
 被爆者援護法令研究会
 2003, 『原爆被爆者関係法令通知集』
 深川宗俊
 1992, 『海に消えた被爆朝鮮人徴用工: 鎮魂の海峡』, 明石書店.
 福島町資料作成委員会
 2003, 『福島の歴史: したたかに生き抜いた先輩たちの記録』, 福島町資料作成委員会.
 朴秀稷・郭貴勳・辛泳洙
 1975, 『被爆韓国人』, 朝日新聞社.
 朴在一
 1957, 『在日朝鮮人に關する総合調査研究』, 新記元社.
 朴慶植編
 1975,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第4巻, 三一書房.
 朴慶植
 1976, 『天皇制國家と在日朝鮮人』, 社會評論社.
 松井康浩
 1986, 『原爆裁判—核兵器と被爆者援護の法理』, 新日本出版社.
 増田善信
 2012, 「「黒い雨」と「フクシマ」」(広島縣「黒い雨」原爆被害者の會連絡協議會、『黒い雨—
 内部被爆の告發』, pp. 98-111.
 モニカ ブラウン
 1988, 『檢閲 1945-1949: 禁止された原爆報道』立花誠逸 譯, 時事通信社.
 三菱・広島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會, 會報 「이기자」
 湯崎稔・上岡洋史
 1976, 「人口推移からみた被爆人口ならびに死亡數の検討—第2報」 『長崎醫學雜誌』.
 郷地秀夫
 2007, 『「原爆症」-罪なき人の灯を継いで—原爆症認定集団訴訟を支援して』 かもがわ出版

重松逸造·伊藤千賀子·鎌田七男

2007, 『原爆被害の實態』(廣島縣, 2007, 『原爆被爆者對策事業概要』)

志水清編

1969 『原爆爆心地』(廣島大學原爆放射能醫學研究所疫學·社會醫學部門とNHK廣島中央放送局)

RERF (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

2000, 『RERF LSS Report』 No.13.

1999, 『要覽』.

Wagner, Edward W.

1975, 『日本における朝鮮少數民族, 1904-1950』 湖北社.

3) 영어 논문 및 단행본

Alvarez RR

1995 "The Mexican-US border: The Making of an Anthropology of Borderland",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24, pp.447-470.

Auzier, John

1977, *Ichiban: Radiation Dosimetry for the Survivors of the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Bloor, David

1976, *Knowledge and Social Imagery*, Routledge (데이비드 블루어, 2000, 『지식과 사회의 상』 (김경만역), 한길사)

Briggs, A. (ed.)

1970, *The Nineteenth Century: The Contradictions of Progress*, Thames and Hudson.

Cooter, Roser

2008, "Perspectives: Biocitizenship" in *The Lancet*, Volume 372, Issue 9651, p. 1725.

Chandler, Ralph C. & Jack C. Plano

1982, *The Public Administration Dictionary*, New York : John Wiley & Sons, pp.216-217.

Choy, K.

2005, "Articulated Knowledges: Environmental Forms after Universality's Demise," *American Anthropologist*, Vol.107(1),pp.5-18.

Collins, H. M.

1981, "Stages in the Empirical Programme of Relativism", in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11, pp.3-10.

Committee for Compilation (Committee for Compilation of Materials on Damage Caused by the Atomic Bombs in Hiroshima and Nagasaki)

1981, *Hiroshima and Nagasaki: The Physical, medical and social effects of the atomic bombings*.

Das, Veena

2004, "The Signature of the State," in *Anthropology at the Margins of the State*, Veena Das and Deborah Poole, eds. pp.225-252,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Deeb, Hadi N. and Gerge E. Marcus
 2011, "Directions: Studying Bureaucracies," in *PoLAR*, Vol.34, No.1, pp.51-76.
- Downey, G. L.
 2001, "Anthrop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melser, Neil J. & Baltes, Paul B.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Oxford : Elsevier, pp. 13629-13633.
- Douglas, Mary
 1992, *Risk and Blame*, Routledge.
 1982, *Risk and Culture*, Routledge.
 1966, *Purity and Danger*, Routledge (메리 더글라스, 1997 『순수와 위협』 (유제분·이훈상역), 현대 미학사)
- Evans-Pritchard, E. E.
 1976[1937], *Witchcraft, Oracles and Magic Among the Azande*, Oxford University Press.
- Fassin Didier
 2011, "Policing Borders, Producing Boundaries: The Governmentality of Immigration in Dark Tim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40. pp.213-126.
- Feldman, Ilana
 2008, *Governing Gaza: Bureaucracy, Authority, and the Work of Rule, 1917-1967*.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Ferguson, James and Akhil Gupta
 2002, "Spatializing States: Toward an Ethnography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merican Ethnologist* 29(4):981-1002.
- Fischer, F.
 2003, *Reframing Public Policy: Discursive Politics and Deliberative Practices*, Oxford University Press
- Fisher, M.
 2005, "Technoscientific Infrastructures and Emergent Forms of Life: A Commentary," *American Anthropologist*, Vol.107(1), pp.55-61.
- Fortun, K. & Fortun, M.
 2005, "Scientific Imaginaries and Ethical Plateaus in Contemporary U.S.Toxic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Vol.107(1), pp.43-54.
- Franklin, Sarah
 1995, "Science as Culture, Cultures of Scienc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24, pp.163-184.
- Fuss, Diana
 1989, *Essentially Speaking: Feminism, Nature, and Difference*, Routledge.
- Ganti, Tejaswini
 2012, "Sentiments of Disdain and Practices of Distinction: Boundary-Work, Subjectivity, and Value in the Hindi Film Industry"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85, No.1, pp. 5-43
- Gieryn, Thomas F.

- 1999, *Cultural Boundaries of Science*, The Univ. of Chicago Press
- 1995, "Boundaries of Science." in Jasanoff, S. et.al. (ed.)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p. 393-443.
- 1983, "Boundary-Work and the Demarcation of Science from Non-Science: Strains and Interests in Professional Ideologies of Scientis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8:781-95.
- Göpfert, Mirco
- 2013, "Bureaucratic aesthetics: Report writing in the Nigérien gendarmerie" in *American Ethnologist* Vol.4, No.2, pp.324-334.
- Gordillo, Gaston
- 2006, "The crucible of citizenship: ID-paper fetishism in the Argentinean Chaco," in *American Ethnologist*, Vol.33, No.2, pp.162-176.
- Gupta, Akhil
- 2012 *Red Tape: Bureaucracy, Structural Violence, and Poverty in Ind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Gusterson, Hugh
- 1998, *Nuclear Rites: A Weapons Laboratory at the End of the Cold W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2004, *People of the Bomb: Portraits of America's Nuclear Complex*,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acking, Ian
- 1883, *Representing and Interve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2, *Science as Practice and Culture*, Chicago:UniversityofChicagoPress.
- Handelman, Don
- 2004, *Nationalism and the Israeli State: Bureaucratic Logic in the Public Events*. Oxford: Berg.
- Hansen, Thomas B. and Finn Stepputat
- 2005, *Sovereign Bodies: Citizens, Migrants, and States in the Postcolonial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rzfeld, Michael
- 1992, *The Social Production of Indifference: Exploring the Symbolic Roots of Western Bureaucracy* New York: Berg.
- Hess, David J.
- 1997, *Science Studies: An Advanced Introduction*, New York University Press (데이비드 헤스,
2004, 『과학학의 이해』 (김환석역), 당대)
- 2001, "Scientific Culture", in Smelser, Neil J. & Baltes, Paul B.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Oxford : Elsevier, pp. 13724-13727.
- Heyman, Josiah
- 2012 "Deepening the Anthropology of Bureaucracy"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85, No.4, pp.1269-1278.
- 1995 "Putting Power into the Anthropology of Bureaucracy: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 Service at the Mexico-United States Border" *Current Anthropology*, Vol. 36, pp.261-287.
- Hoag, Colin
 2011, "Assembling Partial Perspectives: Thoughts on the Anthropology of Bureaucracy." *PoLAR: Political and Legal Anthropology Review* vol.34, No.1, pp. 81-94.
- Horton, Robin
 1964, "Ritual Man in Africa", *Africa*, 34, pp.85-104.
- Hull, Matthew S.
 2012a, *Government of Paper: The Materiality of Bureaucracy in Urban Pakist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b, "Documents and Bureaucrac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41. pp.251-267.
 2008, "Ruled by records: The expropriation of land and the misappropriation of lists in Islamabad," in *American Ethnologist*, Vol.35, No.4, pp.501-518.
- Jasanoff, Sheila (ed.)
 2005, *Designs on Nature: Science and Democrac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 Press
 2004,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the Social Order*, Routledge.
 1990, *The Fifth Branch: Science Advisers as Policymaker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Contested Boundaries in Policy-Relevant Sc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17. pp.195-230.
- Kaldor, M.
 1990, *The Imaginary War: Interpretation of East-West Conflict in Europe*, Oxford: Blackwell.
- Kim, Jaecun
 2009, "The making and unmaking of a "transborder nation": South Korea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in *Theory and Society*, Vol.38, pp.133-164.
- Kimble, C., Grenier, C., and Goglio-Primard. K.
 2010, "Innovation and Knowledge Sharing Across Professional Boundaries: Political Interplay between Boundary Objects and Bro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o.30, no.5. pp. 437-444.
- Kleinman, A., Veena Das and Margaret Lock
 1996, "Introduction" in *Daedalus*, Vol. 125, No.1, 1996, pp.11-20.
- Knorr-Cetina, K.
 2001, "Laboratory Studies: Historical Perspectives", in Smelser, Neil J. & Baltes, Paul B.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Oxford : Elsevier, pp. 8232-8238.
- Kravel-Tovi, Michal
 2012, "Rite of Passing: Bureaucratic encounters, dramaturgy, and Jewish conversation in Israel," in *American Ethnologist*, Vol.39, No.2, pp.371-338.
- Lavie, Smadar
 2012, "Writing against identity politics: An essay on gender, race, and bureaucratic pain," in *American*

- Ethnologist*, Vol.39, No.4, pp.779-803.
- Layne, Linda L.
 1998, "Introduction", in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Vol. 23(1): Special Issue: Anthropological Approaches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pp.4-23.
- Latour, Bruno
 1990, "Postmodern? No, Simply A Modern! Steps Towards an Anthropology of Science", *Studies i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Vol.21, pp.145-171
- Latour, Bruno. and S. Woolga
 1979, *Laboratory Lif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mont, Michèle and Virág Molnár
 2002, "The Study of Boundaries in the Social Science" i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8, pp.167-195
- Laski, H.
 1956, *The State in Theory and Practice*, Allen & Unwin.
- Lavie, Smadar
 2012, "Writing against identity politics: An essay on gender, race, and bureaucratic pain," in *American Ethnologist*, Vol.39, No.4, pp.779-803.
- Lindee, M. Susan
 1994, *Suffering made Real: American Science and the Survivors at Hiroshima*,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psky, Michael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Lynch, Michael
 2001,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thnomethodology", in Smelser, Neil J. & Baltes, Paul B.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Oxford:Elsevier, pp.13644-13647.
 2004, "Circumscribing expertise: Membership categories in courtroom testimony" in Sheila Jasanoff ed.,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social order*, Routledge.
- Malinowski, Bronislaw
 1954, *Magic, Science And Religion And Other Essays*, Doubleday Anchor Books: Garden City, NY.
- Martin, Emily
 1998, "Anthropology and the Cultural Study of Science", in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Vol.23(1),pp.24-44
- Masco, Joseph
 2004, "Nuclear technoaesthetics: Sensory politics from Trinity to the virtual bomb in LosAlamos,"in *American Ethnologist*, Vol.31.(3), pp.349-373.

- Maurer, Bill
 2005, "Introduction to "Ethnographic Emergences," *American Anthropologist*, Vol.107 , no.1, pp.1-4.
- McKay, Ramah
 2012, "Documentary disorders: Managing medical multiplicity in Maputo, Mozambique," in *American Ethnologist*, Vol.39, No.3, pp.545-561.
- Medvedev, Ahores A.
 1990, *The legacy of Chernobyl*, New York: W. W. Norton
- Naono, Akiko
 2003 "Searching for grandpa in the Hiroshima memoryscape, under the shadow of the bomb",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4(3), pp.479-491.
 2005, "Hiroshima as a contested memorial site: analysis of the making of the peace museum", *Hiroshim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1 pp.229 - 44.
 2010, "Transmission of Trauma, Identification and Haunting: A Ghost Story of Hiroshima", *Intersections: Gender and Sexuality in Asia and the Pacific*, Iss. 24 (<http://intersections.anu.edu.au/issue24/naono.htm>)
- Nippert-Eng, C.
 1996a, "Calendars and keys: The classification of 'home' and 'work,'" *Sociological Forum*, Vol. 11(3):563-82.
 1996b, *Home and 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ughterson, Ashley W.
 1955, *Statistical analysis of the medical effects of the atomic bomb*. Oak Ridge, Tenn: Army Institute of Pathology, U.S. Atomic Energy Commission.
- Oughterson, Ashley W., and Shields Warren
 1956, *Medical effects of the atomic bomb in Japan*. National Energy Series, Vol.8, New York: McGraw-Hill
- Pálsson, Gísli and Paul Rabinow
 1999, "Iceland: The Case of national human genome project", *Anthropology Today*, Vol.15, no.5. pp.14-18.
- Pickering, Andrew
 1992, *Science as Practice and Culture*, Chicago:UniversityofChicagoPress.
- Petryna, Adriana
 2004, "Biological Citizenship: The Science and Politics of Chernobyl-Exposed Population" in *OSRIS*, Vol. 19. No. 2, pp.250-265
 2002, *Life Exposed: Biological Citizens after Chernobyl*,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pular Memory Group
 1982, "Popular Memory: Theory, Politics, Method," in Johnson, et al. eds. *Making Histor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Portelli, Alessandro

- 1997, "Oral History as Genre," in *The Battle of Valle Giuli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Rajan, K. S.
 2005, "Subjects of Speculation: Emergent Life Sciences and Market Logics in the United States and India," *American Anthropologist*, Vol.107(1), pp.19-30.
- Rabinow, Paul
 1996, "Artificiality and Enlightenment: From Sociobiology to Biosociality" in *Essays on the Anthropology of Reas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Essays on the Anthropology of Reas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Making PCR: A Story of Biotechn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les, Annelise (ed.)
 2008, *Documents: Artifacts of Modern Knowledg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ose, Nikolas
 2006, *The Politics of Life Itself: Biomedicine, Power and Subjectiv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 Press
- Rouse, J.
 2001, "Cultural Studies of Science", in Smelser, Neil J. & Baltes, Paul B.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Oxford : Elsevier, pp. 3125-3127.
- Shapin, Steven
 1995, "Here and Everywhere: 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1, pp.289-321
- Sharma, Aradhana and Akhil Gupta
 2006, *The Anthropology of the State: A Reader*, Wiley Blackwell.
- S. R. G.
 1996, "Preface to the Issue "Social Suffering"", in *Daedalus*, Vol. 125, No.1, 1996, pp.5-10.
- Shore, Cris and Wright, Susan(eds.)
 1997, *Anthropology of Policy: Critical Perspective On Governance and Power*, Routledge.
- Star Susan L. and Bowker G
 2000, *Sorting Things Out: Classification and Its Consequences*, MIT Press
- Star, Susan L. and James Griesemer
 1989, "Institutional Ecology, 'Translations' and Boundary Objects: Amateurs and Professionals in Berkeley's Museum of Vertebrate Zoology, 1907-39".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19, no.3, pp. 387.
- Tambiah, Jeyeraja
 1990, *Magic, Science, Religion and the Scope of Ration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Todeschini, Maya.
 1999, "Illegitimate sufferers: A-bomb victims, medical science, and the government", *Daedalus*, Vol. 128, no.2, pp.67-100.
- Torpey J
 2000 *The Invention of the Passport: Surveillance, Citizenship, and the Stat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 Press.

Traweek, Sharon

1988, *Beamtimes and Lifetimes: The World of High Energy Physicis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An Introduction to Cultural and Social Studies of Science and Technologies" in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vol.17. pp.3-25.

1996, "Unity, Dyads, Triads, Quads, and Complexity: Cultural Choreographies of Science" in *Social Text*, No.46/47: Science Wars, pp.129-139.

Trouillot, Michel-Rolph

2003, *Global Transformations: Anthropology and the Modern World*, Palgrave Macmillan.

Trumbull, Robert

1957, *Nine who survived Hiroshima and Nagasaki: Personal experiences of nine men who lived through both atomic bombings*, New York: E. P. Dutton and Co.

Turner, Victor

1969, *The Ritual Process*. Chicago: Aldine.

Van Gennep, Arnold

1960 *The Rites of Passage*, Routledge.

Verdery, K.

2002, "Whither Postsocialism?" in *Postsocialism: Ideals, Ideologies, and Practices in Eurasia*, C. Hann ed. London: Routledge, pp.5-21.

Wittgenstein, Ludwig

2002[1931], "Remarks on Frazer's Golden Brough", in *A Reader in the Anthropology of Religion*, Michael Lambek (ed.), Blackwell Publisher.

Weber, Max

1956, *Wirtschaft und Gesellschaft*, J.C.B Mohr ed., Paul Siebeck (임영일·차명수이상률 편역, 『막스 베버선집』, 1991, 까치)

1978, *Economy and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Yoneyama, Lisa

1999, *Hiroshima Traces: Time, Space, and the Dialectics of Mem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 웹사이트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한국원폭피해자협회 (<http://www.wonpok.or.kr/>)

일본국회 (<http://kokkai.ndl.go.jp/>)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http://www.pcf.city.hiroshima.jp/>)

『쑤코쿠신문』 (中国新聞) (<http://www.chugoku-np.co.jp/>)

『나가사키신문』 (長崎新聞) (<http://www.nagasaki-np.co.jp/>)

『아사히신문』 (朝日新聞) (<http://www.asahi.com/>)

부록 1. 원폭증 인정에 관한 심사의 방침 중 <별표 2-1>

피폭시 연령	피폭선량 (센치그레이)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500	1,000
0	4.1	8.0	11.5	14.8	17.8	20.6	23.2	25.7	28.0	30.2	41.9	59.0
1	3.9	7.6	10.9	14.1	17.0	19.7	22.3	24.7	26.9	29.0	40.5	57.7
2	3.7	7.2	10.4	13.4	16.2	18.8	21.3	23.6	25.8	27.9	39.2	56.3
3	3.5	6.8	9.9	12.8	15.5	18.0	20.4	22.7	24.8	26.8	37.9	55.0
4	3.3	6.5	9.4	12.2	14.8	17.2	19.5	21.7	23.8	25.7	36.6	53.6
5	3.2	6.1	8.9	11.6	14.1	16.4	18.7	20.8	22.8	24.7	35.3	52.2
6	3.0	5.8	8.5	11.0	13.4	15.7	17.8	19.9	21.8	23.7	34.1	50.8
7	2.8	5.5	8.1	10.5	12.8	15.0	17.0	19.0	20.9	22.7	32.8	49.4
8	2.7	5.3	7.7	10.0	12.2	14.3	16.3	18.2	20.0	21.7	31.6	48.0
9	2.6	5.0	7.3	9.5	11.6	13.6	15.5	17.3	19.1	20.8	30.4	46.6
10	2.4	4.7	6.9	9.0	11.0	13.0	14.8	16.6	18.3	19.9	29.3	45.3
...												
30	0.8	1.6	2.4	3.2	3.9	4.7	5.4	6.1	6.8	7.5	12.0	21.4

* 남성 위암 원인확률 기준표 중 일부를 표기

부록 2. 원폭증 인정에 관한 심사의 방침 중 <별표 9>

폭심지로부터의 거리 (m)	피폭선량 (센치그레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100	15,010	31,000
150	13,710	28,090
200	12,000	24,760
...
800	1,028	2,022
900	654	1,267
1,000	416	797
1,200	173	322
1,400	74	136
1,500	50	90
1,600	33	60
1,650	27	49
1,800	15	27
2,000	7	13
2,100	5	9
2,300	2	4
2,500	1	2

* 초기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 중 일부를 표기

부록 3. 원폭증 인정에 관한 심사의 방침 중 <별표 10>

폭발후의 경과시간당 잔류방사선 (센치그레이)	폭심지로부터의 거리 (히로시마)								폭심지로부터의 거리 (나가사키)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	100	200	300	400	500	600	
1~8 시간 후	26	20	15	10	6	3	2	1	12	10	7	4	2	1	1	
8~16	18	14	11	7	4	2	1	0	5	4	3	2	1	0	0	
16~24	10	8	6	4	2	1	1	0	2	2	1	1	0	0	0	
24~32	7	6	4	3	2	1	0	0	2	1	1	0	0	0	0	
32~40	5	4	3	2	1	0	0	0	1	1	1	0	0	0	0	
40~48	4	3	2	1	1	0	0	0	1	1	0	0	0	0	0	
48~56	2	2	1	1	1	0	0	0	1	0	0	0	0	0	0	
56~64	2	1	1	1	0	0	0	0	0	0	0	0	0	0	0	
64~72	1	1	1	1	0	0	0	0	0	0	0	0	0	0	0	

부록 4.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

다음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대한 공식기록으로서 <廣島市·長崎市 原爆災害誌編輯委員會>가 1989[1979]년에 낸 개정판 『廣島·長崎の原爆被爆災害』(岩波書店)과 2005년에 발간한 문고판 『廣島長崎の原爆被爆災害』(岩波書店)에 실린 원폭투하의 개요와 피해의 일부를 연구자가 발췌·번역한 것이다.

* * *

1945년 8월 6일 아침, 마리아나 군도 테니안 기지를 떠난 미군 기상관측기 한 대는 고도 1만미터의 히로시마 상공에 접근했다. 이에 대해 중부군 관구사령부가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은 오전 7시 9분이었다. 당시 히로시마의 날씨는 맑았다. 기온 26.7도, 기압 1018 밀리발, 운량 8 내지 9로, 북북동 초속 1미터 내외의 바람이 있었으며, 습도 80 퍼센트, 시계(視界)는 양호했다. 관측기는 이 상황을 후속기에 타전하고 퇴거했다. 경계경보는 7시 31분에 해제되어 시민들은 각자 일상의 임무로 돌아갔다. 그러다 갑자기 두 기의 관측기를 동반하고 원자폭탄을 탑재한 B29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동북방으로부터 히로시마 상공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오전 8시 15분 17초 고도 9600미터에서 원자폭탄을 투하, 43초 후 폭발했다. 폭발점은 히로시마시 오테마치(大手町) 1초메 5-24 시마병원(島病院) 상공 약 580미터로 추정된다. 시마병원의 위치는 원폭돔의 중심지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60미터 정도에 해당한다.

3일후인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는 기온이 높고 조용한 한 여름의 낮을 보내고 있었다. 농도가 짙었던 새벽 안개도 오전 7시경에는 차츰 걷혀 오전 11시에는 기온 28.8도, 기압 1014 밀리발, 서남풍 초속 3미터, 습도 71%, 운량 0.1 내지 0.2였다. 이 날은 아침부터 여러 차례 경계경보와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그 당시 이 정도는 일상적인 수준이었으므로 경계해제와 함께 이번에도 시민들은 평소 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날 새벽 테니안 기지를 출발해 원자폭탄을 탑재한 B29 폭격기 폭스카호는 야쿠시마(屋久島) 상공에서 회합한 관측기 1기, 합해서 2기의 편대는 첫 목표로 설정한 고쿠라(小倉)로 향해 오전 9시 50분경 목표 상공에 도착했다. 그러나 고쿠라 상공은 구름으로 덮여 있어 폭

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 결과 고구라에서 원폭투하를 단념하고 기수를 제2목표 지점이었던 나가사키로 돌리게 된다. 나가사키 상공에 당시 구름에 덮여 있었으나 폭격 바로 촌음 전에 구름이 살짝 걷혀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제작소를 겨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은 오전 11시 2분, 폭발점의 고도는 약 503미터, 폭심지의 위치는 당시 마츠야마(松山町) 교차로로부터 동남동쪽 약 90미터, 현재의 평화공원원폭중심비가 있는 지점으로 추정된다.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각각 우라늄 ^{235}U 및 플루토늄 ^{239}Pu 를 사용한 것이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가느다랗고 긴 모양으로 리틀보이라 불렸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거의 구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팻맨(fat man)이라 불렸다. 폭발 당시의 폭풍에 의해 두 도시의 시내 중심부의 건물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시 외곽의 주택들도 대부분 반파됐다. 여기에 화재가 더해져 시내 약 1.3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이 화염에 휩싸였고, 거센 광풍과 함께 화재의 기세도 커져 폭심지로부터 반경 약 2 킬로미터 안에서는 탈수 있는 것은 모두 타버렸다. 3킬로미터 이내에도 건물의 9할 이상이 소실(燒失), 파괴되었으며, 4~5킬로미터 범위 내에 있어서도 3분의 2에 가까운 건물이 격심한 피해를 받았다. 인명 피해 정도도 막심했다. 히로시마의 경우에는 히로시마 시 소재 인구 약 34만~35만 중 9만에서 11만이, 그리고 나가사키의 경우에는 27만 명 중 최소 3만 명, 최대 7만 명이 원자폭탄으로 인해 1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원폭에 의한 사망자 수를 고려할 경우 피폭 후 어느 시점까지의 사망자를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진다. 대체로 급성기인 피폭 후 4개월 이내, 혹은 1945년 12월 말까지의 사망자 수를 초기 원폭에 의한 사망으로 포함한다.

원자폭탄의 폭발에 의해 생기는 재해는 크게 열선(전체 에너지의 약 25%), 폭풍(50%) 및 방사선(15%)에 의해서 초래된다. 이들은 인체에 직접 닿아 열상, 폭풍상 및 방사선장해를 일으키는데, 폭발점에서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감쇄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폭발점 방면에 열선, 방사선 혹은 폭풍의 에너지를 흡수 내지 반사하는 차폐물이 있었다면 그 정도만큼 상해작용이 약해진다고 본다. 원자폭탄재해조사연구특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원자폭탄에 의한 상해나 사망의 경과는 시기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다. ① 제1기(초기) - 원폭직후부터 2주까지: 원자폭탄폭발과 동시에 발산된 강렬한 열선, 폭풍 등의 제 위력이 결합해 작용해 각종 상해 작용이 동시에 증상을 나타내 최고도의 재해를 일으키는 시기다. ② 제2기(중기) - 3주에서 8주(2개월)까지: 이 시기에는 중증도의 원자폭탄방사능상해가 다수 발생하고 사망하는 시기다. ③ 제3기(만기) -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이 시기에는 각종 장해증상이 그 정도 및 속도차가 있고 회복이 진행되기도 하는 시기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다발성증상이 합병증으로 와 중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1945년 12월 상순경까지를 대체로 급성기라고 본다. ④ 제4기(후기) - 5개월 이후: 열상 또는 기형적 손상치유 후의 각종 후유증상(변형, 포진, 켈로이드), 방사능 장해 증상으로서 백혈병이나 각종 후유장해(빈혈, 암 등), 혹은 생식기능장애에 기초하는 각종 후유장해가 일어나는 시기로서 이를 만발성 장해의 시기라고 부른다. 원폭 방사선의 인체에의 후장해 중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악성종양의 발생이다. 1950-1985년의 35년간의 RERF 집계에 따르면 백혈병, 유방암, 폐암, 위암, 결장암, 다발성골수종 등에 있어서는 밝혀진 방사선량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혈압, 척추질환, 백내장 등과 같은 질환이 대표적인 후장해에 속한다. 후장해는 평생 진행된다.

[Abstract]

Boundary of Hibakusha and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Science, Politics, and Bureaucracy in Japanese Hibakusha Support Policy

Oh, Eunjeo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Enola Gay dropped "Little Boy" and "Fat Man" which were targeted at Hiroshima and Nagasaki, almost 10 percent of casualties were ethnic Koreans who had migrated for a living or who had been forced to migrat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Empire's wartime mobiliz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Headquarter(GHQ)'s Repatriation Policy of non-Japanese from Japan, tens of thousands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hastily returned to their "motherland", Korea, without any appropriate treatments. There was no medical support system for them under the turbulent period of post-colonial/post-war Korea. It was 20 years later from their returning home that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Association was founded in South Korea as a social organization for their own relief and the political action with the aim of getting compensation from not only the Japanese government but also Korean and the US government. In the divided peninsula, a key site of the Far-east Asia's Cold War politics, however, their voices had been intentionally and unintentionally silenced due to both military dictatorship's suppression and social ignorance. Nevertheless, their desperate struggles continued through Japanese civic groups' supports and solidarities. After several decades of legal proceedings in Japan, they can have financial supports from Japanese government if they get a Hibakusha Tetchou (被爆者手帖) which is a certificate recognizing a person as was exposed to the bombs. It, however, is not post-colonial/post-war compensation but a Japanese domestic support law's application beyond border.

As a historical and ethnographical case study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focusing on the

involvement with Japanese Hibakusha support policy. I conducted ethnographic fieldwork in Japan and Korea, in-depth interviews of more than 60 Korean survivors using a oral life history method, and analysed the archival documents of family records kept in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Association that have more than 2,600 members of survivors.

In the first part of the article, this study identifies the relations and interplays of science, politics, and bureaucracy that are key factors to form a legal boundary of Hibakusha in Japan. Being based on various scientific and medical researches, the boundary was bureaucratically determined by political justification for unbalanced post-war compensation and by strong administrative rules. The historical process that constitutes Japanese Hibakusha support policy shapes structures of the legal and bureaucratic boundaries of Hibakusha specifically, which involves a territorial boundary and connotes symbolic and political meaning

In the second part, from the historical aspects this article presents how and why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in South Korea become Japanese Hibakushas. A Korean survivor who wants to be supported needs to get a Hibakusha Tetchou from Japanese government, which requires complicate paperworks of official documents and/or verifiable memories. This study demonstrates Korean survivors' ambivalent emotion aroused by facing the former colonist nation.

Finally, by emphasizing on the sociocultural embeddedness, especially in the aspects of human networks based on family and local communi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exclusion in the Japanese Hibakusha support policy occurs at the level of both bureaucratic red tape and sociocultural practices of the Korean survivors' bureaucratic encounter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have more exclusive effects for socioculturally weak and alienated survivors such as orphans, forced draftees, and women isolated from the family network.

Key words: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Japanese Hibakusha support policy, boundary, science, politics, bureaucracy, documents, memory

[日文抄録]

韓国原爆被害者がヒバクシャになるということ 「被爆者範疇の境界構成と統制における科学・政治・官僚制の相互作用」

ソウル大学 大学院
人類学科
吳 殷 政

1945年8月、アメリカが広島と長崎に原子爆弾を投下した時、そこには出稼ぎに来ていた、あるいは戦時動員体制下で連行された植民地の朝鮮人たちもいた。全体の被害人口のほぼ一割にのぼったと報告されるこの人々は、GHQの在日朝鮮人帰還政策によって、原爆による急性期の障害に対する治療も終わらないまま、その年の晩秋から初冬にかけ集中的に韓国へ帰った。それから20余年が経ち、現韓国原爆被害者協会の前身である韓国原爆被害者援護協会が結成された。しかし、核の被害者として「私の身体を返せ」という彼らの訴えは「唯一被爆国」であるという日本でも、「原爆によって解放を迎えた」自国である韓国でも、そして「少しでも早く戦争を終わらせることで、より大きい犠牲を防いだ」と言う立場を表明してきたアメリカでも見放されてきた。しかし、長きに渡る社会的な忘却と政治的な排除の中でも、韓国の原爆被害者たちは自分たちの存在を自ら現わし、状況を打開するため闘いつづけた。その結果、今日韓国原爆被害者たちは日本の国内法である原爆援護法に基づき被爆者健康手帳を受けた「ヒバクシャ」（原爆被爆者の略称）であれば、誰でも日本政府から支給される被爆者健康手当てと医療費などを支払ってもらえる地位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本研究は、広島と長崎で原爆を経験して韓国に帰還した人々が、日本の被爆者援護政策において想定されるヒバクシャの範疇に編入される過程についての歴史人類学的な観点に基づいたエスノグラフィーを通じて、一方では韓国原爆被害者の歴史を再構成し、他方ではヒバクシャの範疇の境界の設定と統制において、科学と政治そして官僚制が作動する仕方とその効果について見ようとした。

さて、本研究は韓国原爆被害者の歴史を再構成しようとする事例研究として社会的な苦痛 (social suffering) に関する研究でもある。その点で既存の韓国原爆被害者に関する研究で見過ごされてきた次のような側面に注意した。まず訴訟の結果を中心に行われてきた研究や、記憶と言説の次元で韓国原爆被害者に照明を当てる研究が見逃して来た韓国原爆被害者たちの歴史的な経験を、被爆の時点や被害者化(victimization)する見方に固定せず、それらの経験が解放以来米ソ冷戦体制が形成され始めた朝鮮半島の状況の中で、米軍政期(日本ではGHQの占領期)と朝鮮戦争・軍事政権・脱冷戦などの韓国の激動的な近現代史の流れと交差していること

を示そうとした。また、韓国原爆被害者と日本の市民社会団体の連帯の過程も、外交的・政治的・法的な次元での補償運動と責任要求に対する応答に限らず、解放以前から蓄積されてきた社会文化的な諸要素において理解しようとした。さらに、韓国原爆被害者に被爆者健康手帳を交付する過程は、これらの原爆の経験が過去の植民者によって官僚制的に統制される過程でもある。そして、これらの歴史的な経験は被爆状況記述という形態に物化されて審査される過程と大きく比較されるが、本研究ではこのようなあり方を韓国原爆被害者たちとの生涯史インタビューで得た口述資料と対照させた。

一方、日本の被爆者援護政策の制度化においてヒバクシャという範疇の境界が構成されて来た過程は、原爆被爆の健康影響に対する科学的・医学的な研究により支えられ、日本の国内外的な政治の場では過去の帝国日本が行った戦争と植民支配の責任を問う過程でもあった。ところが、日本政府は過去の被植民者であった韓国原爆被害者に対しては、ヒバクシャの資格は日本国の領土的な境界の外にいる人々には付与されないといういわゆる属地主義の論理を持って排除し、自国の原爆被爆者による援護の拡大の要求に対しては、原子爆弾の被害が戦争による「一般の被害」と仕分けされる「特殊な被害」の場合に限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受忍論と均衡論を立てた。即ち、日本の被爆者援護政策は過去の帝国日本が行った戦争や植民支配に対する責任としてでなく、原爆を落とした主体も原爆をもたらした原因も明示しないまま、もっぱら原爆による生物学的な身体への損傷に対する補償に限定される枠組みとして出来上がった。尚、被爆者健康手帳の交付を受けたものと定義されたヒバクシャの法的な規定は、ヒバクシャという用語が単に広島と長崎の原爆被害者を指し示すある種の差別化された名前や生物学的な状態に対する規定にとどまらず、国家が認めた公式的な資格を与える役所手続きとしての官僚制的な実行の中で完成されたという点を見せてくれる。

このように、ヒバクシャの範疇は科学と政治、官僚制の相互作用を通じて、象徴的であると同時に物質的な基盤を持つ境界として構築された。とりわけ本研究では、このようなヒバクシャの境界の構成と統制の過程において既存の韓国の社会科学では注目しなかった、文書で媒介される役所手続きと官僚制的な実行およびその効果を考察した。また、原爆被爆から60年経った今日、韓国原爆被害者が被爆者健康手帳を交付されることにかかわる社会文化的な脈絡と条件にも注目した。韓国原爆被害者の被爆者健康手帳の交付に対する民族誌的な事例研究は、日本の被爆者援護政策が原爆の被害を受けた人々を救済するという目標により形成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植民時代の公的な記録と被爆当時の記憶で媒介される役所手続きと官僚制的な実行は、逆説的にも原爆の被害を最も大きく受けた可能性の高い人々に最も排他的な仕方で作動し、結果的に被爆者援護という目的を果たすのに失敗する可能性を高めるという点を見せてくれる。さらに、このような失敗可能性は自国の政府が援護の主体として前面に出ないなか、原爆被害者たちの自助のために戦ってきた韓国原爆被害者協会の会員統制の仕方が絡み合い、広島と長崎の時空間に対する感覚や原爆被害に対する知識の高くない人や、血縁や地縁を

基にした縁故から離れている人々に最も高く現われるという点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官僚制的な実行と社会文化的な特殊慣行が結合するあり方の重要性を示そうとした。

キーワード： 韓国原爆被害者、社会的苦痛、日本の被爆者援護政策、ヒバクシャ(被爆者)の範疇の境界、科学、政治、官僚制、官僚制的な統制